

---

# 대행제도의 법리적인 분석을 통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김종천





# 대행제도의 법리적인 분석을 통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gency Service System through  
Jurisprudential Analysis

연구자 : 김종천(연구위원)

Kim, Jong-Cheon

2017. 10. 31.



## 요 약 문

### I. 배경 및 목적

#### ▶ 현행 「헌법」상 행정조직법정주의 채택

- 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행정조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왜냐하면 행정기관의 권한 등은 국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일반국민들에게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게 되며, 행정조직 및 행정기관의 권한은 국가의 존립근거 및 유지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임
- 이에 따라 행정법상 행정기관의 권한은 행정권한의 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에 따라 정해지고, 당해 행정기관이 처리됨이 원칙임

#### ▶ 현대사회의 전문화·다양화로 인한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공무수행 곤란

-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광풍속에서 사회가 점점 더 다양화 및 전문화됨으로 인하여 국민의 욕구가 높아지는 만큼 행정은 그에 걸맞은 수단을 개발하여야 함
- 왜냐하면 행정기관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안전, 검사 등 영역에서 공행정임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국가에 의하여 수행해오던 공적인 임무를 민간에 임무나 기능을 위임 및 위탁하거나 민간영역으로 통째로 이전하여 국가의 공행정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성 및 효과성이 커다는 점에서 위임·위탁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임

- 이와 더불어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수행방식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대행, 자동차검사대행이나, 자동차견인대행,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선박검사 등에서 대행제도를 활용하여 국가의 공행정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 ▶ 입법자에 의한 대행제도를 활용하게 되는 사유

- 위임·위탁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권한이 위임·위탁기관에서 수임·수탁기관으로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것이고, 이러한 권한을 다시 회수하기 위하여 법률개정을 통하여 회수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위임기관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면 실제로 위임기관에 그 권한이 회수하여 수행하는 결과가 된다는 측면에서 법률의 개정 없이도 공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대행기관인 법인, 단체 사인인 경우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 행정업무의 상대방인 일반국민의 경우에 행정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의 관점에서 보면, 보다 전문성이 있고 서비스가 좋은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임

### ▶ 행정법상 대행제도의 법이론적 분석을 통한 입법론적 법제 개선 방안 도출

- 행정부의 공행정 업무 방식이 다양화 및 전문화됨으로 인하여 행정법상의 대행제도에 대한 활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제도에 관한 법이론적인 분석, 규정방식, 규제체제가 일관성 있게 마련되지 않아 법집행상의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있음으로 대행제도의 법이론적인 연구를 통하여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II. 주요 내용

### ▶ 행정임무 수행방식에 관한 국가의 임무론 분석

- 근대국가 성립 이전과 이후에 국가의 행정임무 분석
- 국가의 행정임무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 국가의 행정임무 수행방식
  - 위임·위탁
  - 대행
  - 민영화

### ▶ 행정법상 대행제도의 법리적인 분석

- 대행제도를 도입 배경
  - 1983년 「국세징수법」 개정안 당시 (구) 재무부와 국세청에서 국세채납처분관련 하여 (구) 성업공사에게 하도록 하고, 그 권한행사의 효과는 행정관청인 세무서장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민간대행제도를 도입한 배경을 검토
- 대행제도의 법적 개념 및 유형 검토
  - 대행의 의의
  - 대행제도의 입법유형
- 대행제도의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제처 해석례 검토

### ▶ 현행법상 대행제도의 입법유형 분석

- 현행법상 대행제도와 관련하여 정부부처 중 소관 법령 및 대행관련 규정 분석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기상청, 산림청, 문화재청, 특허청, 조달청,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소관 법령 전수 조사 분석함
- 현행법상 대행제도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인 부·처·청 및 위원회에서 소관 관련 법제를 조사한 결과 검토
  -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법률 24개, 제2유형에 해당하는 법률 11개, 제3유형에 해당하는 법률 14개, 제4유형에 해당하는 법률 145개로 총 194개의 법제에서 대행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특히, 대행제도와 관련하여 제4유형에 해당하는 입법유형이 다수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정부부처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32개, 해양수산부가 18개, 환경부가 16개, 국토교통부가 15개, 소방청이 11개로 대행제도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소방청의 5개 부·청이 93개로 많은 법률에서 대행제도를 활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
  - 그 외의 대행유형으로 제1유형과 제2유형 및 제3유형은 24개에서 11개로 그 수가 작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음

#### ▶ 현행법상 대행제도 관련 법체계 개선 방안 제시

- 현행법상 대행제도의 법체계 방향성 검토
- 쟁점별 대행제도의 입법사례에 관한 분석
- 대행제도의 입법론적인 개선 입법 모델(안) 제시

- “내부위임형 대행” 관련 법제 개선
- “위탁형 대행” 관련 법제 개선
- “직무대리 및 법정대리형 대행” 관련 법제 개선
- “행정보조인형 대행” 관련 입법모델(안) 제시

### Ⅲ. 기대효과

- 대행과 위임·위탁의 개념 확정 및 대행제도의 법이론적인 기반구축에 기여함
- 대행제도의 입법론적인 입법모델(안) 제시를 통하여 법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
- 대행제도의 법령전수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대행제도의 규제체계 정립에 기여함

▶ 주제어 : 대행, 위임·위탁, 국가의 임무, 위탁형 대행, 행정보조인형 대행, 직무대리 및 법정대리형 대행



## Abstract

### I. Backgrounds and Purposes

▶ **The principle that the essential parts of the governmental bodies shall be set forth by law**

- Korea adopts the principle that the essential parts of the governmental bodies shall be provided by law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 That is because the authority of administrative bodies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public and their life, including economic duties. The authority of administrative bodies plays a pivotal role of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a state.
- Therefore, the administrative law sets forth the authorities of administrative bodies.

▶ **Troubles related to official governmental works directly executed by administrative bodies in the modern society which becomes more professional and diverse**

- As the buzz word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weeps the world, the society has become more professional and diverse. The need of the public rises, and the administrative bodies should develop proper means to meet such need.
- As the public administrative duties in such areas as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education, welfare, safety, and inspection have been soaring, it has become more difficult for administrative bodies to execute them directly. Therefore, the public works which used to be done directly<sup>7</sup> by the government have been entrusted to the private sector partly. Such entrustment or delegation of functions or duties of the

administrative bodies to the agencies in the private sector can improv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governmental administrative bodies.

- Using an agency to entrust the public administrative affairs can be seen in many fields including agency for collecting and transporting domestic wastes, vehicle inspection, vehicle towing, public sewage management, and ship inspection

▶ **The benefits of using the agency service system**

- Entrustment and delegation of the power of the administrative bodies means the actual transfer of authority from the administrative bodies to agencies. Such authority transferred can be retreated only by amending laws, which may face realistic difficulties. Thus, using agency by the body entrusting works can make it easier because the authority is still be that of the administrative bodies and amendment of laws would not be needed to execute the public administrative works.
- The agency service system can ensure stable and continuous works as the agencies, whether they are corporation, group, or private person, use their professional knowledge to execute administrative works.
- It is beneficial for the public in terms of professional administrative service as the agencies specialized in the relevant fields deal with the administrative works.

▶ **Developing the way to improve legislation related to agency service system under the administrative law through legal theoretical analysis**

- Despite that the use of agency by the administrative bodies due to the requirement for professional and diverse approaches to the public administrative works has been expanded, the legal theoretical analysis, the direction of regulation, and regulation system on agency system are not in consistence. Since it has caused troubles in executing regulations, this paper looks into the agency system from a legal theoretical perspective to develop a direction for its legislative improvement.

## II. Major Content

- ▶ **Analysis on the theory on the administrative duties of a state in terms of the type of execution**
  - Analysis on the administrative duties of a state before and after the birth of modern states
  - The meaning of the administrative duties of a state and its constitutional ground
  - The type of executing the administrative duties of a state
    - Delegation · Entrustment
    - Using agency
    - Privatization

▶ **Legal theoretical analysis on the agency service system under the administrative law**

- Background of introducing agency service system
  - When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was amended in 1983, the former Ministry of Finance and the National Tax Service decided to entrust the works related to the disposition on national tax default to the former Sungup Corporation in the private sector and delegate the power of execution to a head of a tax office which is the administrative body of tax works.
- Review on the legal concept of agency service system and its type
  - The concept of agency
  - The legislative types of agency service system
- Review on the precedents on agency service system by courts, decisions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interpretation by the MOLEG.

▶ **Analysis on the type of legislation related to agency service system**

- This paper analyzes regulations and laws related on agency service system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laws of Ministry of Land and Transportation,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Welfar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inistry of Defens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inister of Strategy and Fiance,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Inferior and Safet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Ministry of Unification,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National Fire Agency,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orea Forest Servic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Public Procurement Servic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air Trade Commission,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Presidential Committee for the Inspection of Collaborations for Japanese Imperialism, and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 It also reviews the conclusion of the research conducted by Ministries, Agencies, Services and Commissions of the government on the agency service system under the current laws.
  - Total 194 laws provide provisions on agency service. Specifically, the number of laws falling into Type 1 of agency is 24; the number of laws falling into Type 2 is 11; Type 3 is 14; and Type 4 is 145.
  - The result shows that the majority number of laws sets out the provisions on Type 4 agency. Some of the Ministries which use the agency service system actively ar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32 provisions),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8 provisions), Ministry of Environment (16 provisions), Ministry of Land and Transportation (15 provisions), and National Fire Agency (11 provisions). The total number of provisions of these five Ministries and Agency is 93, which accounts for the major portion of the laws setting forth on the Type 4 of agency service system.
  - The other three types - Type 1, Type 2, and Type 3 - account for only small numbers, minimum 11 and maximum 24.

▶ **Proposal to improve the laws related to agency service system under the current laws**

- Review on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the current agency service system
- Analysis on the legislative cases on agency service system by issue
- Proposed a legislative model for legislative improvement of agency service system
  - Legislative improvement of “Internal-delegation type agency”
  - Legislative improvement of “Entrustment-type agency”
  - Legislative improvement of “Duty delegation and Legal representation-type agency”
  - Proposed a legislative model (proposal) on “Administration assistant type-agency”

**III. Expected Effects**

- This paper is expected to set out the definition of agency, entrustment and delegation and contributes to establishing the legal theoretical ground of agency system.
  - It proposes the legislative model of agency system and can be used as the basic research material for the improvement of the related law and policy.
  - It has conducted a complete survey of laws related to agency service system and analyzed them to establish an appropriate regulation system on agency service system.
- ▶ **Key Words** : Vicarious execution, Delegation entrustment, Duty of state, Entrustment-type agency, Administration assistant type-agency, Duty delegation and legal representation type-agency

# 목차

대행제도의 법리적인 분석을 통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 약 문 .....	3
Abstract .....	9

## 제1장 서론 / 2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4

## 제2장 행정임무 수행방식에 관한 국가의 임무론 / 37

제1절 국가의 행정임무의 철학적인 기원 .....	39
1. 근대국가 성립이전의 국가의 행정임무 .....	39
2. 근대국가 성립이후의 국가의 행정임무 .....	41
제2절 국가의 행정임무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	42
1. 국가의 행정임무의 개념 .....	42
2. 국가의 행정임무에 관한 헌법적 근거 .....	43
제3절 국가의 행정임무 수행방식 .....	45
제4절 소 결 .....	48

## 제3장 행정법상 대행제도의 법리적인 분석 / 51

제1절 개 관 .....	53
제2절 대행제도의 도입 배경 .....	56
제3절 대행제도의 법적 개념 및 유형 .....	59
1. 대행의 의의 .....	59
2. 대행제도의 입법유형 .....	69
제4절 대행제도의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	72

1. 대행제도 관련 대법원 판례 .....	72
2. 헌법재판소 결정례 .....	76
3. 법제처 해석례 .....	82
제5절 소 결 .....	86

## 제4장 현행법상 대행제도의 입법유형 분석 / 91

제1절 개 관 .....	93
제2절 국토교통부 소관 법제 분야 .....	94
1. 총괄표 .....	94
2.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 검사 대행 .....	97
3. 건설기술진흥법: 품질검사 대행 .....	98
4. 건축법 : 점검업무 대행·건축사무소개설신고 대행 .....	98
5.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국제교류 대행 .....	99
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개발사업 대행 .....	100
7.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사중단 실태조사 대행 ...	100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물건의 인도 및 이전 대행 .....	101
9. 도로법: 상급 관청의 도로공사 대행 .....	101
10. 하천법: 하천공사 대행 .....	102
1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점검·재평가 대행 .....	103
12.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도로·상하수도 시설 등의 설치사업 대행 .....	103
13.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국제협력·해외진출 대행 .....	104
1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교통카드·단말기 등 전국호환성 인증 대행 .....	105
1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조사·연구 및 댐건설 업무 대행 .....	106
16. 도시개발법: 개발사업 대행 .....	106
17.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업무대행 ...	107

# 목차

대행제도의 법리적인 분석을 통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18.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대행 .....	108
19.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정비사업 대행 .....	109
2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사업 등의 총괄 관리 등의 업무 대행 .....	109
21.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발사업 대행 .....	110
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 개발사업 대행 .....	110
23. 물류정책기본법: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관련 심사 대행 .....	111
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개발사업 대행 .....	111
2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발사업 대행 .....	112
2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행복도시건설사업 대행 .....	113
26. 유료도로법: 도로 신설 및 개축 및 유지·수선 관련 대행 .....	113
27. 자동차관리법: 공매대행·성능시험대행·자동차검사대행·검정업무대행 .....	114
28. 주차장법: 검사대행 .....	115
29. 주택법: 주택조합의 업무 대행 .....	115
3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대행 .....	116
31. 지하수법: 지하수 조사 대행 .....	116
32. 철도사업법: 시설물 설치 대행 .....	117
3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대행 .....	117
34.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조성사업의 대행 .....	118
35.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의 대행 .....	118
36. 한국도로공사법: 공사의 시행과 관리업무의 대행 .....	119
37. 항공안전법: 항공신체검사증명 대행 .....	119
38. 소 결 .....	119
제3절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제 분야 .....	122
1. 총괄표 .....	122
2. 광업법: 경계측량 대행 .....	124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업무 대행 .....	125
4.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경쟁력강화사업의 업무 대행 .....	125

5. 도시가스사업법: 안전관리업무 대행 .....	126
6. 무역보험법: 무역보험,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 신용보증,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 대행 .....	127
7. 산업기술촉진법: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업무 대행 .....	127
8. 산업디자인진흥법: 디자인사업 대행 .....	128
9. 산업융합촉진법: 산업융합표준화사업 대행 .....	128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신고 및 허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 대행 .....	129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비축의무 대행 .....	130
12.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비축의무 대행 .....	130
1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평가업무의 대행 .....	130
1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위해성심사업무 대행 .....	131
15.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러닝표준화사업 대행 .....	131
1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외국인 투자기업 신고 대행 .....	132
17. 전기사업법: 안전관리업무 대행 .....	133
1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환경 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대행 .....	134
19. 소 결 .....	135
제4절 보건복지부 소관 법제 분야 .....	136
1. 총괄표 .....	136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소독업무 대행 .....	138
3.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고령친화산업표준화 대행 .....	138
4.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대행 .....	138
5. 국민연금법: 압류재산 공매 대행 .....	139
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계좌관리 대행 .....	140
7. 의료급여법: 심사청구 대행 .....	140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확인업무 대행 .....	140
9. 장애인복지법: 계약절차의 업무 대행 .....	141
1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계약업무 대행 .....	141
11. 지역보건법: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대행 .....	142

12. 소 결 .....	142
제5절 환경부 소관 법제 분야 .....	143
1. 총괄표 .....	143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수집·운반업무 대행 .....	145
3. 대기환경보전법: 측정기기 관리업무 대행·이륜자동차 검사 업무 대행 .....	146
4. 먹는물관리법: 환경영향조사업무 대행 .....	146
5.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 검사 대행 .....	147
6.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노후차량경비지원 대행 .....	147
7. 수도권법: 기술진단업무 대행 .....	147
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측정기기관리업무 대행 .....	148
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유해야생동물 포획 대행 .....	149
10.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빛공해가 생태계, 천체관측, 에너지 낭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의 대행 .....	149
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업무 대행 .....	149
1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의무 대행 .....	150
13.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평가·위해성평가를 위한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 대행 .....	150
14. 폐기물관리법: 생활폐기물의 처리업무 대행·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 대행·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업무 대행 .....	150
15. 하수도법: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기술진단 대행·개인하수도 관리 업무 대행 .....	152
16.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 대행 .....	153
1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 업무 대행 .....	153
18.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업무 대행 .....	154
19. 소 결 .....	154
제6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제 분야 .....	155
1. 총괄표 .....	155
2. 국민체육진흥법: 올림픽 오륜과 관련된 표지·도안·표안 등의 승인업무 대행 .....	156
3.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만화 및 만화상품의 수출경쟁력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업무 대행 .....	157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진흥 업무 대행 .....	157

5.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의 국제교류 활성화 관련 업무 대행 .....	158
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특구개발사업 업무 대행 .....	158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상품의 수출경쟁력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 관련 업무 대행 .....	159
8. 소 결 .....	159
제7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제 분야 .....	160
1. 총괄표 .....	160
2.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업무 대행 .....	162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물수농산물 등의 처분업무 대행 .....	162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품질인증 업무 대행·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 대행· 검사업무 대행·검사 및 재검사업무 대행 .....	163
5. 농어촌정비법: 환지업무 대행 .....	164
6. 농업기계화촉진법: 농업기계의 검정업무 대행 .....	164
7. 농지법: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 대행 .....	164
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 대행 .....	165
9. 동물보호법: 동물보호와 유실·유기방지에 관한 업무대행 .....	165
10. 방조제관리법: 방조제의 관리 업무 대행 .....	165
11. 사료관리법: 사료의 수입 추천업무 대행 .....	166
12. 양곡관리법: 양곡의 수출·수입 추천업무 대행 .....	166
13.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영농·영어 작업과 가사 지원 업무 대행 .....	167
1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매납입금 징수의 수납 업무 대행 .....	167
15. 소 결 .....	168
제8절 고용노동부 소관 법제 분야 .....	170
1. 총괄표 .....	170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보험료 신고 등의 사무 대행 .....	171
3. 고용보험법: 노동시장·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와 보험 업무 대행 .....	171

4.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영향평가 업무 대행 .....	172
5. 국가기술자격법: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 대행 .....	172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직업능력개발정보망구축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 연구업무 대행 .....	173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사업 관련 조사연구 업무 대행 .....	174
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업무 대행 .....	174
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신용카드로 부담금등의 납부 업무 대행·공매 대행 .....	175
10. 소 결 .....	175
제9절 국방부 소관 법제 분야 .....	177
1. 총괄표 .....	177
2. 국방과학연구소법: 군용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 관련 업무 대행 .....	178
3. 군사법원법 : 검찰관의 직무 대행 .....	178
4. 소 결 .....	178
제10절 소방청 소관 법제 분야 .....	179
1. 총괄표 .....	179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붕괴위험지역 지반의 침하·활동·전도(顛倒) 및 붕괴 등 사전감지 관련 대행 .....	180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위험성평가 대행 .....	181
4. 수상레저안전법: 면허시험 실시 업무 대행 .....	182
5.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대행 .....	182
6. 자연재해대책법: 방재관리대책 관련 업무 대행 .....	183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안전지수의 개발·조사에 관한 업무 대행 .....	183
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우수기업 인증 관련 대행 .....	184
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 설치 사업의 대행 .....	184
10.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의 교육· 훈련 업무 대행 .....	185
11. 풍수해보험법: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업무 대행 .....	185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	186
13. 소 결 .....	186
제11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법제 분야 .....	187

1. 총괄표 .....	187
2.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 등 업무 대행 .....	188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특구개발사업의 업무 대행 .....	188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안전점검 업무 대행·정밀안전진단업무 대행 ..	190
5.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 업무 대행 .....	190
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화 업무 대행 .....	191
7. 전자서명법: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관련 표준화 업무 대행 .....	191
8.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기술개발 업무 대행 .....	191
9.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관련 업무 대행 .....	192
10. 소 결 .....	192
제12절 기획재정부 소관 법제 분야 .....	193
1. 총괄표 .....	193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감사업무 대행 .....	194
3.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정부소유 주식 매각 업무 대행 .....	195
4. 관세법: 사이버몰 매각업무 대행·통계의 작성 및 교부 업무 대행 .....	195
5. 국세징수법: 압류재산 공매 대행 .....	196
6. 국세기본법: 조세심판관의 직무 대행 .....	196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유·공유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체결 및 매수업무 대행 .....	197
8. 세무사법: 장부작성 업무 대행 .....	197
9. 영업초생산업동조합법: 조합원을 위한 구매·보관·판매·제조 사업 및 그 공동사업 관련 업무 대행 .....	197
10. 한국수출입은행법: 수출촉진·수출경쟁력·해외투자 등 관련 업무 대행 .....	197
11. 소 결 .....	198
제13절 법무부 소관 법제 분야 .....	199
1. 총괄표 .....	199
2. 공증인법: 직무 대행 .....	199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용과 관련 기술의 호환성(互換性) 확보 관련 업무 대행 .....	200
4. 출입국관리법: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업무 대행 .....	200

5. 소 결 .....	200
제14절 해양수산부 소관 법제 분야 .....	201
1. 총괄표 .....	201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수로도서지 판매업무 대행 .....	204
3. 국립해양박물관법: 박물관의 성과측정·점검·평가 및 정산업무 대행 .....	204
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국제항해 선박의 보안에 관한 보안심사관의 업무 대행 .....	204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몰수농산물 등의 처분 업무 대행·농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 대행 .....	205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안전성조사·시험분석 업무 대행 .....	206
7.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점검업무 대행 .....	207
8. 선박법: 선박톤수의 측정 등 검사업무 대행 .....	207
9. 선박안전법: 컨테이너의 안전점검 업무 대행·검사등 업무의 대행·선체두께 측정의 대행·위험물 관련 검사·승인의 대행 .....	208
1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장애물처리 업무 대행 .....	211
11. 선박직원법: 선박직원의 직무 대행 .....	211
1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육상시험 및 선상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처리물질에 대한 국제기구 승인 신청 서류의 심사 업무 대행 .....	211
13. 선원법: 인증검사업무 등의 대행 .....	212
1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의 수입 추천등과 관련 업무 대행 .....	212
15. 수산자원관리법: 인공어초 설치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 대행 .....	213
16.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 관련 업무 대행 .....	213
17. 어선법: 어선의 총톤수 측정·개측·어선의 검사·건조검사·검정·확인 업무 대행 .....	213
18.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수납, 보험급여의 지급 및 보험료납부의 확인 업무 대행 .....	214
19. 어장관리법: 어장정화·정비 관련 대행 .....	215
20. 어촌·어항법: 어항개발사업 대행 .....	215
21. 항로표지법: 항로표지를 설치·관리업무 대행 .....	215
22. 항만법: 검사업무 대행 .....	216
23. 해상안전법: 해상교통안전진단 업무 대행·인증심사 업무의 대행 .....	216

24. 해양환경관리법: 해양배출 폐기물 검사 대행·안전점검 대행·폐기물의 성분·농도·무게·부피의 측정에 관한 업무 대행 .....	217
25.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적격성심사 대행 .....	219
26. 소 결 .....	219
제15절 행정안전부 소관 법제 분야 .....	220
1. 총괄표 .....	220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도교육감의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	222
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부단체장의 권한 대행 .....	223
4. 지방공기업법: 상위서열공무원의 권한 대행 .....	223
5. 지방세징수법: 공매대행 .....	223
6.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토지수용에 관한 업무 대행 .....	224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대행 .....	224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할 행정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 구매 대행 .....	224
9. 지방자치법: 직무 대행 .....	224
10. 소 결 .....	225
제16절 여성가족부 소관 법제 분야 .....	225
1. 총괄표 .....	225
2. 소 결 .....	226
제17절 경찰청 소관 법제 분야 .....	226
1. 총괄표 .....	226
2. 도로교통법: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 대행 .....	226
3. 소 결 .....	227
제18절 기상청 소관 법제 분야 .....	228
1. 총괄표 .....	228
2. 기상관측표준화법: 검정업무 대행 .....	228
3. 기상산업진흥법: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 대행 .....	229
4. 소 결 .....	229
제19절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제 분야 .....	230

1. 총괄표 .....	230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 대행 .....	230
3.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연구개발사업 대행 .....	231
4. 소 결 .....	232
제20절 금융위원회 소관 법제 분야 .....	233
1. 총괄표 .....	233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임원의 업무 대행 .....	234
3. 상호저축은행법: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때 전문지식과 효율적인 업무 대행 .....	234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다른 회사 채권에 대한 부채증명서 발급 업무 대행 .....	235
5.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 업무 대행 .....	235
6. 예금자보호법: 공매대행 .....	236
7. 소 결 .....	236
제21절 산림청 소관 법제 분야 .....	237
1. 총괄표 .....	237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경영 대행 .....	238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탄소저장량의 측정 대행 .....	238
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정보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 대행 .....	239
5. 산지관리법: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업무 대행 .....	239
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방제사업의 대행 .....	240
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의 생산·유통 정보에 관한 지원·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지원·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지원, 임업연구 성과의 기술 사업화 촉진 및 기술이전 지원, 산림자원 및 입지 조사 설계·평가 관련 업무 대행 .....	240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목목생산사업 대행 .....	241
9. 소 결 .....	242
제22절 문화재청 소관 법제 분야 .....	243
1. 총괄표 .....	243
2. 소 결 .....	243

제23절 특허청 소관 법제 분야	243
1. 총괄표	243
2.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244
3. 발명진흥법: 연구노트 활용사업·산업재산권정보화·산업재산권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사업·산업재산권보호사업 업무 대행	244
4. 상표법: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245
5. 소 결	245
제24절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제 분야	246
1. 총괄표	246
2. 원자력안전법: 업무대행자의 등록	246
3. 소 결	246
제25절 교육부 소관 법제 분야	247
1. 총괄표	247
2. 소 결	248
제26절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제 분야	249
1. 총괄표	249
2. 소비자보호법: 직무대행	249
3. 약관규제법: 직무대행	249
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원장 직무대행	250
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원장 직무대행	250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원장 직무대행	250
7. 소 결	250
제27절 통일부 소관 법제 분야	251
1. 총괄표	251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 대행	252
3. 소 결	252
제28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제 분야	253
1. 총괄표	253
2.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관할위원회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업무 대행	253
3. 소 결	254

제29절 조달청 소관 법제 분야 .....	254
1. 총괄표 .....	254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의 구매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시설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 대행 .....	255
3. 소 결 .....	255
제30절 국가보훈처 소관 법제 분야 .....	256
1. 총괄표 .....	256
2. 소 결 .....	256
제31절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제 분야 .....	256
1. 총괄표 .....	256
2. 소 결 .....	257
제32절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 법제 분야 .....	257
1. 총괄표 .....	257
2. 소 결 .....	257
제33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제 분야 .....	257
1. 총괄표 .....	257
2. 소 결 .....	258
제34절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제 분야 .....	258
1. 총괄표 .....	258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장정비사업 대행 .....	259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대행 .....	259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장을 설립하려는 지방중소기업을 위한 공장설립 대행 .....	260
5. 소 결 .....	260
제35절 현행법상 유형별 대행제도의 종합적 분석 .....	261

## 제5장 현행법상 대행제도 관련 법체계 개선방안 / 265

제1절 대행제도 관련 법체계 개선 방향 .....	267
제2절 대행유형 중 입법사례 분석 .....	271
1.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271
2.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및 보관업무의 대행 .....	272
3. 자동차검사의 대행 .....	273
4. 공사·공단의 행정청 권한의 대행 .....	274
5. 상급관청이 하급 행정청의 사무 대행 .....	275
6. 선박검사의 대행 .....	276
7. 측정대행업자의 오염물질 측정대행 .....	277
8.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	278
9.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	279
10. 소 결 .....	280
제3절 대행제도 관련 입법론적 개선방안 .....	282
1. “내부위임”형 대행관련 법제 개선 .....	282
2. “위탁”형 대행 관련 법제 개선 .....	284
3. “직무대리·법정대리”형 대행 관련 법제 개선 .....	286
4. “행정보조인”형 대행 관련 법제 개선 .....	288
참고문헌 .....	291
부 록 .....	297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정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업무의 다양화 및 전문화로 인하여 자신의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직접행정을 수행하기도 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행정을 집행하기도 한다. 이처럼 정부의 업무 수행방식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국가의 존재영역으로 수행되어 왔던 공행정임무를 사인(私主體)에게 또는 공·사간의 협력을 통하여 행정작용을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경찰국가시대에는 국가의 행정작용 방식과 관련하여 국가영역, 사회영역으로 칼로 재단하듯이 예리하게 구분할 수 있었으나, 현대화된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복합시대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의료, 안전, 검사 등 영역에서 공행정임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가에 의하여 수행해오던 공적인 임무를 민간에 임무나 기능을 위임 및 위탁하거나 민간영역으로 통째로 이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국가에 의한 공행정 임무수행방식을 민간에 의하여 수행하거나, 공·사간의 협력을 통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 전문지식을 활용, 재정절감 등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반대로 공행정임무를 통째로 민간에게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존립에 대한 정당성을 붕괴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1)</sup>

1) 이종영, “공공업무 민영화의 법적 한계” 『법학논문집』 제24집제1호(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2), 292면.

따라서 국가학의 관점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공행정임무를 사인에게 이전하거나 공·사간에 협력을 통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국가의 존립기반을 붕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헌법」은 행정조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그 이유로 행정기관의 권한 등은 국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일반국민들에게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게 되기 때문이며, 또한 행정조직 및 행정기관의 권한은 국가의 존립근거 및 유지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즉, 행정법상 행정기관의 권한은 행정권한의 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에 따라 정해지고, 당해 행정기관이 처리됨이 원칙이다. 다만, 하부 행정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 또는 법인, 단체나 사인이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임·위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위임·위탁이라는 제도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변경하거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률 또는 하위법령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화된 행정에서 정부는 공익을 향하여 끝없는 목적적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회가 점점 더 다양화 및 전문화됨으로 인하여 국민의 욕구가 높아지는 만큼 행정은 그에 걸맞은 수단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행정기관이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지고, 행정기관이 이외의 법인, 단체나 사인<sup>2)</sup>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성 및 효과성이 커다는 점에서 위임·위탁제도와 더불어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수행방식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대행, 자동차검사대행이나 자동차견인대행,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선박검사 대행을 통하여 행정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에서 “대행”을 검색하면 조문제목에 “대행”이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률만 99건, 조문제목에 “대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법률

2) 국가가 직접 또는 공공단체를 통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이를 사인에게 위탁하여 그로 하여금 고권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즉 행정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책임을 분산시키며 사적부문의 재정적인 요소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공적임무의 달성에 사인을 행정주체로 채용할 수 있는데, 이를 公務受託私人이라는 개념으로 포착할 수 있다고 한다. 홍준형, “사인에 의한 행정임무의 수행” 『공법연구』 제39집제2호(한국공법학회, 2010/12), 635면; 정하중, “민간에 의한 공행정수행” 『공법연구』 제30집제1호(한국공법학회, 2001/12), 463면.

규정은 190건이 검색되며, 법령본문에서 “대행”을 검색하면 1,483건의 법률, 대통령령, 부령에서도 대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행정업무 수행방식인 “대행”이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사하도록 하되, 그 명목과 책임을 본래 권한자인 행정기관에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대행제도에 대한 법이론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제도들이 “대행”이라는 같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실무상 대행제도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대행제도를 활용하는 이유가 첫째, 위임·위탁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기관에서 수임·수탁기관으로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것이고, 이러한 권한을 다시 회수하기 위하여 법률개정을 통하여 회수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위임·위탁을 하지 않더라도 업무를 수행시킬 수 있고, 위임기관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면 실제로 위임기관에 그 권한이 회수하여 수행하는 결과가 된다는 측면에서 법률의 개정 없이도 융통성 있게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고, 둘째, 대행기관인 법인, 단체 사인인 경우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점 때문이며, 셋째, 행정업무의 상대방인 일반국민의 경우에 행정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의 관점에서 보면, 보다 전문성이 있고 서비스가 좋은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대행제도를 활용하게 되는 주된 이유이기 때문이다.<sup>3)</sup>

따라서 정부의 행정업무 수행방식이 다양화 및 전문화됨으로 인하여 실정법상에 대행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상의 대행제도와 관련하여 법이론적인 분석, 규정방식, 규제체제가 일관성 있게 마련되지 않아 법집행상의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대행제도의 법이론적인 분석을 통하여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3) 이상수, “행정사무의 대행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서울法學』(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2), 286-287면.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정부의 업무수행방식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대행, 자동차검사대행이나 자동차견인대행,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여권발급대행, 자동차등록번호 발급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선박안전법상의 건조검사, 선박검사, 도면 승인에 관한 대행 등의 많은 분야에서 대행제도를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상의 대행이론에 관한 법리적인 분석, 규정방식, 규제체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집행상의 법리적인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업무수행 방식인 대행제도에 관하여 법리적인 분석을 선행하기 위하여 국가학의 관점에서 국가의 공임무이론 분석을 바탕으로 삼아서 행정법상의 대행제도의 법리적인 분석을 한다.

따라서 현행 법제상 대행제도에 관한 법령분석을 통하여 대행제도의 규제체계 및 규정방식 등을 살펴보고 향후 대행제도에 관한 입법모델(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문헌적·입법학적인 연구방법론을 채택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제2장에서 행정임무 수행방식에 관한 국가의 임무론에 관하여 분석하는데, 특히 국가의 행정임무의 철학적인 기원, 국가행정임무의 헌법적인 근거, 국가의 행정임무 수행방식에 대하여 분석을 한다.

제3장에서는 현행법상 대행제도의 법리적인 분석과 관련하여 대행제도를 도입한 배경, 대행제도의 법적 개념 및 대행제도의 개념을 유형화하고, 대행제도 관련 판결 및 헌법재판소 판결 및 법제처 해석례 등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현행법상 대행제도와 관련하여 정부부처 중 소관 법령 및 대행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기상청, 산림청, 문화재청, 특허청, 조달청, 금융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인 부·처·청 및 위원회에서 소관 관련 법제를 전수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대행의 유형을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에 해당하는 대행규정을 구분하여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현행법상 대행제도 관련 법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대행제도의 법체계 방향성 검토와 쟁점별 대행제도 입법사례에 분석을 통하여 대행제도의 입법론적인 개선 입법 모델(안) - “내부위임형 대행”, “위탁형 대행”, “직무대리 및 법정대리형 대행”, “행정보조인형 대행”을 제시한다.



## 제2장 행정임무 수행방식에 관한 국가의 임무론

제1절 국가의 행정임무의 철학적인 기원

제2절 국가의 행정임무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제3절 국가의 행정임무 수행방식

제4절 소 결



## 제2장

# 행정임무 수행방식에 관한 국가의 임무론

### 제1절 국가의 행정임무의 철학적인 기원

#### 1. 근대국가 성립이전의 국가의 행정임무

국가의 행정임무의 철학적인 연원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국가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활동을 수행해 왔는지에 대한 방식이고, 둘째, 국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행을 했는가에 대하여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국가임무에 관한 본질적인 목적은 고대국가에서나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의 현대국가에서도 동일하다고 판단되나, 고대국가의 공임무 수행방식과 오늘날 현대화된 국가의 활동 수행방식은 현저히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국가 성립이전에 국가의 행정임무에 관한 법이론을 분석하는 이유는 고대국가가 어떤 목적을 추구 했는가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활동했는가를 과거의 국가철학이론에서 현재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근대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의 국가의 임무이론으로 고대-그리스 국가론, 기독교-중세국가론, 홉스의 국가론, 로크의 국가론, 칸트의 국가론을 통하여 국가의 임무를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 살펴볼 수 없으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홉스, 로크, 칸트의 국가론 일부를 분석하기로 한다.

플라톤의 국가목적은 국가전체에 선, 덕, 복리가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론은 인간은 오직 국가안에서만 완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국가는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시기의 국가존재의 정당성은 국가라는 틀이 만들어지

지 않았으므로, 국가라는 것은 플라톤에 의하면 국민에게 선, 덕, 복리가 지배하는 국가, 아리스토텔레스는 국민의 생존보장을 위하여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중세-기독교시대의 국가는 신의 창조적인 산물이고, 국가의 행위는 신의 의사를 행하는 것이고, 국가의 행위는 신에 의하여 조종된다. 이시기까지도 국가는 신의 의사에 따라 행하여진다. 이때까지 국가가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를 안전개념에서 찾을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고대-그리스 국가론, 기독교-중세국가론에서는 단지 국가의 의무를 제한하였다.

하지만 홉스의 국가론은 인간은 원래 “이기욕”과 “권리욕” 때문에 惡하다고 성악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4)</sup> 따라서 國家라는 것은 인간 안에 있는 파괴적인 힘을 억제하기 위해 공포로부터 생겨난 강제조직인 것이며, 국가의 목적은 만인에 의한 만인을 보호함에 있다.<sup>5)</sup> 홉스는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他人으로부터 國民의 安全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의 존재 정당성이 있다.

로크의 국가론은 홉스의 철학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신의 피조물을 유지할 의무를 지고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와 평등을 이해하고 있다. 로크는 선천적으로 평등권을 가진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평화롭게 생활 하다가 “위임계약(委任契約)”을 통해서 국가를 성립시킨다.<sup>6)</sup> 즉 국가는 위임계약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 등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내에서 행사가 가능하다. 이에 로크의 국가론은 유산계급층만을 대변하였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4)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사악하고 비사회적 존재이고, 인간은 타인에 대한 늑대일 수 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홉스가 주장하는 인간의 자연상태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의 상태라고 한다. 이러한 자연상태에서 사람을 보호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國家와 그 國家에 의한 法이라고 한다. 최종고, 『법철학』(박영사, 2002), 83~84면; 오세혁, 『법철학사』(세창출판사, 2004), 124면.

5) 좌중훈, “토마스 홉스의 사상에서 본 절대적 국가권력과 국민의 자유” 『법철학연구』(한국법철학회, 1999), 81~108면; 한스 벨첵/ 박은정(역),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삼영사, 2002/9), 172-173면.

6)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박영사, 2008), 174~175면.

칸트의 국가론<sup>7)</sup>은 도덕적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도덕적 명령에 따라 도덕적 인간끼리의 계약에 의하여 국가가 성립된다. 칸트가 품고 있는 이상사회는 시민사회(市民社會)이다. 칸트는 시민정치체제를 공화제로 표현했다. 즉 칸트는 공화제의 국가체제를 국민의立法에 의해 이루어진 국가를 말한다. 이에 칸트의 국가론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계약에 의해 법에 담아야 하고, 그 법은 국가의 유일한 공동 입법형태여야 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고대그리스 국가론에서 출발하여 칸트 국가론에 이르기까지 그 중에서 홉스와 로크의 국가론이 근대국가가 성립하기 전에 국가가 존재하여야 하는 목적은 “국민의 안전”, “공공복리”를 확보하여야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을 파악했다.

## 2. 근대국가 성립이후의 국가의 행정임무

근대국가가 성립 이후의 국가이론을 분석하면, 먼저, 경찰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를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여 법질서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즉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권력을 독점하였다. 경찰국가에서 입헌주의 법치국가의 변화로는 국가의 역할은 법률과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공공복리를 추구하여,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만들고, 사회적인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교육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입헌주의 법치국가시대에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축소하게 되었고, 국민의 교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간섭하였다. 사회국가시대에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산업화사회로 진입은 근로대중을 출현케 하여, 근로대중에게 생명, 자유, 재산의 보장이 아니라 생존권 보장, 완전고용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즉, 이 시대는 자본가와 노동자간에 불평등이 점차 계급대립으로 전환된 시대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사회주의 국가시대에는 불평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영역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

7) 최인숙, 『칸트』(살림출판사, 2005), 73면; 이재승, “칸트의 국가론” 『민주법학』 제17권(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0), 104면.

여 분배를 조정하는 국가였고, 이시대의 국가는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는 국민들과 미래세대를 위하여 국가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다. 예컨대, 국가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등을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하여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야기되는 리스크 또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을 보호하여야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처럼 국가는 국민의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원자력에너지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임무 및 책무를 가지게 되는바, 이는 국가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임무로서의 국가의 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행정임무는 공공복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을 보호 하여야 한다. 결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목적의 실현은 “입법자의 몫”이라고 판단된다.

## 제2절 국가의 행정임무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 1. 국가의 행정임무의 개념

국가의 행정임무란 “헌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거나, 국가가 수행할 권한이 있는 일정한 활동의 범위”라고 개념지을 수 있을 것이다.<sup>8)</sup> 국가의 행정임무는 행정주체가 수행하는 임무를 말하는 바, 국가의 행정임무의 효과는 헌법에 의하여 수

8) 차민식, 『국가임무의 機能私化와 국가책임』(경인출판사, 2011), 72면.

행할 권한이 있는 임무와 헌법의 체계하에서 기본권에 구속되고, 행정절차, 행정조직 등 헌법적인 규범체계가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즉 모든 국가기관이 기본권에 구속받는다든 것은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입법자·행정주체·사법기관은 특정 수단을 채택하기 전에 그 수단이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고, 입법자는 법률을 제정하기에 앞서서 위헌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을 스스로 방지하여야 하고, 행정주체와 사법기관은 법해석과 법집행 과정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법 적용시에 기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sup>9)</sup>

또한 국가의 행정임무와 공법적 임무가 동일한 개념인가<sup>10)</sup>와 관련하여 공법적 임무는 국가의 행정임무와 관계가 없고, 공법적 임무는 임무수행방식과 관련하여 선택한 수단이 공법적 형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행정임무가 공법적 형식으로 수행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국가의 행정임무를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sup>11)</sup>

## 2. 국가의 행정임무에 관한 헌법적 근거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가의 행정임무를 도출할 수 있는 근거는 당연히 현행 「헌법」을 기준으로 삼아 이해하여야 한다. 독일기본법에서도 국가의 행정임무를 도출할 수 있는 여러 접점들이 존재하나, 국가의 행정임무에 대한 전체적인 형상을 제시하지 못한다. 실제 독일의 경우에도 국가의 행정임무를 도출하는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가 “기본권”규정이다. 예컨대, 독일기본법 제1조제1항에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보호”에 관한 규

9) 한수웅, 『헌법학』(법문사, 2015), 399면.

10) 국가임무와 공임무의 구분은 두 개념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다기보다는 그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독일의 Ossenbühl 교수는 국가임무란 국가가 당시의 통용되는 헌법질서에 따라 허용된 방법으로 스스로 요구하는 임무를 말하고, 반면에 공임무란 그 이행이 공익을 위하는 것이지만 국가에 의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私인에 의하여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임무를 말한다고 하지만 이런 용어는 칼로 재단하듯이 구분할 수 없으며, “국가임무”와 “공임무”의 개념은 대개 동의어로 사용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중권, “민간화와 국가유보”, 『행정법 기본연구 II』(법문사, 2009), 435면.

11) 김중권, “민간화와 국가유보”, 『행정법 기본연구 II』(법문사, 2009), 435면

정으로부터 국가의 보호의무를 도출하고, 이로부터 국가임무를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본권 조항과 민주주의 원리, 법치국가의 원리, 사회국가의 원리로부터 국가의 행정임무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sup>12)</sup>에서도 基本權은 국가의 공권력행사에 대한 개인의 主觀的인 防禦權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客觀的인 原理(規範, 價値秩序)로서 모든 法분야에 적용되며 立法, 行政, 司法 등의 모든 國家作用의 指針(Richtlinie)과 動因(Impuls)의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기본권의 객관적 원리(규범, 질서)로부터 도출된 국가임무의 실현은 立法者로 하여금 개별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된다고 할 것이다.<sup>13)</sup>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의 행정임무는 「헌법」 제10조 전문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부문으로부터 人間의 生命과 身體에 대한 安全을 근거로 國家任務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헌법」 제10조 후문에서 기본적 인권은 인간의 존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즉 이를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국가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타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침해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다. 그 밖의 「헌법」 제30조

12) <http://www.servat.unibe.ch/dfr/bv007198.html#Opinion<2017.8.30.>>; Lüth-Urteil에서 독일 함부르크 언론담당자이며 책임자인 Lüth는 1950년 9월 20일 독일 함부르크의 언론단체의 의장으로서 영화제작자와 영화배급자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공개표명을 하였다. 나찌시대의 독일 영화는 도덕적 신뢰를 상실하였고, 신뢰를 회복하는데 가장 부적합 인물로는 “유대인 사랑”의 시나리오 작가이자 영화감독자 Harlan(할란)이다 등의 이유로 영화 불매운동을 하였다. 그래서 이 당시의 불멸의 연인이라는 영화를 Harlan(할란)의 시나리오와 그에 의해 영화 불매의 연일을 준비하던 Domnick제작회사와 영화배급사 Herzog 영화사는 피고 Lüth를 상대로 민법 제826조(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에 따라 불매 운동을 중지해 달라고 함부르크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Lüth의 표현을 공서양속에 반하는 불매운동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Lüth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Lüth의 불매운동 주장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으로 민법 제826조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함부르크 주법원의 판결을 취소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치중립적 질서이기를 거부하는 기본법은 기본권편에서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창립하였으며 객관적 가치질서 속에서 기본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강화되었다. 사회공동체내에서 자유롭게 발현하는 인간의 인격과 존엄에 중심을 가지는 이러한 가치체계는 헌법적 기본결단으로서 모든 법영역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지 않으면 안되고, 입법, 행정, 사법은 이러한 가치체계로부터 지침과 동인을 부여 받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치체계가 민법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판시했다.

13)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보호의무는 법치주의 핵심적인 가치인바, 국가의 보호의무는 입법자로 하여금 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가의 감독·보장책임을 구체화된 제도를 구축할 것을 명령할 수 도 있고, 정부에 대하여도 감독·보장행정을 적절하게 수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상덕, 『營造物의 개념과 이론』(경인문화사, 2006), 368면.

규정, 「헌법」 제34조제6항, 「헌법」 제35조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 「헌법」 제36조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전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으로부터 국가의 보호의무를 통하여 국가임무를 도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현행 「헌법」 제37조제2항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규정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을 통해서도 국가의 행정임무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행 「헌법」 상 기본권규정 및 그 밖의 「헌법」 제30조 규정, 「헌법」 제34조제6항, 「헌법」 제35조제1항, 「헌법」 제36조제3항, 「헌법」 제37조제2항으로부터 국가의 행정임무에 관한 헌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제3절 국가의 행정임무 수행방식

앞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국가임무의 수행방식은 경찰국가, 법치국가, 사회국가, 조종국가로 대변되는 국가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임무의 수행방식이 변화해 오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과거의 경찰국가시대에서는 국가만이 권력을 독점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국가만이 행정임무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맞이하 고 있는 현대국가시대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의료 등의 전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바와 같이 국가만이 모든 행정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도래 하게 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sup>14)</sup>

14) 국가의 기능변화로 인하여 공적임무수행 방식은 전통적인 행정주체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공공주체(공법상의 법인 내지 특수법인) 또는 사인에게 공적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내용으로 이원우,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법학방법론의 과제” 『행정법연구』 48(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7/2), 93면.

예를 들면, 교통인프라 구축, 에너지공급문제, 물공급문제, 상하수도 처리문제, 쓰레기 처리문제, 사회복지문제, 원자력·전기·가스 등의 안전관리문제, 공교육문제 등 많은 분야에서 국가는 국가의 존재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익실현을 국가가 직접 행정업무를 실현할 수 없고, 국가의 업무를 법령의 규정을 통하여 소위 공사, 공단, 협회, 정부출연연구원, 공기업(사기업의 특허), 사인 등에게 법률에 위임·위탁<sup>15)</sup>, 대행<sup>16)</sup> 및 민영화<sup>17)</sup> 등의 형태로 공·사간에 협의를 통하여 행정업무를 실현하고 있다.

- 15) 강학상 위임(委任)이란 행정기관이 자신에 주어져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법령에 근거로 삼아서 직접적인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강학상 위탁(委託)이란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휘·감독관계에 있지 아니한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법인·단체, 개인에게 그의 권한과 책임아래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위임·위탁과 관련된 정의규정과 관련하여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서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서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서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위임·위탁은 행정권한을 본래의 행정기관에게 그대로 유보된 상태하에서 수임·수탁 받은 자가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서 행사하는 것을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위임은 상하관계(행정안전부장관이 광역시장, 시·도시장에게 위임하는 것)에서 위탁은 수평적인 관계(법무부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국방부장관이 세무서장에 위임하는 것)를 대상을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 16) 실정법상 대행(代行)의 개념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행정기관의 법령상의 권한을 그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를 하되, 권한의 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경우, 또는 그 대행기관이 그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인 효과를 원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수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 17) 민영화(民營化)란 철도, 에너지공급, 상하수도, 사회복지, 교육 등 공공부문에 수행되어 오던 재화·서비스의 공급기능을 민간으로 이전시키게 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국가의 재산을 민간에 일정부분 매각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민영화의 법적 논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원우, “민영화에 대한 法的 論議의 基礎”, 『한림법학 FORUM 7』(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11), 217면; 그러나 홍정선 교수는 민영화(民營化, Privatisierung)의 형태로 조직의 민영화, 사무의 민영화, 기능적민영화, 재산의 민영화 등으로 구분하고, 조직의 민영화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법에 근거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형식적 민영화로 부르기도 하며, 사무의 민영화란 행정주체에 의하여 생산하고 공급 및 분배되어 오던 것을 사인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실질적민영화로 부르며, 기능적 민영화란 행정주체가 공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제행위를 사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인은 공법적 사무를 기능적으로 행사하며, 책임은 행정주체가 부담하는 경우를 말하며, 재산의 민영화란 행정주체가 공법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사인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국가소유의 지분을 사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홍정선,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4-5면).

따라서 헌법상의 기본권규정으로 도출되는 국가임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의료 등의 전 영역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직접적으로 행정임무를 실현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즉, 국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평등하게 골고루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임무가 누구에 의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제공되는지와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보장책임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국가의 행정임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주체와 형태는 입법자에 의한 법률을 통하여 제정하는 것이다.<sup>18)</sup> 입법자는 법률의 제·개정을 통하여 국가에 부여된 의무를 실현할 수 있고, 국가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결정을 한다. 또한 입법자는 법률의 규정을 통하여 임무수행방식과 관련하여 행정권한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다른 중앙행정기관, 공기업(사기업의 특허), 공사, 공단, 협회, 정부출연연구원 등에 위임·위탁하거나, 대행 및 민영화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결국 입법자는 국가의 행정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심대한 잣대로 삼는 것이 “효율성”이다. 즉, 효율성이란 공익목적과 수단사이의 관계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교통인프라 구축, 에너지공급문제, 물공급문제, 상하수도 처리문제, 쓰레기의 수거·처리문제, 사회복지문제, 원자력·전기·가스 등의 안전관리문제, 공교육문제 등 많은 분야에서 효율성의 잣대로 행정조직, 재정적인 요소, 인력, 기술능력 등을 고

18) 헌법재판소 2007. 6. 28. 2004헌마262 결정과 관련된 “『지적법』 제41조의3 위헌확인사건”에서 “국가가 자신의 임무를 스스로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임무의 기능을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 즉 국가가 어떤 임무수행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입법자가 당해 사무의 성격과 수행방식의 효율성 정도 및 비용, 공무원 수의 증가 또는 정부부문의 비대화 문제, 민간부문의 자본능력과 기술력의 성장속도, 시장여건의 성숙도, 민영화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서 그 판단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특히, 국가임무의 수행방법으로 그 기능을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개방되는 부분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의 직업의 자유는 회복되지만, 그러한 개방부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의 직업의 자유는 회복되지 아니하여 상대적으로 차별을 발생시키게 되나, 국가임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려하여 국가의 임무 중에 지방자치단체, 다른 중앙행정기관, 공기업(사기업의 특허), 공사, 공단, 협회, 정부출연연구원 등을 통하여 위임·위탁 및 대행에 관한 수행방식을 마련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국가는 모든 공행정 임무를 자기 스스로 수행할 수 없으며, 공기업(사기업의 특허), 공사, 공단, 협회, 정부출연연구원 및 사인 등을 통하여 공적 임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공적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부담하여야 책임이 국가의 보장책임과 보충적으로 책임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sup>19)</sup>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국가임무는 공법영역과 사법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법적인 규율로서 사법이 보충하고, 반대로 사법적 규율로써 공법이 보충하게 되는 상호보완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제4절 소 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과 미래세대를 위하여 국가임무는 최고의 국가목적인 공공복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 근거를 도출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기본법 제1조제1항에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국가의 보호의무를 도출하고, 이로부터 국가임무를 도출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가임무는 「헌법」 제10조 전문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부분으로부터 人間の生命과 身體에 대한 安全을 근거로 국가의 행정임무를 도출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 상 기본권규정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의료 등의 전 영역에 걸쳐 있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직접적으로 행정임무를 실현할 수 없고, 입법자에 의한 법률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실현한다.

19) 협력적 행정에 있어서 민영화는 국가와 사회의 이분법을 깨뜨리는 국가와 사회의 공익실현에 관한 공동책임에 의거하는 것이다. 특히, 민영화를 통한 행정은 모든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급부책임이 보장책임과 보충책임으로 변경될 뿐이다. 이에 관한 내용은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박영사, 2005), 272면.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모든 행정업무를 자기 스스로 수행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 협회, 출연연구기관, 사인과 협력을 통하여 행정업무를 위임·위탁, 및 대행 등의 업무수행 방식을 통하여 수행한다. 예컨대, 교통인프라 구축, 에너지공급, 물공급, 상하수도처리, 쓰레기처리, 사회복지, 원자력·전기·가스 등의 안전관리, 공교육 등의 많은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가 협력적인 방식으로 공공복리를 실현하고 있음을 법률의 규정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임무는 공·사법영역으로 칼로 예리하게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법적 규제체계에서 사법의 규정이 보완적으로 적용되고, 사법적 규제체계에서 공법의 규정들이 상호보완적인 기능으로 적용되고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겠다.



## 제3장 행정법상 대항제도의 법리적인 분석

제1절 개 관

제2절 대항제도의 도입 배경

제3절 대항제도의 법적 개념 및 유형

제4절 대항제도의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제5절 소 결



## 제3장

# 행정법상 대행제도의 법리적인 분석

### 제1절 개 관

근대국가가 탄생한 이후에 행정작용은 대부분 국가에서 소속되어 있던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여 왔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아가고 있는 오늘날 현대국가는 교통인프라 구축, 에너지공급, 물공급, 상하수도 처리, 쓰레기처리, 사회복지, 원자력·전기·가스 등의 안전관리, 공교육 등과 같은 많은 분야에서 공공기관, 협회, 정부출연 연구기관, 사인과 협력을 통하여 행정임무를 위임·위탁 및 대행을 통한 수행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협회, 정부출연 연구기관, 사인에게 행정업무를 위임·위탁 및 대행방식을 채택하는 주된 원인으로 행정기능의 확대, 행정권한의 배분, 재정적인 문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sup>20)</sup>

즉, 현대국가는 모든 행정임무를 다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수반으로 행정기관 및 조직을 갖추어 행정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우리나라 현행 「헌법」 제66조제4항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규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헌법」 제96조에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국가가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갖추도록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현행 「헌법」 제11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

20) 정남철, 「現代行政의 作用形式」(법문사, 2016), 435면.

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헌법」 제118조제2항에서도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지방자치단체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행정이 고도로 복잡하고 전문성·기술성을 갖추게 됨으로 인하여 국가업무를 중앙 집중화된 권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시키고,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춘 민간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공사, 공단, 협회, 대행 등의 조직을 개별법에 규정하여 이러한 조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위탁, 대리 및 대행제도를 통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서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서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 규정 제2조제3호에서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는 “(민간)위탁”과 같이 행정임무방식을 통하여 공적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일반적이다.<sup>21)</sup>

이처럼 “위탁”이란 행정기관이 직접적으로 지휘감독 관계에 있지 않는 행정기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으로 하여금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2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의 기준으로 행정기관은 소관 사무 중에 조사, 검사, 검정, 관리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i)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ii)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iii)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iv)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등을 정기적·통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하며, 민간위탁을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접관계 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인·허가 등의 행정규제와 결부되는 사무여서는 안되고, 단순한 행정사무, 공익성보다 현저하게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 특별한 전문기술과 지식이 필요하며,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한 행정사무를 행하는 것을 주된 사무의 대상을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와 더불어 행정임무수행 방식으로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서 “위임”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 국가에 의한 행정임무수행 방식과 관련하여 위임·위탁, 대리제도 외에 특히, 대행제도를 통하여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권법」 제21조에 따른 여권 등의 발급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대행,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국토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을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하여 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주차위반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광업법 제33조제3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구역계측량의 신청을 받으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그 경계측량을 대행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61조제5항에서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공매대행”에 관한 규정,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에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조검사·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법제처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란에 “대행”을 검색하면 법률만 99건, 법률규정은 190건이 검색되며, 법령본문에서 “대행”을 검색하면 1,483건의 법률, 대통령령, 부령에서도 대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에 의한 임무수행방식으로 대행제도가 증가되는 이유로 행정은 끊임없이 국가의 공행정목적 실현하여야 하며, 사회가 점점 더 전문화되고 다양화되어 질수록 국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기 때문에 국가는 그에 걸맞는 행정임무수행방식인 위임·위탁 및 대행제도를 통하여 행정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수많은 행정법령에서 대행제도를 입법화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제도의 도입배경, 대행제도의 법적 개념, 규제체계, 규제방식 등이 다양하게 정립되어 있어 법리상 많은 혼란이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행제도의 법적 성격에 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 제2절 대행제도의 도입 배경

대한민국 법제 60년사를 통하여 대행제도의 활용하게 된 배경을 보면, 1983년 「국세징수법」 개정 전에는 “세무서장의 업무로 국세체납처분에 있어서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관리, 압류재산의 공매, 공매대금의 배분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sup>22)</sup> 그런데, 1983년 12월 19일 법률 제3661호로 「국세징수법」 법률(안)을 개정하게 되는 과정에서 “재무부에서는 국세체납처분에 관련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력부족과 전문성 부족, 체납자와의 물리적 충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그 사무의 대부분을 성업공사(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민간 위탁”하고자 하였다.<sup>23)</sup>

22) 법제처, 「대한민국 법제 60년사」, 2008/8, 216면.

23) 법제처, 「대한민국 법제 60년사」, 2008/8, 216면.

하지만 법제처 심사의견과정에서 행정권한의 일부를 첫째, 행정기능의 확충과 국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둘째, 예산 및 국민부담의 절감이라는 목적으로 민간에게 수행하게끔 사례가 증대되었다.<sup>24)</sup> 그러나 행정권한 가운데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이를 민간이 행사할 경우에 “민간에 의한 민간의 지배”라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국가권력의 본질을 왜곡시키며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수단의 미흡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무의 민간위탁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령안 심사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촉발하게 되었다.<sup>25)</sup>

이러한 금지대상 사무는 이른바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존치시켜야 한다면 행정관청 스스로가 그 사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행정관청이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무라면 이를 폐지하는 것이 규제완화 내지 작은 행정론의 이념에 합치하지만 해당 부처에서는 규제를 존치시키면서 규제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위탁” 내지 “민간대행”을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sup>26)</sup>

또한 민간위탁의 법적 제한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대행의 개념이 도입되어 활용하게 되었는데, 이 역시 같은 논리에 따라 적절한 통제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법령안 심사과정에서 많은 쟁점이 되었다고 한다.<sup>27)</sup>

그러나 담당 법제관은 국세채납제도는 행정상 강제징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공권력 작용이고, 따라서 1981년 4월 8일 법률 3422호로 개정된 『정부조직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로 신설하게 되면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무의 민간위탁을 금지하는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행정기관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1970년 1월 1일 법률 제2148호로 신설되었다) 민간위탁의 대상이 될

24) 법제처, 『대한민국 법제 60년사』, 2008/8, 216면.

25) 법제처, 『대한민국 법제 60년사』, 2008/8, 216면.

26) 법제처, 『대한민국 법제 60년사』, 2008/8, 216-217면.

27) 법제처, 『대한민국 법제 60년사』, 2008/8, 217면.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그 당시 재무부와 국세청은 현실적인 필요성을 들어 원안을 관철하고자 하였다.<sup>28)</sup>

따라서 담당 법제관은 재무부와 국세청의 정책적인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되, 민간기관인 성업공사가 자신의 명의로 책임아래에서 공권력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위반되어 받아들일 수 없고, 대안으로 민법상의 대리 개념을 원용하여 성업공사가 공권력의 일부를 행사하되 그 권한행사의 효과는 행정관청인 세무서장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민간대행제도”를 제시하게 되었다.<sup>29)</sup> 아울러 민간대행의 범위도 공권력 작용의 성격이 가장 열은 공매업무에 한정시키면서, 그 공매업무 수행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세무서장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다시 제한을 두고, 더 나아가 지방국세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대행에 따른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과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관 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등 권한의 적정한 행사를 위한 보완책을 명시하도록 권고하였던 바, 이를 재무부에서 이 대안을 수용하게 되었다.<sup>30)</sup>

이러한 결과로 민간위탁의 한계에 관한 각 부처의 인식을 환기시키게 됨과 아울러 민간위탁의 취지를 살리면서 행정관청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민간대행제도를 엄격한 법적인 기준아래에서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는 행정인력의 절감 내지 전문성의 활용이라는 정책의도와 공권력 작용에 대한 법적인 행정책임의 보장이라는 정책적인 의도를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 민간대행제도에 관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되었다.<sup>31)</sup>

28) 법제처, 「대한민국 법제 60년사」, 2008/8, 217면.

29) 법제처, 「대한민국 법제 60년사」, 2008/8, 217면.

30) 법제처, 「대한민국 법제 60년사」, 2008/8, 217면.

31) 법제처, 「대한민국 법제 60년사」, 2008/8, 217면.

## 제3절 대행제도의 법적 개념 및 유형

### 1. 대행의 의의

행정법상의 법률의 규정에서 “대행”에 관한 부문을 많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개념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립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대행개념을 법적으로 근거지우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점에서 다수의 교수님들의 견해와 대행과 관련된 문헌을 참조하여 “대행”개념을 분석하고자 한다.

#### (1) 홍정선 교수의 권한의 대행

홍정선 교수는 대행과 관련하여 법정대리로서의 대행, 위임·위탁으로서의 대행, 행정사무지원으로서의 대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sup>32)</sup>, 행정사무지원으로서의 대행이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권한을 자신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되 권한의 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는 견해로 「여권법」상의 여권발급대행과 「자동차관리법」상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한다.<sup>33)</sup> 그리고 과거 성업공사, 즉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를 세무서장의 공매권한을 위임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공매 처분한 것을 위임·위탁으로서의 대행으로 보고,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을 법정대리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이다.<sup>34)</sup> 이처럼 홍정선 교수는 권한의 대행개념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지원으로서의 대행을 행정정보조인과 차이가 없는 대행으로 독자적인 개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행정사무지원으로서의 대행과 차이가 없다는 행정정보조인은 행정청의 지휘하에서 하나의 도구로 활용되고, 그 행위의 효과는 행정청의 것으로 직접 귀속되며, 제3자와의 관계에서 아무런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못하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홍정선, 『행정법원론(하)』(박영사, 2015), 26면; 홍정선,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20-21면.

33) 홍정선, 『행정법원론(하)』(박영사, 2015), 26면; 홍정선,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21면.

34) 홍정선, 『행정법원론(하)』(박영사, 2015), 26면.

## (2) 박균성 교수의 권한의 대행

박균성 교수는 권한의 대행의 의미를 “위탁에 의하여 공무수탁자에게 행정권 행사를 사실상 독립적으로 행하는 권한이 주어지지만, 위탁기관의 권한이 법적으로 이전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35)</sup> 동 견해에 따르면, 권한의 대행은 권한의 대리와의 유사하지만 통상 대행권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대행자는 행정기관이면서 동시에 독립한 법주체이고, 통상 행위를 함에 있어 피대행기관과의 관계를 명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리와 구별되며, 권한의 대행은 권한의 행사가 사실상 대행기관으로 이전되지만, 법상의 처분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닌 점에서 협의의 위탁과 구별되고, 대행권한을 대행기관의 독립적 의사결정으로 행사한다는 점에서 위탁기관의 지시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행정보조인”과도 구별된다.<sup>36)</sup> 이처럼 행정보조인인 수탁자는 권한 행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없고, 위탁기관의 지시를 받아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행정권한의 상대방 및 제3자와의 관계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sup>37)</sup> 이처럼 박균성 교수는 행위를 위탁의 범주에 “대행위탁”으로 포함하여 행정권한대행의 독자성을 긍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3) 최정일 교수의 권한의 대행

최정일 교수는 행정사무의 대행이란 실질적으로는 행정사무의 위탁과 같으나 법상으로는 그 권한이 행정관청에 남겨져 있는 것이라는 견해이다.<sup>38)</sup> 동 견해는 행정권한을 사인에게 맡기는 방식 중 그 권한을 강력하게 맡기는 유형부터 열거하면, (i) 공무수탁사인, (ii) 행정사무의 위탁, (iii) 행정사무의 대행, (iv) 행정보조인의 순으로 보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실정법상 대행제도는 위의 (ii) 부터 (iv) 까지 유형이 모두 있으므로 실정법

35) 박균성, 『행정법법론(하)』(박영사, 2015), 42면.

36) 박균성, “공무수탁자의 법적지위와 손해배상책임” 『행정판례연구』 XV-1(박영사, 2010), 160면.

37) 박균성, 『행정법법론(하)』(박영사, 2015), 42-43면.

38) 최정일, “민간업체에 의한 불법 주정차 자동차 견인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경찰법연구』 제13권제1호, (한국경찰학회, 2015), 47면.

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sup>39)</sup> 이처럼 최정일 교수는 가장 전형적인 대행의 예로 「도로교통법」 제36조상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대행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대행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4) 이상철 전 법제관의 권한의 대행

이상철 전 법제관은 행정권한의 대행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권한을 자신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되, 권한의 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거나<제1유형>, 대행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가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제2유형>”으로 보는 견해이다.<sup>40)</sup> 동 법제관의 견해는 대행을 2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제1유형으로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권한을 자신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되, 권한의 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으로 보는 유형으로 「여권법」 제21조에 여권발급대행제도를 여기에 포함하고 있다.<sup>41)</sup> 제2유형으로 대행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가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 제61조상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제도를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다.<sup>42)</sup> 즉 동 법제관의 견해에 따르면 제1유형의 대행인 경우에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권한을 그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되 권한의 행사에 따른 사실상의 실무만을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유형으로 본래 권한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반하여, 제2유형은 대행기관이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본래 권한자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법률상 의제되기 때문에 특별히 명문의 규정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sup>43)</sup> 이처럼 이상철 전 법제관의 견해는 대행제도의 유형을 분석

39) 최정일, “민간업체에 의한 불법 주정차 자동차 견인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경찰법연구』 제13권제1호, (한국경찰학회, 2015), 47면.

40) 이상철, “위임·위탁·대리·대행”, 『법제』(법제처, 2000/8), 32면; 이상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입법론상 문제점-공무수탁사인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0/4), 239면.

41) 이상철, “위임·위탁·대리·대행”, 『법제』(법제처, 2000/8), 34면.

42) 이상철, “위임·위탁·대리·대행”, 『법제』(법제처, 2000/8), 34면.

43) 이상철, “위임·위탁·대리·대행”, 『법제』(법제처, 2000/8), 36면.

하여 개념규정을 정립한 것으로써 대행제도의 독자적인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sup>44)</sup>

### (5) 김재규 전 국장의 권한의 대행

김재규 전 국장은 “행정권한의 대행이란 행정관청이 법령상의 권한행사 또는 업무수행을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원 행정관청이 행한 것과 같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sup>45)</sup> 이 견해에 따르면 가장 전형적인 대행이란 “행정관청이 법령상의 권한행사 또는 업무수행을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결과에 따라 원 행정기관이 그 명의로 책임으로 법적 조치를 하는 것으로 법령상 권한 또는 업무의 이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sup>46)</sup> 동 견해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가 공매대행을 본래 권한자인 행정기관에 의한 위임·위탁으로 보고 있다는 견해를 근거로 삼아 대행의 효과도 대행자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하여 위탁과 대행의 효과에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위탁과 대행의 구별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위임 또는 위탁과 유사한 대행으로 규정하여 행정권한을 이전하는 것은 권한의 귀속, 책임관계 등 법체계상 혼란을 야기하므로 대행규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에서 대행제도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가급적 권한과 책임 보다 명확한 위탁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sup>47)</sup>

44) 그러나 김승열 전 국장님은 제1유형은 민간위탁과 유사하고, 제2유형은 권한의 대리인 같은 법적 효과를 갖는다는 점과 실제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위탁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법률에서 위탁의 취지로 대행하는 경우라면 대행제도를 입법화할 것이 아니라 위탁으로 규정하여 법적인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한 내용은 김승열, “정부업무 민간위탁의 한계와 공정성 확보방안”, 『법제』(법제처, 2000/9), 60면.

45) 김재규, “행정권한의 위임·위탁·대리·대행 관련 입법모델 검토”, 『입법모델Ⅱ』(법제처, 2002), 397면; 조정찬 전 법제처 국장은 대행의 경우 대리의 개념으로 보아 행정기관의 명의로 책임아래 업무를 수행하지만 이는 명목적인 것이고 대행기관이 사실상 자기의 책임아래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과 대행의 차이는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조정찬, “사인에 의한 행정에 관한 연구”, 『법제』(법제처, 1996/2) 110면); 김승열 전 국장도 대행은 사실상 민간위탁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김승열, “정부업무 민간위탁의 한계와 공정성 확보방안”, 『법제』(법제처, 2000/9), 59면)

46) 김재규, “행정권한의 위임·위탁·대리·대행 관련 입법모델 검토”, 『입법모델Ⅱ』(법제처, 2002), 397면.

47) 김재규, “행정권한의 위임·위탁·대리·대행 관련 입법모델 검토”, 『입법모델Ⅱ』(법제처, 2002), 401-402면.

그러나 동 견해는 실제 행정법상 대행기관의 행위를 원 행정기관의 행위로 의제하기도 하고, 처분이 포함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면서 대행기관을 행정청으로 의제하는 경우도 있으며, 의제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대행기관이 처분적 성질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처분이 필요 없는 권력적 사실행위나 행정서비스업무를 대행도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가능하고, 대법원 판례가 공매대행을 위임·위탁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대행제도의 활용을 제한하고 위탁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대행제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하여 비판이 가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6) 최철호 교수의 권한의 대행

최철호 교수는 행정권한의 대행과 관련하여 위탁과 유사한 제도로 보이지만, 위탁은 위탁에 의해 수탁자에게 권한이 이전되어 수탁자가 행정권 행사를 사실상 독립적으로 행할 수 있지만, 행정권한의 대행이란 위탁기관의 권한이 법적으로는 이전되지 않는 경우라는 견해로, 실제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대행을 강학상 대행이라고 보고, 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사실상 위탁이라고 보고 있다.<sup>48)</sup> 즉 최철호 교수는 대행은 권한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박군성 교수의 견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권한대행을 광의의 위탁의 한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고, 대행이 민간위탁과 차별성이 없다고 본다는 점에서 대행제도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지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 (7) 박신 박사의 권한의 대행

박신 박사는 권한의 대행과 관련하여 관계법규의 해석을 통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sup>49)</sup> 실제로 선박톤수 측정의 대행과 같이 행정업무를 대행자

48) 최철호,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적기준의 설정과 한계”, 『법학논총』 제20집(승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8), 273면.

49) 박신, “행정권한의 대행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제30집 제2호(한국공법학회, 2001), 379면.

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경우를 대행의 가장 일반적 유형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실상 위탁과 유사하다고 보는 견해이다.<sup>50)</sup> 이러한 대행은 행정청과 대행자가 행정업무의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협력관계의 유지가 보다 강하게 부각되는 경우라고 본다. 또 다른 유형으로 한국도로공사의 대행과 같이 대행자를 행정청으로 보도록 의제하는 경우는 대행자는 법률의 규정을 기초로 이미 정해져 있는 행정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법적지위에 서는 것으로서 이는 권한의 대리나 위임과는 다른 별도의 법적 수단으로 일종의 법정위임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라고 본다.<sup>51)</sup> 이러한 권한의 대행은 법정위임으로 행정청과 대행자는 병렬적인 대등한 지위를 가지므로 대행권한을 피대행청이 행사할 수 없고, 지휘·감독권의 문제도 생기지 않으며, 동일한 권한을 행정청과 대행기관이 결합하여 행사할 여지도 없고, 다만 양자간에 권한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고 한다.<sup>52)</sup> 이처럼 박신 박사는 대행은 사실상 위탁과 유사하다고 보고, 행정청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둔 대행의 경우에는 위임과 다른 별도의 법적 수단으로 일종의 법정위임관계라고 설명하면서도 실제적인 법률관계는 위임·위탁의 법리와 유사하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실정법상 대행제도가 위임·위탁 및 대리와 같은 취지로 행하는 경우라면 대행제도를 규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up>53)</sup>는 점이 특징적이다.

### (8) 정남철교수의 권한의 대행

정남철 교수는 대행과 관련하여 “대행”과 “행정보조인”<sup>54)</sup>에 관한 부문을 구별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도로교통법」 제36조상의 불법주차 자동차의 견인을 대행과 「폐기물관리법」

50) 박신, “행정권한의 대행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제30집 제2호(한국공법학회, 2001), 380면.

51) 박신, “행정권한의 대행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제30집 제2호(한국공법학회, 2001), 381면.

52) 박신, “행정권한의 대행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제30집 제2호(한국공법학회, 2001), 381면.

53) 박신, “행정권한의 대행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제30집 제2호(한국공법학회, 2001), 389면.

54) 행정보조인의 개념적 징표는 비독립성이며, 제3자인 국민에게 집적 수익으로 되는 급부는 사실상 행정보조인인 사인이 제공하지만 법률관계에서 그 급부제공의 책임자는 행정주체이다. 따라서 행정보조인은 제3자와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법률관계에 있지 않고, 자신의 급부에 대한 대가도 실제 수혜자인 국민이 아니라 행정주체로부터 받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보조인의 활동은 당해 행정주체에 귀속하고, 이로 인한 법률관계도 행정주체와 제3자인 국민과의 사이에 형성된다는 점에서 행정보조인은 단순한 도구로서 공임무에 동원되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행정보조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이원우, 『경제규제법론』(홍문사, 2010), 743면.

제13조제2항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 관하여 설명을 하면서 동법률에서의 대행의 개념에 대해 개별적인 분석이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up>55)</sup> 정남철 교수는 대행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 비독립적으로 행정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사법상의 계약을 통하여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견인조치를 할 수 있으나, 주차위반차량의 견인에 관한 행정권한은 경찰서장이나 시장이 갖고 있다.<sup>56)</sup> 즉 주차위반차량의 견인을 대행하는 법인의 경우에 독립적이든 비독립적이든 간에 행정과제를 집행하는 행위자로서 행정청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는 대행법인을 행정보조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sup>57)</sup> 이와 더불어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의 경우에도 고권적인 권한을 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무원수탁사인으로 볼 수 없고, 행정보조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sup>58)</sup> 따라서 정남철 교수의 견해는 행정법상의 대행제도에 관하여 개별적인 분석을 통하여 불법자동차 견인하는 대행법인과 폐기물처리대행의 법적성격을 행정보조인으로 간파하여야 함을 적시하고 있으나, 강학상 행정보조인은 행정청을 위하여 비독립적인 활동을 하며, 단지 도구로서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행정보조인은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행의 법적성격 논의>

구분	대행개념	대행의 예	항고소송피고적격	배상책임자
홍정선	• 법정대리로서의 대행, 위임위탁으로서의 대행, 행정사무지원으로서의 대행	국세징수법상의 공매 대행, 여권법상의 여권 발급대행, 자동차관리법상의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피대행기관	피대행기관

55) 정남철, 「現代行政의 作用形式」(법문사, 2016), 445면.

56) 정남철, 「現代行政의 作用形式」(법문사, 2016), 445면.

57) 정남철, 「現代行政의 作用形式」(법문사, 2016), 445면.

58) 정남철, 「現代行政의 作用形式」(법문사, 2016), 446면.

구분	대행개념	대행의 예	항고소송피고적격	배상책임자
박 균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의 위탁, 대행위탁(권한의 대행), 보조위탁</li> </ul>	도로교통법상의 차량등록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의 위탁: 수탁자가 처분청 및 피고가 됨</li> <li>▶ 대행위탁: 위탁기관이 처분청 및 피고가 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의 위탁: 수탁자가 행정주체이므로 공무수탁자가 배상책임자</li> <li>▶ 대행위탁: 위탁기관이 배상책임을 지고, 공무대행자는 독립적으로 불법행위를 한자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짐</li> </ul>
최 정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행을 행정사무의 위탁으로 봄</li> <li>• 공무수탁사인, 행정사무의 위탁, 행정사무의 대행, 행정보조인</li> </ul>	도로교통법상의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대행	설명 없음	위탁기관이 속한 행정주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집고의 또는 중과실 있는 경우 대행기관이 책임을 짐(자연인은 민법 제 750조, 대행법인 민법 제 756조 사용자책임)
이 상 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행이란 대행기관으로 하여 행하고 법률적인 효과는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의제함</li> </ul>	여권법상의 여권발급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대행, 국세징수법상의 공매대행	설명 없음	설명 없음
김 재 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관청이 대행기관에게 업무수행을 하고 실제 행정관청이 행한 것과 같이 되도록 함</li> </ul>	수상레저안전법상 해양경찰청장이 조종면허시험을 시험대행기관에게 대행	대행기관	설명 없음
최 철 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은 수탁자에게 권한 이전되어 독립적으로 행정업무 수행</li> <li>• 대행은 위탁기관의 권한이 법적으로 이전되지 않음</li> </ul>	도로교통법상의 견인대행, 국토부장관으로부터 한국도로공사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위탁	설명 없음	설명 없음

구분	대행개념	대행의 예	항고소송피고적격	배상책임자
박 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한의 대행은 관계 법규의 해석을 통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li> <li>• 대행은 사실상 위탁과 유사함</li> </ul>	선박법상 해수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선박톤수 측정과 관련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선급법인에게 대행	설명 없음	설명 없음
정 남 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행은 실정법상 개별적으로 분석</li> <li>•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대행법인은 행정보조인에 해당함</li> </ul>	「도로교통법」 제36조상의 불법주차 자동차의 견인을 대행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2항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	설명 없음	설명 없음

### (9) 소 결

행정법상 대행제도의 개념과 관련하여 다수의 교수님의 견해와 다수 문헌들을 분석해 보았으나, 실제로 대행개념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것이라고 근거지을 수는 없다. 즉 홍정선 교수는 권한의 대행개념과 관련하여 행정보조인과 차이가 없다는 점, 박균성 교수는 광의의 위탁의 유형으로 대행위탁을 강학상 대행으로 정의하면서 협의의 위탁과 보조위탁(행정보조인)은 다르다는 점, 최정일 교수는 행정권한을 사인에게 맡기는 방식의 유형 중 행정사무의 대행으로 강학상 대행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이상철 전법제관은 행정법상의 입법례를 통하여 행정권한의 행행을 규정하고 있는 점, 김재규 전 법제국장은 대법원에서 행행을 위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위탁과 행행의 구별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최철호 교수는 행행을 민간위탁과 같고, 박신 박사는 행행은 사실상 위탁과 유사하고, 정남철 교수는 개별적으로 분석을 필요로 하나 불법주차 자동차의 견인을 대행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행행을 行政補助人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철 전 법제관과 김재규 전 국장의 견해를 토대로 삼아서 행행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위임·위탁법리 및 대행제도의 법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

나의 신타래 역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 기준안의 경우에도, “대행”의 개념으로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를 책임은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령상의 권한이 이전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이를 행사하더라도 그 법률적인 효과는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행사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때문이다.<sup>59)</sup> 또한 국회법제실에서 발간된 법제실무에서도 “권한의 대행”이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권한을 그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되, 권한의 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에게 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60)</sup> 이처럼 대행은 행정권한자와 그에 따른 책임에 관한 규정이므로 피대행관청의 권한 또는 업무를 규정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정기준, 지정취소,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담아 두어야 함과 아울러 대행을 입법화할 때 대행자에 대한 지휘·감독의 취지에서 명문으로 시정명령제도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sup>61)</sup> 특히, 행정권한의 대행제도와 관련하여 개별법률에 담게 될 경우에 유의사항으로 “행정권한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민간에 이전하는 경우라면 위임·위탁제도를 통하여 행정권한을 이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무의 경우에 대행제도를 통하여 민간에게 부여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점<sup>62)</sup>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교수님의 견해와 다수 문헌 및 법제처 입안심사기준, 국회 법제실무자료 등을 기초로 삼아서 행정권한의 대행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즉, 대행이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권한을 그 명의로 책임하에서 행사하되, 그 권한의 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고, 대행기관은 그 명의로 책임하에서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인 효과가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근거지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9)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12, 446면.

60) 국회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6, 625면.

61) 국회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6, 626면.

62) 국회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6, 626면.

## 2. 대행제도의 입법유형

### (1) 제1유형의 대행 - 내부위임<sup>63)</sup>

제1유형의 대행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권한을 그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되 권한의 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여권법」 제21조제1항에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領事)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고 외교부장관의 여권발급 등에 사무를 영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법상 여권등의 발급행위는 국내·외에 나가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는 공증행위로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을 제기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외교부장관이 모든 공적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행제도의 활용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여권발급 업무를 외교부장관에서 영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위임사무의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제1유형의 경우에 본래의 행정기관으로부터 대행기관이 지휘 또는 감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본래 권한자인 행정기관의 지시나 감독”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2) 제2유형의 대행 - 위탁

제2유형의 대행은 대행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가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행정법

63) 대법원 1995년 11월 28일 선고 94누6475판결에 따르면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권한의 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행사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위임의 개념은 실제 행정권한의 행사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청에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따른 법률관계에서는 행정권한의 이전 없다는 것으로 개념지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상 많은 법률이 동유형에 속하는 법률이 있으나, 「국세징수법」 제61조상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제도를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도로법」 제112조제1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고”, 동조제2항에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는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으로 제2유형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특히, 제2유형의 경우에도 대행기관이 본래 행정기관으로부터 지휘 또는 감독을 받아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동 유형의 입법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본래 행정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본래 행정기관의 지시나 감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즉 대법원 판례인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판결<sup>64)</sup>에서도 대행기관은 원 행정청(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 (3) 제3유형의 대행 - 직무대리 또는 법정대리

제3의 유형의 대행은 법 형식은 대행으로 사용되나, 실질적인 법적인 효력측면에서 보면 직무대리로서의 의미로 사용되어진다. 예를 들면 현행 「헌법」 제71조에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다음의 정부조직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는 점에서 이때의 대행은 직무대리 또는 법정대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64)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

#### (4) 제4유형의 대행 - 행정보조인

제4유형의 대행은 행정법상 사인에게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 전문적·기술적인 자격을 갖춘 자를 대행사업자로 허가 및 등록을 하거나 지정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유형을 말한다.

#### (5) 소 결

따라서 제1유형에 해당하는 대행의 개념은 행정실무에 있어서 보조기관이나 하급기관에 대하여 소관사무의 처리를 맡기면서 그 업무에 관한 대외적인 권한 행사는 행정청의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내부위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내부위임은 행정청의 권한에 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다른 행정기관에게 사무에 관한 결재권을 부여하였으나 이는 내부적인 사무처리 방법이고, 외부에 대하여는 행정청의 행위로 표시된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제1유형의 경우에 따른 행정기관은 행정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자신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내부위임”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제2유형은 「국세징수법」 제61조상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제도와 「도로법」 제112조 제1항상 한국도로공사의 대행의 경우를 말하는 바, 대행기관의 권한대행행위가 본래 행정기관이 한 것으로 의제됨과 아울러 법원의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 판결과 관련하여 “성업공사에 의한 공매대행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의 위임으로 보아야 하고,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의 항고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공매를 행한 성업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라는 점에서 보듯이 행정권한의 이전이 있다는 점에서 “대행”개념보다 명확하게 “위탁”의 개념을 적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3유형은 현행 「헌법」 제71조에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측면에서 법정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제4유형은 전문적·기술적인 분야의 자격을 갖춘 사인에게 대행사업자로 허가 및 등록 등을 하거나 지정을 받도록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行政補助人’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제4절 대행제도의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 1. 대행제도 관련 대법원 판례

#### (1) 대행을 위임·위탁으로 본 판례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공매처분취소]에 따르면, “성업공사(현, 자산관리공사)에 의한 공매의 대행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의 위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성업공사는 공매권한의 위임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것이므로, 성업공사가 공매를 한 경우에 그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의 항고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성업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고(당원 1989. 10. 13. 선고 89누1933 판결 참조),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대법원의 논리는 성업공사(현, 자산관리공사)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이를 공매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아 공매처분을 대행하는 것으로 보아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을 “성업공사”로 인정하고, 대행기관은 원 행정청(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sup>65)</sup>

또한 대구지방법원 1995. 1. 26. 선고 94가합4985 판결은 “한국도로공사는 대한민국(건설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고속국도의 신축, 개축, 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65) 그러나 법제처 김재규 전 국장은 대행의 경우에 원래 행정청의 권한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래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되어야 논리적이라고 보면서 대법원이 성업공사가 세무서장의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대행기관인 성업공사의 피고적격을 인정하고 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부인하는 판례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김재규, “행정권한의 위임·위탁·대리·대행 관련 입법모델 검토”, 『입법모델Ⅱ』(법제처, 2002), 413-414면.)

관리 등의 업무를 행하면서 고속국도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범위 내에서 고속국도의 관리청이므로, 헌법 제29조에서 들고 있는 배상의무의 주체가 되는 '공공단체'에 해당되고, 도로관리자로서의 지위와 공공성,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의 성질 및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각종 도로의 등급과 안전성에 따른 적정한 책임귀속 및 분배의 요청에 따르는 법 적용의 형평성에 비추어 「국가배상법」 제5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를 원용하는 면책항변을 허용하지 아니함이 옳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도로공사가 건설부장관의 고속국도의 관리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고속도로의 관리청으로 건설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아 한국도로공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사례<sup>66)</sup>라고 할 것이다.

## (2) 대행을 사실행위의 대행으로 보아 관리청의 변경이 아니라는 판례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85413 판결에 따르면, “(구) 하천법(2012. 1. 17. 법률 제11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더라도 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관리에 관한 일부 권한을 일시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하천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던 중 지방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하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함께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하천의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구) 「하천법(2012. 1. 17. 법률 제11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2항에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동법 제27조제5항에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고 정하면서, 동법 제28조제1항에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구) 「하천법」 제75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 등 하천관리를

66)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56552 판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임시도로 등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시·도지사가 가지는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대법원은 (구)「하천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던 중 지방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방하천의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더라도 하천관리에 관한 일부 권한을 일시적으로 행사하는 것이고, 하천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자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사례이다.

### (3) 시·도지사가 국토부장관의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국가사무의 기관위임이라고 본 판례

부산고등법원 2011. 8. 24. 자 2011라6 결정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부산국토지방관리청장이 경상남도지사와 ‘낙동강 살리기 사업 대행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경상남도지사에게 이행거절 등을 이유로 대행협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경상남도가 침해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대행협약의 근거는 「하천법」 제28조 제2항이고 이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할 당사자는 경상남도지사라고 보아야 하므로 대행협약의 일방 당사자는 경상남도가 아닌 경상남도지사이고, 대행협약에 따른 하천공사 대행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할 국가사무를 경상남도지사가 기관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므로 위 대행협약을 권리주체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법상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즉, 동 판례는 4대강 하천공사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시·도지사로서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에 이는 국가사무를 기관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판시하였다.

#### (4) 하급 행정기관이 상급관청의 권한을 대행한 경우 이를 사실상 대행으로 보는 판례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6621 판결에 따르면, “체납취득세에 대한 압류처분권한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울산시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것이고, 울산시장으로부터 압류처분권한을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피고(울산시남구청장)로서는 울산시장의 명의로 압류처분을 대행처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자신의 명의로 이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무효의 처분”이라고 판시하였다. 이처럼 동 대법원 판례와 같이 행정권한을 당해 권한자가 행사함에 있어 소속 하급기관이 처분을 행사함에 있어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고 사실상 대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671 판결[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의 경우에도 “행정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볼 것인데,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은 석유사업법에 의하여는 시장, 군수에게까지 위임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기는 하나, 도지사가 조례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을 그 산하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단지 권한위임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그 권한을 내부위임하였음에 불과할 뿐이라면 군수로서는 다만 위 지침에 따라 도지사의 이름으로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을 사실상 대행하여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동 대법원의 판례도 권한의 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 2. 헌법재판소 결정례

### (1) 지적측량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민간위탁으로 본 사례-

#### “「지적법」 제28조제2항 위헌확인(2002. 5. 30. 2000헌마81 )”

청구인은 1999. 12.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지적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지적측량 업무를 비영리법인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지적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은 지적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개인이나 그들로 구성된 영리법인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0. 2. 1.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그 후 위와 같이 지적법이 전문개정되어 2002. 1. 27.부터 시행되자 2002. 3. 7. 심판청구의 대상을 개정된 지적법 제41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sup>67)</sup> 심판대상은 지적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이며, 이 법률조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지적측량업무의 대행”규정과 관련하여 제41조제1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적측량 업무의 일부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한 심판사건이었다.<sup>68)</sup>

따라서 헌법재판소 2002. 5. 30. 2000헌마81 결정례를 보면, 먼저, 토지소유자의 위탁에 의한 제1단계 지적측량, 즉 “초벌측량”의 대행용역 활동을 자신의 독립적인 직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국민은 지적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지적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sup>69)</sup> 그러므로 청구인과 같이 지적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는 한 초벌측량의 대행용역 활동을 자신의 독립적인 직업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법률조항은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결정하였다.<sup>70)</sup>

67) 헌재 2002. 5. 30. 2000헌마81, 판례집 14-1, 534면.

68) 헌재 2002. 5. 30. 2000헌마81, 판례집 14-1, 534면.

69) 헌재 2002. 5. 30. 2000헌마81, 판례집 14-1, 541면.

70) 헌재 2002. 5. 30. 2000헌마81, 판례집 14-1, 541면.

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초벌측량을 대행하려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바, 그러한 요건은 그 비영리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인 지적측량이란 결국 「지적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로부터 지적측량수수료를 직접 납부 받는 초벌측량을 뜻하는 바, 초벌측량은 지적측량수수료를 대가로 한 수익사업이므로 비영리법인이 추구할 목적사업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 달성과는 무관한 수단으로 보이고, 법인의 형태와 개인인 지적기술자의 업무영역을 나누다거나 같은 법인형태라도 자본규모나 소속 지적기술자의 수에 따라, 그리고 개인인 지적기술자의 경우는 그 자격의 차이에 따라 업무영역을 나누는 등 덜 제한적인 방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본권침해의 최소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청구인 등 지적기술자의 기본권과의 법익의 균형성도 현저하게 상실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결정을 하였다.<sup>71)</sup>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초벌측량의 대행을 비영리법인(사실상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에게만 대행하도록 하는 “전담대행체제”가 위헌이라는 것이지 비영리법인에게 초벌측량의 대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sup>72)</sup> 또한 초벌측량의 대행을 모든 지적기술자에게 허용하는 이른바 경쟁체제를 택하는 경우에 대행자가 법인인지 또는 개인인지 여부에 따라, 같은 법인인 경우에도 소속 지적기술자의 수나 자본금의 크기, 개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의 차이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행할 수 있는 초벌측량의 범위를 제한할 수는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입법자가 입법형성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다.<sup>73)</sup>

그러므로 입법자가 합헌적인 방향으로 이 법률조항을 개선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이를 존속케 하고 또한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을 하였다.<sup>74)</sup>

71) 헌재 2002. 5. 30. 2000헌마81, 판례집 14-1, 545면.

72) 헌재 2002. 5. 30. 2000헌마81, 판례집 14-1, 546면.

73) 헌재 2002. 5. 30. 2000헌마81, 판례집 14-1, 546면.

74) 헌재 2002. 5. 30. 2000헌마81, 판례집 14-1, 546면.

(2) 국가하천 공사를 시도지사에게 대행시키는 경우를 기관위임으로 본 사례-  
 “경상남도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2011. 8. 30. 2011헌라1)”

낙동강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사업의 대상인 하천들은 하천법 제8조, 제27조 제5항에 의거하면 ‘국토해양부장관’(피청구인)이 하천관리청으로서 시행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국가하천’에 해당하고, 4대강 사업 및 낙동강 사업은 그 사업내용에 비추어 볼 때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점검·정비 등의 활동을 의미하는 ‘하천의 유지·보수’ 차원을 넘어서 하천의 보수·개량·증설·신설까지 의도하고 있는 ‘하천공사’에 해당하므로, 4대강 사업 및 낙동강 사업은 국가하천에 관한 전국적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그 사업내용도 ‘하천공사’, ‘하천의 유지·보수공사’, 하천 주변의 기타 ‘부대공사’ 등을 포괄하고 있어 국가하천을 둘러싼 복합적, 불가분적 공사구조를 취하고 있는 사업이다.

낙동강의 유지·보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그에 대한 권한의 존부를 독자적으로 따질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역시 『하천법』 제27조 제5항 단서에 의거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사무’로서 각 시·도지사에게 기관위임 되어 있는 사무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권한’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낙동강 유지·보수에 관한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치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낙동강 사업에 대한 시행권을 피청구인이 경상남도지사에게 대행시키는 위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및 위 계약을 해제하고 시행권을 회수해 가는 과정에서는 물론, 시행되는 낙동강 사업의 내용 자체에서도, 낙동강 유역을 포함한 경상남도 전역에 걸쳐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청구인이 행사하는 ‘자치권한’에 어떠한 제약을 가하거나 조건 내지 부담을 부과한 적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일반적인 자치권한이 직접 제약받을 가능성’은 없다.

청구인이 비록 위임받은 낙동강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의 이익과 주민의 복리를 도모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러한 경제적·복지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이는 사업시행권 회수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실상의 간접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자치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에서 다투는 사유는 낙동강 사업에 대한 시행권을 위 대행계약을 통하여 청구인의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행시켰다가 그 계약을 해제하고 사업시행권을 회수해 간 피청구인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문제는 공법상 계약에 의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귀속된 권리·의무가 유효하게 해제되었는지를 둘러싼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에 불과할 뿐, 권한쟁의심판의 적법한 대상이 되는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현재 2011. 8. 30. 2011헌라1, 판례집 23-2상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대상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국토부장관이 하천관리청이고, 낙동강 부분의 하천공사에 대해 경상남도지사에게 대행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것은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국가사무의 기관위임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관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이다.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위헌확인

(2008. 7. 31. 2006헌마400)

청구인들은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단서 및 산림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을 근거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구) 산림법이 2005. 8. 4. 폐지되면서 그 법률이 규율하던 내용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으로 나누어 규정되었으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이외의 자에게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게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청구인들과 같은 일반 법인에게는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의 원칙과 「헌법」 제119조 및 제126조가 규정한 헌법상 경제원리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첫째,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구체적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기업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을 수 있는 일반적 가능성은 영리획득의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에 불과할 뿐,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로 볼 수 없어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둘째, 산림조합은 국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적 목적을 가진 조직인 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에게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의 공익적 수행을 보장하는 한편, 공익적 목적의 산림사업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영리성에 대한 고려 없이 언제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인 산림조합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이 입게 되는 피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인데, 청구인들의 사업방식은 이러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개인이 시행하는 산림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수행의 방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의 경우에도 대행이나 위탁방식이 아니라 일반 계약에 의한 사업수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나아가 산림조합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적 가치는 청구인들이 입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청구인들의 신뢰는, 구체적인 사업수행에 관한 권리가 아니라 대행 또는 수탁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며, 그 신뢰의 근거가 된 법률이 하위 법령에 입법을 위임한 법률조항으로서 그 규율 상태의 변경 가능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더욱 크고, 그 신뢰의 기간 또한 5년 남짓으로 길지 않았으며 청구인들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적 가치들에 비해 결코 우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셋째, 산림조합은 국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적 목적을 가진 조직임에 반해 청구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법상의 법인들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구인들의 기업활동이나 사업수행에 대하여 지도·감독은 물론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의 공익적 수행을 담보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산림사업의 시행을 담당할 공익적 단체인 산림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들을 차별하는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에 관하여, 제2항은 경제에 관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에 관하여 각 규정한 조항들이고 헌법 제126조는 사영기업의 국·공유화에 대한 제한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상의 원리나 제도를 규정한 조항들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헌법상의 원리나 헌법상 보장된 제도의 내용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19조와 제126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위에서 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이미 밝혀졌다고 결정을 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 2008. 7. 31. 2006헌마400 결정에 따르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이외의 자에게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우월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계약에 의하여 얼마든지 사업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입는 불이익보다 더 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이다.

### 3. 법제처 해석례

#### (1) 행정법상 대행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해석례

법제처 2014. 4. 2. 2014-0031 [해석례]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과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판매대행자를 통하여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를 피대행기관인 행정기관이 수행한 것으로 보는 행정법상 “대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판매수입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하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임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의 법령상 업무를 대행자가 대신 수행하되 이를 피대행기관이 수행한 것으로 보는 행정법상 대행이라고 본 해석례라고 판단된다.<sup>75)</sup>

75)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pageIndex=2&searchCondition=3&searchKeyword=%eb%8c%80%ed%96%89&csSeq=106019&crowIdx=12<2017.5.23.>>

<질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과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를 각각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 수입 중 일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판매수입은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및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판단>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이라 함)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각각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 수입 중 일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판매수입은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5조 및 제34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처리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되 그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 수입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하는 수입이라 할 것인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판매대행자를 통하여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의 법령상 업무를 대행자가 대신 수행하되, 이를 피대행기관인 행정기관이 수행한 것으로 보는 행정법상 “대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판매수입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하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인바,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수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서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세입은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므로, 그 판매수입의 일부를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행비용을 지급하게 되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지급하는 대행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고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야 하고,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하며,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5조의 적용도 받는다고 할 것인바, 「폐기물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수입의 일부를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지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에 해당하는 대행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5조의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과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를 각각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 수입 중 일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판매 수입은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5조 및 제34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제처 2014. 7. 11, 2014-0310 [해석례]와 관련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지위에 관한 해석사례에서 “대행”이라 함은 권한의 위임·위탁과 달리 행정권한이 이전되지 않고 그 법적 권한은 행정청의 명의로 책임으로 행사하되, 권한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도법」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와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지위에서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공공하수도관리 대행업자의 지위에 관한 부분을 해석한 사례이다.<sup>76)</sup>

「하수도법」은 종전에 같은 법 제7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하위법령에서 관계전문기관의 업종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위 업무가 위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법이 2012. 2. 1. 법률 제11264호로 개정되면서 위 규정을 삭제하고,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일정한 시설·장비·기술인력을 갖추어 등록한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자에게만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하였다[「하수도법」(2012. 2. 1. 법률 제11264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3. 2. 2. 시행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

그러나 “대행”이라 함은 “권한의 위임·위탁과 달리 행정권한이 이전되지 않고 그 법적 권한은 행정청의 명의로 책임으로 행사하되, 권한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하수도법」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과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를 그 시설 목적, 규모, 처리 능력 등 운영·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는 기관에 불과하고, 그 업무도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대행업무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가 위 대행계약의 체결만으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까지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도법」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와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지위에서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 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2) 대행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한 해석례

법제처 2013. 10. 25, 2013- 0417 [해석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

76)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pageIndex=1&searchCondition=3&searchKeyword=%eb%8c%80%ed%96%89&csSeq=106849&rowIdx=10<2017.5.23.>>

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안전행정부장관이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기업이 위탁이 아닌 대행방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기관에 대행을 통하여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본 해석례가 존재한다.<sup>77)</sup>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제101조), 그 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며(제103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제112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또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등을 둘 수 있도록(제113조 및 제114조)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에서 자치단체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행정기구와 공무원 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민간기관에 위탁이나 대행을 통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은 예외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이나 대행시키려면 최소한 법령이나 조례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바, 지방계약법은 계약사무에 대하여 위탁은 규정하고 있으나 대행은 규정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대행 방식에 의한 계약사무 처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대행은 위탁과는 다르게 권한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계약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계약사무의 대행을 금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면 계약사무를 민간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대행의 경우 대행을 받은 자가 대외적으로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피대행자의 이름과 책임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국민이나 주민이 대행을 하고 있는 민간기관을 행정기관으로 오인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법령에 그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므로, 법령에 대행을 금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기업이 위탁이 아닌 대행방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77)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pageIndex=2&searchCondition=3&searchKeyword=%e%b%8c%80%ed%96%89&csSeq=105156&crowIdx=15<2017.5.23.>>

## 제5절 소 결

대행제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대행을 위임·위탁으로 본 판례로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공매처분취소]을 보면, “성업공사(현, 자산관리공사)에 의한 공매의 대행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의 위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대행을 사실행위의 대행으로 보아 관리청의 변경이 아니라고 본 판례로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85413 판결을 보면, “(구) 하천법(2012. 1. 17. 법률 제11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더라도 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관리에 관한 일부 권한을 일시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하천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시·도 지사가 국토부장관의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국가사무의 기관위임이라고 본 판례로 부산고등법원 2011. 8. 24. 자 2011라6 판결을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부산국토지방관리청장이 경상남도지사와 ‘낙동강 살리기 사업 대행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경상남도지사에게 이행거절 등을 이유로 대행협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경상남도가 침해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대행협약의 근거는 「하천법」 제28조 제2항이고 이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할 당사자는 경상남도지사라고 보아야 하므로 대행협약의 일방 당사자는 경상남도가 아닌 경상남도지사이고, 대행협약에 따른 하천공사 대행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할 국가사무를 경상남도지사가 기관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므로 위 대행협약을 권리주체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법상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사례도 존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하급 행정기관이 상급관청의 권한을 대행한 경우에 판례로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6621 판결을 보면, “체납취득세에 대한 압류처분권한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울산시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것이고, 울산시장으로부터 압류처분권한을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피고(울산시남구청장)로서는 울산시장 명의로 압류처분을 대행처리할 수 있을 뿐이고, 자신의 명의로 이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무효의 처분”이라고 판시한바와 같이 동 판결은 행정권한을 당해 권한자가 행사함에 있어 소속 하급기관이 처분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고 사실상 대행만 할 수 있다는 점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지적법』 제28조제2항 위헌확인(2002. 5. 30. 2000헌마 81)”과 관련하여 지적측량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민간위탁으로 보았고, “경상남도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2011. 8. 30. 2011헌라1)”사건에서는 국가하천 공사를 시도지사에게 대행시키는 경우를 기관위임으로 보고, 기관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위헌확인(2008. 7. 31. 2006헌마400)”사건에서도 동법 제23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이외의 자에게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인 위헌확인을 구한 심판으로 이 사건을 판단하건대, 청구인들이 입게 되는 피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인데, 청구인들의 사업방식은 이러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개인이 시행하는 산림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수행의 방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의 경우에도 대행이나 위탁방식이 아니라 일반 계약에 의한 사업수행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더 나아가 산림조합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적 가치는 청구인들이 입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자유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제처의 해석례의 경우에도, 2014. 4. 2. 2014-0031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과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판매대행자를 통하여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를 피대행기관인 행정기관이 수행한 것으로 행정법상 “대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판매수입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하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임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의 법령상

업무를 대행자가 대신 수행하되 이를 피대행기관이 수행한 것으로 보는 행정법상 대행에 해당한다고 결정을 했다. 또한 2014. 7. 11, 2014-0310에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지위에 관한 해석사례와 관련하여 “대행”이라 함은 권한의 위임·위탁과 달리 행정권한이 이전되지 않고, 그 법적 권한은 행정청의 명의로 책임으로 행사하되, 권한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도법」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와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지위에서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3. 10. 25, 2013-0417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안전행정부장관이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기업이 위탁이 아닌 대행방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기관에 대행을 통하여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대행제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대행을 위임·위탁으로 본 판례로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공매처분취소], 대행을 사실행위의 대행으로 보아 관리청의 변경이 아니라고 본 판례로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85413 판결, 시·도지사가 국토부장관의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국가사무의 기관위임이라고 본 판례로 부산고등법원 2011. 8. 24. 자 2011라6 판결, 하급 행정기관이 상급관청의 권한을 대행한 경우에 판례로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6621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로 “「지적법」 제28조제2항 위헌확인(2002. 5. 30. 2000헌마81)”, “경상남도과 정부 간의 권한쟁의(2011. 8. 30. 2011헌라1)”사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위헌확인(2008. 7. 31. 2006헌마400) ”사건 및 법제처 해석사례 등을 통하여 “대행”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법해석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법상 “대행”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개별법률에 입법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법적 성격이 위임·위탁으로서의 대행인지, 강학상 대행인지, 직무대리 또는 법정대리인지, 지정대행 등에 해당하는 것인지와 대행제도에 관한 법적 성격에 대하여 많은 문헌들에서 대행에 관한 법적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행정실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많은 법적인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는 점과 아울러 이미 많은 행정법령상에 “대행”이라는 이름으로 깊숙이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대행에 관한 법적성격을 준별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상 입법화되어 있는 대행제도를 부처별로 활용하고 있는 대행의 특징, 유형별로 대행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부문, 대행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으로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4장 현행법상 대행제도의 입법유형 분석

- 제1절 개관
- 제2절 국토교통부 소관 법제 분야
- 제3절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제 분야
- 제4절 보건복지부 소관 법제 분야
- 제5절 환경부 소관 법제 분야
- 제6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제 분야
- 제7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제 분야
- 제8절 고용노동부 소관 법제 분야
- 제9절 국방부 소관 법제 분야
- 제10절 소방청 소관 법제 분야
- 제11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법제 분야
- 제12절 기획재정부 소관 법제 분야
- 제13절 법무부 소관 법제 분야
- 제14절 해양수산부 소관 법제 분야
- 제15절 행정안전부 소관 법제 분야
- 제16절 여성가족부 소관 법제 분야
- 제17절 경찰청 소관 법제 분야
- 제18절 기상청 소관 법제 분야
- 제19절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제 분야
- 제20절 금융위원회 소관 법제 분야
- 제21절 산림청 소관 법제 분야
- 제22절 문화재청 소관 법제 분야
- 제23절 특허청 소관 법제 분야
- 제24절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제 분야
- 제25절 교육부 소관 법제 분야
- 제26절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제 분야
- 제27절 통일부 소관 법제 분야
- 제28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제 분야
- 제29절 조달청 소관 법제 분야
- 제30절 국가보훈처 소관 법제 분야
- 제31절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제 분야
- 제32절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 법제 분야
- 제33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제 분야
- 제34절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제 분야
- 제35절 현행법상 유형별 대행제도의 종합적 분석



## 제4장

# 현행법상 대행제도의 입법유형 분석

### 제1절 개 관

국가의 행정업무 수행방식 중에 하나로 행정법상 “대행”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법령에서 입법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에 관한 법적 성격이 위임·위탁으로서의 대행인지, 강학상 대행인지, 직무대리 또는 법정대리인지, 지정대행, 등록대행 등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구분기준 없이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 법령상 대행관련 입법례를 전수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위탁과 대행에 관한 적합한 입법모델(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입법자는 대행제도와 관련하여 업무의 유형으로 검사·조사, 인증 및 검정, 공사, 시설관리, 심사 및 평가, 시험·교육·훈련, 정보화, 국제협력, 매각, 표준화 등에 대행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서는 민간위탁 대상 업무를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 입법 유형에서도 이러한 업무 위주로 (민간)위탁제도를 활용하고 있음에 따라 대행과 위탁의 업무기준을 구분하기 곤란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하겠다.

이하에서는 현행법상 대행제도와 관련하여 정부부처 중 소관 법령 및 대행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기상청, 산림청, 문화재청, 특허청, 조달청,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

양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인 부·처·청 및 위원회에서 소관 관련 법제를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대행의 유형을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에 해당하는 대행규정을 구분하여 실무상 (민간)위탁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대행’이라는 용어를 ‘위탁’으로 입론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정부부처 및 위원회 소관 법령상의 대행제도를 전수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 제2절 국토교통부 소관 법제 분야

###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1	건설기계관리법	○	×	○	○	제4유형	○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	○	○	×	○
3	건설기술 진흥법	○	○	○	○	제4유형	○
4	건축법	○	○	○	○	제4유형	○
5	건축사법	×	×	○	○	×	○
6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	○	○	○	×	○
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	○	제4유형	○
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	×	×	제4유형	×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	제4유형	○
10	공인중개사법	×	×	○	○	×	○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11	도로법	○	○	○	○	제1유형 및 제2유형	○
12	하천법	○	○	○	○	제1유형	○
13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	○	○	×	○
1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	○	○	제4유형	○
15	국도교통과학기술육성법	×	×	○	×	×	○
16	국토기본법	×	×	○	×	×	○
17	궤도운송법	×	×	○	○	×	○
18	기업도시개발특별법	○	×	○	○	제1유형	○
19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	○	○	•	○
2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	○	○	제4유형	○
2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	○	제4유형	○
22	도시개발법	○	○	○	○	제4유형	○
2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	○	×	제4유형	○
2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	○	×	제4유형	○
2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	○	○	제4유형	○
26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	×	×	○
2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	×	×	제4유형	○
28	도시철도법	×	×	○	○	×	○
2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	×	제4유형	○
30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	○	×	×	○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	제4유형	○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32	물류정책기본법	○	○	○	○	제4유형	○
3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률	×	×	○	○	×	○
34	교통안전공단법	×	×	×	×	×	×
35	교통안전법	×	×	○	○	×	○
36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	○	○	×	○
37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	○	○	×	○
3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	○	○	×	○
3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	○	제4유형	○
4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	○	제4유형	○
41	수도권정비계획법	×	×	×	×	×	×
4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	○	○	제4유형	○
4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	○	×	○
44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	○	○	×	○
45	유료도로법	○	×	○	○	제1유형	○
4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	×	○	○	×	○
47	자동차관리법	○	×	○	○	제4유형	○
4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	○	○	×	○
49	주거기본법	×	×	○	○	×	○
50	주차장법	○	○	○	○	제4유형	○
51	주택법	○	○	○	○	제4유형	○
52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
5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	×	×	제4유형	×
54	지하수법	○	○	○	○	제4유형	○
55	철도사업법	○	×	○	×	제4유형	○
5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	○	○	제4유형	○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57	철도안전법	×	×	○	○	×	○
5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	○	○	제4유형	○
5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	○	○	×	○
60	택지개발촉진법	○	○	○	○	제4유형	○
61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	○	○	×	○
62	한국도로공사법	○	○	○	○	제4유형	○
63	항공사업법	×	×	○	○	×	○
64	항공안전법	○	×	○	×	제4유형	○
65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	×	×	×	×
6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	○	○	×	○

아래에서는 국토교통부 소관 법제 분야를 검토하는데, 법률에 “대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만을 분석하기로 한다.

## 2.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 검사 대행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기계의 검사에 관한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기술인력 및 검사업무규정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를 검사한 경우, 경영 부실 등의 사유로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될 경우,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즉, 동조 제6항에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건설기술진흥법: 품질검사 대행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에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동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으로 지방 국토관리청, 지방중소벤처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시·도의 건설시험 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국방시설본부, 조달청 품질관리단, 지방해양수산청, 국립·공립 대학이 설립한 건설 시험 관련 연구소”의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 4. 건축법 : 점검업무 대행·건축사무소개설신고 대행

「건축법」 제24조의2제4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동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28조제1항에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제2항에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5.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국제교류 대행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19조제2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건축진흥원,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개발사업 대행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중에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등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4조제2항에 “이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게 종전부동산의 매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관(매각대행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7.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사중단 실태조사 대행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국토부장관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제3항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건축주, 건축관계자,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지 등 건축공사 현장에 출입하여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그 밖에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의 기관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물건의 인도 및 이전 대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시행자(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는 경우 그로 인한 비용은 그 의무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9. 도로법: 상급 관청의 도로공사 대행

「도로법」 제3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이 하여야 하는 도로공사를 스스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도·군도 및 구도에 대한 도로공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여야 하는 도로공사를 스스로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동조제3항에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법 제118조에 “제32조제3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이 장(章)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도로관리청으로 본다”고 “권한대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도로법」 제65조제1항에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2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제2항에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10. 하천법: 하천공사 대행

「하천법」 제28조제1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하천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하천법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행할 수 있는 하천공사는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국가하천의 유지·보수공사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하천공사는 재해복구공사,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하천시설과 연계하여 시행할 하천공사,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등의 운영·관리와 연계된 하천공사,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성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공사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6조제1항에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6조제2항에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하천의 점용자에게 미리 공사시행의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조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는 하천공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1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점검·재평가 대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0조제1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 단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재평가 사유의 발생여부 등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 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 결과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교통 수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재평가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 또는 재평가를 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동조 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간점검과 재평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7조에 “법 제2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을 말한다”고 “중간점검 및 재평가 전문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 12.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도로·상하수도 시설 등의 설치사업 대행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9조제1항에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 “개발구역에서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

난방시설, 통신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시설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전기시설,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에 전기, 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통신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약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동법 제19조제4항에서 “시행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제1호의 도로 또는 상수도·하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그 설치사업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설치에 관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시행자가 도로 또는 상수도·하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그 설치사업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13.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국제협력·해외진출 대행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36조제1항에서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지원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への 참가,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법률의 규정을 보면, 국토부장관이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녹색건축센터 및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행규정에 관하여 공백이라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 1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교통카드·단말기 등 전국호환성 인증 대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7제1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5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 등이 설치·운영하는 교통카드·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증에 관한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0조의7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기관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통카드 및 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인증을 받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 등 관련 분야의 자격과 경력을 가진 인력, 교통카드·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확인을 위한 적합성시험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법 제19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기관 또는 단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교통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조사·연구 및 댐건설 업무 대행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이 법에 따른 조사·연구 및 댐건설 등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48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댐건설을 위한 조사, 댐 관련 연구, 댐건설사업의 시행, 댐 설계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16. 도시개발법: 개발사업 대행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자의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과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

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개발법」 제11조제11항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분양 등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17.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업무 대행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공원관리청)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제3항에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공원수탁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및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도로·상하수도·저류시설 그 밖의 시설·공작물 등(다른 공작물)의 관리자로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공원관리자)는 법 제20조제3항·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공원관리청)의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공원관리청과 공원관리자 간의 협의사항에 대한 협의를 제외한다) 및 공고, 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공원관리청과 공원관리자간의 협의사항에 대한 협의를 제외한다),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민간공원추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3조제1항에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하천·도로·상하수도·저류시설(貯留施設), 그 밖의 시설·공작물 등(이하 “다른 공작물”이라 한다)이 상호 겸용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서로 협의하여 그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행정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가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유지·수선에 한정하여 관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18.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대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제3항에서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3조제6항에서 “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요구받은 사업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자료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25

조제1항에서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9.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정비사업 대행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제16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시장·군수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개발자(지정개발자) 또는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사등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항, 대행개시결정일, 사업대행자, 대행사항에 관한 사업대행개시결정을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사업 등의 총괄 관리 등의 업무 대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모든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관리, 도로 등 기반시

설의 설치,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금의 관리, 재정비축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에 대한 조언,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1.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발사업 대행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도지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자 중에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등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 개발사업 대행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법 제27조제5항에서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류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물류시설의 운영자(입주기업체) 및 지원시설의 운영자(지원기관)에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시

행자는 물류단지시설용지의 조성과 물류단지시설의 건설을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 하여금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해당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사용할 시설의 부지조성사업을 대항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23. 물류정책기본법: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관련 심사 대항

「물류정책기본법」 제4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심사대행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하여 인증신청의 접수, 제38조제4항의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 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 그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0조제2항에 “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법 제60조의7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과 관련하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의 접수, 제60조의3제2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사, 제60조의3제3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점검, 그 밖에 지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조제2항에서 “지정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개발사업 대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에 따르면, “제6항 본문에 따라 공모를 실시하려는 경우 제5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사업 시행방법,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재원(財源) 조달

계획,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모 이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6항 단서에 따라 공모를 시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6조제3항에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직접 사용할 자에게 그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쟁 입찰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2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발사업 대행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공공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일부를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기업, 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투자자, 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입주할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공공시행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작성, 공유수면 매립 공사, 부지조성 공사,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2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행복도시건설사업 대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18조제5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범위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26. 유료도로법: 도로 신설 및 개축 및 유지·수선 관련 대행

「유료도로법」 제5조제1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로서 국토의 개발, 관광사업의 진흥 및 지역주민의 편의 등과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도로가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의 부담으로 그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5조제4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거나 제3항에 따라 도로의 유지·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방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한다는 점에서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14조에 유료도로관리자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유료도로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27. 자동차관리법: 공매대행·성능시험대행·자동차검사대행·검정업무대행

「자동차관리법」 제14조의2제1항에 “제1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압류등록을 촉탁한 행정관청이나 공공기관은 국세, 지방세 및 과태료 등의 체납금에 대한 수납·정산, 압류해제의 촉탁 등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0조제1항에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24조의2제5항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32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2조의2에 “자동차제작자등은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제1호의 무상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4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하여 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동법 제 44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종합검사를 대행하는 자(종합검사대행자)로 지정하여 종합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법 제47조제1항에 “택시요금미터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택시미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미터를 검정할 수 있는 전문검정기관(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28. 주차장법: 검사대행

「주차장법」 제19조의12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검사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29. 주택법: 주택조합의 업무 대행

「주택법」 제11조제8항에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및 그 조합의 구성원(주택조합의 발기인을 포함한다)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대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지적측량수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로 하여금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의 명칭, 사업지구의 명칭,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지적측량수행자가 대행할 측량·조사에 관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1. 지하수법: 지하수 조사 대행

「지하수법」 제5조제1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및 개발 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적인 조사를 완료한 지역에 대한 보완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조 제3항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사업무를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자원

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해당하는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지하수조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 32. 철도사업법: 시설물 설치 대행

『철도사업법』 제43조에서 “시설물 설치의 대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도시설 관리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그의 위탁을 받아 시설물을 직접 설치하거나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시설물의 설치의 대행에 관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규정을 보면 점용허가를 위탁받아 시설물을 직접설치하거나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여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3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대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제2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그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권한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행업무는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관리업무의 집행, 철도시설의 안전유지, 철도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철도

차량간의 종합적인 성능검증·안전상태점검 등 철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제3항에서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안에서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철도의 관리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34.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조성사업의 대행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친수구역조성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한국수자원공사)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제12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조성부지를 분양받을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35.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의 대행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2항에서 “공공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분양 등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등 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조의5제1항에서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의 범위는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조성된 택지의 분양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36. 한국도로공사법: 공사의 시행과 관리업무의 대행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제3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사로 하여금 「도로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제2항, 제49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제2항·제4항,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제3항,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제2항, 제1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도로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37. 항공안전법: 항공신체검사증명 대행

「항공안전법」 제49조제1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의사(항공전문의사) 지정하여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38. 소 결

국토교통부 소관 법제 분야와 관련된 대행제도를 분석하였는바, 총 66개의 법률 중에 35개의 법률 중에 대행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31개의 법률에서는 대행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35개의 법률 중에 대행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제1유형 및 제2유형으로 3개로 규정하고 있고, 32개는 제4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하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유료도로법」에서 대행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유형과 제2유형의 경우에 대행제도의 의미가 “내부위임”, “위탁”으로 제4유형은 “행정보조인”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제1유형 및 제2유형에 해당하는 대행제도를 분석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는 경우 그로 인한 비용은 그 의무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 규정을 보면,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행비용은 그 의무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규정상의 사업시행자를 공무수탁사인으로 또는 행정보조인으로 보고, 최종적인 권한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로법」 제32조제3항에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당해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하고 대외적으로도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내부위임”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그 외에도 「도로법」 제112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제2항에서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규정은 국토부장관이 한국도로공

사라는 공공단체에게 권한 대행시키고, 그 업무에 관한 권한행사도 대행기관의 명의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권한의 이전이 있다고 보아 “위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하천법」 제28조제1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 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조기관이나 하급기관에 대한 소관사무의 처리를 맡기면서 그 업무에 대한 대외적인 권한행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내부위임”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9조제4항의 경우에도 공무수탁사인 또는 행정보조인인 시행자가 도로 또는 상수도·하수도 시설의 설치를 지방자치단체에 행행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시행자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탁”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료도로법」 제5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거나 .... 도로의 유지·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방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한다는 점에서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외적인 권한행사도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내부위임”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 제3절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제 분야

####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1	광업법	○	×	×	×	제4유형	×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	○	○	×	○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	○	○	제4유형	○
4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	×	○	×	×	○
5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	○	×	×	제4유형	×
6	대외무역법	×	×	○	○	×	○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	○	○	×	○
8	도시가스사업법	○	○	○	○	제4유형	○
9	무역보험법	○	×	×	×	제4유형	×
10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	×	○	○	×	○
1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
12	방사성폐기물관리법	×	×	○	○	×	○
13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	○	×	×	○
14	산업기술촉진법	○	○	○	○	제4유형	○
15	산업디자인진흥법	○	×	○	○	제4유형	○
16	산업융합촉진법	○	○	○	○	제4유형	○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	○	○	제4유형	○
18	산업표준화법	×	×	○	○	×	○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19	상공회의소법	×	×	○	○	×	×
2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	○	○	제4유형	○
21	송유관안전관리법	×	×	○	×	×	×
2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	○	○	×	×
23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	○	○	○	○	제4유형	○
24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	○	○	×	○
25	에너지법	×	×	○	○	×	○
2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	○	○	제4유형	○
27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	○	○	×	○
28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	○	○	×	○
29	외국인투자촉진법	×	×	○	○	×	○
30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 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	×	○	×	×	○
3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	○	○	제4유형	○
3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	×	×	제4유형	×
3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	제1유형	○
34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	×	○	○	×	○
35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	○	○	×	○
36	전기사업법	○	○	○	○	제4유형	○
3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	○	○	×	○
38	전력기술관리법	×	×	○	○	×	○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39	전원개발촉진법	×	×	○	○	×	○
4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	○	○	×	○
4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	○	×	×	○
42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	○	○	×	○
4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
44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	○	○	○	제4유형	○

## 2. 광업법: 경계측량 대행

「광업법」 제33조제2항에 “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자기 광구나 인접광구의 경계에 대한 경계측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동조 제2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광구경계측량의 신청을 받으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그 경계측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업무 대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기술진흥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4.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경쟁력강화사업의 업무 대행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경쟁력 강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4조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일부를 해당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경쟁력강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 자(대행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대행”과 관련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행신청서에 사업 대상 지구의 위치도, 사업계획

서, 자금조달계획서,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사업의 종류 및 개요, 사업의 시행기간의 사항을 포함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대행에 관한 개요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대행신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대행 여부를 결정”하고, 동조제3항에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대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제4항에 “사업시행자는 대행사업자가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5. 도시가스사업법: 안전관리업무 대행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제1항에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6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에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란 법 제28조 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안전관리 책임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별표 14 제4호다목1)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가 1명 이상일 것, 사용시설점검원(별표 14 제4호나목2) 또는 같은 호 다목2)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이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3천 가구 또는 사업체마다 1명 이상일 것. 다만, 공동주택등인 경우에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4천 가구 또는 사업체,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원격 가스차단, 원격 일산화탄소 검지·차단 및 지진 감지·차단 등의 안전기능이 되어 있는 계량기를 말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6천 가구 또는 사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에 등록된 자일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구 또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 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6. 무역보험법: 무역보험,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 신용보증,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 대행

「무역보험법」 제53조의2제1항에 “공사는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무역보험,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의 일부를 외국의 무역보험 관련 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동조제2항에 “공사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외국의 무역보험 관련 기관이 하는 무역보험사업 관련 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7. 산업기술촉진법: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업무 대행

「산업기술촉진법」 제11조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 등을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기획 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기술진흥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8. 산업디자인진흥법: 디자인사업 대행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 디자인 사업을 지역디자인센터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9. 산업융합촉진법: 산업융합표준화사업 대행

「산업융합촉진법」 제29조제1항에서 “정부는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서비스의 표준 개발 및 보급, 산업융합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그 밖에 산업융합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는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표준 개발 협력기관, 「산업표준화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산업융합 표준화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0조제2항에서 “정부는 산업융합 관련 국제협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융합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3항에서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하거나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대행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령 제36조에서 “법 제3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센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

원,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산업융합 및 표준화 분야의 전문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신고 및 허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의5에 따르면, “관리기관은 제38조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하는 외국투자자의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각종 신고 및 인·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업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등의 각종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업무, 「건축법」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및 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5조의3제1항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기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비율을 준수하는 법인에 한정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그 밖에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일부를 해당 산업단지의 토지소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 자(대행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비축의무 대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제1항에서 “ 석유정제업자, 원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석유비축의무자)는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17조제2항에 “석유비축의무자는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대행업의 시설기준은 원유 또는 석유제품(석유가스는 제외한다)의 비축대행업: 원유 또는 석유제품 1만킬로리터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추는 것, 석유가스의 비축대행업: 석유가스 3천톤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추는 것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12.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비축의무 대행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제1항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비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법 제20조제2항에서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3천톤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평가업무의 대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에너지절약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6조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상황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제8조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

관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에너지절약 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5조제5항에서 “위원회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평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계 연구기관 등에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1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위해성심사업무 대행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5항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의5제1항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위해성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한다”라는 점에서 위해성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15.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러닝표준화사업 대행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러닝에 관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이러닝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이러닝에 관한 국내 표준의 국제화, 그 밖에 이러닝의 표준화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그 밖에 이러닝 표준화와 관련되는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한다.

또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러닝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사업수행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대행기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러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이러닝산업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 1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외국인 투자기업 신고 대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은 “자유무역지역에서 공장 등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법」을 적용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관리권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4항에서 “관리권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된 때 그 외국인투자기업

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신하여 그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17. 전기사업법: 안전관리업무 대행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안전공사,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법 제7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전공사, 법 제7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및 법 제7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다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태양광발전설비)로서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것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2천500킬로와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인대행자: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용량 15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다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 용량 250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1천5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로 한정한다)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1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환경 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대행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정보, 녹색경영에 관한 정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의 교환에 관한 정보,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에 관한 정보, 국내외 산업환경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산업환경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 기업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조 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대행할 수 있는 기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업무를 국가기술표준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산업진흥회와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인정원과 지속가능경영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과 관련하여 동법 제22조제3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품질·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품질·성능평가와 공장심사의 대행기관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같은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설립된 자동차부품연구원 및 전자부품연구원, 「산업발전법」 제38조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9. 소 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제 분야와 관련된 대행제도를 분석하였는바, 총 44개의 법률 중에서 17개의 법률에 대행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27개의 법률에서는 대행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즉, 17개의 법률 중에서 제1유형으로 2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15개의 법률에서는 4유형의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다.

특히, 제1유형 및 제2유형에 해당하는 대행제도를 분석하면, 「무역보험법」 제53조의2 제1항에서 “공사는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외국의 무역보험관련 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의2제2항에서 공사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외국의 무역보험 관련 기관이 하는 무역보험사업 관련 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조의2제1항은 공사의 업무를 외국의 무역보험기관이 대행할 수 도 있고, 동조의2제2항은 외국의 무역보험기관의 업무를 공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동조의2제1항 및 제2항은 공사가 외국의 무역보험관련 기관에게 업무처리를 맡기면서 그 업무에 관한 대외적인 권한행사는 공사가 처리한다는 점에서 “내부위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에 따르면, “관리권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된 때 그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신하여 그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신하여 그 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위임”, “위탁” 등의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인하여 “내부위임”이나 “위탁”의 방식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제4절 보건복지부 소관 법제 분야

###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 법률	○	×	○	○	제4유형	○
2	건강검진기본법	×	×	○	○	×	○
3	검역법	×	×	×	○	×	○
4	고령친화산업진흥법	○	○	×	×	제4유형	×
5	공중위생관리법	×	×	○	○	×	○
6	국민건강보험법	○	○	○	×	제1유형 · 제2유형 병존	○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	×	×	×
8	국민연금법	○	○	×	×	제2유형	×
9	노후준비지원법	×	×	×	×	×	×
10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 관한법률	○	○	○	○	제4유형	○
11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	○	×	×	○
1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	○	○	×	○
13	아동복지법	×	×	×	×	×	×
14	암관리법	×	×	○	○	×	○
15	영유아보육법	×	×	○	○	×	○
16	의료급여법	○	×	○	○	제4유형	○
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	○	○	×	○
18	의료법	×	×	○	○	×	○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1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	○	×	×	○
20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	×	×	×	×	×
21	장사등에 관한 법률	×	×	○	○	×	○
2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	×	×	제4유형	×
23	장애인복지법	○	○	○	○	제4유형	○
24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	○	○	×	○
2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	○	○	×	○
26	정신보건법	×	×	○	○	×	○
27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	○	○	×	○
28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	○	×	○
29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	×	○
30	지역보건법	○	○	○	○	제4유형	○
31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	○	×	○
32	치매관리법	×	×	○	○	×	○
33	한의학육성법	×	×	○	×	×	○
34	혈액관리법	×	×	○	○	×	○
35	환자안전법	×	×	○	○	×	○
3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	○	○	×	○
37	희귀질환관리법	×	×	○	×	×	○

##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소독업무 대행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56조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7조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8호·제9호·제13호, 제50조 및 제5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고령친화산업표준화 대행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8조제2항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제품등의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8조제3항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1항 및 제9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9조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4.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대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항에서는 “요양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다음 각 호의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i)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

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ii)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iii)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신고한 지부 및 분회를 규정함으로써 해당 단체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81조제4항에서는 “공단은 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제5항에서도 “공단은 제4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5. 국민연금법: 압류재산 공매 대행

「국민연금법」 제90조의3제1항에서는 “납부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 그 밖의 징수금(연금보험료 등)을 그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등(연금보험료등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95조제5항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매각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매각은 건강보험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계좌관리 대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계좌 관리를 대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을 대신하여 계좌를 관리할 사람(계좌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 7. 의료급여법: 심사청구 대행

「의료급여법」 제11조제5항에서 “의료급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대한약사회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신고한 지부 및 분회의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확인업무 대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에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에서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6명 이상일 것.

이 경우 건축, 토목, 조경 및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에 관한 전문인력 각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적합성 확인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을 갖출 것, 적합성 확인과 관련한 연구 또는 사업추진 실적이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9조의3제3항에 “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9. 장애인복지법: 계약절차의 업무 대행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제5항에서 “시설 운영자는 이용 신청자와 서비스 이용조건, 본인부담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제6항에 “제5항에 따른 계약은 시설을 이용할 장애인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적 능력 등의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계약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1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로 「민법」에 따른 장애인의 후견인,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 장애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0.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계약업무 대행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3항에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물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11. 지역보건법: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대행

「지역보건법」 제30조제2항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제4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12. 소 결

보건복지부 소관 법제 분야와 관련된 대행제도를 분석하였는바, 총 37개의 법률 중에서 9개의 법률에 대행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28개의 법률에서는 대행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즉, 9개의 법률 중에서 제1유형 및 2유형으로 2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7개의 법률에서는 4유형의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다.

특히, 제1유형 및 제2유형에 해당하는 대행제도를 분석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6항에서는 “요양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i)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ii)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iii)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신고한 지부 및 분회를 규정”함으로써 해당 단체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81조제4항에서는 “공단은 제3항에 따른 국제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47조제6항에 따른 대행은

요양기관이 보조기관에 대하여 사무처리를 맡기면서 그 업무에 대한 대외적인 권한행사는 요양기관의 이름으로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내부위임”에 가깝다고 할 것이고, 동법 제81조제4항에 따른 공단의 공매처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고, 이 공매처분을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는 점과 더불어 「국민연금법」 제95조제5항의 경우에도 “국민보험공단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매각을 대행시킬 수 있고, 이러한 매각은 건강보험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라는 점에서 사실상의 권한의 이전이 있다는 점에서 “위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제5절 환경부 소관 법제 분야

### 1. 종괄표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	×	○	○	제4유형	○
2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	○	○	×	○
3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	○	○	×	○
4	대기환경보전법	○	▲	○	○	제4유형	○
5	먹는물관리법	○	○	○	○	제4유형	○
6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
7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	○	○	×	○
8	석면안전관리법	×	×	○	○	×	○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9	석면피해구제법	×	×	○	○	×	○
10	소음·진동관리법	○	○	○	○	제4유형	○
1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	○	○	제4유형	○
1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	×	×	×	×
13	수도법	○	○	○	○	제4유형	○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	○	○	제4유형	○
15	습지보전법	×	×	○	○	×	○
16	악취방지법	×	×	○	○	×	○
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	제4유형	○
1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	○	×	○
19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	×	×	제4유형	×
20	자연공원법	×	×	○	○	×	○
21	자연환경보전법	×	×	○	○	×	○
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	○	제4유형	○
2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	○	○	제4유형	○
24	지속가능발전법	×	×	○	×	×	○
25	토양환경보전법	○	×	○	○	제4유형	○
26	폐기물관리법	○	○	○	○	제4유형	○
27	하수도법	○	○	○	○	제4유형	○
2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	○	×	○
29	화학물질관리법	○	○	○	○	제3유형	○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3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	○	○	×	○
31	환경교육진흥법	×	×	○	×	×	○
3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	×	○	○	×	○
33	환경보건법	×	×	○	○	×	○
3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	×	×	제4유형	×
35	환경영향평가법	○	×	○	○	제4유형	○
3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	○	○	×	○
3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	○	○	×	○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수집·운반업무 대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서는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직접 수집·운반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1항제1호의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농협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5항에서는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 가축분뇨의 분리저장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대기환경보전법: 측정기기 관리업무 대행·이륜자동차 검사 업무 대행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0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동법 제58조제1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제5호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2조의2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74조의2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4. 먹는물관리법: 환경영향조사업무 대행

「먹는물관리법」 제14조는 “제9조에 따라 샘물 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 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조사서를 작성할 때에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조사대행자)에게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5조는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즉,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8항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5.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 검사 대행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의2제1항에 “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인증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 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7조제2항에 “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검사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제에 따르면,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립환경과학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공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6.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노후차량경비지원 대행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에 “서울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장등이 지정하는 경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을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는 자의 자동차 폐차가 우선하여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서울시장은 노후차량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7. 수도법: 기술진단업무 대행

「수도법」 제74조제1항에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상수도관망 등 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리고 동조제2항에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법 제7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상하수도 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재단법인 한국수도연구소,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 사단법인 대한상하수도학회,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그 밖에 수도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로서 별표 8에 따른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측정기기관리업무 대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에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방제센터의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8조의2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는 제38조의6에 따라 등록을 한 자(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6조에 “수질오염물질의 측정”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50조의2제2항에 “시행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유해야생동물 포획 대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3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10.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빛공해가 생태계, 천체관측, 에너지 낭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의 대행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4조제1항에 “환경부장관은 빛공해가 생태계, 천체관측, 에너지 낭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그 밖에 빛공해 관련 조사·연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업무 대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에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 무생산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 등의 의무이행과 비용기나 재활용가능자원의 인계·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관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서 “환경부장관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1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의무 대행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에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속한 제품군 내의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스스로 회수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회수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1조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실적 등의 제출은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법 제38조제2항에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13.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평가·위해성평가를 위한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 대행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6항에서 “제2항제1호(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 환경부장관)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환경평가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은 토양환경평가 또는 위해성평가를 위한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14. 폐기물관리법: 생활폐기물의 처리업무 대행·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 대행·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업무 대행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대행규정”을 두고 있다. 즉,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한국환경공단(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단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로부터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 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하는 체계를 갖춘 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제품·포장재를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자(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4조제7항에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동법 제50조제6항에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사후관리대행자로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한국환경공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5. 하수도법: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기술진단 대행·개인하수도 관리 업무 대행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 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에 해당하는 자(관리대행업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제5항에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대행: 단순관리 대행계약,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대행: 복합관리 대행계약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기술진단전문기관)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기술진단의 대행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법 제34조의2제4항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관리지역 안의 개인하수도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3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41조제1항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

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분뇨처리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3항에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16.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 대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제7항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자격·인원·직무범위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대리자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 업무 대행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서 “환경부장관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는 기술능력-정도검사(精度檢査) 검사기관 - 자동차 분야 : 6명 이상, 대기 분야 : 5명 이상, 수질 분야 : 5명 이상, 소음·진동 분야 : 2

명 이상, 토양 분야 : 5명 이상, 먹는물 분야 : 3명 이상, 실내공기질 분야 : 4명 이상, 검정(檢定) 검사기관 : 4명 이상, 검사하려는 측정기기 및 교정용품을 정도검사하거나 검정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시설 및 장비는 이를 보유한 자(다른 검사기관은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18.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업무 대행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1항에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약식평가서의 서류(환경영향평가서등)를 작성할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19. 소 결

환경부 소관 법제 분야와 관련된 대행제도를 분석하였는바, 총 37개의 법률 중에서 17개의 법률에 대행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20개의 법률에서는 대행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즉, 17개의 법률 중에서 제3유형으로 1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16개의 법률에서는 4유형의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다.

특히, 제1유형 및 제2유형에 해당하는 대행제도를 분석하면,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4항에서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법정대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제6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제 분야

###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1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	×	×	○	○	×	○
2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	×	○	○	×	○
3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	×	×	×	×
4	관광진흥법	×	×	○	○	×	○
5	국민체육진흥법	○	×	○	○	제1유형	○
6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	×	×	×	×
7	도서관법	×	×	○	○	×	○
8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	○	○	×	×	○
9	문화다양성의보호와증진에관한법률	×	×	○	×	×	○
1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	○	○	제4유형	○
11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	○	○	×	○
12	문화예술진흥법	×	×	○	○	×	○
1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	○	○	×	○
14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	×	×	×
1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	○	×	×	○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	×	×	○
17	예술인 복지법	×	×	○	○	×	○
18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	○	○	○	제4유형	○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관한 법률						
19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	○	×	○
20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	×	×	○
21	저작권법	×	×	○	○	×	○
2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
23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	×	○	○	×	○
2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	○	○	×	○
25	콘텐츠산업 진흥법	×	×	○	○	×	○
26	한국관광공사법	×	×	○	○	×	○
27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	×	×	제1유형	○
28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	○	○	제4유형	○

## 2. 국민체육진흥법: 올림픽 오륜과 관련된 표지·도안·표안 등의 승인업무 대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1조제1항은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五輪)과 오륜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도안·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대한올림픽 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만화 및 만화상품의 수출경쟁력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업무 대행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만화의 해외 현지화 지원, 만화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진흥 업무 대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할 수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해당 제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제3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0조제2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외시장 진출 등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에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영상제·전본시장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콘텐츠진흥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법』에 따른 박물관 협회 또는 미술관 협회,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5.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의 국제교류 활성화 관련 업무 대행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정부는 이스포츠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와 관련이 있는 국제이스포츠연맹, 그 밖에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제3항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한국콘텐츠진흥원, 「민법」 제32조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외에 상주(常住)하는 인력을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특구개발사업 업무 대행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제2항에서 “제1항제1호(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특구개발사업 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특구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

표자의 성명)·주소, 대행하려는 특구개발사업의 명칭·위치 및 시행면적, 특구개발사업의 대행과 관련된 사업의 목적, 사업의 종류 및 개요, 사업시행기간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재원조달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위치도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작성하여 특구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상품의 수출경쟁력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 관련 업무 대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0조제1항에 “정부는 문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영상제·견본시장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영상제·견본시장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콘텐츠진흥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협회 또는 미술관 협회,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8. 소 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제 분야와 관련된 대행제도를 분석하였는바, 총 28개의 법률 중에서 5개의 법률에 대행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23개의 법률에서는 대행규정을 마련하

고 있지 않다. 즉, 5개의 법률 중에서 제1유형으로 2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3개의 법률에서는 4유형의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다.

특히, 제1유형 및 제2유형에 해당하는 대행제도를 분석하면, 「국민체육진흥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한올림픽위원회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를 처리를 맡기면서 그 업무에 관한 대외적인 행사를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이름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내부위임”의 법적성질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제2항에서 “제1항제1호(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특구개발사업 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구개발업무를 특구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맡기면서 대외적인 권한 행사는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의 이름으로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내부위임”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 제7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제 분야

###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1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불제도 시행규정	○	×	○	×	제2유형	○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	○	○	제4유형	○
3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	○	○	제4유형	○
4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	○	○	×	○
5	농약관리법	×	×	○	○	×	○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
7	농어업재해보험법	×	×	×	×	×	×
8	농어촌마을주거환경개선및리모델링촉진을위한특별법	×	×	○	×	×	○
9	농어촌정비법	○	×	○	○	제2유형	○
10	농업기계화촉진법	○	○	○	○	제4유형	○
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	○	○	×	○
1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	○	○	×	○
14	농업협동조합법	×	×	○	○	×	○
1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	○	○	×	○
16	농지법	○	○	○	○	제2유형	○
1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제4유형	○
18	동물보호법	○	○	×	×	제4유형	○
19	방조제 관리법	○	○	×	×	제1유형	○
20	비료관리법	×	×	×	×	×	×
21	사료관리법	○	×	○	○	제1유형	○
22	수의사법	×	×	○	○	×	○
23	식물신품종 보호법	×	×	○	○	×	○
24	식생활교육지원법	×	×	○	×	×	○
25	식품산업진흥법	×	×	○	○	×	○
26	양곡관리법	○	×	○	○	제4유형	○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27	여성농어업육성법	○	×	×	×	●	×
2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	○	제4유형	○
29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	○	×	○
3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	×	○	○	×	○
31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 협력법	×	×	○	○	×	○

### 2.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업무 대행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령은퇴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 중심의 영농 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기에 경영이양한 농업인에게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공사가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물수농산물 등의 처분업무 대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4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물수농산물등의 처분업무를 제9조제3항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중에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5조제2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품질인증 업무 대행·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 대행·검사업무 대행·검사 및 재검사업무 대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생산조건,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심사·인증을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품질인증기관)로 하여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4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80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등을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7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동법 제89조제1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8조에 따른 검사 업무나 제96조에 따른 재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위생 관련 기관을 수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사 또는 재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99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검정기관)을 지정하여 제98조에 따른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5. 농어촌정비법: 환지업무 대행

「농어촌정비법」 제27조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업무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3명 이상의 환지사(換地士)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이 환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6. 농업기계화촉진법: 농업기계의 검정업무 대행

「농어기계화촉진법」 제12조의3제1항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 “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동조제4항에 “제3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검정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3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7. 농지법: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 대행

「농지법」 제51조제3항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 및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 대행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6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9. 동물보호법: 동물보호와 유실·유기방지에 관한 업무대행

「동물보호법」 제12조제4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서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판매업자,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 센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0. 방조제관리법: 방조제의 관리 업무 대행

「방조제관리법」 제6조제2항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게 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3항에 “제2항의 경우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관리대행자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방조제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단체(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는 관리방조제로 보호되는 농경지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지역 안에 있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관리방조제로 보호되는 농경지가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농경지를 관할하는 시·군·자치구, 관리방조제로 보호되는 농경지가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지역 안과 밖에 걸쳐 있는 경우: 더 넓은 농경지를 그 관리지역 또는 그 관할지역으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시·군·자치구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11. 사료관리법: 사료의 수입 추천업무 대행

『사료관리법』 제6조제1항에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市場接近物量)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사료를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2항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료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사료관련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품목,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규정은 사료의 수입에 관한 추천업무를 중앙회 또는 사료관련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로 원권한자의 책임과 지시가 필요한 중요한 업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탁의 규정보다는 대행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12. 양곡관리법: 양곡의 수출·수입 추천업무 대행

『양곡관리법』 제12조제1항에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양허세율)로 미곡이나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가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미곡등의 용도 등을 밝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제3항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양곡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4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수출·수입·매매·저장·출납·수송·가공과 양곡의 매입약정체결·선금지급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13.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영농·영어 작업과 기사 지원 업무 대행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의2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영어 작업과 기사를 대행하는 사람(도우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매납입금 징수의 수납 업무 대행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에 따른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의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 업무를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이 경우 수납 업무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

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행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고, 대행기관으로 기금수탁관리자로 규정하고 있다.

## 15. 소 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제 분야와 관련된 대행제도를 분석하였는바, 총 31개의 법률 중에서 12개의 법률에 대행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19개의 법률에서는 대행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즉, 12개의 법률 중에서 제1유형 및 2유형으로 5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7개의 법률에서는 4유형의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다.

특히, 제1유형 및 제2유형에 해당하는 대행제도를 분석하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령은퇴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 중심의 영농 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기에 경영이양한 농업인에게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공사가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공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업무의 위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농어촌정비법」 제27조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토지소유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업무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3명 이상의 환지사(換地士)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이 환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 환지법인으로 하여금 환지업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권한의 이전이 있는 것으로 보아 “환지업무의 위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지법」 제51조제3항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상의 권한의 이전이 있다는 점에서 행정업무의 위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서 「방조제관리법」 제6조제2항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게 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관리대행자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방조제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단체(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는 관리방조제로 보호되는 농경지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지역 안에 있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관리방조제로 보호되는 농경지가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농경지를 관할하는 시·군·자치구, 관리방조제로 보호되는 농경지가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지역 안과 밖에 걸쳐 있는 경우: 더 넓은 농경지를 그 관리지역 또는 그 관할지역으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시·군·자치구로 구분하고 있음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조제의 관리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자치구에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보조기관이나 하급기관에 소관사무를 처리를 맡기면서 대외적인 권한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름으로 처리된다는 측면에서 내부위임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료관리법」 제6조 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사료관련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협중앙회 또는 사료관련 단체에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의 권한 이전이 있는 것으로 보아 행정업무의 위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제8절 고용노동부 소관 법제 분야

###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1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	○	○	○	제4유형	○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	○	제4유형	○
3	고용보험법	○	○	○	○	제4유형	○
4	고용정책 기본법	○	○	○	○	제4유형	○
5	공인노무사법	×	×	○	○	×	○
6	국가기술자격법	○	○	○	○	제1유형 및 제2유형 병존	○
7	근로복지기본법	×	×	○	○	×	○
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	○	○	제4유형	○
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	○	○	×	○
10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	×	×	×	×	×	×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제4유형	○
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	○	○	제4유형	○
13	임금채권보장법	×	×	○	○	×	○
1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	○	○	제2유형	○
15	직업안정법	×	×	○	×	×	○
1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	×	○

##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보험료 신고 등의 사무 대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서는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법인등)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 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조제2항에서는 “법인 등이 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고용보험법: 노동시장·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와 보험 업무 대행

「고용보험법」 제11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와 보험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그 밖에 노동시장·직업 및 직업능력개발과 보험 관련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연구기관 또는 단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6조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9조 및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4.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영향평가 업무 대행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8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재출연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민간연구기관 중 어느 하나에 제2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5. 국가기술자격법: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 대행

「국가기술자격법」 제7조제1항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경력(다른 법령에 따라 경력 정보가 관리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경력은 제외한다)과 국가기술 자격에 관련된 정보 등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3항에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8조제1항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령 제9조

에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법 제24조제3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서 “법 제2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공단, 제29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직업능력개발정보망구축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업무 대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9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6조(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 업무로 한정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7조, 제38조 및 제53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 절차, 업무 대행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조 각 호의 공공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사업주단체 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직업능력개발단체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9조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 업무의 내용, 범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업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사업 관련 조사연구 업무 대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2항에서 “보험사업 관련 조사연구”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요양급여의 신청과 관련하여 동법 제41조제2항에서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의 일부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보험사업과 관련된 연구 인력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업무 대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사용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7조의2제1항에서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조의2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업무에 따른 신청이나 서류의 수령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대행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은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능력과 경험이 있을 것,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의 실적이 있을 것, 업무

수행 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신용카드로 부담금등의 납부 업무 대행·공매 대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부담금등의 납부규정”과 관련하여 “부담금과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의무자는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회사 등(부담금등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부담금등을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7조제4항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公賣)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매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제6항에 “제4항에 따라 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공사의 임원·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 10. 소 결

고용노동부 소관 법제 분야와 관련된 대행제도를 분석하였는바, 총 16개의 법률 중에서 9개의 법률에 대행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7개의 법률에서는 대행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즉, 9개의 법률 중에서 제1유형 및 2유형으로 2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7개의 법률에서는 4유형의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다.

특히, 제1유형 및 제2유형에 해당하는 대행제도를 분석하면, 먼저 「국가기술자격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를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조기관이나 하급기관에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대외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한다는 점에서 “내부위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동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고, 동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권한의 이전이 있는 것으로 보아 ”행정업무의 위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7조제4항에 “고용노동부장관은 ...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公賣)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매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권한이전이 있다고 보아 “위탁”에 해당된다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제9절 국방부 소관 법제 분야

###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1	국방개혁에관한법률	×	×	×	×	×	×
2	국방과학연구소법	○	×	×	×	제1유형	×
3	국방대학교 설치법	×	×	×	×	×	×
4	국방전직교육원법	×	×	×	×	×	×
5	군무원인사법	×	×	○	○	×	○
6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	×	×	×	×	×
7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	×	×	×	×	×
8	군사법원법	○	×	○	×	제3유형	○
9	군에서의형의집행및군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	×	○	○	×	○
10	군인복지기본법	×	×	○	○	×	○
11	군인사법	×	×	×	×	×	×
12	군인연금법	×	×	○	○	×	○
1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	×	×	×	×
14	방위사업법	×	×	○	○	×	○
15	사관학교 설치법	×	×	×	×	×	×
1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	○	○	×	○
17	징발법	×	×	×	×	×	×
18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	×	×	×	×	×

## 2. 국방과학연구소법: 군용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 관련 업무 대행

「국방과학연구소법」 제7조제1항은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병기·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과 이에 관련된 계통공학, 인간공학, 그 밖의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병기·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의 제식(制式) 및 규격의 조사·연구,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와 관련된 각종 자원, 조직, 제도 및 운영의 분석·연구, 병기 및 장비의 시험제작을 위한 설계 및 설명서의 작성·검토와 시험제작품의 기술시험, 각종 병기 및 장비의 성능시험, 병기·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와 전략자원에 관한 기술정보 사업, 병기·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에 관한 연구위탁, 연구보조 또는 지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법 제7조제2항은 “국방부장관은 소관 업무 중 제1항에 따라 연구소가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연구소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업무의 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연구소 소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군사법원법 : 검찰관의 직무 대행

「군사법원법」 제42조는 “각 군 참모총장은 군법무관시보로 하여금 검찰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4. 소 결

국방부 소관 법제 분야와 관련된 대행제도를 분석하였는바, 총 18개의 법률 중에서 2개의 법률에 대행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16개의 법률에서는 대행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즉, 2개의 법률 중에서 제1유형으로 1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1개의 법률에서는 3유형의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다.

특히, 제1유형 및 제3유형에 해당하는 대행제도를 분석하면, 먼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7조제2항에서 “국방부장관은 소관 업무 중... 연구소가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연구소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업무의 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연구소 소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국방부장관은 권한의 일부를 연구소 소장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조기관인 연구소소장으로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고 대외적으로 국방부장관의 이름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내부위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군사법원법」 제42조에 “각 군 참모총장은 군법무관시보로 하여금 검찰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법정대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제10절 소방청 소관 법제 분야

###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1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	○	○	×	제4유형	○
2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	×	○	×	제4유형	○
3	민방위기본법	×	×	○	○	×	○
5	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 기본법	×	×	×	×	×	×
6	소방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	×	×	×	×	×	×
7	수상레저안전법	○	○	○	○	제4유형	○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8	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 관한법률	×	×	○	○	×	○
9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	○	○	○	제4유형	○
10	위험물안전관리법	×	×	○	○	×	○
11	자연재해대책법	○	○	○	○	제4유형	○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	○	제4유형	○
1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	○	○	제4유형	○
1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 대책에 관한 특별법	○	×	○	○	제4유형	○
15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	○	○	○	제4유형	○
16	풍수해보험법	○	○	○	○	제4유형	○
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	○	제4유형	○

##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붕괴위험지역 지반의 침하·활동·전도(顛倒) 및 붕괴 등 사전감지 관련 대행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는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 지반의 침하·활동·전도(顛倒) 및 붕괴 등으로 위치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인 계측(計測)·자료관리(상시계측관리)를 직접하거나 제22조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서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상시계측관

리를 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측자료를 관할 시·군·구본부장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26조제4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성능검사대행자)로 하여금 성능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능검사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0조제1항에 “상시계측관리의 공정성과 공신력의 확보 및 기술력의 증진을 위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측업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 제27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30조제2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고시하여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위험성평가 대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2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15조제5항은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법 제16조제1항에 “제15조제5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험성평가 대행자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4. 수상레저안전법: 면허시험 실시 업무 대행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1항은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시험대행기관)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시험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면허시험 실시업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8조의2제3항은 “협회는 수상레저안전 및 수상레저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사업, 조종면허시험관리시스템 및 수상레저기구등록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조종면허시험, 수상레저기구 등록·안전검사·안전점검의 대행, 수상레저사업자 및 레저기구사용자 등에 대한 인명구조교육, 수상안전교육 및 관련 장비·교재의 개발,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8조제1항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검사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5.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대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대행하게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승강기의 자체점검과 관련하여 동법 제17조제4항에서는 “승강기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6. 자연재해대책법: 방재관리대책 관련 업무 대행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1항은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제37조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제57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법 제38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에서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행자의 명칭이나 대표자 또는 상호 및 소재지의 변경, 기술인력의 등록사항 변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0조제1항 “정부는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 촉진과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방재기술,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에 대한 평가 신청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에서는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방재기술평가)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안전지수의 개발·조사에 관한 업무 대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제2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국민안전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 소속의 교육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6조의8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지수의 개발·조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우수기업 인증 관련 대행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증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인증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제2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인증대행기관의 업무 중에서 해당 인증대행기관이 수행할 인증대행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9조제1항에 “인증대행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인증대행기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평가, 우수기업 인증서의 발급, 우수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그 밖에 재해경감활동의 인증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의 대행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4항에 “사업시행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협의하여 같은 항 제1호의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그 설치사업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설치에 관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0.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의 교육·훈련 업무 대행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교육·훈련의 대행 등”과 관련하여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2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방재협회,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11. 풍수해보험법: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업무 대행

「풍수해보험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에 관한 기술능력을 갖춘 자로 하여금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동법 25조의3제1항에서 “풍수해보험관리지도 통합·관리의 대행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통합·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관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에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제2호다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 “법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20조제6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3. 소 결

소방청 소관 법제 분야와 관련된 대행제도를 분석하였는바, 총 17개의 법률 중에 11개의 법률 중에 대행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6개의 법률에서는 대행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17개의 법률 중에 대행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제1유형 및 제2유형으로 해당 개수가 없고, 11개는 제4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급경사지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상레저안전법」, 「기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풍수해보험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행제도를 두고 있는바 제4유형은 “행정보조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제11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법제 분야

##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1	과학기술기본법	○	○	○	×	제1유형	○
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	×	×	×	×	×	×
3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
4	국가정보화 기본법	×	×	○	○	×	○
5	국가초고성능컴퓨터활용및육성에 관한법률	×	×	×	×	×	×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및 지원에 관한특별법	×	×	○	○	×	○
7	방송법	×	×	○	○	×	○
8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	○	○	×	○
9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	×	○	○	×	○
10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 관한 특별법	○	○	○	○	제4유형	○
1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	×	×	제4유형	×
12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	○	○	×	○
13	우편법	×	×	○	○	×	○
14	원자력진흥법	×	×	○	○	×	○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15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	○	○	제4유형	○
1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	○	○	제4유형	○
17	전자서명법	○	○	×	×	제4유형	○
18	전파법	×	×	○	○	×	○
19	정보통신공사업법	×	×	○	○	×	○
20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	×	×	제4유형	×
2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	○	○	제4유형	○
22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	○	×	○

## 2.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 등 업무 대행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4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 등을 대행하는 자(전문기관)에 대하여 기획 등의 수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특구개발사업의 업무 대행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은 “특구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진흥재단,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설치하고 부지를 조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특구를 개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특구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특구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동법 제26조제3항에서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특구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규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특구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대행하려는 특구개발사업의 명칭·위치 및 시행면적, 특구개발사업의 대행과 관련된 사업의 목적, 사업의 종류 및 개요, 사업 시행기간, 자금 조달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위치도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이 포함된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3조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과 산업 및 연구 시설의 설치를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특구개발사업 중 그 신청인이 사용할 산업 및 연구 시설용지의 조성사업 등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3항에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에게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조 제4항에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자가 특구육성종합계획 및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안전점검 업무 대행·정밀안전진단업무 대행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안전점검의 실시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일상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상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1회 실시, 정기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상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9조제3항에서 “연구주체의 장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에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9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5.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 업무 대행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제2항에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를 선정할 때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화 업무 대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2항에 “정부는 제1항 각 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민간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7. 전자서명법: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관련 표준화 업무 대행

「전자서명법」 제26조의3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원활한 상호연동을 위하여 (i) 전자서명의 상호연동을 위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ii) 전자서명의 상호연동과 관련한 표준의 제정 및 보급, (iii) 전자서명의 상호연동을 위한 전자서명 및 인증정책의 조정, (iv) 그 밖에 전자서명의 상호연동과 관련한 사항을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8.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기술개발 업무 대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4조제2항에 “정부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보호 기술개발과 관련된 연구

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9.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관련 업무 대행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7조제2항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10. 소 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제 분야와 관련된 대행제도를 분석하였는바, 총 22개의 법률 중에서 8개의 법률에 대행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14개의 법률에서는 대행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즉, 1개의 법률 중에서 제1유형으로 1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7개의 법률에서는 4유형의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다.

특히, 제1유형에 해당하는 대행제도를 분석하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4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실무를 보조기관이나 하급기관에 대하여 기획업무 등을 맡기고 그 업무에 대외적인 권한행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이름으로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내부위임”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제12절 기획재정부 소관 법제 분야

###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1	경제교육지원법	×	×	×	×	×	×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	×	×	×	×	×
3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	×	○	○	×	○
4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	○	×	×	제4유형	×
5	관세법	○	○	○	○	제2유형 및 제4유형 병존	○
6	관세사법	×	×	○	○	×	○
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	○	○	×	○
8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	×	×	×	×
9	국가재정법	×	×	×	×	×	×
10	국가회계법	×	×	○	○	×	○
11	국세징수법	○	○	○	○	제2유형	○
12	국세기본법	○	×	×	×	제3유형	×
13	국유재산법	×	×	○	○	×	○
1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	○	○	×	○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1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	×	○	○	×	○
1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	×	×	○
17	복권 및 복권기금법	×	×	○	○	×	○
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	×	○	○	●	○
19	세무사법	●	×	○	○	●	○
20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	×	○	○	×	○
21	연합초생산협동조합법	×	×	○	×	×	○
22	외국환거래법	×	×	○	○	×	○
2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	×	×	×	×
24	한국수출입은행법	○	×	○	×	제1유형	×
25	한국투자공사법	×	×	○	○	×	○
26	협동조합 기본법	×	×	○	○	×	○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감사업무 대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52조제2항에서 “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정부소유 주식 매각 업무 대행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에서는 “정부·정부투자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정부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금융기관·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매각하거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주식의 매각 위탁 또는 대행기관으로 은행법에 의한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대상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4. 관세법: 사이버몰 매각업무 대행·통계의 작성 및 교부 업무 대행

「관세법」 제208조제4항에서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매각을 할 때 신속한 매각을 위하여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에서 전자문서를 통하여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매각대행기관)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령 제220조에 “법 제20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한 매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시스템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매각대행기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동조제5항에서는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제211조제6항에 따라 매각대금의 잔금처리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각대행기관의 장을 세관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22조제5항은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 및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교부 업무를 대행할 자(대행기관)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대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5. 국세징수법: 압류재산 공매 대행

「국세징수법」 제61조제5항에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조제6항에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제7항에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동조제8항에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6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6. 국세기본법: 조세심판관의 직무 대행

「국세기본법」 제72조제2항에 “제1항의 조세심판관회의는 주심조세심판관이 그 의장이 되며, 의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주심조세심판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세심판원장이 배석조세심판관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유·공유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체결 및 매수업무 대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의2에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국유·공유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체결(해당 국유·공유 재산의 허가권자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권자 등에 대한 허가 등 신청의 대행을 말한다), 해당 부대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수업무의 대행, 그 밖에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대사업에 대한 지원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8. 세무사법: 장부작성 업무 대행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서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9. 영업초생산협동조합법: 조합원을 위한 구매·보관·판매·제조 사업 및 그 공동사업 관련 업무 대행

「영업초생산협동조합법」 제32조제2호가규정에 따르면,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보관·판매·제조 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관련한 업무 대행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10. 한국수출입은행법: 수출촉진·수출경쟁력·해외투자 등 관련 업무 대행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8조에 “수출입은행은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11. 소 결

기획재정부 소관 법제 분야와 관련된 대행제도를 분석하였는바, 총 26개의 법률 중에서 5개의 법률에 대행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21개의 법률에서는 대행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즉, 5개의 법률 중에서 제1유형 및 제2유형으로 3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1개의 법률에서 3유형을, 1개의 법률에서는 4유형의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다.

특히, 제1유형에 해당하는 대행제도를 분석하면,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8조에 “수출입은행은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외적인 권한 행사는 수출입은행이 처리하고, 소관 사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다른 금융기관에 맡긴다는 측면에서 내부위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관세법」 제208조제4항에서는 “세관장은 .... 매각을 할 때 신속한 매각을 위하여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에서 전자문서를 통하여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한 매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시스템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매각대행기관)로 하고, 이러한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행기관의 장을 세관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실상 권한의 이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특히, 「국세징수법」 제61조제5항상의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의 경우에는 다른 공공주체에게 권한을 대행시키면서 그 업무에 관한 대외적인 권한행사도 대행기관의 명의로 하고 있는 경우로서 사실상 권한의 이전이 있으며, “위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제13절 법무부 소관 법제 분야

###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1	공증인법	○	×	○	○	제1유형	○
2	국적법	×	×	○	○	×	○
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	×	×	×	×	×	×
4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 관한법률	×	×	○	×	×	○
5	범죄피해자보호법	×	×	○	○	×	○
6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	×	×	×	×	×
7	상법	×	×	○	×	×	○
8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	×	×	×	×
9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	○	○	○	제4유형	○
10	집행관법	×	×	○	×	×	○
11	출입국관리법	○	○	○	○	제1유형	○
1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	○	○	×	○
13	특별감찰관법	×	×	×	×	×	×
1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	○	×	○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	○	×	×	○

### 2. 공증인법: 직무 대행

「공증인법」 제8조에서는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공증인이 없거나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의 검사나 등기소장에게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용과 관련 기술의 호환성(互換性) 확보 관련 업무 대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용과 관련 기술의 호환성(互換性) 확보를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24조제2항에서는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4. 출입국관리법: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업무 대행

「출입국관리법」 제76조에 “법무부장관은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5. 소 결

법무부 소관 법제 분야와 관련된 대행제도를 분석하였는바, 총 15개의 법률 중에서 3개의 법률에 대행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12개의 법률에서는 대행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즉, 3개의 법률 중에서 제1유형으로 2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1개의 법률에서는 4유형의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다.

특히, 제1유형에 해당하는 대행제도를 분석하면, 「공증인법」 제8조에서는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공증인이 없거나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의 검사나 등기소장에게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과 「출입국관리법」 제76조에 “법무부장관은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실무 등을 보조기관이나 하급기관에 소관사무를 맡기고, 그 업무에 관한 대외적인 권한행사는 법무부장관의 이름으로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내부위임”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제14절 해양수산부 소관 법제 분야

###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1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 관한법률	○	○	○	○	제4유형	○
2	국립해양박물관법	○	×	×	×	제4유형	×
3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설립및 운영에관한법률	×	×	×	×	×	×
4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	○	○	○	제4유형	○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	○	○	제4유형	○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	○	○	제4유형	○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7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	○	○	×	○
8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
9	농어업재해보험법	×	×	×	×	×	×
10	농어촌마을주거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특별법	×	×	○	×	×	○
11	도선법	×	×	×	×	×	×
12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	○	○	×	○
1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	○	×	○
14	선박관리산업발전법	○	○	○	○	제4유형	○
15	선박법	○	○	×	×	제4유형	×
16	선박안전법	○	○	○	×	제4유형	○
1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	○	×	제2유형	○
18	선박직원법	○	×	○	○	제3유형	○
19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	○	○	제4유형	○
20	선원법	○	○	○	○	제4유형	○
21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	○	×	×	○
22	소금산업 진흥법	×	×	○	○	×	○
2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제1유형	○
2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	○	○	×	○
25	수산업법	×	×	○	×	×	○
26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	○	○	×	○
27	수산업협동조합법	×	×	○	○	×	○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28	수산자원관리법	○	○	○	○	제4유형	○
29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	○	○	×	○
30	신항만건설 촉진법	×	×	○	○	×	○
31	어선법	○	○	×	×	제4유형	○
3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	○	○	○	×	제1유형 및 제2유형	○
33	어장관리법	○	×	○	○	제4유형	○
34	어촌·어항법	○	×	○	○	제4유형	○
35	연안관리법	×	×	○	○	×	○
36	염업조합법	×	×	×	×	×	×
37	원양산업발전법	×	×	○	○	×	○
38	항로표지법	○	○	○	○	제4유형	○
39	항만공사법	×	×	○	○	×	○
40	항만법	○	○	○	○	제4유형	○
41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	×	×	×	×	×
42	해사안전법	○	○	○	○	제4유형	○
43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	×	○
4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	×	○
45	해양환경관리법	○	○	○	○	제4유형	○
46	해운법	×	×	○	○	×	○
47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	○	×	×	○
48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 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	○	○	○	제4유형	○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수로도서지 판매업무 대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로 조사성과를 수록한 수로도서지를 간행(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방식에 따른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35조제2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판매망·기술인력·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수로도서지 판매를 대행하는 자(판매대행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로도서지 중 수치 제작물을 판매하는 대행업자는 수로업무와 관련된 국제기구에서 정한 표준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이 제작한 수치제작물을 운용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과 인터넷을 이용한 판매 방식을 갖추는 것, 수로도서지의 제작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국립해양박물관법: 박물관의 성과측정·점검·평가 및 정산업무 대행

「국립해양박물관법」 제6조는 “관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체결한 박물관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의 이행 및 점검, 민자사업자가 운영하는 박물관의 성과측정·점검·평가 및 그 사업자가 이행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한 정산의 업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국제항해 선박의 보안에 관한 보안심사관의 업무 대행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 및 제37조제2호·제3호에 따른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보안심사관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대행기관)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 심사 및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보안심사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와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대행업무의 범위, 대행기간, 그 밖에 보안업무 등의 대행에 필요한 조건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46조(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선박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별표 5의 보안심사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 1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둘 것. 이 경우 9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각각 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둘 것,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령과 국제협약에 따른 보안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안심사에 관한 규정을 갖출 것, 4개 이상의 해외사무소를 둘 것(외국에서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보안심사관의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물수농산물 등의 처분 업무 대행·농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 대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2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물수농산물 등을 매각·공매·기부 또는 소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9조의2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물수농산물등의 처분업무를 제9조제3항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중에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5조제2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도매시장법인의 대행과 관련하여 동법 제66조제1항에서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판매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거나 관리공사 또는 다른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동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처리기준과 그 밖에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안전성조사·시험분석 업무 대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생산조건,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심사·인증을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품질인증기관)로 하여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64조제1항에서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80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농산물의 생산자단체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등을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7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산물검사기관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제88조에 따른 검사 업무나 제96조에 따른 재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위생 관련 기관을 수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사 또는 재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검정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동법 제99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검정기관)을 지정하여 제98조에 따른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7.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점검업무 대행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를 지정하여 인증신청의 접수, 제8조제4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 제8조제5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인증심사, 그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조제2항에 “인증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정된 선급법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8. 선박법: 선박톤수의 측정 등 검사업무 대행

「선박법」 제29조의2제1항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船級法人)(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7조에 따른 선박톤수의 측정, 제13조에 따른 국제총톤수·순톤수의 측정,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발급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제2항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선박은 공단: 선급법인에 대행하게 하는 선박 외의 선박, 선급법인: 선급법인에 선급의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을 하려는 선박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9. 선박안전법: 컨테이너의 안전점검 업무 대행·검사등 업무의 대행·선체두께 측정의 대행·위험물 관련 검사·승인의 대행

「선박안전법」 제24조제1항에 “컨테이너의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자체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점검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에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에서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를 가지고 있을 것, 안전점검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대학의 조선·항해·기계·기관·용접·금속재료 등에 관한 학과를 졸업하고 컨테이너의 제조, 검사, 시험 또는 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대학의 관련학과 외의 이공계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관련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자, 공업계고등학교의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자로서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검인력이 있을 것의 요건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0조제1항에 “검사등 업무의 대행”에 관한 규정하고 있는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 건조검사증서의 교부 및 별도건조검사,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및 선박검사증서의 교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검사 및 임시변경증의 교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및 임시항해검사증서의 교부,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 및 국제협약증서의 교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면의 승인 및 승인표시,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제18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 검정증

서의 교부 및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 제2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선박 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 확인서의 교부 및 확인을 나타내는 표시,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 도면의 승인 및 승인표시, 예비검사증서의 교부 및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원성자료의 승인,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하중 등의 확인 및 제한하중 등 확인서의 교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의 작성 및 내용기재,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승인,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 및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의 교부에 해당하는 건조검사·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조제2항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보험의 가입·유지를 위하여 선박의 등록 및 감항성에 관한 평가의 업무(선급업무(船級業務))를 하는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선급법인)에게 해당선급법인이 관리하는 명부에 등록하였거나 등록하고자 하는 선박(선급등록선박)에 한하여 제1항 각 호의 검사등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61조에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및 선급법인이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등업무의 대행을 함에 있어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이를 수행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2조제1항에 “대행업무에 관한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및 선급법인이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협정에 위반한 때에는 해당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3조제1항에서 “선체두께 측정의 대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두께측정업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내에서 선체두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 두께측정업체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컨테이너 검정 등의 대행과 관련하여 동법 제64조제1항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검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 형식 승인 판의 확인표시에 해당하는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컨테이너 검정등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위험물 관련 검사·승인의 대행”과 관련하여 동법 제65조제1항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운송 및 저장 등에 관한 검사 및 승인에 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위험물 검사등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동법 제66조제1항에 “외국선박의 해당소속 국가에서 시행 중인 선박안전과 관련되는 법령의 내용이 이 법의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외국정부 또는 그 외국정부가 지정한 대행기관(외국 정부등)이 행한 해당외국선박에 대한 검사등 업무는 이 법에 따른 검사등 업무로 본다”고 “외국 정부등이 행한 검사의 인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박안전법」 제67조제1항에 “국가는 공단, 선급법인, 컨테이너 검정등 대행기관 및 위험물 검사등 대행기관(대행검사기관)이 해당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서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에 있어 대행검사기관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에 구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대행검사기관의 업무 수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상책임을 진다는 국가의 배상책임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1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장애물처리 업무 대행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6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거된 장애물을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처리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장애물의 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8항에서 “제6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장애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11. 선박직원법: 선박직원의 직무 대행

「선박직원법」 제11조제2항에 “선박직원의 직무는 선장은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화선박에서는 항해를 전문으로 하는 1등 운항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그 밖의 선박에서는 1등 항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육상시험 및 선상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처리물질에 대한 국제기구 승인 신청 서류의 심사 업무 대행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7조의3에 따른 육상시험 및 선상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제20조제1항에 따른 처리물질에 대한 국제기구 승인 신청 서류의 심사, 제20조제4항에 따른 증명 서류의 심사, 그 밖에 형식승인시험 및 처리물질의 승인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양 관련 전문시험기관(독립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은 독립시험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동법 제30조제1항에 “해양수산부장은 제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확인검사 및 점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발급,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의 표시,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검사증서의 발급 및 검사결과의 표기,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검정, 검정합격증명서의 발급 및 검정합격의 표시의 업무를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3. 선원법: 인증검사업무 등의 대행

「선원법」 제140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해양수산부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은 지정된 대행기관(인증검사 대행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인증검사업무 등의 대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1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의 수입 추천등과 관련 업무 대행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수산물의 수입 추천등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해양수산부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수협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5. 수산자원관리법: 인공어초 설치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 대행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제1항에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1조제1항에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중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해당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협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 16.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 관련 업무 대행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6조제1항에 “수산종자사업자는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산종자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조제5항에 “협회는 수산종자사업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수산종자산업 관련 통계 조사, 수산종자의 품질 관리, 수산종자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수산종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7. 어선법: 어선의 총톤수 측정·개측·어선의 검사·건조검사·검정·확인 업무 대행

「어선법」 제41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제14조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 측정·개측,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제22조에 따른 어선의 건조검사, 어선용품의 예비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검정, 제2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

업장의 지정을 위한 조사 및 어선·어선용품의 확인,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의 승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선급법인의 경우 제5호의 업무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조제3항에서 “공단이나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증서·검정증서·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및 재화중량톤수증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18.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수납, 보험금여의 지급 및 보험료납부의 확인 업무 대행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제1항에 “중앙회는 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수납, 보험금여의 지급 및 보험료납부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같은 법 제141조의4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회원조합 및 수협은행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 “중앙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험 가입 신고의 접수 및 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업무, 보험가입자, 수급권자 및 어선에 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업무, 보험료 등 징수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 보험금여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 보험료 등의 과납액(過納額)의 반환에 관한 업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같은 법 제141조의4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6조제2항에서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중앙회가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조제4항에서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19. 어장관리법: 어장정화·정비 관련 대행

「어장관리법」 제16조제1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어장정화·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에서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정비를 대행하려면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0. 어촌·어항법: 어항개발사업 대행

「어촌·어항법」 제25조에서 “지정권자가 아닌 자로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은 자(비지정권자)와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항개발사업을 지정권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21. 향로표지법: 향로표지를 설치·관리업무 대행

「향로표지법」 제10조제1항에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향로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그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설치·관리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동법 제32조제1항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비 및 용품의 성능에 관한 검사의 업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한 검사기관(검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검사업무의 대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22. 항만법: 검사업무 대행

「항만법」 제28조제1항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검사대행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59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 중에서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59조제4항에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 또는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23. 해사안전법: 해상교통안전진단 업무 대행·인증심사 업무의 대행

「해사안전법」 제19조제1항에서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나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대행업자로 하여금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8조제1항에서 “인증심사 업무의 대행 등”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심사,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증심사대행기관(정부대행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대행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4. 해양환경관리법: 해양배출 폐기물 검사 대행·안전점검 대행·폐기물의 성분·농도·무게·부피의 측정에 관한 업무 대행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3항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하게 할 수 있는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검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과 관련된 해양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76조제3항에 “폐기물위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성분·농도·무게·부피의 측정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측정능력이 있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동법 제85조제4항에서 “평가대상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법 제95조제1항에 “해역이용사업자들은 면허등을 받은 후 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의 조사(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분기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역이용사업자들은 평가대행자에게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물의 승인,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의 검인,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검사,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예비검사 및 에너지효율검사. 다만, 대기오염방지설비 중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방지설비에 대한 검사대행자 지정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증서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검사증서의 교부,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의 업무를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동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급법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제2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선박해양오염 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를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정도검사·성능시험·검정 및 인정, 제1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업무를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25.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적격성심사 대항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적격성심사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제2항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적격성심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지정목적에 벗어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정당한 업무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6. 소 결

해양수산부 소관 법제 분야와 관련된 대항제도를 분석하였는바, 총 47개의 법률 중에서 22개의 법률에서 대항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25개의 법률에서는 대항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즉, 3개의 법률 중에서 제1유형 및 제2유형으로 2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22개의 법률에서는 4유형의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다.

특히, 제1유형에 해당하는 대항제도를 분석하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수산물의 수입 추진등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해양수산부장관은 ..... 수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수협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제1항에 “중앙회는 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수납, 보험급여의 지급 및 보험료납부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같은 법 제141조의4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해수부장관이 보조기관이나 하급기관인 수협중앙회를 통하여 사무처리를 맡기면서, 대외적인 권한행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한다는 측면과 중앙회가 보험료 등의 수납, 지급 및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협은행을 통하여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내부위임”이라는 법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2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6조제2항에서 “중앙회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점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6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제거된 장애물을 보관 및 처리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처리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장애물의 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권한을 대행시키면서 그 업무에 관한 대외적인 권한행사도 대행기관의 명의로 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권한의 이전이 있다고 보아 “위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제15절 행정안전부 소관 법제 분야

###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	○	○	×	○
2	가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	×	○	×	×	○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3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	×	×	○	○	×	○
4	도서개발촉진법	×	×	×	×	×	×
5	새마을금고법	×	×	○	×	×	○
6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	×	×	×	×	×	×
7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	×	×	×	×	×
8	자원봉사활동기본법	×	×	×	×	×	×
9	접경지역지원특별법	×	×	×	×	×	×
10	정부조직법	×	×	○	×	×	○
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	○	×	제3유형	○
1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	×	×	제3유형	×
13	지방공기업법	○	○	○	×	제3유형	○
14	지방공무원법	×	×	○	×	×	○
15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	○	×	×	○
16	지방세기본법	×	×	○	×	×	○
17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	○	×	○
18	지방세징수법	○	○	×	×	제2유형	×
19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	×	×	×	제1유형	×
2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	○	○	제1유형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	○	제4유형	○
22	지방자치법	○	○	○	○	제3유형	○
23	지방재정법	×	×	○	○	×	○
24	지방회계법	×	×	○	○	×	○
2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	○	×	×	○
28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	○	×	×	○
29	국가공무원법	×	×	○	○	×	○

##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도교육감의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에 “도교육감의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교육감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을 준용하여 제주자치도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는 “제주자치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순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부단체장의 권한 대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부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4. 지방공기업법: 상위서열공무원의 권한 대행

「지방공기업법」 제12조제1항에 “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상위 서열의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5. 지방세징수법: 공매대행

「지방세징수법」 제71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조제6항에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조제8항에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6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6.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토지수용에 관한 업무 대행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10조제4항에 “사업시행자가 수행하여야 할 토지수용 등에 관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대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할 행정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 구매 대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대행 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 대행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9. 지방자치법: 직무 대행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5항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

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0. 소 결

행정안전부 소관 법제 분야와 관련된 대행제도를 분석하였는바, 총 29개의 법률 중에서 8개의 법률에서 대행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21개의 법률에서는 대행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즉, 3개의 법률 중에서 제1유형 및 제2유형으로, 4개의 법률에서 제3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1개의 법률에서는 4유형의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다.

## 제16절 여성가족부 소관 법제 분야

###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1	다문화가족지원법	×	×	○	○	×	○
2	양성평등기본법	×	×	○	×	×	○
3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
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	○	○	×	○
5	청소년보호법	×	×	○	×	×	○
6	청소년활동진흥법	×	×	○	×	×	○
7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	×	○	○	×	○

## 2. 소 결

여성가족부 소관 법제 분야와 관련된 대행제도를 분석하였는바, 총 7개의 법률 중에서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행규정에 관한 것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 제17절 경찰청 소관 법제 분야

####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1	경비업법	×	×	○	○	×	○
2	경찰공무원보건의안전및복지기본법	×	×	×	×	×	×
3	도로교통법	○	○	○	○	제4유형	○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	×	×	×	×	×	×
5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	○	○	×	○

#### 2. 도로교통법: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 대행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은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법인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

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제3항에서는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41조제4항제3호에서는 “경찰청장이 위탁·승인 또는 대행하게 한 사업과 지방경찰청장이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한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공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47조제5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운전면허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제6항에서 “경찰청장은 제106조와 제107조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한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업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소 결

경찰청 소관 법제 분야와 관련된 대행제도를 분석하였는바, 총 5개의 법률 중에서 1개의 법률에서 대행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4개의 법률에서는 대행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즉, 1개의 법률에서는 4유형의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다.

특히, 제4유형에 해당하는 대행제도를 분석하면,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에서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법인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자격을 갖춘 개인, 법인·단체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보조인”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제18절 기상청 소관 법제 분야

###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1	기상관측표준화법	○	○	×	×	제4유형	×
2	기상법	×	×	×	×	×	×
3	기상산업진흥법	○	○	○	×	제4유형	○

### 2. 기상관측표준화법: 검정업무 대행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제1항은 “기상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측기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제4항에서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검정대행기관)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정대행기관을 출입·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측기 검정 관련 업무경력,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에서의 교정업무경력,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을 위한 인정기구 및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구 또는 기관에서의 시험·검사업무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3년 이상인 검정요원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기상측기 검정에 필요한 기본장비, 이동식 기상측기 검정장비 및 기준기(基準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기상측기 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소유·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기상산업진흥법: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 대행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기상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기상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 법인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 “기상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을 지정하려면 지정신청의 방법, 기간 등을 관보,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4. 소 결

기상청 소관 법제 분야와 관련된 대행제도를 분석하였는바, 총 3개의 법률 중에서 2개의 법률에서 대행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1개의 법률에서는 대행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즉, 2개의 법률에서는 4유형의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다.

특히, 제4유형에 해당하는 대행제도를 분석하면,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제1항에서 “기상청장은 검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측기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 할 수 있다”는 규정과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에서도 “기상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기상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 법인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자격을 갖춘 개인, 법인·단체에게 대행사업자로 지정을 받도록 하여 대행하는 것은 “행정보조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제19절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제 분야

###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	○	○	×	○
2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	○	○	제4유형	○
3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	○	×	○
4	식품위생법	×	×	○	○	×	○
5	식품·의약품등의안전기술진흥법	○	○	○	○	4유형	○
6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	×	×	×	×	×
7	의료기기법	×	×	○	○	×	○
8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	○	×	○
9	축산물위생관리법	×	×	○	○	×	○
10	화장품법	×	×	○	○	×	○

###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 대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제1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생산조건,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심사·인증을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64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동법 제80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생산자단체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농업관련 법인 등을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7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8조에 따른 검사 업무나 제96조에 따른 재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위생 관련 기관을 수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사 또는 재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99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검정에필요한인력과시설을갖춘기관(검정기관)을 지정하여 제98조에 따른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검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3.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연구개발사업 대행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제4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전문기관)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의 보급,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과 관련된 업무 중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결정하는 사항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와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전문기관)를 말한다”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등을 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 4. 소 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제 분야와 관련하여 대행제도를 분석하였는바, 총 10개의 법률 중에서 2개의 법률에서 대행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8개의 법률에서는 대행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즉, 2개의 법률에서는 4유형의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다.

특히, 제4유형에 해당하는 대행제도를 분석하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제1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생산조건,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심사·인증을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하여금 ……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제4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전문기관)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의 보급,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과 관련된 업무 중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결정하는 사항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자격을 갖춘 개인, 법인·단체에게 대행사업자로 지정을 받도록 하여 대행하는 것은 “행정보조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제20절 금융위원회 소관 법제 분야

###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1	공인회계사법	×	×	○	○	×	○
2	공적자금상환기금법	×	×	○	○	×	○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 법률	○	×	○	○	제3유형	○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법률	×	×	○	○	×	○
5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 법률	×	×	○	×	×	○
6	금융지주회사법	×	×	○	○	×	○
7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 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 립에관한법률	×	×	○	○	×	○
8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 법률	×	×	○	○	×	○
9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	×	×	×	×	×
10	보험업법	×	×	×	×	×	×
11	상호저축은행법	○	○	○	○	제2유형	○
1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
13	신용보증기금법	×	×	○	○	×	○
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	○	제4유형	○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15	여신전문금융업법	○	×	○	×	제1유형	○
16	예금자보호법	○	○	○	×	제4유형	○
17	은행법	×	×	○	○	×	○
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	○	×	×	○
19	전자금융거래법	×	×	○	○	×	○
20	중소기업은행법	×	×	○	○	×	○
21	한국산업은행법	×	×	○	○	×	○
2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	○	○	×	○

##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임원의 업무 대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서는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기관 임원의 업무집행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상호저축은행법: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때 전문지식과 효율적인 업무 대행

「상호저축은행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제23조의11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3제1항·제4항, 제24조의4제2항, 제24조의5제7항·제8항, 제24조의6제1항, 제24조의7, 제24조의8제1항·제2항, 제24조의9제3항, 제24조의10, 제24조의11, 제24조의13, 제24조의14 및 제24조의15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때 전문지식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대행한 행위는 금융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제2항에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금융위원회를 대행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조제3항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제2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는 자기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다른 회사 채권에 대한 부채증명서 발급 업무 대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에 대하여 타인의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를 가공(加工)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다른 회사 채권에 대한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실채권 매입, 채권추심 등 타인의 권리실행을 위한 소송사건 등의 대리업무 등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또는 사회에 명백하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외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허가받은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업무는 해당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을 미리 받아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5.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 업무 대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제2항에서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6. 예금자보호법: 공매대행

「예금자보호법」 제20조제1항에서 “공사는 필요하면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대행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법 제20조에 따른 대행기관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부보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7. 소 결

금융위원회 소관 법제 분야와 관련하여 대행제도를 분석하였는바, 총 22개의 법률 중에서 5개의 법률에서 대행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17개의 법률에서는 대행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즉, 2개의 법률에서 제1유형 및 제2유형으로, 1개의 법률에서 제3유형으로, 2개의 법률에서는 4유형의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다.

특히, 제1유형에 해당하는 대행제도를 분석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제2항에서 “신용카드업자... 업무(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신용카드업자가 제3자에게 소관업무를 맡기면서, 그 업무의 대외적인 권한 행사는 신용카드사업자의 이름으로 처리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내부위임”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2유형에 해당되는 대행제도를 분석하면, 「상호저축은행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때 전문지식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대행한 행위는 금융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공공단체에 권한을 대행시키면서,

그 업무에 관한 대외적인 권한행사도 대행기관의 명의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권한의 이전이 있는 것으로 보며, “위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제3유형에 해당하는 대행제도를 보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기관 임원의 업무집행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 대행하는 경우에 이 때의 대행관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제21절 산림청 소관 법제 분야

### 1. 종괄표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	제1유형	○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	○	○	제4유형	○
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	○	×	○
4	산림보호법	×	×	○	○	×	○
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	○	○	제4유형	○
6	산림조합법	×	×	×	×	×	×
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	○	○	×	○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8	산지관리법	○	○	○	○	제4유형	○
9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	×	○	○	제4유형	○
10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	×	○	○	제4유형	○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	제4유형	○
12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	○	○	×	○

##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경영 대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서는 “산림청장은 다른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산림의 경영을 대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는 그 경영대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서 “경영대행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수립, 조림예정지정리·조림·숲가꾸기사업, 임목생산 사업, 사방사업, 임도의 신설·보수·구조개량 사업,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산불의 예방·진화·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그 밖에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업과 같다”고 정하고 있다.

##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탄소저장량의 측정 대행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서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15

조제2항은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에 탄소저장량의 측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으로 목재문화진흥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정보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 대행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은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또는 진흥원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5. 산지관리법: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업무 대행

「산지관리법」 제44조의2제1항은 “산림청장등은 산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 여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토석채취신고 또는 채석신고를 한 자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현지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의 사업장, 해당 산지,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산림청장등은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전국적인 일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에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와 관련하여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방제사업의 대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3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동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설계·감리는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 분야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방제사업의 대행과 관련하여 동법 제8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사업법인. 다만,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사업법인에 한정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된 국유림영림단,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에 해당하는 자에게 방제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와 관련하여 동법 제12조제6항에서 “감염목등을 목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모두베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사업법인. 다만,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사업법인에 한정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된 국유림영림단,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자. -다만, 원목생산업자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의 생산·유통 정보에 관한 지원·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 지원·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지원, 임업연구 성과의 기술 사업화 촉진 및 기술이전 지원, 산림자원 및 입지 조사 설계·평가 관련 업무 대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1항은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의 생산·유통 정보에 관한 지원,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및 제18조의7의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 지원, 임업연구 성과의 기술 사업화 촉진 및 기술이전 지원, 산림자원 및 입지 조사 설계·평가,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관리 및 산림분야 탄소배출권 확보사업, 그 밖에 임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업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묘목생산사업 대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묘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에게 묘목생산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 등록을 한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취급구분이 묘목인 자, 5천 제곱미터 이상의 포지(임차포지를 포함한다)를 보유한 자, 간이온실을 보유한 자(용기묘 생산에 한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3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병해충·산사태·산불 등 재해의 예방·방제 및 복구사업,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를 위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조 제3항에서도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을 소홀히 하여 대기(大氣) 정화나 수원(水源) 함양 등 공익적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산림사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에 대하여는 해당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법 제23조의2제2항에서도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림사업 중 제1항제1호(조림사업), 제2호(숲가꾸기 사업) 및 제5호(입목의 벌채·굴취 또는 이식 사업)의 사업을 국유림영림단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산물의 수입추천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동법 제41조제2항에서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 업무를 산림조합중앙회 등 산림 관련 전문단체나 유통 관련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9. 소 결

산림청 소관 법제 분야와 관련하여 대행제도를 분석하였는바, 총 12개의 법률 중에서 7개의 법률에서 대행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5개의 법률에서는 대행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즉, 1개의 법률에서 제1유형으로, 1개의 법률에서 제1유형으로, 6개의 법률에서는 4유형의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다.

특히, 제1유형에 해당하는 대행제도를 분석하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서 “산림청장은 다른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산림의 경영을 대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산림의 경영 실무 등을 보조기관이나 하급기관에게 소관사무를 맡기고, 그 업무에 관한 대외적인 권한행사는 산림청장의 이름으로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내부위임”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제22절 문화재청 소관 법제 분야

###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1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	×	×	○	○	×	○
2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	×	×	○	○	×	○
3	문화재보호기금법	×	×	×	×	×	×
4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	○	○	×	○

### 2. 소결

문화재청 소관 법제 분야와 관련하여 대행제도를 분석하였는바, 총 4개의 법률 중에서 4개의 법률 모두에서 대행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제23절 특허청 소관 법제 분야

###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1	디자인보호법	○	×	×	×	제4유형	×
2	발명진흥법	○	○	○	○	제4유형	○
3	상표법	○	×	×	×	제4유형	×

## 2.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디자인보호법」 제208조제2항은 “특허청장은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디자인보호법」 제208조를 분석하면,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은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를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와 같이 “대행”의 의미를 “위탁”의 개념과 혼용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이에 관한 명칭을 대행을 위탁으로 또는 본문의 내용을 위탁에서 대행으로 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된다.

## 3. 발명진흥법: 연구노트 활용사업·산업재산권정보화·산업재산권서비스업의 경쟁력강화사업·산업재산권보호사업 업무 대행

「발명진흥법」 제9조의2제2항은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0조의3제1항에서는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권정보화전문기관(정보화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0조의3제2항에서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4. 상표법: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상표법」 제217조제2항은 “특허청장은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상표법」도 「디자인보호법」 제208조와 동일하게 “대행”의 의미를 “위탁”의 개념과 혼용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이에 관한 명칭을 대행을 위탁으로 또는 본문의 내용을 위탁에서 대행으로 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 5. 소 결

특허청 소관 법제 분야와 관련하여 대행제도를 분석하였는바, 총 3개의 법률 중에서 3개의 법률에서 대행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특허청 관련 법제와 관련하여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의 경우에 “특허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수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행”의 의미를 “위탁”의 개념과 혼용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이에 관한 명칭을 대행을 위탁으로 또는 본문의 내용을 위탁에서 대행으로 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발명진흥법」 제9조의2제2항에서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의3제1항에서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권정보화전문기관(정보화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자격을 갖춘 개인, 법인·단체에게 대행사업자로 지정을 받도록 하여 대행하는 것은 “행정보조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제24절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제 분야

###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	○	○	×	○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	○	×	×	○
3	원자력안전법	○	○	○	○	제4유형	○

### 2. 원자력안전법: 업무대행자의 등록

「원자력안전법」 제54조제1항에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를 대행하여 방사선오염의 제거,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방사선안전보고서·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사용시설등의 설치에 대한 감리, 방사선안전관리,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애방지 관련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업무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동조제2항에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업무대행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소 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제 분야와 관련하여 대행제도를 분석하였는바, 총 3개의 법률 중에서 1개의 법률에서 대행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2개의 법률에서는 대행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제4유형에 해당되는 대행제도로 「원자력안전법」 제54조제1항을 보면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를 대행하여 방사선오염의 제거,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방사선안전보고서·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사용시설등의 설치에 대한 감리, 방사선안전관리,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애방지 관련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자격을 갖춘 개인, 법인·단체에게 대행사업자로 등록을 받도록 하여 대행하는 것은 “행정보조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제25절 교육부 소관 법제 분야

### 1. 종괄표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	○	×	×	○
2	교육공무원법	×	×	○	○	×	○
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	×	×	×	×
4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	×	×	×	×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	○	○	×	○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	○	○	×	○
7	사립학교법	×	×	×	×	×	×
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	○	○	×	○
9	영재교육 진흥법	×	×	○	○	×	○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10	유아교육법	×	×	○	○	×	○
11	인성교육진흥법	×	×	○	○	×	○
12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	×	○	○	×	○
13	자격기본법	×	×	○	○	×	○
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	○	×	×	○
15	초·중등교육법	×	×	○	○	×	○
1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	○	×	×	○
17	학교보건법	×	×	○	×	×	○
1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	×	○
19	학교체육 진흥법	×	×	○	○	×	○
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	○	○	×	○
21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	×	○	○	×	○
2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	○	○	×	○
23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	×	○	×	×	○

## 2. 소 결

교육부 소관 법제 분야와 관련하여 대행제도를 분석하였는바, 총 23개의 법률 중에서 23개의 법률 모두에서 대행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제26절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제 분야

###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	○	×	○
2	소비자보호법	○	×	○	○	제3유형	○
3	약관규제법	○	×	○	○	제3유형	○
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	○	제3유형	○
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	×	×	×	×
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	×	제3유형	×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	○	○	×	○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제3유형	○
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	○	×	×	○

### 2. 소비자보호법: 직무대행

「소비자보호법」 제39조제2항에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약관규제법: 직무대행

「약관규제법」 제24조제4항에 “협의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원장 직무대행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원장 직무대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에 따르면, “협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원장 직무대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상임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7. 소 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제 분야와 관련하여 대행제도를 분석하였는바, 총 9개의 법률 중에서 5개의 법률에서 대행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4개의 법률에서는 대행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법제 분야와 관련하여 대행제도의 유형으로 제3유형이라는 점이다. 즉 「소비자보호법」 제39조제2항상의 부장원의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규정, 「약관규제법」 제24조제4항상의 협회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규정, 「대리

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상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상의 협회회의 위원장이 직무상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상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규정을 보면 각 법률상의 위원장 또는 협회장의 직무를 부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을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법정대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제27절 통일부 소관 법제 분야

###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	○	○	×	○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	○	×	제1유형	○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
5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	○	○	×	○

##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 대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제4항에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대행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소 결

통일부 소관 법제 분야와 관련하여 대행제도를 분석하였는바, 총 5개의 법률 중에서 1개의 법률에서 대행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4개의 법률에서는 대행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제1유형에 해당되는 대행제도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제4항에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행정실무를 보조기관인 행정기관에 소관사무를 처리하도록 맡기면서 그 업무에 관한 대외적인 권한행사는 의장의 이름으로 처리된다는 측면에서 내부위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제28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제 분야

###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	×	×	제1유형	○
2	선거관리위원회법	×	×	○	○	×	○

### 2.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관할위원회가 전재되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업무 대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위원회가 전재되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선거 사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관할위원회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위탁선거 사무를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대행할 업무의 범위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관할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지정한 사람 또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나 다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공정선거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사무, 선거공보의 접수·확인 및 발송에 관한 사무, 선거벽보의 접수·확인·첩부 및 철거에 관한 사무, 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투표 및 개표의 관리에 관한 사무,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무로서 관할위원회가 정하는 사무의 위탁선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할위원회가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탁선거 사무를 행하게 할 때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무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소 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제 분야와 관련하여 대행제도를 분석하였는바, 총 2개의 법률 중에서 1개의 법률에서 대행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1개의 법률에서는 대행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제1유형에 해당되는 대행제도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위원회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선거 사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관할위원회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거사무 실무를 보조기관이나 하급기관에 대하여 사무처리를 맡기고 대외적인 권한 행사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이름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위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제29절 조달청 소관 법제 분야

###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	○	×	○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	○	○	제4유형	○

##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의 구매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시설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 대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의 구매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 시설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소 결

조달청 소관 법제 분야와 관련하여 대행제도를 분석하였는바, 총 2개의 법률 중에서 1개의 법률에서 대행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1개의 법률에서는 대행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제4유형에 해당되는 대행제도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의 구매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 시설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의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을 통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로써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공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때의 수요기관의 장은 행정보조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제30절 국가보훈처 소관 법제 분야

###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

### 2. 소 결

국가보훈처 소관 법제 분야와 관련하여 대행제도를 분석하였는바, 총 1개의 법률에서 대행제도는 규정하지 않고,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 제31절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제 분야

###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1	방송법	×	×	○	○	×	○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	○	○	×	○
3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	×	○	○	×	○
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	○	×	×	○

## 2. 소 결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제 분야와 관련하여 대행제도를 분석하였는바, 총 4개의 법률에서 대행제도는 규정하지 않고,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 제32절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 법제 분야

####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	○	×	×	○

## 2. 소 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 법제 분야와 관련하여 대행제도를 분석하였는바, 총 1개의 법률에서 대행제도는 규정하지 않고,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 제33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제 분야

####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1	행정심판법	×	×	×	×	×	×

## 2. 소 결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제 분야와 관련하여 대행제도를 분석하였는바, 총 1개의 법률에서 대행제도는 규정하지 않고,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 제34절 중소기업부 소관 법제 분야

#### 1. 총괄표

순번	법률명	국가임무 수행 방식				대행	위탁
		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	대행 근거 관련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법률) 보칙에 있는 조항	위임 및 위탁조항 (시행령) 보칙에 있는 조항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	○	○	제4유형	○
3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
4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	○	○	×	○
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	○	○	×	○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	○	○	제4유형	○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	○	제1유형	○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	○	○	×	○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	○	○	×	○
1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	○	○	×	○
1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별법	×	×	○	×	×	○

##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장정비사업 대행

시장정비사업 대행자의 지정규정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현황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대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제2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대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을 대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 특례”에 관하여 동법 제47조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시장으로서 시장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등 소유자가 설립한 시장정비사업조합 또는 시장정비사업법인,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시·군·구와 시장상인 등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법인에서 정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대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품의 생산 조건이나 품질에 대한 심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중소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시험연구원)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에게 제3항에 따른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장을 설립하려는 지방중소기업을 위한 공장설립 대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9제1항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중소기업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공장 설립 및 취득과 소유하고 있는 공장의 지방중소기업자에 대한 양도 또는 장기임대, 공장을 설립하려는 지방중소기업을 위한 공장설립 대행, 지방중소기업의 이전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이전을 희망하는 지방중소기업과 지방중소기업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5. 소 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제 분야와 관련된 대행제도를 분석하였는바, 총 11개의 법률 중에서 3개의 법률에서 대행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8개의 법률에서는 대행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즉, 1개의 법률에서는 제1유형으로, 2개의 법률에서는 4유형의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다.

특히, 제4유형에 해당하는 대행제도를 분석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현황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대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과 동조제2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대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을 대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품의 생산 조건이나 품질에 대한 심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중소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시험연구원)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에게 ...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을 보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자격을 갖춘 사인, 법인·단체 및 대행사업자로 지정, 허가, 등록 받은 자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정보조인”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1유형에 해당하는 대행제도를 보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9 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중소기업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공장 설립 및 취득과 소유하고 있는 공장의 지방중소기업자에 대한 양도 또는 장기임대, 공장을 설립하려는 지방중소기업을 위한 공장설립 대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범위에서 각 지역의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업무를 맡기고, 대외적인 권한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내부위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제35절 현행법상 유형별 대행제도의 종합적 분석

부 처	유 형	유형				계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국토교통부		2(1)	1	0	32	35
산업통상자원부		2	0	0	15	17
보건복지부		1(1)	1	0	7	9
환경부		0	0	1	16	17
문화체육관광부		2	0	0	2	4
농림축산식품부		2	3	0	7	12
고용노동부		1	1(1)	0	7	9
국방부		1	0	1	0	2
소방청		0	0	0	11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0	0	7	8
기획재정부		1	2	1	1(1)	5

부 처	유 형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계
법무부	2	0	0	1	3
해양수산부	2	1(1)	1	19	23
행정안전부	2	1	4	1	8
여성가족부	0	0	0	0	0
경찰청	0	0	0	1	1
기상청	0	0	0	2	2
식품의약품안전처	0	0	0	2	2
금융위원회	1	1	1	2	5
산림청	1	0	0	6	7
문화재청	0	0	0	0	0
특허청	0	0	0	3	3
원자력안전위원회	0	0	0	1	1
교육부	0	0	0	0	0
공정거래위원회	0	0	5	0	5
통일부	1	0	0	0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0	0	0	1
조달청	0	0	0	1	1
국가보훈처	0	0	0	0	0
방송통신위원회	0	0	0	0	0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0	0	0	0	0
국민권익위원회	0	0	0	0	0
중소벤처기업부	1	0	0	2	2
계	24	11	14	145	194

현행법상 대행제도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인 부·처·청 및 위원회에서 소관 관련 법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법률 24개, 제2유형에 해당하는 법률 11개, 제3유형에 해당하는 법률 14개, 제4유형에 해당하는 법률 145개로 총 194개의 법제에서 대행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대행제도와 관련하여 제4유형에 해당하는 입법유형이 다수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정부부처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32개, 해양수산부가 18개, 환경부가 16개, 국토교통부가 15개, 소방청이 11개로 대행제도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소방청의 5개 부·청이 93개로 많은 법률에서 대행제도를 활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외의 대행유형으로 제1유형과 제2유형 및 제3유형은 24개에서 11개로 그 수가 작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제1유형은 행정실무에 있어서 보조기관이나 하급기관에 대하여 소관사무의 처리를 맡기면서 그 업무에 관한 대외적인 권한 행사는 행정청의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2유형은 대행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책임하에서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가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3유형은 법적인 형식은 대행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실질적 법적인 효력 측면에서는 직무대리 또는 법정대리로서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4유형은 전문적·기술적인 분야의 자격을 갖춘 사인에게 대행사업자로 허가, 등록, 신고 등을 하게 하거나 지정을 받도록 하여 조사·검증·인증·평가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제4유형은 구체적인 집행에 있어서 업무의 성격상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업무의 집행 및 그 관리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본래의 행정기관의 감독을 받게 된다는 점을 특징으로 각각 발견할 수 있었다.



## 제5장 현행법상 대행제도 관련 법체계 개선방안

제1절 대행제도 관련 법체계 개선 방향

제2절 대행유형 중 입법사례 분석

제3절 대행제도 관련 입법론적 개선방안



## 제5장

# 현행법상 대행제도 관련 법체계 개선방안

### 제1절 대행제도 관련 법체계 개선 방향

현행법상 대행제도와 관련하여 법이론적으로 행정보조인, 위임·(민간)위탁, 내부위임 등으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실무상 대행이란 본래의 행정기관의 권한이 이전을 하지 않고 단순 행정업무를 대신하여 행하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있으나, 「여권법」상의 여권발급 대행제도와 「국세징수법」상의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제도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권한을 자신의 명의로 책임하에서 행사하되, 권한의 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거나, 대행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인 효과가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인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으로 본다”라는 점에서 대행제도를 유형별로 고찰하여 대행제도의 법체계적인 개선방향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행제도의 입법유형에 해당하는 제1유형은 「여권법」 제21조제1항에서 “외교부장은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領事)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권발급 대행제도가 여기에 해당되는바, 동법 제3조에 “여권은 외교부장이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분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기관위임의 입법방식으론 처리하기가 곤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1유형에 해당하는 대행의 개념은 행정실무에 있어서 보조기관이나 하급기관에 대하여 소관사무의 처리를 맡기면서 그 업무에 관한 대외적인 권한 행사는 행정청의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내부위임”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유형은 「국세징수법」 제61조제5항에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6항에서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형은 다른 행정주체(공공단체)에 권한을 대행시키면서, 그 업무에 관한 대외적 권한행사도 대행기관의 명의로 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항고소송에 있어서도 피고가 대행기관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61조제5항의 규정만으로는 공매처분의 권한은 세무서장으로 볼 수 있지만, 제61조제6항에서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고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권한의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권한의 이전이 있으면, “위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의 유형은 「헌법」 제71조에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규정과 「정부조직법」 제7조제2항에서 “차관(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 및 제12조제2항에서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을 통하여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 차관의 권한 대행, 부의장의 권한대행 등은 법정대리에 해당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유형의 대행제도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4유형은 현행법상 대행제도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결과만 보더라도 194개 중에 145개로 가장 많은 대행의 유형에 해당하는 바, 이 유형은 전문적·기술적인 분야의 자격을 갖춘 사인에게 대행사업자로 허가 및 등록 등을 하거나 지정을 받도록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보조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불법주차한 자동차의 견인, 폐기물의 수집·처리 등의 대행,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토양오염조사의 대행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권한은 여전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져 있지만, 계약을 통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보통이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공서비스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률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러한 조사대행기관이나 평가대행기관 등이 사법상 법인 또는 자연인이고 법령이 그 기관에 권한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의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에 의해 “민간위탁”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기관은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에 있어서는 업무의 성격상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업무의 집행 및 그 관리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행정청의 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행제도의 개념과 관련하여 홍정선 교수는 권한의 대행개념과 관련하여 행정보조인과 차이가 없다는 점, 박군성 교수는 광의의 위탁의 유형으로 대행위탁을 강학상 대행으로 정의하면서 협의의 위탁과 보조위탁(행정보조인)은 다르다는 점, 최정일 교수는 행정권한을 사인에게 맡기는 방식의 유형 중 행정사무의 대행으로 강학상 대행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이상철 전법제관은 행정법상의 입법례를 통하여 행정권한의 대행을 규정하고 있는 점, 김재규 전 법제국장은 대법원에서 대행을 위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위탁과 대행의 구별실익이 없다는 점, 최철호 교수는 대행을 민간위탁과 같고, 박 신 박사는 대행은 사실 위탁과 유사하고, 정남철 교수는 개별적으로 분석을 필요로 하나 불법주차 자동

차의 견인을 대행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을 행정보조인(行政補助人)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바, 행정실무상 위탁과 대행의 개념을 사무나 과제를 제3자나 다른 행정기관 등에게 맡겨 처리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항은 “권한의 이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1유형이나 제2유형은 “내부위임”이나 “위탁”의 방식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법적 명확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제3유형은 매우 제한적이고 특수한 경우에 인정된다는 점에서 통상의 ‘대행’과는 구별되어야 하고, “직무대리” 또는 “법정대리”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대행”제도로써 가장 문제가 되는 유형은 제4유형으로 판단되는바, 이러한 대행의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국가배상책임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바, 판례에서는 공무원으로 파악하고 있고, 제4유형에 해당하는 대행자는 행정보조인에 해당하며, 기능적인 의미에서는 공무원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4유형의 경우에도 법적인 근거 없이 사법상의 계약(예컨대 대집행의 경우에 철거업체와 그 직원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러한 철거작업을 행정청의 지시나 감독 없이 수행하는 경우)을 통하여 공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바, 이 경우에는 행정보조인이 아니라 단순히 “사인”에 해당하지만, 도구이론에 의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권한의 이전 여부를 기준으로 대행과 위탁(위임)을 구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여권법」상 여권발행대행과 같이 불가피하게 그 권한을 이전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여권법」에 영사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을 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외교부장관의 명의로 한다”는 점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행정실무상 행정기관의 권한이 명확히 이전되는 경우에는 “위임”이나 “위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4유형의 대행자는 이론적으로 “행정보조인”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입법자는 대행제도에 관한 적합한 업무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경우에 다수의 법령, 다수의 업무에 도입되어 있고, 행정기관의 업무수행방식 선택에 재량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입법 사례와 같이 대행제도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여 권한은 행정기관이 갖

되, 공사, 공단, 협회 등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책임소재나 감독관계의 불명확관계를 별도의 규정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행제도의 무분별한 도입은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고, 권력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입법적인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대행제도를 별도로 인정할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대행제도를 입법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선박검사와 같이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로서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대행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종국적으로, 현행법령에 ‘대행’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 유형 분석을 통하여 실무상 민간위탁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대행’이라는 용어를 ‘위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제2절 대행유형 중 입법사례 분석

### 1.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현행 「건축법」 제28조제1항에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제2항에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 「건축법」은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행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것으로 대행건축사에게 검사조서 및 확인조서를 받은 때에는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현행 「건축법」 제28조상의 대행제도는 제4유형의 형태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즉,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건축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도록 하고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령상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체크하여 제출하면 허가권자는 그에 따라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이라는 행정처분을 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행정보조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2.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및 보관업무의 대행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은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법인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주차위반차량에 대하여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이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법인 등)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의 임무를 대행업자로 하여금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조치를 하는 것은 행정청을 위하여 비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도구로서의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대행업자는 대행기관으로 행정사무가 대행업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대행사무의 효과는 원행정기관인 경찰서장이나 시장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3. 자동차검사의 대행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신규검사: 신규 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검사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하여 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동법 제44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종합검사를 대행하는 자(종합검사대행자)로 지정하여 종합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검사와 관련된 업무의 특성상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기가 곤란하고, 자동차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정비업자 중에 시설과 기술 인력을 갖춘 자를 지정업자로 지정하여 행정청의 업무를 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자동차대행업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동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하며, 검사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검사대행업자는 행정청의 업무를 직접 검사한다고 해서 행정청의 행위가 아니라 행정청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전문적인 대행기관을 지정을 통하여 행정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보조인”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 4. 공사·공단의 행정청 권한의 대행

「국세징수법」 제61조제5항에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조제6항에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제7항에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세징수법」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동규정을 해석해 보면, 다른 행정주체(공공단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권한을 대행시키면서, 그 업무에 관한 대외적 권한행사도 대행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명의로 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항고소송에 있어서도 피고가 대행기관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61조제5항의 규정만으로는 공매 처분의 권한은 세무서장으로 볼 수 있지만, 제61조제6항에서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고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권한의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권한의 이전 또는 행사”가 있으면, “위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행정부처 아래에 소속되어 있는 공사 및 공단의 업무대행을 보면, 행정기관의 사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다는 점, 실질적으로 대행업무의 효과도 행정기관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위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5. 상급관청이 하급 행정청의 사무 대행

현행 「도로법」 제3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이 하여야 하는 도로공사를 스스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도·군도 및 구도에 대한 도로공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3항에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31조에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81조제1항,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제89조제2항, 제89조제3항 단서 및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법 제118조에 “제32조제3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이 장(章)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도로관리청으로 본다”고 “권한대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하천법」 제28조제1항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하천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도로법」과 「하천법」은 도로와 하천에 관한 권한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공적인 목적과 재난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국가기관인 상급행정관청이 하급행정관청이 관리하는 도로나 하천에 관한 공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비용은 상급관청이 부담하는 행태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법」과 「하천법」에서 하급행정관청의 사무대행을 상급행정관청으로 대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일시적이고 특별한 도로공사나 하천공사를 하기 위하여 법률을 개정

하기 보다는 그대로 두고 일시적으로 필요한 공사를 상급행정관청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상급행정기관이 대행자가 되는 사례로는 「도로법」과 「하천법」상의 도로공사와 하천공사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하급기관이나 공사, 공단, 공법인, 단체 또는 사인을 대행자로 한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 6. 선박검사의 대행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에 “검사등 업무의 대행”에 관한 규정하고 있는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 건조검사증서의 교부 및 별도건조검사,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및 선박검사증서의 교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검사 및 임시변경증의 교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및 임시항해검사증서의 교부,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 및 국제협약증서의 교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면의 승인 및 승인표시,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제18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 검정증서의 교부 및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 제2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 확인서의 교부 및 확인을 나타내는 표시,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 도면의 승인 및 승인표시, 예비검사증서의 교부 및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원성자료의 승인,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 및 제한하중등확인서의 교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의 작성 및 내용기재,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승인,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 및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의 교부에 해당하는 건조검사·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조제2항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보험의 가입·유지를 위하여 선박의 등록 및 감항성에 관한 평가의 업무(선급업무(船級業務))를 하는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선급법인)에게 해당선급법인이 관리하는 명부에 등록하였거나 등록하고자 하는 선박(선급등록선박)에 한하여 제1항 각 호의 검사 등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선박안전법」에 선박검사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다수의 사람과 동산 등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해상교통수단으로서 경제적인 가치가 크기 때문에 사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안전성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선박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합여부를 판정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선박검사제도의 입법목적으로 판단된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특수법인인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사단법인인 한국선급으로 하여금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대행기관인 공단과 선급법인은 선박검사를 하고 선박검사증서의 교부시 자기의 이름으로 하며, 만약 대행기관의 검사를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 등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권한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법인인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사단법인인 한국선급의 대행업자는 “행정보조인”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7. 측정대행업자의 오염물질 측정대행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0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수질오염물질의 측정”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1항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약식평가서의 서류(환경영향평가서등)를 작성할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기환경보전법」상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 업무를 대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그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유형은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의무를 지키기 위하여 행정청에 등록된 대행업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상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업무를 대행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시키는 것은 대기오염 측정, 수질오염 측정에 관련하여 전문기관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며,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측정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킴으로써 행정청에 등록된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사업자들은 오염기준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는 지를 정기적으로 측정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측정대행업자의 측정대행의 경우에도 “행정보조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8.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대행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폐기물관리법」 제14조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업무이다. 즉 생활폐기물의 처리업무는 행정관청의 기본적인 사무이면서 권력적 사무라기보다는 행정서비스업무라는 관점에서 공공성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상의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허가를 받아야 그 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의 의무자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대행계약을 통하여 대행구역을 지정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행정청의 행정서비스 사무를 대행기관인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허가 받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를 “행정보조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 9.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하수도법」 제18조제1항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9조의2제1항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에 해당하는 자(관리대행업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의 관리대행제도는 2013년 2월 2일에 동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공공하수도 관리의 “위탁”제도에서 “대행”제도로 개정되었다. 동법률의 개정취지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관리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관리대행업을 신설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일정한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춘 대행업자로 하여금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공하수도관리 대행업자가 되기 위하여는 장비, 기술, 인력을 갖추어서 하수도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야만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이러한 대행업자의 권한 행사는 관할 행정청의 명의로 책임하에서 행하고, 그 권한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업자인 공공하수도대행업자가 수행하며, 관할 행정청의 감독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의 관리대행업자”도 “행정보조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10. 소 결

앞에서도 적시한바와 같이 대행의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을 분석한바와 같이 실제 대행유형 중 입법사례 분석하였다. 예컨대,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및 보관업무의 대행, 자동차 검사대행, 공사 및 공단의 행정청의 권한, 상급행정관청의 하급행정관청의 사무 대행, 측정대행업자의 오염물질 측정 대행, 선박검사의 대행,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에 관련하여 분석해 본 결과 “공사 및 공단의 행정청의 권한 대행”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과 관련하여 다른 행정주체(공공단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권한을 대행시키면서, 그 업무에 관한 대외적 권한행사도 대행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명의로 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항고소송에 있어서도 피고가 대행기관이 된다는 점이다. 즉, 「국세징수법」 제61조제6항에서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고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상의 권한의 이전 또는 행사”가 있으면, “위

탁”에 해당하는 제2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외의 대행의 경우에는 제4의 유형에 해당하는 “행정보조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하급행정관청이 상급행정관청의 사무를 대행하는 유형으로 「여권법」 제21조제1항에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領事)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아울러서 여권발급 대행제도가 여기에 해당되는바, 「여권법」 제3조에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권발급 업무를 분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기관위임의 입법방식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하급행정관청이 상급행정관청의 사무를 대행하는 것의 입법사례에 해당하는 여권발급업무는 행정실무에 있어서 보조기관이나 하급기관에 대하여 소관사무의 처리를 맡기면서 그 업무에 관한 대외적인 권한 행사는 행정청의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내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현행법령상 대행제도를 분석하였는바, 대행의 유형으로 제1유형 24개, 제2유형 11개, 제3유형 14개, 제4유형으로 145개로 총 194개의 법률에서 대행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관련 규정 방식이 다양하고, 대행유형별로 특별한 규정방식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처럼 대행제도는 국가의 공임무 수행방식 중 민간에 완전한 이양이나 위임·위탁이 아닌 중간자적인 법적지위를 갖고 있는 바, 이는 그 업무가 공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하급행정관청이 상급행정관청의 사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전문적·기술적인 분야의 자격을 갖춘 사인에게 대행사업자로 허가 및 등록 등을 하거나 지정을 받은 대행법인을 통하여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종국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국가는 모든 공행정 업무를 국가가 직접 수행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의 현대국가는 정치, 경제, 사

회, 문화, 교육, 복지, 안전, 검사 등 영역에서 공행정임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가에 의하여 수행해오던 공적인 임무를 민간에 임무나 기능을 위임 및 위탁하거나 민간영역으로 통째로 이전하여 국가의 공행정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가 독점적인 지위에서 모든 공행정 업무를 수행해 오던 것을 어느 정도로 민간에 개방 할 것인지, 어느 정도로 전문성을 갖춘 자를 활용하여 해당 사무를 확대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몫이기 때문에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법을 통하여 해결점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제3절 대행제도 관련 입법론적 개선방안

#### 1. “내부위임”형 대행관련 법제 개선

내부위임형 대행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권한을 그 명의로 책임하에서 행사를 하되 권한의 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도록 하는 유형을 말하는 바, 예컨대, 「여권법」 제21조제1항의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사무의 일부를 영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여권발급업무행위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는 공증행위로써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외교부장관이 모든 공행정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여권발급 업무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외교부장관이 영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9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중소기업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공장 설립 및 취득과 소유하고 있는 공장의 지방중소기업자에 대한 양도 또는 장기임대, 공장을 설립하려는 지방중소기업을 위한 공장설립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지역의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중소기

업진흥공단을 통하여 업무를 맡기고, 대외적인 권한 행사는 중소기업본부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내부위임형 대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내부위임형 대행은 대행기관은 행정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자신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내부위임”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기관의 권한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사·공단 및 민간기관에게 이전하는 입법취지라면 과감하게 위임·위탁규정을 통하여 이전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 <“내부위임”형 대행제도 입법모델(안)>

현행 「여권법」	「여권법」 개정(안)
제3조(발급권자) 여권은 <u>외교부장관</u> 이 발급한다.	제3조(발급권자) 여권은 <u>외교부장관의 명의로</u> 발급한다.
제21조(사무의 대행 등) ① <u>외교부장관</u> 은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영사(領事)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u>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u>외교부장관</u> 은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영사(領事)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u> 할 수 있다.
제22조(수수료) ① 여권 등(관용여권 및 외교관 여권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 중 사무의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제22조(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 2. “위탁”형 대행 관련 법제 개선

위탁형 대행제도는 대행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가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된 것을 말한다.<sup>78)</sup> 예를 들면, 「국세징수법」 제61조상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도로법」 제112조제1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고”, 동조제2항에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는 점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위탁형 대행제도는 대행기관이 본래 행정기관으로부터 지휘 또는 감독을 받아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동 유형의 입법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본래 행정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본래 행정기관의 지시나 감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탁형 대행제도는 본래 행정기관으로 부터 대행기관에게 행정권한의 이전이 있다는 점에서 “대행”개념보다 명확하게 “위탁”의 개념을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78) 2017년도 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 지침에서 부터 “민간위탁사업비”와 “법정민간대행사업비”를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편전에는 “민간위탁금 : 민간에게 위탁관리 시키는 기금성격의 사업비, 민간대행사업비 : 법령에 의해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민간위탁사업비 : 국가사무를 민간의 명·책임하에 행사(민간위탁)시 비용, 법정민간대행사업비 : 법령에 의하여 국가사무를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비”로 개정하게 되었다. 이처럼 예산안의 지침은 민간전문기관이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경비가 절감되거나 효율성이 제고되는 사업으로 법령에 명확한 대행규정이 있는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는 대행을 권한이 위임된 것으로 보고 항고소송의 피고도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된다고 보고 있어 대행을 위임이나 위탁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위탁”형 대행제도의 입법모델(안)>

현행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개정(안)
<p><b>제61조(공매) ⑤</b>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u>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u>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u></p> <p>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p> <p>⑦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p> <p>⑧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6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p>	<p><b>제61조(공매) ⑤</b>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위탁</u>할 수 있다.</p> <p>⑥ &lt;삭제&gt;</p> <p>⑦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p> <p>⑧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 공매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현행 「도로법」	「도로법」 개정(안)
<p><b>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①</b>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u>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b>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위탁) ①</b>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한국도로공사에 위탁</u> 할 수 있다.</p>

<p>②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u>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u>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u>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u></p>	<p>② &lt;삭제&gt;</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p>	<p>③ 한국도로공사가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p>
<p>제109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li> <li>2. 제110조제3항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li> </ol>	<p>제109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li> <li>2. 제110조제3항 및 제112조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li> </ol>

### 3. “직무대리·법정대리”형 대행 관련 법제 개선

“직무대리·법정대리”형 대행은 법적인 형식은 대행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실질적 법적인 효력측면에서는 직무대리 또는 법정대리로서의 의미로 사용되어진다. 예를 들면 현행 「헌법」 제71조에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규정과 「정부조직법」 제7조제2항에서 “차관(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 및 제12조제2항에서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을 통하여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 차관의 권한 대행, 부의장의 권한대행 등은 “직무대리” 또는 “법정대리”로서의 대행개념으로 포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직무대리·법정대리”형 대행제도의 입법모델(안)>

현행 「헌법」	「헌법」 개정(안)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현행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② 차관(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② 차관(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국무회의)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국무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리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4. “행정보조인”형 대행 관련 법제 개선

현행법상 대행제도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결과 194개 중에 145개로 가장 많은 대행의 유형으로 “행정보조인”형 대행을 말하는 바, 이 유형은 전문적·기술적인 분야의 자격을 갖춘 사인에게 대행사업자로 허가 및 등록 등을 하게 하거나 지정을 받도록 하여 조사·검증·인증·평가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보조인’형 대행제도라고 판단된다.

예컨대, 불법주차한 자동차의 견인, 폐기물의 수집·처리 등의 대행,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토양오염조사의 대행, 건설기계의 검사 대행, 건축법상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등의 많은 대행관련 규정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행정보조인’형 대행제도의 경우에 행정권한은 여전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져 있지만, 계약을 통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보통이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공서비스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률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대행기관이나 평가대행기관 등이 사법상 법인 또는 자연인이고 법령이 그 기관에 권한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에 의해 “민간위탁”의 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기관은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보조인’형 대행제도는 구체적인 집행에 있어서 업무의 성격상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업무의 집행 및 그 관리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본래의 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행정보조인”형 대행 관련 입법모델(안)>

**제00조 (○○○검사업무의 대행)** ① ○○○○○장관/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은 제00조에 관한 (조사/검증/점검/확인/평가/인증 등)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공사/공단이나 단체, 또는 ○○에 관한 시설/인력/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로 허가/지정/등록/신고를 한 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00항에 따라 허가/지정/등록/신고를 받으려는 자는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인력/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장관/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등록/신고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지정/등록/신고를 취소하거나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지정/등록/신고를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허가/지정/등록신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검증/점검/확인/평가/인증 등)업무를 한 경우
4. 경영부실 등의 사유로 검사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의 이법 또는 이 법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④ ○○○○○장관/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조사/검증/점검/확인/평가/인증 등)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검증/점검/확인/평가/인증 등)업무를 대행하는 자(또는 ○○○○○공사/공단의 임직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별칙적용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독립하여 입법하는 모델(안)>

**제00조 (별칙적용시의 공무원의 의제)** 제00조제00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검증/점검/확인/평가/인증 등)업무를 대행하는 자(또는 ○○○○○공사/공단의 임직원) 및 제00조제00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검증/점검/확인/평가/인증 등)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참고문헌**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중권, “민간화와 국가유보”, 『행정법 기본연구 Ⅱ』(법문사, 2009), 435면.
- 박균성, “공무수탁자의 법적지위와 손해배상책임” 『행정판례연구』 X V -1(박영사, 2010), 160면.
- 박균성, 『행정법법론(하)』(박영사, 2015), 42면.
-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박영사, 2005), 272면.
- 법제처, 『대한민국 법제 60년사』, 2008/8, 216-217면.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12, 446면.
- 국회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6, 625면.
- 오세혁, 『법철학사』(세창출판사, 2004), 124면.
- 이상덕, 『營造物의 개념과 이론』(경인문화사, 2006), 368면.
- 이원우, 『경제규제법론』(홍문사, 2010), 743면.
- 정남철, 『現代行政의 作用形式』(법문사, 2016), 435면.
- 차민식, 『국가임무의 機能私化와 국가책임』(경인출판사, 2011), 72면.
- 최인숙, 『칸트』(살림출판사, 2005), 73면.

최종고, 『법철학』(박영사, 2002), 83~84면.

한수웅, 『헌법학』(법문사, 2015), 399면.

한스 벨첵/ 박은정(역),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삼영사, 2002/9), 172-173면.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박영사, 2008), 174-175면.

홍정선,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4-5면.

홍정선, 『행정법원론(하)』(박영사, 2015), 26면.

## 2. 국내논문

김승열, “정부업무 민간위탁의 한계와 공정성 확보방안”, 『법제』(법제처, 2000/9), 60면.

김재규, “행정권한의 위임·위탁·대리·대행 관련 입법모델 검토” 『입법모델Ⅱ』(법제처, 2002), 397면.

박신, “행정권한의 대행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제30집 제2호(한국공법학회, 2001), 379면.

이상수, “행정사무의 대행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서울法學』(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2), 286-287면.

이상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입법론상 문제점-공무수탁사인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0/4), 239면.

이상철, “위임·위탁·대리·대행”, 『법제』(법제처, 2000/8), 32면.

- 이원우,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법학방법론의 과제” 『행정법연구』48(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7/2), 93면.
- 이원우, “민영화에 대한 법적 논의의 기초”, 『한림법학 FORUM 7』(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11), 217면.
- 이재승, “칸트의 국가론” 『민주법학』제17권(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0), 104면.
- 이종영, “공공업무 민영화의 법적 한계” 『법학논문집』제24집제1호(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2), 292면.
- 정하중, “민간에 의한 공행정수행” 『공법연구』재30집제1호(한국공법학회, 2001/12), 463면.
- 조정찬, “사인에 의한 행정에 관한 연구” 『법제』(법제처, 1996/2), 110면.
- 좌중훈, “토마스 홉스의 사상에서 본 절대적 국가권력과 국민의 자유” 『법철학연구』(한국법철학회, 1999), 81~108면.
- 최정일, “민간업체에 의한 불법 주정차 자동차 견인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경찰법연구』제13권제1호, (한국경찰학회, 2015), 47면.
- 최철호,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적기준의 설정과 한계”, 『법학논총』 제20집(승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8), 273면.
- 홍준형, “사인에 의한 행정임무의 수행” 『공법연구』재39집제2호(한국공법학회, 2010/12), 635면.

### 3. 홈페이지

[http://search.ccourt.go.kr/th/pr/th/pr0101\\_P1.do](http://search.ccourt.go.kr/th/pr/th/pr0101_P1.do)<2017.5.23.>; **헌재 2002. 5. 30. 2000헌마81, 판례집 14-1**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pageIndex=2&searchCondition=3&searchKeyword=%eb%8c%80%ed%96%89&csSeq=106019&rowIdx=12><2017.5.23.>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pageIndex=1&searchCondition=3&searchKeyword=%eb%8c%80%ed%96%89&csSeq=106849&rowIdx=10><2017.5.23.>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pageIndex=2&searchCondition=3&searchKeyword=%eb%8c%80%ed%96%89&csSeq=105156&rowIdx=15><2017.5.23.>

<http://www.servat.unibe.ch/dfr/bv007198.html#Opinion><2017.8.30.>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국  
회



## 부 록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대행조문		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가맹거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5.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6.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의 대행
권한 위탁	법률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 2.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
	시행령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가맹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사무 위탁	법률	제31조의2(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가맹본부에 대한 교육·연수 2.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연수 3. 가맹거래사에 대한 교육·연수(제2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p>포함한다)</p> <p>4. 가맹본부가 이 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자율 준수프로그램의 보급·확산</p> <p>5. 그 밖에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p>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환경부)

대행조문		제2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비용 부담 등) ① 공공처리 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직접 수집·운반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1항제1호의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농협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제4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② 환경부장관은 제37조의2에 따른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6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 2. 법 제37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공에 관한 업무 3. 법 제37조의2제6항에 따른 비용 징수에 관한 업무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감사원법(감사원)

대행조문		제50조의2(감사사무의 대행)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사무(사실의 조사·확인 및 분석 등의 사무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한정한다) 중 일부를 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⑤ 변상책임자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변상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관계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집행한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대행조문		제56조(소독업무의 대행)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7조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8호·제9호·제13호, 제50조 및 제5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제76조(위임 및 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p>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2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sup>79)</sup>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li> <li>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li> <li>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li> <li>4.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li> </ol>
사무 위탁	법률	<p>제24조(정기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이하 “정기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디프테리아</li> <li>2. 폴리오</li> <li>3. 백일해</li> <li>4. 홍역</li> <li>5. 파상풍</li> <li>6. 결핵</li> <li>7. B형간염</li> <li>8. 유행성이하선염</li> <li>9. 풍진</li> <li>10. 수두</li> <li>11. 일본뇌염</li> <li>12. b형해모필루스인플루엔자</li> <li>13. 폐렴구균</li> <li>1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li> </ol> <p>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79)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병원체 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 8.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

		<p>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li> <li>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p>
	시행령	<p>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p>

□ 건설기계관리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p>제14조(검사대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기계의 검사에 관한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권한 위탁	<p>법률</p> <p>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제1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 형식신고의 접수, 형식변경승인, 형식변경신고의 접수업무와 제19조에 따른 확인검사업무,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업무 및 제39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li> </ol>

		<p>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p> <p>2. 검사대행자</p> <p>3. 제32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단체</p> <p>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p>
	시행령	<p>제18조의3(업무의 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 각각 위탁한다.</p> <p>1.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 업무, 형식신고의 접수 및 형식변경신고의 접수 업무, 법 제19조에 따른 확인검사 업무: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 다만, 타워크레인에 대한 형식신고의 접수 및 형식변경신고의 접수 업무와 확인검사 업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검사대행자(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대행자에 한정한다)에게 위탁한다.</p> <p>3. 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업무 및 법 제39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 업무: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p>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③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취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41조(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li> <li>2.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가족관계·소득·재산 자료 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li> </ol>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li> <li>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예상가격 등의 통보</li> <li>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매수청구인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의 부과</li> <li>4. 제31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의 접수</li> <li>5. 제31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 및 매수가격의 통보</li> </ol>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통일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6조(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②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용수, 철도, 통신, 전기 등 기반시설은 정부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에게 위탁하여 설치할 수 있다.</p> <p>제8조(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권한과 업무의 일부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3조(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의 적용) 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이에 고용된 남한주민(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남한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연금법」</li> <li>2. 「국민건강보험법」</li> <li>3. 「고용보험법」</li> <li>4. 「산업재해보상보험법」</li> <li>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li> </ol> <p>④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5조(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 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근로기준법」</li> <li>2. 「최저임금법」</li> <li>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li> <li>4. 「임금채권보장법」</li> <li>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li> </ol> <p>②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근로감독관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시행령</p>	<p>제10조(분사무소의 설치·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은 각각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분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설치할 수 있다.</p> <p>③ 개성공업지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각 공단은 접경지(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분사무소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11조(관할)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적용과 관련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의 장이 수행한다.</p>

	<p>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적용과 관련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한다.</p> <p>③ 법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의료법」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5조, 제48조, 제61조 및 제67조 등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권한 또는 업무는 파주시장이 행사 또는 수행한다.</p> <p>⑤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 또는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가 행사하거나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li> <li>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li> </ol> <p>⑥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접경지를 관할하는 근로감독관이 행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근로기준법」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권한</li> <li>2. 「최저임금법」 제26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권한</li> </ol> <p>⑦ 법 제1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행정관청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음 각 목의 노동조합 및 단위노동조합 : 고용노동부장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li> <li>나. 개성공업지구와 다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쳐있는 단위노동조합</li> </ol> </li> <li>2. 개성공업지구와 다른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단위노동조합 : 경기도지사</li> <li>3. 개성공업지구 내의 단위노동조합 : 파주시장</li> </ol>
--	--

□ 건강검진기본법(보건복지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27조(위임 및 위탁)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그 밖에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41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대행조문	제17조(업무의 대행) ① 공제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및 체신관 서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지급</li> <li>2.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수납</li> </ol>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li> <li>2. 건설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li> <li>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프로그램 시행</li> <li>4. 고용관리 책임자의 교육 및 연수</li> <li>5.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취업촉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li> </ol>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인력·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3조의3(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각각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li> <li>2.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능인력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사업: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li> <li>3.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 「직업안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건설업 관련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li> </ol>

	<p>4.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프로그램 시행 사업: 공제회</p> <p>5.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관리 책임자의 교육 및 연수 사업: 공제회</p> <p>6.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취업촉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공제회</p>
--	--

□ 건설기술 진흥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제8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협회, 그 밖에 건설기술 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16조(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환경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하며,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사무 위탁	법률	제8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협회, 그 밖에 건설기술 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17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p>가. 제31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신청서의 접수</p> <p>나.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p> <p>다.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유지·관리</p> <p>라. 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p> <p>마. 제35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의 접수</p> <p>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p> <p>3.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보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p> <p>4.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신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p> <p>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접수</p> <p>나.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p> <p>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p> <p>라.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p> <p>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현황의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반납 접수 및 근무처·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의 업무</p> <p>6.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휴업·폐업 신고 사실의 접수 및 관리</p> <p>7. 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p> <p>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접수·확인·관리 및 건설기술용역업자 현황의 관리</p> <p>나. 제45조제2항에 따라 인·허가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감리용역 실적의 접수·확인·관리</p> <p>다. 제4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직접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접수·확인·관리</p> <p>라. 제45조제7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p> <p>8.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내용의 접수 및 관리</p> <p>9.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통보하는 용역평가·시공평가</p>
--	--

	<p>결과의 접수 및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시행과 그 결과의 공개</p> <p>10.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별점의 종합관리</p> <p>11. 법 제58조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p> <p>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공장인증 신청의 접수 및 신청에 대한 전문·기술적인 심사</p> <p>나.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운영 실태 및 사후관리 상태의 조사를 위한 전문·기술적인 사항</p> <p>12.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p> <p>가.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되는 종합보고서의 접수</p> <p>나.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보존·관리</p> <p>다. 제101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열람 및 그 사본의 발급</p> <p>12의2. 법 제62조제10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와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운영</p> <p>13.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p> <p>14.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제출하는 설계도서의 안전성 검토 결과에 관한 접수·확인·관리</p> <p>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li> <li>2.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주택법」 또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li> <li>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li> <li>4.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li> <li>5.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li> <li>6. 한국시설안전공단</li> </ol> <p>③ 시·도지사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p>
--	--

		<p>는 기관에 위탁한다.</p> <p>1.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p> <p>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p> <p>나.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p> <p>다.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p> <p>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 양도·합병의 신고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p>
--	--	---

## □ 건축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제8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제1항과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103조(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19조의9(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 □ 건축사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 신고의 접수 2.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련자 신고의 접수 및 이 영 제6조의7에 따른 실무수련의 확인 등 3.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관리 4. 법 제18조, 제18조의3제2항 및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등록의 접수, 등록증 발급 및 반납 5. 법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실적의 관리 등 6. 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축사에 대한 실무교육 실시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①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조사·연구 2. 해외진출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 3.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협조 4. 해외진출 관련 교육훈련 5.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	---

		<p>하는 사항</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p>
권한 위탁	법률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위탁한다.
사무 위탁	법률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위탁한다.

□ 경비업법(경찰청)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27조(위임 및 위탁) ②경찰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시험의 관리와 경비지도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경비업무에 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경제교육지원법(기획재정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10조(업무의 위탁)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업무 중 경제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업무 중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3.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업무 중 경제교육인력의 교육활동 지원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산업통상자원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③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경찰청)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8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은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p> <p>제10조(복지시설등의 설치·운영) ③ 경찰청장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6조(의료지원) ⑥ 정신건강검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정신건강검사 대상자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민간 심리상담 전문기관에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상태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p> <p>제8조(복지시설등의 운영) ① 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복지시설등의 운영 예산이 절감되는 경우</li> <li>2. 복지시설등 이용자의 편익이 증가하는 경우</li> <li>3. 그 밖에 경찰청장이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li> </ol>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보건복지부)

대행조문	<p>제8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제품 등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품목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령친화제품등의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li> <li>2.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li> <li>3.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li> </ol> <p>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9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대행조문		<p>제15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자등과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이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그 시설 및 용기등을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면 그 시설 및 용기등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압가스제조자로서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li> <li>2. 제4조제3항에 따라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고압가스저장장자”라 한다)로서 비가연성·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장</li> </ol> <p>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과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p>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34조의3(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4조의2에 따른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p>제36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 경우는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로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li> <li>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감리 및 완성검사</li> <li>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li> <li>4.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li> <li>5.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검사</li> <li>6.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li> <li>7. 제21조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신고의 접수</li> <li>8.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li> <li>9.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에 관한 명령</li> <li>10. 제35조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및 지도·감독</li> </ol> <p>② 이 법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가연성 또는 독성 가스 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li> <li>2. 제17조제1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 중 냉동기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li> <li>3. 제17조제2항에 따른 용기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li> <li>4.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정기검사</li> </ol>
<p>시행령</p>	<p>제23조의6(부담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석유공사에 위탁한다.</p>

	<p>제25조(업무의 위탁)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li> <li>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감리 및 완성검사</li> <li>3.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수시검사</li> <li>4.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li> <li>5.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과 검사</li> <li>6.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완성검사</li> <li>7. 법 제21조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신고의 접수</li> <li>8.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li> <li>9.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에 관한 명령</li> <li>10.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및 지도·감독</li> </ol> <p>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업무와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구분은 해당 업무의 소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li> <li>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냉동기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li> <li>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용기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li> <li>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정기검사</li> </ol>
--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32조(위임 및 위탁)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양로지원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의3에 따른 수당과 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제1항제11호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되었거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한다.
사무 위탁	법률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 및 이 조 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모든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진료하고, 그 외의 사람에게는 그 결정·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만을 진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질병은 진료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 2. 타인에 의한 위해(危害) 3. 유전(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제외한다)

	<p>4. 군 복무 전에 발생한 경우(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제외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진료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그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p> <p>제8조의2(양로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p> <p>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p> <p>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양로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 외의 양로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p>
시행령	<p>제8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진료할 때 고도의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거나 진료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대행조문	<p>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①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법인등”이라 한</p>
------	--

	<p>다)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권한 위탁</p>	<p>법률</p> <p>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험료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li> <li>2. 보험료등의 체납관리</li> </ol> <p>제4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②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업무 중 일부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시행령</p> <p>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법 제46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li> <li>2. 보험료 등 잘못 낸 금액의 반환금 지급에 관한 업무</li> <li>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li> </ol>
<p>사무 위탁</p>	<p>법률</p> <p>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로 할 수 있다.</p>

		<p>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에 관한 업무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4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②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업무 중 일부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18조의6(업무의 위탁기관)법 제15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말한다.</p> <p>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법 제46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li> <li>2. 보험료 등 잘못 낸 금액의 반환금 지급에 관한 업무</li> <li>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li> </ol>

□ 고용보험법(고용노동부)

	대행조문	<p>제11조(보험 관련 조사·연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와 보험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36조(업무의 대행)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9조 및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권한 위탁	법률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전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p>제145조(권한의 위임 등)</p> <p>②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li> <li>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의 수리</li> <li>3. 법 제108조에 따른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탁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li> <li>4. 법 제109조에 따른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서류의 조사(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li> <li>5. 법 제1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li> <li>6.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한 보험 가입 신청의 수리 및 가입 신청 사실의 통보</li> <li>7.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의 탈퇴신청의 수리</li> <li>8. 제4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해임의 신고 수리(대리인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li> <li>8의2. 제35조제7호에 따른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을 위한 대부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li> <li>9. 제38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비용의 지원</li> <li>10. 제3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비용의 용자·지원 및 용자금·지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li> <li>11. 제45조에 따른 능력개발비용의 대부에 관한 사항</li> <li>12. 제47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와 대부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li> </ol> <p>③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li> <li>2.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 중 민간 기능경기대회 비용의 지원</li> <li>3. 법 제108조에 따른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li> <li>4. 법 제109조에 따른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li> </ol>
--	-----	---

	<p>5. 법 제1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p> <p>7. 제46조에 따른 능력개발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p> <p>8. 제4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대부와 대부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p> <p>9. 제4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지원과 지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p> <p>11.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검정 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p> <p>11의2.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훈련 매체의 개발·편찬과 보급사업</p> <p>12. 제5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지원 사업</p> <p>13.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p> <p>14. 제52조제1항제10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나 근로자의 핵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p> <p>15. 제52조제1항제11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p> <p>16. 제52조제1항제12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인력개발 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p> <p>17. 제5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훈련 지원 사업</p> <p>④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고용창출사업에 대한 지원, 제37조에 따른 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제38조제2항에 따른 고용촉진 시설(제38조제1항제5호의 고용촉진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비용 지원,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가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과 제5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권한의 일부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이하 “한국노동연구원”이라 한</p>
--	--

		<p>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탁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⑤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고용관리진단 등 지원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노동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p> <p>⑥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장비 등의 지원, 법 제33조에 따른 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용정보의 수집·분석과 직업안정기관에의 제공</li> <li>2. 직업·훈련 상담 등 직업 지도에 관한 기법의 연구·개발과 보급</li> <li>3.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직업소개의 평가와 지원</li> <li>4.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중 고용보험사업에 관련된 전산망의 운용</li> </ol> <p>⑦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4호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업무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위탁한다.</p>
사무 위탁	법률	<p>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 개발·향상과 인력의 원활한 수급(需給)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53조(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 실시) ③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p>

## □ 고용정책 기본법(고용노동부)

대행조문		<p>제13조(고용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정책이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⑧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제2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재출연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li> <li>2. 민간연구기관</li> </ol>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34조(실업대책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40조(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정보 등의 수집·제공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35조(실업대책사업의 위탁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업자 지원사업</li> <li>2.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사업</li> <li>3. 제34조 각 호에 따른 실업대책사업</li> </ol>

## □ 골재채취법(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행조문	<p>제4조(골재자원조사)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자원 조사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4조의2(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골재자원조사 결과와 그 밖에 골재자원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5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9조(기술개발의 권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골재채취업자에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연구·개발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10조(골재채취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골재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골재채취업자나 골재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골재자원조사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li> <li>2. 골재채취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li> <li>3. 골재채취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li> <li>4. 골재채취에 따른 공해(公害) 및 재해 방지시설 자금의 융자</li> <li>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li> </ol>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	--

		<p>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① 골재채취업자 또는 골재를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골재</li> <li>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li> </ol> <p>②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제2호의 골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험 시기·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품질시험을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p>
권한 위탁	법률	<p>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p> <p>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단기관리자,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p> <p>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단기관리자,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40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중 제39조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로 한정한다)에서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관리자로 지정된 때에 한한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허가 신</li> </ol>

		<p>청서의 접수</p> <p>3.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p> <p>③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단지관리자로 지정된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위탁한다.</p> <p>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p> <p>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 접수 1의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서 접수</p> <p>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서 접수</p>
--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p>대행조문</p>	<p>제35조(수로도서지의 간행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판매망·기술인력·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수로도서지 판매를 대행하는 자(이하 “판매대행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p>
<p>권한 위탁</p>	<p>법률</p> <p>제10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해양조사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p> <p>1. 제9조제3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만 해당한다)의 이전</p> <p>1의2. 제10조의2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p> <p>1의3.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 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p> <p>2.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에 관한 심사</p> <p>3.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p>

		<p>4. 제31조제6항에 따른 수로조사방법에 관한 기술지도</p> <p>5. 제31조제1항과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로조사성과의 심사</p> <p>6. 제31조제5항에 따른 수로조사에 필요한 관측시설의 관리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p> <p>7.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실시하는 수로조사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p> <p>8.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로도서지의 인쇄·공급 및 재고관리</p> <p>9.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접수, 기록의 유지·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자료의 접수,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p> <p>10. 제43조제3항에 따른 수로기술자의 신고 접수, 기록의 유지·관리, 수로기술경력증의 발급,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자료의 접수, 수로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p> <p>11. 제98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교육훈련</p> <p>12.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정한다)의 관리</p> <p>13. 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정한다)표지의 현황조사 보고의 접수</p>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104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량 또는 수로조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시행령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감사원)

대행조문	제35조(감사원 감사의 대행) ①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원 감사사무(사실의 조사·확인 및 분석 등의 사무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	---

		아니하는 사무로 한정한다) 중 일부를 자체감사기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를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감사원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대행조문		제52조(감사원 감사) ①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간 경쟁 제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계약방법에 따라 이를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수성·전문성 또는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③ 「국가재정법」 제6조에

		<p>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각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제6조에 따라 위임·위탁 등을 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다.</p> <p>제18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원활한 계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의 처분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것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p>
--	--	--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p>대행조문</p>	<p>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li> <li>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li> <li>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li> </ol>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등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44조(중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②이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게 중전부동산의 매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	---

권한 위탁	법률	제57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사업시행자가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42조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시행령	제47조(권한의 위임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사업시행자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42조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행조문		제11조(위탁선거의 관리) ③ 관할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지정하는 사람 또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나 다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위탁선거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위원회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선거 사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관할위원회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위탁선거 사무를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대행할 업무의 범위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차관 도입을 위한 교섭</li> <li>2. 제10조에 따른 담보의 취득 및 관리</li> <li>3. 제11조에 따른 담보물의 처분</li> <li>4. 제16조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li> </ol>
	시행령	<p>제15조(권한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차관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도입을 위한 교섭과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위탁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차관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도입을 위한 교섭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위탁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자치단체</li> <li>2. 정부투자기관</li> <li>3. 정부출자기관</li> <li>4. 정부출연기관(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 한한다)</li> </ol>

		<p>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은행 회장에게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0조 및 이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취득 및 관리</li> <li>2. 법 제11조 및 이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처분</li> </ol> <p>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p>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공기업의 경영 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대행조문		제20조(주식의 매각방법등) ① 정부·정부투자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금융기관·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매각하거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20조(주식의 매각방법등) ① 정부·정부투자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금융기관·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매각하거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제9조(주식의 매각위탁 또는 대행기관)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은행법에 의한 은행</li> <li>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li> <li>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li> <li>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li> </ol>

		6.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7. 대상기업
--	--	--------------------------------------

□ 공무원연금법(인사혁신처)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21조(공단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26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신청(제35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제51조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장애보상금, 제61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이하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라 한다)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는 제외한다)의 결정에 관한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38조(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요양기관이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라 산정한</p>

	<p>공무상요양비를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청구받은 공단은 그 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상요양비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p> <p>④ 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등 공무상 요양급여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위탁의 범위, 위탁대상기관 및 위탁에 드는 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p>공무원연금법 시행령</p> <p>제15조(업무위탁의 범위)법 제21조에 따라 공단이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여금·부담금 및 그 밖의 비용의 수납업무</li> <li>2. 급여의 지급업무</li> <li>3. 각종 대부금의 지급 및 그 상환금의 수납업무</li> <li>4. 유가증권의 매입 및 원리금의 추심(推尋)업무</li> <li>5. 재산매각대금의 수납업무</li> <li>6.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부지매입·건설·분양 또는 임대사업과 이에 관련된 업무</li> <li>7.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의 부지매입·건설·운영 및 이에 관련된 업무</li> <li>8. 퇴직공무원상조회 또는 퇴직공무원이 위탁한 현금자산의 관리·운용업무</li> </ol> <p>제20조의3(급여결정권한의 위탁)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각종 급여[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이하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p> <p>제31조의2(업무의 위탁)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무상요양비(제33조의2에 따른 요양비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2조제1항·제2항에서 같다)의 심사 및 지급업무</li> </ol>

		2. 공무상요양비의 정산업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업무
--	--	---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대행조문	<p>제4조(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사중단 건축물의 지역별 소재 현황</li> <li>2. 공사중단 건축물별 공사 진행상황 및 중단기간</li> <li>3. 공사중단 건축물별 공사중단의 직접적·간접적 원인</li> <li>4. 공사중단 건축물별 권리관계 현황</li> <li>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12조의3(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장기간 건축공사가 중단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중에서 건축주를 대신하여 건축공사를 시행할 사업대행자(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건축주의 건축물 및 대지의 관리와 처분의 일체를 사업대행자에게 위임하는 내용과 보상계획에 대한 건축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대지가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동의한 공유 소유자의 지분 합계가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li> <li>2. 해당 건축물·토지 등의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사업대행자에게 위임하는 내용과 보상액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이해관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의한 이해관계자의 지분 합계가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li> </ol>
------	--

권한 위탁	법률	제12조의2(위탁사업의 시행) ①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탁사업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11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취득과 제12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10조(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품의 품질향상과 공예소재·재료 및 처리기법 등 공예품의 제작·창작에 필요한 공예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과 관련된 기관·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제1항에 따른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8조(공예품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지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1. 공예품의 조형 양식 개발</p> <p>2. 공예소재·재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p> <p>3. 공예소재·재료의 처리기법 개발</p> <p>4. 공예품 제작시설 및 설비 개발</p> <p>5. 그 밖에 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항</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모 방식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p> <p>제9조(공예기술개발 등 전담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예기술개발등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p> <p>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p> <p>3.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 업무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예기술개발등 전담기관에 위탁한다.</p> <p>제16조(권한의 위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p> <p>1. 법 제8조에 따른 창업 및 제작 지원</p> <p>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p>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행정안전부)

대행조문		
권한 위탁	법률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시행령	제43조의2(일반재산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대행조문	제44조(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여야 한다. 1.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자가 고의나 과실 없
------	---

		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알 수 없을 때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시행령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보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이 경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3.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4.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6.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7. 영업·농업·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8.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는 제외한다) 9.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10.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11. 토지등의 등기 관련 업무 12.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13.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 □ 공인노무사법(고용노동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26조(업무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인노무사 연수교육</li> <li>2.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노무관리의 합리화에 관한 지도와 교육 업무</li> <li>2의2. 공인노무사의 등록 및 폐업에 관한 업무</li> <li>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업무</li> </ol>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26조(업무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5조에 따른 등록</li> <li>2. 법 제9조에 따른 폐업신고의 수리</li> <li>3.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li> <li>4. 제14조에 따른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의 접수, 자격증 교부 및 자격증 발급대장예의 기록</li> </ol>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 관리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7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일부면제 신청의 수리</li> <li>2.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위촉</li> <li>3. 제9조에 따른 시험수당의 지급</li> <li>4. 제10조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공고</li> <li>5. 제12조에 따른 합격자의 결정·공고 및 통지</li> </ol>

## □ 공인중개사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45조(업무위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시·도지사는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1.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협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② 시험시행기관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 공인회계사법(금융위원회)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52조의5(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 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p>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내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p> <p>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채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43조(채납처분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2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li> <li>2. 납부독촉장</li> </ol>
사무 위탁	법률	<p>제52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30조제2항, 제4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5, 제40조의6, 제40조의13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갈음하는 의결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p> <p>② 금융위원회는 시험에 관한 업무의 일부 및 제30조제3항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3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38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52조제1항에 의하여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30조제2항, 제4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5, 제40조의6, 제40조의13제1항, 이 영 제10조, 제11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업무는 이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p> <p>② 법 제52조제1항에 의하여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업무중 동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징계업무는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갈음하는 의결기구는 제2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윤리위원회로 한다.</p>

		<p>⑥ 법 제52조제2항에 의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시험에 관한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 및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험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li> <li>2. 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li> </ol>
--	--	--

□ 공적자금상환기금법(금융위원회)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p> <p>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출연</li> <li>2. 기금의 부채 상환</li> <li>3.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li> </ol> <p>④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4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p>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공중위생관리법(보건복지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18조(위임 및 위탁)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등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p>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6조의2(위생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 등)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위생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공증인법(법무부)

대행조문		제8조(공증사무의 대행)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공증인이 없거나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의 검사나 등기소장에게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제78조(감독기관) ①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감독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5조의6(위임규정) 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과학기술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행조문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제1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 형태와 비중,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의 소유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성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④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34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이하 “한국연구재단”이

		<p>라 한다)에 위탁한다.</p> <p>제47조(과학기술인의 등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 4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등록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연구재단</li> <li>2. 기획평가원</li> <li>3. 한국과학창의재단</li> <li>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li> <li>5. 그 밖에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법인</li> </ol>
--	--	---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그 업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2조(업무 위탁의 방법·기준 등) ②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험·분석 및 연구개발 등 특수한 전문지식·기술 및 시설장비가 요구되는 업무</li> <li>2. 연구과제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등 공정성 및 객관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업무</li> <li>3. 그 밖에 위탁함으로써 기관 운영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는 업무</li> </ol>

##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li> <li>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li> <li>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확인, 지정 통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심사 신청서 접수</li> <li>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및 이 영 제11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지원</li> <li>5.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li> <li>6.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li> <li>7.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지원</li> <li>8. 과학기술유공자 증서 및 과학기술유공자증의 발급과 제12조제3항에 따른 회수</li> <li>9.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영구용 태극기 및 묘비제작비 지원</li> <li>10.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와 신진 과학기술인 간 학술적 교류 지원</li> <li>11.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국제교류·협력 지원</li> <li>12.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 활동 계획에 관한 서류 접수</li> </ol>

□ 관광진흥개발기금법(문화체육관광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12조(납부금 부과·징수 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2조(납부금 부과·징수 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및 「항공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공항운영자에게 각각 위탁한다.

□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제35조에 따른 지정 취소 1의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 결정 2의2. 제19조의2에 따른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및 그 취소

	<p>3. 제25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p> <p>4.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p> <p>4의2.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p> <p>5.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및 등록</p> <p>7. 제48조의6 및 제48조의7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및 그 취소</p>
<p>시행령</p>	<p>제65조(권한의 위탁) ① 등록기관등의 장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검사기관 또는 자격검정기관에 각각 위탁한다.</p> <p>1. 법 제6조 및 법 제35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식당업·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 :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한다.</p> <p>1의2.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권한: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한다.</p> <p>1의3. 법 제19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한다.</p> <p>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p> <p>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p> <p>3의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안전 관련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종별 관광협회 및 안전 관련 전문 연구·검사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p>

		<p>4.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중 관광통역안내사·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 :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한다. 다만, 자격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p> <p>5.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중 국내여행안내사 및 호텔서비스사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 : 협회에 위탁한다. 다만, 자격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p> <p>6. 법 제48조의6 및 제48조의7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교육 과정 등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에 관한 권한: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한다.</p> <p>제66조(등급결정 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결정권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li> <li>2.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 등을 하는 법인일 것</li> <li>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가진 평가요원을 50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li> </ol>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제35조에 따른 지정 취소,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관광숙박업의 등급 결정,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및 그 취소, 카지노기구의 검사,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및 등록,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및 그 취소

## □ 관세법(기획재정부)

대행조문	<p>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 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살아 있는 동식물</li> <li>2.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li> <li>3.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li> <li>4.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li> <li>5.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화주가 요청하는 것</li> </ol> <p>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매각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절에서 “매각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속한 매각을 위하여 사이버물(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에서 전자문서를 통하여 매각하려는 경우</li> <li>2. 매각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li> <li>3.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p>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출하거나 수입한 화물에 관한 사항</li> <li>2. 입항하거나 출항한 외국무역선 및 외국무역기에 관한 사항</li> <li>3. 그 밖에 외국무역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집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외 통관 관련 세부 통계자료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사용 용도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세청장</p>
------	---

	<p>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p> <p>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전산처리가 가능한 전달매체에 기록하여 교부하거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부할 수 있는 통계의 범위와 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한다.</p> <p>⑤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 및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교부 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대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p>
권한 위탁	<p>법률</p> <p>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조약·협정 등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3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체신관서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③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7조, 제158조제2항, 제159조제2항, 제165조제2항, 제209조, 제213조제2항(보세운송신고의 접수만 해당한다)·제3항, 제215조, 제222조제1항제1호, 및 제246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관질서의 유지와 수출입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li> <li>2. 화물관리인</li> <li>3. 운영인</li> <li>4. 제222조에 따라 등록된 보세운송업자</li> </ol> <p>④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신고에 관한 업무의 일부(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p>

	<p>요구만 해당한다)를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와 관련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시행령</p>	<p>제133조(사후관리의 위탁) ①관세청장은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한 해당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09조제1항의 경우: 해당 법률·조약 등의 집행을 주관하는 부처의 장</li> <li>2. 법 제83조제1항, 제90조, 제91조, 제93조,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7조의 경우: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의 장</li> </ol> <p>제28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관세청장은 법 제32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에 관한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li> <li>2. 법 제30조에 따라 가산 또는 공제하는 금액의 결정</li> <li>3. 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의 결정</li> <li>4. 법 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li> <li>5. 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사전심사</li> <li>6. 제246조제6항에 따른 환율의 결정</li> </ol> <p>③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심사에 관한 권한을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⑤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자가용보세구역에서의 통고를 제외한다)의 권한을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한다.</p> <p>⑥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의 도착보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한다.</p> <p>⑦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5조제2항에 따른 보세사의 등록과 법 제2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관세청장이</p>

		<p>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p> <p>⑧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4항 전단에 따라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신고에 관한 업무(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요구만 해당한다)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p>
사무 위탁	법률	<p>제233조의2(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① 관세청장은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협정 등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결정 또는 검증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다.</p> <p>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236조의5(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33조의2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업무 중 물품의 생산 공정 분석, 거래형태 분석, 품목분류 및 부가가치 계산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li> <li>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조약·협정에 따른 사전심사를 위한 예비 조사에 관한 사항</li> <li>4. 제236조의2에 따른 사전확인 업무의 예비 조사에 관한 사항</li> <li>5. 원산지 확인·결정 또는 검증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또는 그 수출입자 등의 자료분석에 관한 사항</li> <li>6.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li> </ol>

## □ 관세사법(기획재정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26조(위임과 위탁) 관세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위임하거나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관세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사회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관세사의 등록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실시 3.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의 등록 4.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관세법인의 등록 ② 관세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관세사시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관세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사회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관세사의 등록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실시 3.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의 등록 4.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관세법인의 등록 ② 관세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관세사시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 □ 광업법(산업통상자원부)

대행조문	제33조(현장조사 및 광구경계측량의 신청) ② 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자기 광구나 인접광구의 경계
------	---

		에 대한 경계측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광구경계측량의 신청을 받으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그 경계측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88조(부과금 징수 사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7조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9조(연구·개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평가 및 이전과 보급 2. 산업계 또는 학계와의 공동 연구 및 개발 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국제 기술협력 및 교류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정보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4조(연구와 개발의 위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p>법 제9조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li> <li>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부설연구소</li> <li>3.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li> <li>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li> <li>5.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li> <li>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li> <li>7.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li> <li>8.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li> <li>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li> <li>10.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li> <li>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해양조사협회</li> <li>12.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li> <li>1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li> </ol>
--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46조(권한의 위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47조(권한의 위탁) ① 법 제4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의 임대·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사무 위탁	법률	제47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제7호,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48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제7호,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용자금의 수입·지출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 □ 국가기술자격법(고용노동부)

대행조문	제7조(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국가기술자격의 조사·연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 산업현장에 적합한지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 및 지정교육·훈련과정 지정 업무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는 검정업무 수탁기관의 평가

	<p>에만 적용하고, 제3호의2는 지정교육·훈련과정 지정 업무 수탁기관의 평가에만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기술자격 검정 또는 지정교육·훈련과정 지정 업무의 수행 능력에 관한 사항</li> <li>2. 검정 시설 및 장비의 적절한 보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3. 검정시행계획, 출제, 채점, 시험의 보안 등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li> </ol> <p>3의2. 교육·훈련과정 평가 등 지정교육·훈련과정 지정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24조의2(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 또는 지정교육·훈련과정 지정 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 또는 지정교육·훈련과정 지정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li> <li>2.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li> <li>3.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평가 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4. 위탁받은 검정 또는 지정교육·훈련과정 지정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li> </ol> <p>④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새로 지정될 때까지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권한 위탁</p>	<p>법률</p> <p>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검정업무 또는 지정교육·훈련과정 지정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시행령</p>	<p>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현역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검정 시행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 시행으로 한정한다.</p> <p>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p> <p>④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중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비영리법인일 것</li> <li>2.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인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li> <li>3. 산업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li> <li>4.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li> <li>5.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li> </ol> <p>⑤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검정 합격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재발급 및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은 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p> <p>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관리 및 채점 업무,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재발급 및 그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p> <p>⑨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단</li> <li>2.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li> <li>3. 교육훈련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업무를 수</li> </ol>

		<p>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p> <p>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p> <p>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p> <p>다. 다른 법률(「민법」은 제외한다)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p> <p>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기관 중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p> <p>⑩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자격종목별 편성기준의 수립 및 공고</li> <li>2. 제14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지정 신청의 접수 및 타당성 검토</li> <li>3. 제14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확인</li> <li>4.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생에 대한 외부평가(시험문제의 출제, 검정의 시행·관리 및 채점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li> <li>5. 제25조에 따른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재발급 및 그 관리</li> </ol>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조달청)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

		<p>무원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대리(代理)하게 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分掌)하게 할 수 있다.</p> <p>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약관의 사무의 위임·위탁, 대리 및 일부 분장은 각 중앙관서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같음할 수 있다.</p>
	시행령	-

□ 국가보훈기본법(국가보훈처)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li> <li>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li> <li>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li> <li>3의2. 희생·공헌자의 발굴</li> <li>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li> <li>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li> </ol>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p>

		있다.  제15조(조사·연구 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는 국가보훈 분야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보훈처)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83조(위임 및 위탁)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등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02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5조에 따라 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과 법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에 대한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한다.

		<p>⑥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제1항제1호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보훈병원의 원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p>
<p>사무 위탁</p>	<p>법률</p>	<p>제42조(진료)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국가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44조(의학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p> <p>② 국가보훈처장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단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그 사업을 위탁받은 공단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65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p>
	<p>시행령</p>	<p>제62조(진료)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이하 이 장에서 “진료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 입원진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훈병원에서 한다.</p>

		<p>1. 응급진료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하는 진료</p> <p>2. 입원진료 의료시설에 입원을 시켜 하는 진료</p> <p>3. 통원진료 의료시설에 입원을 시키지 아니하고 왕래하게 하여 하는 진료</p> <p>② 국가가 진료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의 의료기관으로 한다.</p>
--	--	---

□ 국가재정법(기획재정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77조(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p> <p>②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그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p> <p>제93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유가증권을 보관할 수 없다.</p> <p>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을 보관하게 되는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보관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p>
	시행령	<p>제46조(유가증권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는 유가증권은 그 관서의 장이 관리한다.</p> <p>② 국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p>

		<p>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소속된 것은 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p>
--	--	---

### □ 국가정보원직원법(국가정보원)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14조(교육훈련) ① 원장은 직원에 대하여 직무의 능률증진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p> <p>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p>
	시행령	-

### □ 국가정보화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p>

		<p>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의 운영</li> <li>2. 제23조의2에 따른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li> <li>3.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그린인터넷인증에 관한 업무</li> <li>4.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li> </ol>
	시행령	<p>제47조(그린인터넷인증 관련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린인터넷인증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그린인터넷인증 신청서의 접수</li> <li>2. 그린인터넷인증 심사</li> <li>3. 그린인터넷인증서의 발급</li> <li>4. 그린인터넷인증마크 이용에 대한 관리</li> </ol>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초고성능컴퓨팅인력양성계획을 세우고, 인력양성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전문인력의 해외 연수 및 해외우수인력의 유치·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초고성능컴퓨팅 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13조(전문인력 양성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초고성능컴퓨팅 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구기관</li> <li>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li> <li>3. 국공립연구기관</li> <li>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li> <li>5. 국가센터 및 전문센터</li> </ol>
--	-----	---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p>제20조(중간점검 및 재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 단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재평가 사유의 발생여부 등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 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 결과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교통 수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재평가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 또는 재평가를 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간점검과 재평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p> <p>제21조(타당성 평가의 대행 등) ①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	--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교통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의 전문인력과 평가수행능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49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6.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중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50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복합환승센터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이하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라 한다)에게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제1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p>제114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교통투자평가협회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li> <li>2. 법 제24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행자 업무의 폐업신고의 접수</li> <li>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 보고의 접수</li> </ol>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평가에 관한 업무</li> <li>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해상부문의 국가교통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li> <li>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업무</li> <li>4.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 업무</li> <li>5. 법 제93조에 따른 교통기술정보의 관리·보급에 관한 업무 중 교통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li> </ol>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해상부문의 국가교통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한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지정·보호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93조에 따른 교통기술정보의 관리 및 보급에 관한 업무 중 교통신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li> <li>2. 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지정·보호에 관한 업무 중 교</li> </ol>

		<p>통신기술 지정신청 접수, 교통신기술 지정 여부 심사에 관한 업무</p> <p>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교통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4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국제복합교통망의 개발·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전시회·세미나의 개최</li> <li>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의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에 관한 업무</li> <li>2의2.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업무</li> <li>3. 법 제100조에 따른 교통기술인력의 관리와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li> <li>4. 법 제101조에 따른 교통기술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 업무</li> </ol>
사무 위탁	법률	<p>제53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중 용수시설(用水施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②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의 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p>
	시행령	<p>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자치단체</li> <li>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li> </ol>

□ 국가회계법(기획재정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11조(국가회계기준) ①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조의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국내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2.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3. 국가회계기준 개선을 위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결산 보고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분석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국고금 관리법(기획재정부)

대행조문	제11조(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① 수입징수관은 납세의무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할 수 있다.
------	---

		<p>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전자송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받으려는 납세의무자등은 제2항에 따라 전자송달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전자송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송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가 전자송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p>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21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제44조(재정증권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무와 제34조에 따른 국고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

## □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국방부)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7조(권한의 위탁) 국방부장관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업무를 대통령경호실장에

		계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교육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6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32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평가 및 국가의 지원) ① 총장은 4년 단위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대학운영성과목표를 반영한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의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담당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평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보훈처)

대행조문	제11조의10(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대행의 범위 등 총리령
------	--

		<p>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국가보훈처장은 대행자의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을 관리·감독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④ 대행자는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국가보훈처장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다른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이 실시계획 대비 현저히 늦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2.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킨 경우</li> <li>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지정을 받은 경우</li> <li>4.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li> <li>5. 제3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li> <li>6. 제4항에 따른 대행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경우</li> </ol>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국립해양박물관법(해양수산부)

대행조문	<p>제6조(임대형 민자사업 관련 업무의 대행)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양수산부장관이 체결한 박물관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의 이행 및 점검</li> <li>2. 민자사업자가 운영하는 박물관의 성과측정·점검·평가 및 그 사업자가 이행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한 정산</li> </ol>
------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16조(박물관자료의 위탁·관리) ① 국가는 박물관의 설립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던 국가 소유 박물관자료의 전문적인 보존·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5조(사업) ① 자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8. 그 밖에 해양생물자원과 관련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시행령	-

### □ 국민건강보험법(보건복지부)

대행조문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 요양기관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는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⑥ 요양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다음 각 호의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p>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p> <p>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p> <p>3.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신고한 지부 및 분회</p> <p>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의2 및 제101조에 따라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p> <p>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p>
<p>권한 위탁</p>	<p>법률 제11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제97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p> <p>시행령 -</p>
<p>사무 위탁</p>	<p>법률 제14조(업무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p> <p>11.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p> <p>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p>

		<p>제63조(업무 등) ①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5.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p> <p>제103조(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이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등 감독을 할 수 있다.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위탁받은 업무</p> <p>제112조(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보험료의 수납 또는 보험료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2.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 3.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라 징수하는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이하 “징수위탁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수납 또는 그 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② 공단은 그 업무의 일부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와 징수위탁보험료등의 징수 업무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p>
	시행령	<p>제78조(업무의 위탁)공단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려면 위탁받을 기관의 선정 및 위탁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공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보건복지부)

대행조문	-
------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p> <p>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p> <p>제18조의5(자활의 교육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9조(보장기관)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수급자를 각각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p> <p>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공공기관</p>

		<p>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여야 한다.</p>
	시행령	-

□ 국민연금법(보건복지부)

	대행조문	<p>제90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① 납부 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 그 밖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그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p> <p>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매각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매각은 건강보험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p>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p>

	<p>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을 것</li> <li>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li> </ol> <p>⑤ 국민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처리 등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24조(국민연금공단의 설립)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제25조(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li> <li>2. 연금보험료의 부과</li> <li>3. 급여의 결정 및 지급</li> <li>4.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 및 수급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와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사업</li> <li>5.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li> <li>6. 제6조의 가입 대상(이하 “가입대상”이라 한다)과 수급권자 등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 사업</li> <li>7. 국민연금제도·재정계산·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li> <li>8. 국민연금에 관한 국제협력</li> <li>9.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li> <li>10. 그 밖에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li> </ol> <p>제47조(업무 위탁) ①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 상환금의 수납, 급여·대여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그 밖에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체신관서, 금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	--

	<p>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p> <p>②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p> <p>제100조의4(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li> <li>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li> </ol> <p>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은 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p>
<p>시행령</p>	<p>제25조의6(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업무의 위탁) 공단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고용보험법」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나 실업의 인정 신고를 하면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접수 업무를 위탁한다.</p> <p>제33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공단으로부터 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여금의 상환금, 법 제19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연금보험료, 법 제57조에 따른 환수금,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 또는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대위하여 받는 금액의 수납, 급여의 지급 및 대여금의 지급에</li> </ol>

		<p>관한 업무 :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p> <p>2.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신청 및 상실 신청의 접수 등에 관한 업무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p> <p>3. 노인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의 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및 병원·휴양 시설·요양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 종교 단체 또는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p>
--	--	---

□ 국민체육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p>대행조문</p>	<p>제21조(올림픽 휘장 사업) ①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五輪)과 오륜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도안·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권한 위탁</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49 1184 464 1363"> <p>법률</p> </td> <td data-bbox="464 1184 1213 1363"> <p>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td> </tr> <tr> <td data-bbox="349 1363 464 1693"> <p>시행령</p> </td> <td data-bbox="464 1363 1213 1693"> <p>제44조(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수 인정에 관한 권한을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한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공단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li> <li>2.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li> </ol> </td> </tr> </table>	<p>법률</p>	<p>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시행령</p>	<p>제44조(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수 인정에 관한 권한을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한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공단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li> <li>2.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li> </ol>
<p>법률</p>	<p>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시행령</p>	<p>제44조(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수 인정에 관한 권한을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한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공단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li> <li>2.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li> </ol>				

		3.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검토·확인
사무 위탁	법률	제2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시행령	제32조(발행 사업 위탁운영의 범위) 법 제25조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2. 환급금의 지급 3.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의 운영, 유지 및 보수(발매시스템의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4.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무효 시 반환금의 지급 5.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홍보 등 운영 관련 업무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국방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17조(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업무를 분야별·기능별로 구분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하거나, 민간 부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

## □ 국방과학연구소법(국방부)

대행조문		<p>제7조(사업) ①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병기·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과 이에 관련된 계통공학, 인간공학, 그 밖의 과학기술의 조사·연구</li> <li>2. 병기·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의 제식(制式) 및 규격의 조사·연구</li> <li>3.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와 관련된 각종 자원, 조직, 제도 및 운영의 분석·연구</li> <li>4. 병기 및 장비의 시험제작을 위한 설계 및 설명서의 작성·검토와 시험제작품의 기술시험</li> <li>5. 각종 병기 및 장비의 성능시험</li> <li>6. 병기·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와 전략자원에 관한 기술정보 사업</li> <li>7. 병기·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에 관한 연구위탁, 연구보조 또는 지원</li> <li>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li> </ol> <p>② 국방부장관은 소관 업무 중 제1항에 따라 연구소가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연구소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업무의 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연구소 소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7조(사업) ①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병기·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과 이에 관련된 계통공학, 인간공학, 그 밖의 과학기술의 조사·연구</li> <li>2. 병기·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의 제식(制式) 및 규격의 조사·연구</li> <li>3.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와 관련된 각종 자원, 조직, 제도 및 운영의 분석·연구</li> </ol>

		<p>4. 병기 및 장비의 시험제작을 위한 설계 및 설명서의 작성·검토와 시험제작품의 기술시험</p> <p>5. 각종 병기 및 장비의 성능시험</p> <p>6. 병기·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와 전략자원에 관한 기술정보 사업</p> <p>7. 병기·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에 관한 연구위탁, 연구보조 또는 지원</p> <p>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p> <p>② 국방부장관은 소관 업무 중 제1항에 따라 연구소가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연구소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업무의 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연구소 소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시행령	-

## □ 국방전직교육원법(국방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6조(사업)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 관련 교육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li> <li>2.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취업정보의 제공</li> <li>3. 전역예정군인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촉진 관련 사업</li> <li>4. 전역예정군인 취업희망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관련 통계 유지·분석</li> <li>5.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 관련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사업</li> <li>6.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li> <li>7.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li> </ol>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원장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인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원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전문기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령	-

□ 국세기본법(기획재정부)

대행조문		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①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72조(조세심판관회의) ①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審理)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 ② 제1항의 조세심판관회의는 주심조세심판관이 그 의장이 되며, 의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주심조세심판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세심판원장이 배석조세심판관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한다.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국세징수법(기획재정부)

대행조문		<p>제61조(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p> <p>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p>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23조의2(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① 세무서장은 제23조에 따른 독촉과 최고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li> <li>2. 체납자의 재산 조사</li> <li>3.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li> <li>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 방법,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위탁 수수료 등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p>제27조(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절차) ① 세무서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과세기간·세목·세액과 납부기한 등을 적은 위탁의뢰서를 보내야 한다.</p>

		<p>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즉시 그 위탁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7조의2(위탁 대상 체납액)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li> <li>2.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li> </ol>
--	--	---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청)

<p>대행조문</p>		<p>제13조(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① 산림청장은 다른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산림의 경영을 대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는 그 경영대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의 경영대행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국유림의 경영대행 기간 중 발생하는 임산물의 처분권은 산림청장이 갖는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대행의 절차 및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권한 위탁</p>	<p>법률</p> <p>시행령</p>
<p>사무 위탁</p>	<p>법률</p>	<p>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유림확대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p>

		<p>를 변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유림 확대목표와 기본방향</li> <li>2. 국유림 확대의 범위</li> <li>3. 국유림 확대의 추진방법</li> <li>4. 그 밖에 국유림 확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li> </ol> <p>②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공유림등의 매수가격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등의 매수가격은 해당 산림사업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때(계약체결일을 말한다)에 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p> <p>④ 공유림등의 매수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⑤ 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13조의2(공유림등의 매수 위탁)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li> <li>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i> </ol>

□ 국유재산법(기획재정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25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

	<p>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26조의6(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총괄청이 관리·운용한다.</p> <p>②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29조(관리위탁)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p> <p>③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 기간, 관리위탁을 받은 재산의 사용료,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2조(관리·처분 사무의 위임·위탁) ①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총괄청은 제8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다.</p> <p>③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16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② 총괄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p> <p>1.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괄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현황의 전수조사 사무로서 항공조사 사무 및 그에 부수하</p>

		<p>는 사무</p> <p>2.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무</p> <p>제18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① 총괄청은 법 제26조의6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이 장에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회계 사무</li> <li>2.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무</li> <li>3.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에 관한 사무</li> <li>4.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li> <li>5. 그 밖에 총괄청이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li> </ol> <p>제38조(관리·처분기관) ① 총괄청은 증권의 처분을 중앙관서의 장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증권을 발행한 법인</li> <li>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li> <li>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li> <li>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li> <li>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li> <li>6.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li> <li>7.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li> <li>8.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li> </ol> <p>③ 총괄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관리·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미 처분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제4항제2호에 따른 소송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세물납에 따라 취득한 일반재산</li> </ol>
--	--	---

		<p>2.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된 재산</p> <p>4.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증권</p> <p>5. 제47조에 따라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증권</p> <p>6. 제79조에 따른 청산법인의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국가에 현물증여되는 재산</p> <p>7. 그 밖에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처분을 위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p> <p>④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p> <p>1.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p> <p>2.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서 이미 처분된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p>
--	--	---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48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p> <p>②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p> <p>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지원기관에 위탁한다.</p> <p>1. 법 제12조의4제1항 및 이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 입주승인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p> <p>2. 법 제12조의4제2항 및 이 영 제12조의4제5항에 따른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 입주변경승인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p>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30조(조세 징수의 위탁)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에서 납부할 조세를 징수하기 곤란하여 체약상대국에서 징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제청장에게 체약상대국에 대하여 조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국제청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조세를 징수해 주도록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 국제질병퇴치기금법(외교부)

대행조문	제10조(출국납부금 부과·징수 업무의 대행) ①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및 명령)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사무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대행하
------	--

		계 한 경우 그 대행업무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외교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국제질병퇴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부담한다.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대행조문		제38조(보안심사업무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 및 제37조제2호·제3호에 따른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보안심사관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22조(국제항해여객선의 보안검색) ① 여객선으로 사용되는 국제항해선박(이하 “국제항해여객선”이라 한다)에 승선하는 자는 신체·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은 해당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시

		<p>설소유자가 실시한다. 다만, 파업 등으로 항만시설소유자가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지도·감독 기관의 장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p> <p>③ 항만시설소유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때에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고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특수경비업무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

##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18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탁 받은 자를 지휘·감독한다.</p>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16조(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2. 다른 법령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업</p>
	시행령	<p>제13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 선정 및 협약 체결</li> <li>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 지원에 따른 부대업무</li> <li>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관리</li> </ol>

## □ 국토기본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로서 행정청이 아닌 자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군무원인사법(국방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8조(시험 실시기관) ① 군무원의 채용시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장관급부대장 또는 대령급 장교인 부대의 장(이하 “대령급부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경쟁시험을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령	-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국방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10조(군보건의료인의 확보) ① 국방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우수한 군보건의료인의 양성과 군보건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군보건의료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에 위탁하여 군의관을 양성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 대상자 선발기준, 위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다른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 ①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환자의 치료 등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국방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도시 지역 안의 보호구역, 농공 단지 등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서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p>또는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있어서의 제13조에 따른 협의업무를 제15조에 따른 소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할부대장등이 협의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합참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협의업무의 범위와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시행령</p>	<p>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호구역. 다만, 협의업무 위탁조건을 정할 수 없는 법 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호구역은 제외한다.</li> <li>2.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원예생산 전문단지</li> <li>3. 임야·하천부지 등을 개간하여 전·답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li> <li>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및 그 매립지</li> <li>5.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해상작전 제한선 바깥쪽 수역</li> <li>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li> <li>7. 그 밖에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서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li> </ol> <p>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협의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허가등을 위한 협의업무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택·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li> <li>2. 조립 또는 입목의 벌채</li> <li>3.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li> <li>4. 해운의 영위</li> <li>5. 어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li> <li>6. 광물·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li> </ol>

		7. 비행안전구역 중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의 각 구역의 표면높이 미만의 범위 안에서의 법 제10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항에 관한 허가등에 따른 협의업무
--	--	---

## □ 군사법원법(국방부)

	대행조문	<p>제42조(검찰관 직무대행) 각 군 참모총장은 군법무관시보로 하여금 검찰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197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서(宣誓書)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③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서기가 대행한다.          ④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하게 하여야 한다.</p>
권한 위탁	법률	제36조(군검찰부) ③ 고등검찰부의 관할은 관하(管下) 각 부대 보통검찰부의 관할사건에 대한 항소사건·항고사건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고등검찰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으로 한다. 다만, 각 군 본부 고등검찰부는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 고등검찰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군수품관리법(국방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13조의2(탄약의 폐기) ③ 국방부장관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탄약의 폐기를 위하여 탄약 비군사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설치한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폐기하려는 탄약 중 화약류·자탄류 및 추진제(이하 이 조에서 “화약류등”이라 한다)는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군용화약류의 제조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국방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53조(교육) ① 소장은 군수형자가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군수형자를 외부의 교육기관에 통학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교육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선발 취소, 교육과정, 외부통학, 위탁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군인복지기본법(국방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14조(군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④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⑤ 복지시설등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위탁 운영 등 복지시설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노후설계 교육)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생활안정 및 노후준비 인식 확산과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하여 노후설계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노후설계 전문 교육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군인사법(국방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13조(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①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령 이하의 장

		<p>교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p> <p>②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이 임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p> <p>③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장관급 지휘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p> <p>제64조(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해군참모총장은 제8조제3항, 제13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5조, 제43조, 제58조 및 제63조에 규정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p>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군인연금법(국방부)

대행조문		
권한 위탁	법률	<p>제11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위탁)</p> <p>② 국방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고, 그 밖의 급여의 지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23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사망보상금에 관한 결정</li> <li>2. 법 제6조제12호에 따른 장애보상금에 관한 결정</li> </ol>

		<p>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한다.</p> <p>⑤ 국방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li> <li>2. 그 밖에 제1호의 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무로서 국방부장관이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 등의 장과 합의한 사항</li> </ol>
사무 위탁	법률	<p>제30조의7(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요양기관이 제30조의5에 따른 공무상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30조의8에 따라 산정한 공무상요양비를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비 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이를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상요양비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p> <p>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등 공무상 요양급여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위탁의 범위, 위탁대상기관 및 위탁에 드는 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p>제62조의3(공무상요양급여업무의 위탁) 법 제30조의7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30조의8제1호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심사 및 지급 업무</li> <li>2. 법 제30조의8제1호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정산업무</li> <li>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업무</li> </ol>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국방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4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령	제39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대외발표 및 활동에 대한 허가 2. 법 제30조에 따른 겸직 허가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궤도운송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10조(궤도사업 경영 등의 위탁 등)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 위탁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20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6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또는 한국기계연구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시험·검사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법인 또는 기관

## □ 근로복지기본법(고용노동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4조(위임 및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2. 법 제20조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용자 3.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비용 지원 4. 법 제31조에 따른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및 법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하는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고용노동부)

대행조문	제59조(업무의 대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6조(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 업무로 한정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7조, 제38조 및 제53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 절차, 업무 대행에 드는 비용의 지원
------	---

	<p>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권한 위탁</p>	<p><b>법률</b></p> <p>제50조(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능대학 및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받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능대학 및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li> <li>2.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및 그 취소</li> <li>3. 학교법인이 설립한 기능대학의 교원의 임면보고 수리 및 해직·해임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b>시행령</b></p> <p>제52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제3호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1조의4에 따른 외국인의 기능·기술 훈련</li> <li>3. 법 제17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비용 용자에 관한 사항</li> <li>4. 법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의 지원 또는 용자에 관한 사항</li> <li>5. 법 제22조에 따라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사업체 단체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또는 용자</li> <li>5의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신청의 접수, 인정 요건에의 적합성 검토, 인정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li> <li>6.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훈련기준 제안서의 접수 및 처리 결과의 통지</li> <li>7. 제37조제2항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편성기준의 작성</li> </ol>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 제11조의3에 따른 재원</p>

		<p>으로 지출하는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li> <li>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li> <li>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li> <li>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li> <li>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li> <li>6.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li> <li>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li> </ol> <p>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에 한정한다)에 대한 평가에 관한 업무를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에 위탁한다.</p>
사무 위탁	법률	<p>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p> <p>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 위탁의 기준,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그 밖에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p>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li> <li>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li> <li>3.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li> <li>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li> <li>5. 그 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li> </ol>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고용노동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41조(권한의 위탁·위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2. 법 제27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 이전명령 3.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4.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업무 이전명령(해당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법 제40조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제출 요구를 포함한다) 5. 법 제41조에 따른 청문 6. 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퇴직연금사업자에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승인 2.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의 위반 확인 ⑧ 금융위원회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 제3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치(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사무 위탁	법률	제31조 (모집업무의 위탁)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할 자를 모집하는 업무(이하 “모집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자가 아닐 것 2.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p>3. 제6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p> <p>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등록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및 퇴직연금규약을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p> <p>②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27조(모집업무를 위탁범위)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한 자(설정하거나 가입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퇴직연금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 업무</li> <li>2. 사용자 또는 가입 예정자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소개하거나 중개하는 업무</li> <li>3.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설명 및 정보전달</li> <li>4.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입 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질의사항, 퇴직연금사업자 등의 답변을 전달하는 업무</li> <li>5.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li> </ol> <p>제29조(모집인 등록업무를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기관 중에서 대상 기관을 정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모집인 등록업무를 위탁 기간은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p>

##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8항에 따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2.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p>대행조문</p>	<p>제14조(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기관 임원의 업무집행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li> <li>2. 제1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li> </ol>
<p>권한 위탁</p>	<p>법률</p> <p>제10조(적기시정조치)</p> <p>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15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상법」 제531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명을 청산인(清算人) 또는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법원은 금융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이 금융 관련 업무지식이 풍부하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로서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가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채권자(最大債權者)에 해당하면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전문가</li> <li>2.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li> </ol> <p>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추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25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6조의2(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5항 및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조제2호가목 전단에 따른 경영상태의 실사와 같은 목 후단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li> <li>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와 이행 여부의 점검</li> </ol> <p>2의2. 법 제23조의9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법 제23조의9제1항에 따른 피지원기관의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 통보의 접수</li> <li>나. 법 제23조의9제2항에 따른 피지원기관의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의 점검</li> <li>다. 법 제23조의9제3항에 따른 피지원기관의 업무·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및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등의 요구</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승인 요건의 심사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초과소요조건 충족 여부에 관한 심사 중 관련 서류의 검토 등 검사</li> </ol>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p>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p> <p>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실명거래의 확인 업무를 다른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p>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71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금융지주회사법(금융위원회)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63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33조의3(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3조에 따라 별표 7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사무 위탁	법률	제47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업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하여 그 자회사등이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다른 자회사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자회사등 사이의 위협의 전이,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자회사등 사이의 위협의 전이,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p>경우만 해당한다)</p> <p>가.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p> <p>나. 내부감사업무</p> <p>다. 위험관리업무</p> <p>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호 각 목의 업무</p>
--	--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4조(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인수 등) ① 금융회사등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자산의 정리[채권의 회수·추심(推尋) 또는 재산의 매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에 따라 수임하거나 인수하는 방법·절차, 인수의 우선순위·기준 등 수임 및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조(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에 대한 지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p> <p>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 부실징후기업이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하면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수임하거나 인수하여 정리할 수 있다.</p> <p>④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2항에 따라 수임하거나 인수하는 방법·절차 등 수임 및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8조(보고·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p>

		<p>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상황이나 장부·서류·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3조(부실자산 정리의 수임 방법·절차)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부실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회사등과 약정하여야 한다.</p>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40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30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li> <li>2.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임직원 겸직 승인의 심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임직원 겸직 보고의 접수</li> <li>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원 겸직 보고의 접수</li> <li>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li> <li>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사실 보고의 접수</li> <li>6.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주주의 변경승인의 심사, 같은 조</li> </ol>

		<p>제2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보고의 접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7.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li> <li>8.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li> <li>9. 법 제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명령의 이행 여부 점검</li> <li>10. 법 제3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조치</li> <li>11. 법 제35조제1항제3호(해당 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요구</li> <li>12. 법 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li> <li>1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기록·유지·관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회요청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회요청자에 대한 통보</li> <li>14. 제26조제9항 전단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 내용의 심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li> <li>15.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심사기간 설정,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 요구</li> <li>16. 제29조제2호의 조치</li> </ol>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p>제30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li> <li>2.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임직원 겸직 승인의 심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임직원 겸직 보고의 접수</li> <li>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원 겸직 보고의 접수</li> <li>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li> <li>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사실 보고의 접수</li> <li>6.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주주의 변경승인의 심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보고의</li> </ol>

		<p>접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7.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li> <li>8.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li> <li>9. 법 제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명령의 이행 여부 점검</li> <li>10. 법 제3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조치</li> <li>11. 법 제35조제1항제3호(해당 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요구</li> <li>12. 법 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li> <li>1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기록·유지·관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회요청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회요청자에 대한 통보</li> <li>14. 제26조제9항 전단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 내용의 심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li> <li>15.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심사기간 설정,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 요구</li> <li>16. 제29조제2호의 조치</li> </ol>
--	--	---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p>대행조문</p>	<p>제8조(붕괴위험지역의 계측관리 등) ①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 지방의 침하·활동·전도(顛倒) 및 붕괴 등으로 위치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인 계측(計測)·자료관리(이하 “상시계측관리”라 한다)를 직접하거나 제22조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상시계측관리를 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측자료를 관할 시·군·구본부장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p>
-------------	---

		<p>제30조(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① 상시계측관리의 공정성과 공신력의 확보 및 기술력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훈련과정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한다.</p> <p>1.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측업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p> <p>2. 제27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고시하여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p>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기상관측표준화법(기상청)

<p>대행조문</p>	<p>제14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검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측기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④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정대행기관을 출입·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기상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⑥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p>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3조에 따른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 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한 경우</li> <li>2.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li> <li>3. 제5항에 따른 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li> </ol>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기상법(기상청)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44조(기상업무의 위탁) ① 기상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기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기상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p>제23조(기상업무의 위탁) ①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구분 및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7조에 따른 기상관측망의 구축에 필요한 기상관측장비 구매·설치와 유지·보수 및 기상현상의 관측</li> <li>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의 통보</li> <li>3. 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li> </ol>

		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5. 법 제36조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자료제공
--	--	---

## □ 기상산업진흥법(기상청)

대행조문		제16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기상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 법인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대행조문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촉진사업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39조(업무의 위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기술진흥원의 장, 기술거래기관의 장

	<p>및 기술평가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35조의4(신탁사무의 위탁)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신탁법」 제3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신탁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고 위탁에 대하여 수익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때에는 신탁의 목적에 비추어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해당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상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갖춘 자에 한정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p> <p>④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등의 위탁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위탁받은 제3자의 선임·관리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p>
시행령	<p>제43조(업무의 위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li> <li>2. 법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 등록 업무</li> <li>3.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보호·육성사업에 관한 업무</li> <li>4.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 업무</li> <li>5.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기술평가정보의 관리 업무</li> </ol> <p>제36조의2(신탁사무의 위탁 범위) 법 제3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사무의 일부”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술등의 가치평가에 관한 업무</li> <li>2. 기술등에 대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과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른 특허료·등록료 등의 납부 업무</li> <li>3. 기술등에 대한 보호·관리 업무</li> <li>4. 기술등의 설정·이전에 따른 기술료·사용료 등의 징수 및 분배 업무</li> <li>5. 기술등의 사업화에 관한 업무</li> <li>6. 그 밖의 수익자와 기술신탁관리기관 간에 신탁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협의된 업무</li> </ol>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p>제19조(비용의 부담)</p> <p>② 개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약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시설의 설치: 지방자치단체</li> <li>2. 전기시설,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에 전기, 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li> <li>3. 통신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li> </ol> <p>④ 시행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도로 또는 상수도·하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그 설치사업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설치에 관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p>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14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⑧ 시행자는 토지등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⑨ 제8항에 따라 토지등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시장·군수는 위탁받은 업무를 직접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자치단체</li> <li>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산업통상자원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li> <li>2.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li> <li>3.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li> <li>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li> <li>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li> <li>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li> <li>7.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li> <li>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li> </ol>
	시행령	-

##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에 따른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8항에 따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강제징수의 위탁) 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려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 2. 납부액 및 납부기한 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제38조의2(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li> <li>2.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li> </ol>
--	--	--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통일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25조의2(업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업의 추진</li> <li>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li> <li>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업무</li> </ol>
	시행령	<p>제38조(업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업을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9조에 따른 방문승인 신청의 접수 및 방문증명서의 발급</li> <li>2. 법 제9조의2에 따른 접촉 신고의 접수</li> <li>3. 법 제13조에 따른 반출·반입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접수 및 반출·반입 여부 사실 확인</li> </ol>

		<p>3의2. 법 제14조제2호에 따라 반입량을 제한한 물품등의 반입승인에 필요한 사전 수요조사, 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이에 따른 부수적 업무</p> <p>4. 법 제20조 또는 이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접수</p> <p>5. 제39조에 따른 분석·관리 업무 중 남북한 간에 이동하는 물품등의 통계자료 분석</p> <p>6.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업의 수행에 수반되는 물품등의 반출·반입</p>
--	--	---

###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10조(권한의 위임·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9조(노사관계발전 사업의 촉진)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위탁·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위탁·보조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보조의 대상·방법·절차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령	-

##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대행조문	제14조(사업시행자) ① 경쟁력강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경쟁력강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제17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등) ① 사업시행자와 대행사업자는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노후준비 지원법(보건복지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11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기간·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제3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への 참가,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p>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p> <p>6.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p> <p>7.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p> <p>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관리를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3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에서의 참가,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19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를 말한다.</p> <p>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및 법 제29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말한다.</p>
사무 위탁	법률	<p>제10조(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이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라 한다)를 개발·검증·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p>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30조(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등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3자로부터 위탁을</p>

	<p>받아 시행하려는 자(이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 및 관리업무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li> <li>2. 국공립연구기관</li> <li>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li> <li>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li> <li>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li> <li>6.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li> <li>7.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li> <li>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li> </ol>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관리를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19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를 말한다.</p> <p>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및 법 제29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말한다.</p>

##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금융위원회)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10조의2(업무의 위탁) ① 관리기관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회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가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업무로 한정한다.
		제14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기관, 관리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수탁자”라 한다)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받은 범위의 업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그 출연사항만을 대상으로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1조의3(업무의 위탁) ① 관리기관이 법 제10조의2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금융기관: 법 제5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만 해당한다)의 업무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

		<p>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법 제5조의2제4호 및 제6호(같은 조 제4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만 해당한다)의 업무</p>
--	--	---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농림축산식품부)

<p>대행조문</p>		<p>제4조(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령은 퇴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 중심의 영농 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기에 경영이양한 농업인에게 경영이양소득 보조금(이하 “경영이양보조금” 이라 한다)을 지급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공사가 대행한다.</p> <p>제24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건불리지역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하 “조건불리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p> <p>③ 조건불리지역 선정에 관한 자료 분석 및 관리 업무는 공사가 대행한다.</p>
<p>권한 위탁</p>	<p>법률</p>	<p>-</p>
	<p>시행령</p>	<p>-</p>
<p>사무 위탁</p>	<p>법률</p>	<p>-</p>
	<p>시행령</p>	<p>-</p>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p>대행조문</p>	<p>제9조의2(물수농산물등의 이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 농산물 시장의 수급안정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세법」 제3</p> <p>제26조 및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이하 “물수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이관받을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물수농산물등을 매각·공매·기부 또는 소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물수농산물등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비용 또는 매각·공매 대금은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지출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물수농산물등의 처분업무를 제9조제3항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중에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⑤ 물수농산물등의 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수입하는 농산물 중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 농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 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p>
-------------	---

	<p>제66조(도매시장법인의 대행)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판매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거나 관리공사 또는 다른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 처리기준과 그 밖에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p>
<p>권한 위탁</p>	<p>법률</p> <p>제9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구매한 농산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이하 “농림협중앙회”라 한다)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비축사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쌀과 보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농림협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의 구매·수입·관리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 ① 경매사 자격시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p>

	<p>하여 실시한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제2항에 따른 시험의 정지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⑤ 제1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시험방법, 자격증 발급, 시험 응시 수수료, 자격증 발급 수수료,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5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국가회계원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p> <p>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립종자원장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p> <p>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5조(권한의 위임 등)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9조(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과 도매시장에의 출입의 금지·제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li> <li>2. 제79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에 대한 보고명령</li> </ol>
--	---

	<p>시행령</p>	<p>제12조(비축사업등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농산물의 비축사업 또는 출하조절사업(이하 “비축사업등”이라 한다)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비축용 농산물의 수매·수입·포장·수송·보관 및 판매</li> <li>2. 비축용 농산물을 확보하기 위한 재배·양식·선매 계약의 체결</li> <li>3. 농산물의 출하약정 및 선급금(先給金)의 지급</li> <li>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정산</li> </ol>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산물의 비축사업등을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상농산물의 품목 및 수량</li> <li>2. 대상농산물의 품질·규격 및 가격</li> <li>3. 대상농산물의 판매방법·수매 또는 수입시기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li> </ol> <p>제2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 ① 경매사 자격시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제2항에 따른 시험의 정지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⑤ 제1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시험방법, 자격증 발급, 시험 응시 수수료, 자격증 발급 수수료,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기금의 운용·관리사무의 위임·위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에게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제외한 기금의 수입·지출</li> <li>2.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제외한 기금재산의 취득·운영·처분 등</li> <li>3.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li> <li>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li> </ol>
--	------------	--

		<p>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p> <p>1. 법 제29조(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과 도매시장에의 출입의 금지·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p> <p>2.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의 업무집행 상황 보고명령</p>
사무 위탁	법률	<p>제69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p>⑤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75조(교육훈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매사, 중도매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시행령	-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대행조문	제17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생산 조건,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심사·인증은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품질인증기관”이
------	--

라 한다)로 하여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및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0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등을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7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검사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9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8조에 따른 검사 업무나 제96조에 따른 재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위생 관련 기관을 수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사 또는 재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검사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9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98조에 따른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권한 위탁	법률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생산자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등 농림 또는 수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및 제공 업무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한다.
사무 위탁	법률	제20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무자조금의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의 대표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령	-

## □ 농약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또는 농약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농약등의 광고에 관련된 표준광고용어권장안의 작성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제조업자·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구성된 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 업무를 농약 관련 단체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농약 관련 단체에 위탁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탁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농약등의 검사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농약등의 검사 중 유효성분 등에 관한 분석 3.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검사료의 수납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제25조에 따른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농어업재해보험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14조(업무 위탁)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p>제20조(재보험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재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2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운용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5조의2(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li> <li>2.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li> <li>3. 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li> <li>4. 손해평가인력의 육성</li> <li>5.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li> </ol>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li> <li>2. 제8조제2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관련 업무</li> <li>3. 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 제도 운용 관련 업무</li> <li>4. 그 밖에 재해보험사업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li> </ol>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의4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26조(통계의 수집·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p>
--	---

		<p>부장관은 보험대상의 현황, 피해 규모, 피해 원인 등 보험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수집·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재해보험 제도 및 상품 개발 등을 위한 조사·연구,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진흥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수집·관리, 조사·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18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어업 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업무</li> <li>2.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보험료를 납입받는 업무</li> <li>3.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li> <li>4. 제20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업무</li> <li>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li> </ol> <p>제21조(통계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수집·관리, 조사·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li> <li>1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li> <li>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li> <li>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li> <li>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요율산출기관 또는 보험계리률</li> </ol>

		<p>업으로 하는 자</p> <p>5.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p> <p>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p> <p>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p> <p>④ 농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p>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p>
--	--	---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43조(권한의 위임과 위탁)</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38조(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비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

## □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p>대행조문</p>	<p>제27조(환지 업무의 대행)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업무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이 환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농어촌공사</li> <li>2. 3명 이상의 환지사(換地士)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li> </ol>	
<p>권한 위탁</p>	<p>법률</p>	<p>제10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림수산 관련 단체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p>
	<p>시행령</p>	<p>제86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실시</li> <li>2.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li> <li>3. 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li> </ol>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수해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한국농어촌공사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조사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나 그 밖에 농어촌정비사업 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 능력을 갖춘 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8조에 따른 환지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p>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농업기계화 촉진법(농림축산식품부)

대행조문		제12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화 검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재지정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검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권한 위탁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농업기계화 관한 수요조사 및 평가 1의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화 지정·고시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화 사후검정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화 출하금지, 보완지시 및 검정 취소 4.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 5.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법 제14조에 따른 청문 7.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탁한다.

		<p>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점검</p> <p>2.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p>
사무 위탁	법률	<p>제8조의5(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대한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에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이하 “보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관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제조·유통업체(이하 “임대사업단”이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p>④ 보관소의 면적, 설비 및 임대사업단의 운영 방법, 운영비의 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 농업기계화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8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실태 확인에 관한 사무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무를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p>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4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업·농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④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영향평가등 관련 사항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p> <p>제46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45조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19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에 관한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중 농업·농촌 분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분야에 한정한다)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p>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대행조문	-
------	---

권한 위탁	법률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2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9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림 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2.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 3. 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무

## □ 농업협동조합법(농림축산식품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④ 지역농협은 제45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p>제57조(사업) ④ 국가나 공공단체가 지역농협에 제1항제7호의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제162조(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에 조합이나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p> <p>⑤ 금융감독원장은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조합에 관한 검사권의 일부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51조(감독권 등의 위임·위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앙회의 회원인 조합 또는 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의 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57조제1항제10호·제106조제10호 및 제111조제9호에 따른 조합의 사업승인</li> <li>2. 법 제84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산 사무의 감독</li> <li>3. 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 회원의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요구</li> <li>4. 제46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회원에 대한 감사 중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li> </ol>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조합공동사업 법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12조의11에서 준용하는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청산 사무의 감독</li> <li>2. 법 제162조제1항 및 이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 법인에 대한 감사 중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집행에 대한 감사 및</li> </ol>

		<p>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요구</p> <p>3. 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요구</p> <p>4.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감사 중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요구</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7항에 따라 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업무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p>
--	--	---

###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34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의 결정 2. 법 제4조에 따른 부실우려조합과 그 임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사무 위탁	법률	제30조(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조합등이 위탁한 업무용·비업무용 자산의 공매(公賣) 9. 조합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시행령	-

### □ 농지법(농림축산식품부)

대행조문	<p>제5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p>
------	--

		여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제5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대행조문	<p>제15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및 산업동향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	--

권한 위탁	법률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23조(판로지원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판매 및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 □ 농촌진흥법(농촌진흥청)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36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②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제19조에 따른 교육훈련사업 등에 관한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등)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이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특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계약 체결(계약 상대방 선정 및 기술료 결정·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그에 따른 기술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실용화재단에 위탁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훈련사업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시설·인력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교육훈련 관련 기관

		2.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인,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10조(지위 및 업무) ② 연합뉴스사는 제1항의 지위를 유지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시행령	-

### □ 다문화가족지원법(여성가족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3조(보수교육의 위탁)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민법」 제32조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사무 위탁	법률	제11조의2(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국어에 의한 상담·통역 서비스 등을 결혼이민자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이하 “전화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전화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소방청)

대행조문	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 1. 2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2.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를 제16조 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권한 위탁	제22조(권한의 위탁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주 및 그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업무, 제19조제2항의 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등 관련 시설·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② 다중이용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p>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의 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술 인력, 장비 등 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발급·재발급 신청, 그 밖에 관리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p>

□ 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

대행조문	<p>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와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p>
------	---

	<p>시·도지사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⑩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기기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인증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li> <li>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li> <li>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li> <li>다. 그 밖에 태양광, 수소연료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li> </ol> </li> <li>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li> <li>4.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li> <li>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li> <li>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li> </ol>
--	--

	<p>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p> <p>①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제5호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p> <p>제62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74조의2(검사업무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권한 위탁</p>	<p>법률</p>	<p>제8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시행령</p>	<p>제66조(권한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li> <li>1의2.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운영</li> <li>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li> <li>2의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를 위한 사업</li> <li>2의3.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방안 준수</li> </ol>

		<p>여부에 대한 검사</p> <p>2의4.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려는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및 설치된 시설에 대한 성능확인 등의 업무</p> <p>2의5.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운영</p> <p>3.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시·도지사 또는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p> <p>4.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 생략</p> <p>8. 법 제54조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관리</p> <p>8의2.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자(「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한정한다)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p> <p>8의3. 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 현황관리</p> <p>8의4. 법 제58조제13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운영</p> <p>8의5. 법 제58조제14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p> <p>8의6. 법 제58조제15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p> <p>9.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 수시 점검</p> <p>10. 법 제8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한다.</p> <p>1. 법 제58조제14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p> <p>2. 법 제7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p>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2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대외경제협력기금법(기획재정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이 부담한다.

## □ 대외무역법(산업통상자원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20조(전략물자의 판정 등)</p> <p>② 물품등의 무역거래자(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술이전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기술이전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4조의2 및 제25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사항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 관리위원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판정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p> <p>제5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세관장, 한국은행 총재, 한국수출입은행장, 외국환은행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감독한다.</p>
	시행령	<p>제37조(전략물자 판정 관련 전문기관)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말한다.</p> <p>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대상 물품등의 품목에 따라 그 물품등을 관장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장하는 물품등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p> <p>1.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제한에 관한</p>

		<p>권한</p> <p>2. 제25조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기준 소요량 결정에 관한 권한</p> <p>3. 제27조에 따른 외화획득 이행기간의 결정 및 그 연장에 관한 권한</p> <p>4.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만 해당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p> <p>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 이행 여부의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p> <p>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용목적 변경승인에 관한 권한</p> <p>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도·양수의 승인에 관한 권한</p> <p>5.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에 관한 권한</p> <p>6. 제3항제2호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한 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휘·감독 및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권한</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장하는 품목의 물품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 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의 권한 중 목재가구에 대한 권한은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탁한다.</p> <p>1. 제25조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기준 소요량 결정에 관한 권한</p> <p>2. 제28조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 이행 여부의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p> <p>3. 제3항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한 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휘·감독 및 자료의 제출요청에 관한 권한</p> <p>4. 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된 사무에 대한 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휘·감독 및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권한</p> <p>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무역협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선주협회(이하 “한국선주협회”라 하고, 제4호의</p>
--	--	---

	<p>업무에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제5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 업종별 관광협회(제5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라 하고, 제6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에 위탁한다.</p> <p>1. 법 제8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12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전문 무역상사의 지정 및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p> <p>1의2. 제21조제1항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의 부여 및 관리 등 수출입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산관리체계의 개발·운영</p> <p>2.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p> <p>3. 제23조에 따른 용역의 수출입 확인</p> <p>4. 제23조에 따른 용역 중 해운업의 수출입 확인</p> <p>5. 제23조에 따른 용역 중 관광사업의 수출입 확인</p> <p>6. 제23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p> <p>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한다.</p> <p>1. 제5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원산지 표시방법의 범위에서 그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권한</p> <p>1의2.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 및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 권한</p> <p>2.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 원산지의 판정 및 이의제기의 처리에 관한 권한</p> <p>3. 제4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한 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휘·감독 및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권한</p> <p>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승인 대상 물품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p> <p>1. 법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의 승인,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변경승인 및 변경사항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p> <p>2. 제24조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승인에 관한 권한</p> <p>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장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에 대한</p>
--	---

		<p>제28조에 따른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p> <p>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플랜트수출의 승인 및 변경승인(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이하 “한국기계산업진흥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다만, 연불금융(延拂金融) 지원의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한다.</p> <p>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한상사증재원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75조제2항에 따른 무역분쟁에 대한 조정 또는 알선에 관한 권한</li> <li>2. 제80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 조정비용 부담 등에 관한 권한</li> </ol> <p>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6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관세양허를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업무를 포함한다)를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p> <p>⑪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31조에 따른 구매확인서의 발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을 외국환은행의 장 및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위탁한다.</p> <p>⑫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의 판정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전략물자관리원에 위탁한다.</p>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행정안전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금융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신청인의 접근 용이성과 지급 청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전국적 점포망을 갖춘 금융회사 등에 위탁한다.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대행조문	<p>제10조의7(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5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 등이 설치·운영하는 교통카드·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증에 관한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기관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통카드 및 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인증을 받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p> <p>제19조(평가업무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p>
------	---

		<p>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책의 평가</p> <p>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p>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10조의10(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8 및 제10조의9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관리·제출 및 제공을 위하여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11조의9(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10제4항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한다.</p>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3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업종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업종의 특성상 사업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다</p>

		<p>고 인정되어 고시하는 업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에 관한 신청의 접수</li> <li>2.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의 접수</li> <li>3.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통지</li> <li>4. 법 제32조제6항 단서에 따른 사업조정 심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li> <li>5.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권고·공표 및 명령</li> <li>6.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고·공표·이행 명령 및 철회</li> <li>7.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및 조사</li> <li>8. 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권한(제7호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li> <li>9. 제23조제6항 후단 및 제23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 서류의 공개</li> </ol> <p>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효율적인 사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고시하는 업종에 대하여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업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p>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대행조문	제48조(권한의 위임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이 법에 따른 조사·연구 및 댐건설 등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권한 위탁	<p>법률</p> <p>제45조(국토교통부장관 등의 권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댐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하천법」과 「골재채취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구역에</p>

	<p>서의 다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하며,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의 범위에 속하는 처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수탁관리자가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li> <li>2. 제1호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하천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li> <li>3. 「하천법」 제46조제6호에 따른 야영, 취사와 떡밥·어분(魚粉)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의 지정</li> <li>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li> <li>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처분 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하천법」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등의 처분</li> <li>나. 「골재채취법」 제31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의 취소 또는 골재채취의 중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상복구 등의 명령</li> </ul> </li> </ol> <p>제48조(권한의 위임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이 법에 따른 조사·연구 및 댐건설 등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시행령</p>	<p>제46조(댐수탁관리자가 할 수 있는 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댐의 관리가 위탁된 경우 그 수탁관리자가 할 수 있는 처분 등은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처분 등(제4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은 제외한다)과 이에 관련된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으로 한다.</p> <p>제48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수탁관리자에게 위탁된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승인·변경·폐지·고시 및 통지</li> <li>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준공인가 증명서의 발급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고시</li> <li>3.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에 대한 허가 및 하천의 점용허가 등</li> <li>4.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li> <li>5.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li> <li>6. 법 제4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처분</li> <li>7. 제6호의 처분과 관련된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li> <li>8.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시·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은 제외한다)</li> </ol> <p>②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권한 중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 운항 행위허가,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허가 및 이들 행위허가에 딸린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허가</li> <li>2. 제1호의 허가와 관련된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 가목의 처분과 이에 관련된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li> <li>3.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시·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으로 한정한다)</li> </ol> <p>48조의2(업무의 위탁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댐건설을 위한 조사</li> <li>2. 댐 관련 연구</li> <li>3. 댐건설사업의 시행</li> <li>4. 댐 설계</li> </ol>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사무 위탁	법률	<p>제15조(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① 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건설한 댐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리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댐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댐관리청”이라 한다)는 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또는 댐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댐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댐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4조의4(공공하수도의 설치)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재협의된 내용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환경보전 방안을 포함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댐건설기간 중에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탁받아 설치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16조(댐관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댐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또는 댐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한 댐의 관리업무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와 동시에 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p> <p>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② 환경부장관은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 등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 □ 도로교통법(경찰청)

대행조문	<p>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①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p> <p>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학원등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p> <p>② 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시설·설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설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시설·설비의 개선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li> <li>2. 학원등 설립·운영자</li> <li>3.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학감</li> </ol> <p>③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학원등에 출입·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④ 경찰청장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공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li> </ol>
------	---

	<p>2.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및 정기·수시 적성검사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p> <p>3. 경찰청장이 위탁·승인 또는 대행하게 한 사업과 지방경찰청장이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한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p> <p>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① 시장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p> <p>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③ 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거나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등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⑤ 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운전면허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⑥ 경찰청장은 제106조와 제107조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한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업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권한 위탁</p>	<p>법률</p> <p>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① 시장 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p> <p>③ 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거나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 등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⑤ 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운전면허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⑥ 경찰청장은 제106조와 제107조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한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업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86조(위임 및 위탁)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광역교통신호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군수는 상호 협의하여 제1호에 따른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交通安全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li> <li>2.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 권한</li> </ol> <p>④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법 제76조제5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공단에 위탁한다.</p> <p>⑤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발급.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은 제외한다.</li> <li>2. 법 제86조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재발급</li> <li>3.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갱신발급</li> <li>4. 법 제9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반납 접수</li> <li>5. 법 제98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신청 접수 및 발급</li> <li>6.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강사자격증 발급 및 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기능검정원자격증의 발급</li> </ol>
사무 위탁	법률	<p>제119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 ⑤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경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li> </ol> <p>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② 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과</p>

		<p>태료 징수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p>
	<p>시행령</p>	<p>제88조의2(과태료 징수업무 위탁)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제2호의 업무를 위탁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과태료를 5백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p> <p>나. 과태료를 7년 이상 체납한 사람</p> <p>다.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하 “체납자”라 한다) 중 본인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지방경찰청장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p> <p>가.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p> <p>나. 체납자의 재산 조사</p> <p>다. 체납과태료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p>

□ 도로법(국토교통부)

<p>대행조문</p>	<p>제32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이 하여야 하는 도로공사를 스스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도·군도 및 구도에 대한 도로공사는 제외한다.</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여야 하는 도로공사를 스스로 시행할 수 있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p>
-------------	---

	<p>제65조(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p> <p>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p> <p>제118조(권한의 대행) 제32조제3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이 장(章)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도로관리청으로 본다.</p>	
권한 위탁	<p>법률</p>	<p>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업무</li> <li>2.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업무</li> <li>3. 제102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조사 업무</li> <li>4. 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시행령</p>	<p>제101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11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관리 업무</li> <li>2.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중 특수교(特殊橋)의 관리 업무</li> </ol>
사무 위탁	<p>법률</p>	<p>제105조(도로협회) ①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로 분야 기술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li> <li>2. 도로에 관한 인식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홍보·교육</li> </ol>

		<p>3. 도로에 관한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p> <p>4. 도로에 관한 연구·개발 및 사업관리</p> <p>5. 국제 도로 관련 단체와의 협력</p> <p>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하는 사업</p> <p>⑥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1.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업무</p> <p>2.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업무</p> <p>3. 제102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조사 업무</p> <p>4. 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시행령	<p>제95조(협회 위탁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4항제6호에 따라 법 제104조제2항제2호의 사업을 협회에 위탁한다.</p> <p>제101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11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p> <p>1.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관리 업무</p> <p>2.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중 특수교(特殊橋)의 관리 업무</p>

□ 도서개발 촉진법(행정안전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9조(사업의 시행자) ① 지정도서의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p> <p>② 제1항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발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12조(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탁시행할 개발사업(이하 “위탁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지</li> <li>2. 위탁사업의 종류 및 규모</li> <li>3. 위탁사업비의 조달 및 관리방법</li> <li>4. 위탁사업의 시행기간</li> <li>5. 위탁사업의 시행방법</li> <li>6. 위탁사업의 시행에 따른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li> <li>7. 기타 개발사업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li> </ol>

## □ 도서관법(문화체육관광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협회 및 단체 등에 사업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령	제2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 관련 협회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사무 위탁	법률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협회

		및 단체 등에 사업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령	제2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 관련 협회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 도시가스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대행조문	<p>제28조(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6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하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p> <p>제29조(안전관리자) ① 도시가스사업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이하 이 조, 제30조제2항, 제53조제5호·제6호 및 제54조제1항제16호에서 같다)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물의 소유자</li> <li>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li> <li>3.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부득이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li> </ol> <p>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p>
------	---

권한 위탁	법률	<p>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업무는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4조제3항에 따른 완공도면 사본의 접수</li> <li>2. 제15조제1항 본문(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시공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li> <li>3. 제17조제1항 본문(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li> <li>4. 제26조제5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li> <li>5.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 조치 명령</li> <li>6. 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li> </ol> <p>③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중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권한(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권한을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권한과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권한의 구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도시개발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p>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li> <li>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li> <li>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li> <li>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li> </ol> <p>①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분양 등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55조(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①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li> <li>2. 전기시설·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전기·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li> <li>3. 통신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li> </ol> <p>④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중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로서 시행자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 설치 사업이나 상하수도 설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p>	
	권한 위탁	<p>법률 -</p> <p>시행령 -</p>
사무 위탁	<p>법률</p> <p>제12조(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① 시행자는 항만·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p>	

	<p>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②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토지 매수 업무, 손실 보상 업무,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정부출자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출자기관에 주민 이주대책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p> <p>제16조(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 ① 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④ 조합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이나 제3항에 따른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p> <p>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부과금이나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급하여야 한다.</p> <p>제46조(청산금의 징수·교부 등) ③ 행정청인 시행자는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p>
시행령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대행조문	<p>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공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p>	
	<p>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① 민간공원추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p>	
<p>제23조(겸용 공작물의 관리) 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하천·도로·상하수도·저류시설(貯留施設), 그 밖의 시설·공작물 등(이하 “다른 공작물”이라 한다)이 상호 겸용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서로 협의하여 그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행정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가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유지·수선에 한정하여 관리를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p>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공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시행령	-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제1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검토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이하 “교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①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p>⑥ 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요구받은 사업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자료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p> <p>제25조(교통영향평가의 대행) ①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또는 변경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권한 위탁	법률	<p>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p> <p>1.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의 접수</p> <p>3. 제5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구·조사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자료의 제공 및 그에 따른 사용료의 수납</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회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국토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p>제9조(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으로 하여금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p>
------	--

할 수 있다.

1.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토지등소유자(제16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조합의 임원) ⑥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유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업무집행,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p>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p> <p>제25조(대의원회) ①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p> <p>②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p>
권한 위탁	법률	<p>제83조(권한의 위임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74조의2에 따른 교육의 실시</li> <li>2. 제74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운영</li> <li>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li> </ol>
	시행령	<p>제72조(권한의 위임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를 협회에 위탁한다.</p>
사무 위탁	법률	<p>제58조(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①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분할징수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1조제5항을 준용한다.</p> <p>제61조(비용의 조달) ①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④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14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p> <p>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29조(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p>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p> <p>⑥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대행조문	<p>제14조(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①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이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라 한다)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p>
------	---

	<p>협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모든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관리</li> <li>2.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li> <li>3.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금의 관리</li> <li>4.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에 대한 조언</li> <li>5.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li> </ol> <p>제16조(민간투자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반시설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一團)의 기반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총괄사업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p> <p>제27조(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①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시설: 지방자치단체</li> <li>2. 전기시설,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해당 지역에 전기·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li> <li>3. 통신시설: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li> <li>4. 그 밖의 기반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li> </ol> <p>③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수도·하수도 시설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설치비용을 부담하려는 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 또는 상수도·하수도 시설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p>
--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도시철도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24조(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 건설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 운영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

		② 제1항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등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8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 및 해양수산자원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전문기관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8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

		<p>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구축·운영의 대상이 되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 및 해양수산자원에 관한 지식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li> <li>2. 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한 연구·조사의 결과물</li> <li>3. 지형·지질관련 정보 및 조석(潮汐)·수온·염분 등 해양관련 정보</li> <li>4. 그 밖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li> </ol>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중에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에 적합한 1개의 위탁전문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립수산과학원</li> <li>2. 국립환경과학원</li> <li>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li> <li>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li> <li>5. 그 밖에 독도의 정보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li> </ol>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대행조문		
권한 위탁	법률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사무 위탁	법률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요시

	<p>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구조를 조사하여 공표한다.</p> <p>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항에 의한 시장구조의 조사·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内部去來公示對象會社”라 한다)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이하 “大規模内部去來”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li> <li>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li> <li>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li> <li>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li> </ol>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따른 신고수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신고수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정한다.</p> <p>제55조의6(과징금 징수 및 채납처분)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p>
--	---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안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p>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채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⑥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p>제4조의2(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사무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등)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조사 또는 공표 및 이와 관련된 자료제출요청에 관한 사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구조의 조사 또는 공표사무를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위탁사무의 처리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 동물보호법(농림축산식품부)

대행조문	<p>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	---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p> <p>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16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목록을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p> <p>④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업무·보상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대검찰청, 법무부, 경찰청)**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5조(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소년원, 치료감호시설 등(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를 위탁할 수 있다.</p> <p>제10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등) ①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기관(이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라 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p> <p>1.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감식 및 데이터베이스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p> <p>2. 데이터베이스의 관리</p> <p>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 대한 위임 또는 위탁, 디엔에이감식업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제12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찰청장 업무의 위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p>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제2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국립과 학수사연구원에 위탁</p> <p>2. 군사법경찰관이 법 제7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감 식업무: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위탁</p>
--	--

□ 디자인보호법(특허청)

대행조문		<p>제208조(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디자인등록원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전자화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이하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p> <p>② 특허청장은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⑥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 그 밖에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208조(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디자인등록원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전자화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이하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p> <p>② 특허청장은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⑥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 그 밖에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의3에 따른 협회 또는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법 제32조의2에 따른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부여 권한을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위탁한다.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대행조문	<p>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li> <li>2.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li> <li>3. 외국인의 투자유치</li> <li>4. 만화의 해외 현지화 지원</li> <li>5. 만화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li> <li>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li> </ol>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은 만화 및 만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li> <li>2.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li> <li>3. 외국인의 투자유치</li> <li>4. 만화의 해외 현지화 지원</li> <li>5. 만화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li> <li>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li> </ol>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콘텐츠진흥원</li> <li>2. 「민법」 제32조에 따라 만화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만화의 국외진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li> </ol>

## □ 먹는물관리법(환경부)

대행조문	<p>제14조(환경영향조사의 대행) 제9조에 따라 샘플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플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조사서를 작성할 때에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에게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p>
------	---

권한 위탁	법률	제55조(위임과 위탁 등)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와 제26조제2항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0조(위임 및 위탁) ④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 교육의 일부를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사무 위탁	법률	제41조(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①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제품이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자가 검사(檢査)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시·도지사는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제조업자가 직접 검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면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산림청)

대행조문		제15조(탄소저장량 표시·측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에 탄소저장량의 측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 표시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권한 위탁	법률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회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④ 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2.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재교육프

		<p>로그래밍의 인증,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및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신청 접수 및 검토</p> <p>3. 법 제42조제1호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및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신청 수수료의 징수</p> <p>⑤ 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li> <li>2.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신청 접수 및 검토</li> <li>3. 안전성평가</li> <li>4. 자체검사공장의 지정</li> <li>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품질인증</li> <li>6. 법 제23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정보공개</li> <li>7. 법 제42조제1호에 따른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신청 수수료의 징수</li> </ol>
<p>사무 위탁</p>	<p>법률</p>	<p>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 산림청장은 시·도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은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기준·측정방법 및 공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 또는 이용할 때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화학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고 한다)를 할 수 있다.</p> <p>② 안전성평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p> <p>⑥ 안전성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유효기간, 안전성 우수 목재</p>

		<p>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절차,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1조(목재제품의 품질인증)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p>② 품질인증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p> <p>⑥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방법, 인증절차, 인증기준 및 실시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23조(목재제품의 정보공개)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공개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의 결과</li> <li>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결과</li> <li>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의 결과</li> </ol>
	시행령	-

□ 무역보험법(산업통상자원부)

대행조문		<p>제53조의2(업무의 대행) ① 공사는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의 일부를 외국의 무역보험 관련 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p> <p>② 공사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외국의 무역보험 관련 기관이 하는 무역보험사업 관련 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p>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53조(업무) ① 공사는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역보험(환율 변동과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포</li> </ol>

		<p>함한다)</p> <p>2.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p> <p>3. 기금의 관리 및 운용</p> <p>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p> <p>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p> <p>6. 그 밖에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p> <p>② 공사는 신뢰성 보장사업으로서 부품·소재의 신뢰성 상실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p>③ 공사는 수출(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된 수출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자 등의 대외채권에 대한 추심(推尋) 업무를 그 수출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있다.</p>
	시행령	-

##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재청)

	대행조문	-
관련 위탁	법률	<p>제22조(정기조사 등)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⑥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⑧ 제1항과 제2항의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48조(조사 및 기록화)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분포현황, 전승실태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녹음·사진촬영·영상녹화·속기 등의 방법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작성하고 유지·보존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형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조사, 관련 기록의 수집 및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20조(정기조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조교의 기능·예능 현황</li> <li>2.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li> <li>3.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자 현황</li> <li>4.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원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관리·운영 현황</li> <li>5. 전수교육시설 현황</li> </ol>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문화체육관광부)

대행조문	<p>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해당 제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붙일 수 있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④ 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정부는 문화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영상제·견본시장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 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p>	
권한 위탁	법률	<p>제58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제46조의4(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8조에 따라 법 제 52조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변경등록 업무 및 제46조의2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 업무를 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한다.
사무 위탁	법률	<p>제10조의2(완성보증계정의 설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제작 및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완성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에 완성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li> <li>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li> </ol> <p>② 완성보증계정에 대한 출연금·보증수수료 등의 수입·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완성보증계정을 관리하는 기관은 주 채무자로 하여금 제작하는 문화상품에 대한 공정 및 회계 관리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문화산업진흥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p> <p>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문화콘텐츠의 개발(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하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li> <li>2. 그 밖에 문화산업과 관련된 법인·기관 또는 단체</li> </ol> <p>③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은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문화상품 제작자나 기술개발자(이하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p>④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의 범위</li> <li>2. 제2항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li> </ol>

	<p>3. 제3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 선정의 방법·절차</p> <p>제17조의5(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학기술, 디자인, 문화예술, 인문사회 등 다양한 학문분야들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 복합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을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이하 “연구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화기술의 연구 및 기술개발</li> <li>2. 문화기술 분야의 표준화 연구</li> <li>3. 문화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지원</li> <li>4. 문화기술 분야의 국내외 산학연 공동연구·기술제휴</li> <li>5. 문화기술의 개발·보급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li> <li>6. 그 밖에 연구 주관기관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li> </ol> <p>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 주관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④ 연구 주관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정부는 문화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영상제·견본시장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p> <p>제51조(업무의 위탁 등)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49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사업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사업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가 하려는 사업과 같은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자</li> </ol>
--	---

		<p>2.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주요 투자자</p> <p>3. 그 밖에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자</p> <p>②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자금 또는 자산의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보관업무를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p> <p>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p> <p>2.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유한)</p> <p>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p>
	시행령	-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문화체육관광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제16조의3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심사 및 자격증의 발급 업무, 제18조의2에 따른 교과목(「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말한다)의 문화예술 교육과정 적합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문화예술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41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그 밖의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38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①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③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④ 연합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p> <p>⑤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 지원</li> <li>2. 문화예술회관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li> </ol>

		<p>3. 문화예술회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p> <p>4.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지원</p> <p>5. 문화예술회관 관련 국내외 교류</p> <p>6.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한 소외계층 대상 공연활동 지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p> <p>7.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⑥ 연합회는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익은 제5항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p> <p>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p> <p>2.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p> <p>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p>
	시행령	-

□ 문화재보호기금법(문화재청)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문화재청장이 관리·운용한다.</p> <p>② 문화재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단이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p>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사무</li> <li>2.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납부금의 수납 및 관리에 관한 사무</li> <li>3.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li> <li>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사무</li> </ol> <p>⑤ 이 영 및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p>
--	-----	--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문화재청)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li> <li>2.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li> <li>3.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li> <li>4. 제1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능력 평가 및 공시와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li> <li>5. 제14조의3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의 관리·제공,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li> <li>6. 제36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공개</li> </ol>
	시행령	<p>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권한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p>

		<p>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li> <li>2. 법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li> </ol>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대행조문		<p>제27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li> <li>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li> <li>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li> <li>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li> <li>5.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li> </ol> <p>⑤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류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물류시설의 운영자(이하 “입주기업체”라 한다) 및 지원시설의 운영자(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1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물류터미널사업자는 물류터미널의 건설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p> <p>제31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항만, 용수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②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물류터미널사업자”는 “시행자”로, “물류터미널”은 “물류단지”로 본다.</p>
	<p>시행령</p>	<p>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자치단체</li> <li>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도로·상수도·철도·공동구(共同溝)·공공폐수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집단에너지공급시설·제방·호안·방조제·하구언 및 녹지시설을 말한다.</p> <p>② 시행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받아 시행할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탁사업의 사업지</li> <li>2. 위탁사업의 종류·규모·금액과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될 사항</li> </ol>

		<p>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p> <p>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p> <p>5. 위탁자가 부동산·기자재 또는 근로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p> <p>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p> <p>7.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20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	--	---

□ 물류정책기본법(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p>대행조문</p>		<p>제40조(인증심사대행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증신청의 접수</li> <li>2. 제38조제4항의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li> <li>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li> <li>4. 그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li> </ol> <p>② 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기관</li> <li>2. 정부출연연구기관</li> </ol> <p>③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있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p> <p>제60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과 관련하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p>
-------------	--	--

	<p>지정심사 대행기관(이하 “지정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의 접수</li> <li>2. 제60조의3제2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사</li> <li>3. 제60조의3제3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점검</li> <li>4. 그 밖에 지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li> </ol> <p>② 지정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기관</li> <li>2. 정부출연연구기관</li> </ol> <p>③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권한 위탁	<p>법률</p> <p>제65조(권한의 위임 및 사무의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p>
	<p>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p>
사무 위탁	<p>법률</p> <p>제50조(물류인력의 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분야의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에 종사하는 물류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li> <li>2. 물류체계 효율화 및 국제물류 활성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보급</li> <li>3. 외국 물류대학의 국내유치활동 지원 및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의 물류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활동 지원</li> <li>4. 물류시설의 운영과 물류장비의 조작을 담당하는 기능인력의 양성·교육</li> <li>5. 그 밖에 신규 물류인력 양성, 물류관리사 재교육 또는 외국인 물류인력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li> </ol> <p>③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p>

		<p>우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사업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④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업무별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51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 ① 물류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시기, 절차, 방법, 시험과목, 출제, 응시자격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12조(교육·연수)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하 “물류교육·연수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제41조의2(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li> <li>2.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법 제55조에 따른 물류관련협회</li> </ol>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환경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p>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제20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게 위탁한다.
사무 위탁	법률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⑤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라 한다)에게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에게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62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58조, 「주택법」 제85조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에 따른 협회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행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52조(업무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제50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사무 위탁	법률	제15조(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임대관리를 위탁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위탁받은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장의 적용에 있어서 주택임대관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본다.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

		<p>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p> <p>②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p>
	시행령	-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24조(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p>제22조의2(업무의 위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개발과제 및 기술이전과제의 발굴에 관한 업무</li> <li>2.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개발과제의 연구결과 및 기술이전결과의 평가</li> <li>3.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외 규격의 조사 및 분석</li> <li>4.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정보의 수집·관리 및 같은 항제2호에 따른 기술정보교류체제의 구축</li> <li>5.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이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회수</li> <li>6.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과제에 관한 목록 작성 및 공고</li> <li>7. 제16조제1항에 따른 상호이전이 가능한 기술의 목록 작성, 통보 및 관계인의 열람 업무</li> </ol>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무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3조 (교정업무의 민간 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선정방법, 선정절차, 그 밖에 수탁자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p> <p>제4조 (위탁계약의 체결)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위탁하려면 수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담당할 업무와 민영교도소등에 파견된 소속 공무원이 담당할 업무를 구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p>
	시행령	-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대행조문		<p>제9조(사무기구) 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p> <p>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p> <p>⑤ 사무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무처의 조직 및 직무범위</li> <li>2.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li> <li>3.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ol>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대행조문	<p>제21조(계좌의 관리 등) ① 발달장애인이 지급받을 복지지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예금의 인출 및 다른 계좌로의 이체 등 관리도 발달장애인 스스로 하여야 한다.</p> <p>② 발달장애인에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계좌 관리를 대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을 대신하여 계좌를 관리할 사람(이하 “계좌</p>
------	--

		<p>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p> <p>③ 계좌관리인의 자격 및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권한 위탁	법률	<p>제41조(위임·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p> <p>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운영 및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발명진흥법(특허청)

대행조문	<p>제9조의2(연구노트의 활용 촉진) ① 특허청장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1. 연구노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p>
------	--

	<p>2. 연구노트의 작성·관리 및 사용 등을 위한 교육</p> <p>3. 서면 연구노트의 보급 및 전자 연구노트의 시스템 구축 지원</p> <p>4. 그 밖에 연구노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②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의3(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①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이하 “정보화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정보화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p> <p>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의 양성</p> <p>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p> <p>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p> <p>②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0조의2(산업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할 수 있다.</p> <p>②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p>
--	--

	<p>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권한 위탁	<p><b>법률</b></p> <p>제56조(권한의 위임 등) 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전문기관, 협회, 한국발명진흥회,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변리사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b>시행령</b></p> <p>제24조(업무의 위탁) ① 특허청장은 「발명진흥법」 제56조에 따라 제3조제1항제3호의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발명기관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 기관인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상실시권의 허락</li> <li>2. 국유특허권의 홍보 등 관리</li> </ol> <p>제29조(업무의 위탁) ① 특허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발명 장려 행사의 개최</li> <li>2. 법 제6조제3호에 따른 우수 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와 우수 발명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li> <li>3.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li> </ol> <p>② 특허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40조의4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업무</li> <li>2. 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li> </ol>

사무 위탁	법률	<p>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정부는 산업재산권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0조의6(협회의 설립·운영 등) ①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li> <li>2.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현황 및 통계의 관리</li> <li>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li> <li>4.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에 관하여 위탁한 업무</li> <li>5.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li> </ol> <p>제53조(사업) ① 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발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보화</li> <li>2. 산업재산권 기술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보급</li> <li>3. 산업재산권 관련 인재 양성 및 교육시설의 운영</li> <li>4. 발명 교육·연구 및 발명교원의 육성</li> <li>5. 발명진흥을 위한 전시·행사 및 국제 교류·협력</li> <li>6.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에 대한 지원</li> <li>7. 특허기술의 평가 및 사업화 촉진</li> <li>8. 특허청장이 발명의 진흥에 관하여 위탁한 사업</li> <li>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li> </ol>
-------	----	---

		② 한국발명진흥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8조의5(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④ 법 제20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51조에 따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 특허청장이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16조의5(지원사업의 평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기사업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32조의3(지원사업의 평가)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소의 지원사업 시행자가 배분받은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설용량이 5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2.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발전소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 ②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비 집행 실적

		<p>2.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의 활용 실적, 복지지원 실적</p> <p>3. 그 밖에 주민 만족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법 제16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을 말한다.</p>
--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p>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제54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무에 대한 감독, 처리·보고, 조사·확인, 자료의 제출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42조(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화권유판매자의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수신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등록할 수 있는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p>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시스템의 운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원활한 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1.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등록된 소비자단체</p> <p>2. 그 밖에 제54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체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p> <p>④ 제3항에 따라 운용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p>

		선정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37조(권한의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3조(권한의 위탁 등) ① 법 제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원자력발전사업자 2. 원자력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대학교 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3.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조사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의 납부 독촉 4.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
사무 위탁	법률	제20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p>3.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p> <p>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p> <p>제25조(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자력안전법」 제54조에 따른 업무대행자</li> <li>2. 방사성폐기물 관리업무와 관련된 기술능력·인력 및 재무능력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li> </ol>
	시행령	<p>제14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관리</li> <li>2.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홍보</li> <li>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및 건설</li> <li>4. 제3조 각 호의 사업</li> </ol>

□ 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10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전파법」에 따른</p>

		<p>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그 결과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79조제2항 전단·후단 및 이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준공검사 및 재허가검사에 관한 사항</li> <li>2. 법 제79조제2항 전단 및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li> <li>3.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전송·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li> </ol> <p>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이 영 제57조제7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li> <li>2.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li> <li>3. 법 제108조제1항제4호, 제8호, 제9호,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li> </ol> <p>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법 제90조의2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다.</p>
사무 위탁	법률	<p>제62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의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① 공사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제73조(방송광고등) ⑧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사”라 한다)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만 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편성될 경우 외주제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사에게 간접광고 판매</p>

		<p>를 위탁하여야 한다.</p> <p>제86조(자체심의) ①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방송권역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가 방송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방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심의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59조의4(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법 제73조제6항에 따라 간접광고 판매 위탁 또는 판매 계약 체결 전까지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품, 노출 시간·횟수 및 노출 방법 등 간접광고의 내용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합의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외주제작사는 법 제73조제8항에 따라 해당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만 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편성될 경우에는 해당 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광고판매대행자에게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포함되는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p>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대행조문	-
권한 위탁	<p>법률</p> <p>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p>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p>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1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업무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의 지원업무 4. 법 제21조에 따른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사무 위탁	법률	제2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운용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징수·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방송통신 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6조(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기금의 징수·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3.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4. 기금의 융자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기금의 징수·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 □ 방위사업법(국방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61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과학연구소장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③ 방위사업청장은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6조의 표준화 및 제27조의 군수품목록정보 관리와 관련한 조사·분석</li> <li>2. 제33조의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조사</li> <li>3. 제38조의 자금용자 지원대상에 대한 분석</li> </ol>
	시행령	<p>제71조(권한의 위탁)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주관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공고 및 연구개발사업제안서의 접수</li> <li>1의2.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로 한정한다)과 관련된 시제품 생산 업체 선정 및 관리</li> <li>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계약 및 관리</li> <li>3. 제66조제3항 후단에 따른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li> </ol> <p>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행연구에 관한 업무 중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행연구와 관련된 조사·분석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업체 선정, 계약 및 관리와 선행연구 결과물의 자료 관리</li> <li>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 중 무기체계 및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검사조서의 발급</li> <li>3. 제32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형상내용의 통제에 관한 업무 중 양산 및 운영유지 단계에서 군수품(제1호에 따른 검사조서 발급 대상으로 한정한다)의 작전운용성능, 전력화 등의 일정 및 비용</li> </ol>

		<p>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설계상의 오류 및 수정 등에 관한 형상내용의 통제</p> <p>4.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군용총포등의 운반 및 폐기에 대한 감독</p> <p>5.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가 비축하여야 할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의 확인</p>
사무 위탁	법률	<p>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①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한다.</p> <p>⑥ 국방기술품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9. 그 밖에 국방과학기술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p> <p>⑧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p>제37조(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 ① 법 제32조제6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과학기술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사업은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p> <p>1. 선행연구와 관련된 조사·분석 업무</p> <p>2. 절충교역·성능개량 등과 관련된 기술지원 업무</p>

□ 방조제 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대행조문	<p>제6조(방조제의 관리) ① 국가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조사·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조사·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방조제를 관리할 때 종합적인 조정(調整)이 필요하거나 시·도지사가 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 또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게 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교육공무원법(교육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원활한 결원 보충 및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근무 예정 학교를 미리 정하여 공개전형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시험에 따라 채용된 교사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함에 있어 국립 학교의 장은 그 전형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의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의3(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①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시행령	-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보호원 및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12조(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활용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5조(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위탁한다.

## □ 교통안전공단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시행령	-

□ 교통안전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5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② 교통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과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시·도지사등의 권한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접수 및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평가 2.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관리 3.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자격증명서의 발급 4. 운행기록등(자동차의 운행기록등만 해당한다)의 제출 요청 및 점검·분석 5. 교통안전체험연구·교육시설의 설치·운영 6. 교통문화지수의 개발·조사·작성 및 결과의 공표 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경찰청장의 권한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교통사고관련자료등(제3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보관·관리하는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은 제외한다)의 제출 요구 2.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관리 3. 교통안전체험연구·교육시설의 설치·운영 4.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교통문화지수의 조사·작성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3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 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교통사업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 □ 구강보건법(보건복지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15조의2(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진료지침 및 방향설정</li> <li>2.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의 정보의 공유 및 협력</li> <li>3. 장애인 구강환자의 진료</li> </ol> <p>② 시·도지사는 장애인의 구강진료 등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을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21조(교육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되는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p>제12조의2(권역·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업무범위) ①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뢰한 장애인 구강환자의 진료</li> <li>2.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의 정보의 공유 및 협력</li> </ol> <p>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다음 각</p>

		<p>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 구강환자의 일반 진료</li> <li>2. 인접지역 장애인 구강진료지원 사업</li> </ol> <p>제17조(교육훈련 위탁대상 전문 관계 기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이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되는 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 관계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도지방공무원교육원</li> <li>2. 구강보건전문연구기관</li> <li>3.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li> </ol>
--	--	--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9조(연구·개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평가 및 이전과 보급</li> <li>2. 산업계 또는 학계와의 공동 연구 및 개발</li> <li>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li> <li>4. 국제 기술협력 및 교류</li> </ol>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정보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

## □ 국가공무원법(인사혁신처)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20조(권한 위탁)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34조(시험 실시기관) ④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승진 시험, 그 밖의 시험은 헌법재판소사무처에서 실시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그 시험의 전부나 일부를 인사혁신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3조(시험실시기관 등)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및 임용 추천과 시험의 공동·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p> <p>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p> <p>제56조(시험실시기관 등)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은 사무총장이 실시한다.</p> <p>⑧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역량평가의 실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24조(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① 임용권자나 법 제39조에 규정된 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에게는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 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국회인사규칙</p> <p>제27조(시보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의 훈련) ①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또는 법 제39조에 규정된 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를 각급 공무원교육원·일반교육기관 기타 기관에 위탁하거나, 소속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實務修習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하여는 훈련을 받는 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 직급 또는 임용예정 전문경력관직위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p> <p>제24조의5(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기관) ① 전문경력관 가군의 채용시험은 사무총장이 실시하고,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의 채용시험은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실시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p> <p>제26조(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에게는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p> <p>제18조(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임용권자는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해서는 훈련을 받는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p>
--	--	---

		에서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25조(권한의 위탁)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8조(업무의 위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 지급 또는 생활비 용자지원</li> <li>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환수 및 지급 중지</li> <li>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및 확인</li> <li>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 지급</li> <li>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 관련 사항을 전문편성하는 방송사업의 실시</li> <li>6.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li> </ol>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정연구기관</li> <li>2. 정부출연연구기관</li> <li>3. 지방연구원</li> </ol>

		<p>4. 한국과학창의재단</p> <p>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p> <p>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p> <p>7.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제5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법 제6조제3항·제7조제4항·제8조제3항 및 제2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탁사업의 내용과 범위</li> <li>2. 위탁사업기간</li> <li>3. 위탁사업비 및 그 지급방법</li> <li>4. 위탁사업에 속하는 단위사업</li> <li>5. 위탁사업의 수행 결과 보고</li> <li>6. 그 밖에 위탁에 수반되는 사항</li> </ol>
<p>사무 위탁</p>	<p>법률</p>	<p>제6조(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이공계인력의 수급(需給)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이하 “종합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p> <p>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효율적인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정보체계의 구축·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7조(이공계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 육성·활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p> <p>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범위·방법 및 이공계인력 수치지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이공계 대학 진학 촉진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 교육과정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재학생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공계의 유망 전공분야</p>

		<p>등 관련 정보를 재학생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관련 정보의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7조(이공계의 유망 전공분야 등 관련 정보의 제공)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이공계 대학 전공분야의 교과과정, 진로, 특성 및 전망 등에 관한 진학정보를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공고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교육기관 및 언론 등을 통하여 초·중등 교육과정의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관련 정보 제공 업무 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 한다)</li> <li>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및 과학기술정책연구원</li> <li>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li> <li>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li> </ol>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46조(권한의 위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47조(권한의 위탁) ① 법 제4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의 임대·교환·양여·매각 등

		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사무 위탁	법률	제47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제7호,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48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제7호,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용자금의 수입·지출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 □ 국가기술자격법(고용노동부)

대행조문	<p>제7조(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경력(다른 법령에 따라 경력 정보가 관리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경력은 제외한다)과 국가기술자격에 관련된 정보 등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⑤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국가기술자격의 조사·연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사업 등을</p>
------	--

	<p>할 수 있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 산업현장에 적합한지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24조(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 및 지정교육·훈련과정 지정 업무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는 검정업무 수탁기관의 평가에만 적용하고, 제3호의2는 지정교육·훈련과정 지정 업무 수탁기관의 평가에만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기술자격 검정 또는 지정교육·훈련과정 지정 업무의 수행 능력에 관한 사항</li> <li>2. 검정 시설 및 장비의 적절한 보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3. 검정시행계획, 출제, 채점, 시험의 보안 등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li> <li>3의2. 교육·훈련과정 평가 등 지정교육·훈련과정 지정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li> <li>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⑤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의2(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p>
--	--

	<p>나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 또는 지정교육·훈련과정 지정 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 또는 지정교육·훈련과정 지정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li> <li>2.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li> <li>3.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평가 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4. 위탁받은 검정 또는 지정교육·훈련과정 지정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li> </ol> <p>④ 주무부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새로 지정될 때까지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권한 위탁</p>	<p>법률</p> <p>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주무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검정업무 또는 지정교육·훈련과정 지정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시행령</p> <p>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현역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검정 시행에 관한 주무부장의 권한은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 시행으로 한정한다.</p> <p>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주무부장의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p> <p>④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중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비영리법인일 것</li> <li>2.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인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li> <li>3. 산업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li> <li>4.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li> </ol>

		<p>있을 것</p> <p>5.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p> <p>⑤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검정 합격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재발급 및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은 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p> <p>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관리 및 채점 업무,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재발급 및 그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p> <p>⑧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등에 관한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⑨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p> <p>1. 공단</p> <p>2.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p> <p>3. 교육훈련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p> <p>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p> <p>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p> <p>다. 다른 법률(「민법」은 제외한다)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p> <p>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기관 중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p> <p>⑩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단</p>
--	--	--

		<p>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자격종목별 편성기준의 수립 및 공고</li> <li>2. 제14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지정 신청의 접수 및 타당성 검토</li> <li>3. 제14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확인</li> <li>4.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생에 대한 외부평가(시험문제의 출제, 검정의 시행·관리 및 채점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li> <li>5. 제25조에 따른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재발급 및 그 관리</li> </ol>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조달청, 기획재정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6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약관의 사무의 위임·위탁, 대리 및 일부 분장은 각 중앙관서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p>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범죄피해자 보호법(법무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입소·퇴소의 기준 및 절차, 위탁운영의 절차, 감독의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법원조직법(대법원)

대행조문	제13조(대법원장) ①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

③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26조(고등법원장) ①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을 둔다.

② 고등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고등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67조(법원행정처장 등) ① 법원행정처에 처장과 차장을 둔다.

② 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

③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처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처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또는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3조(조직) ① 사법연수원에 원장 1명, 부원장 1명, 교수 및 강사를 둔다.

②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연수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연수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6조의2(조직) ① 사법정책연구원에 원장 1명, 수석연구위원 1명, 연구위원 및 연구원을 둔다.

②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수석연구위원은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처리

		하며, 원장이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연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28조(위임 및 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보건복지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우수한 보건의료기술을 보건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다.

	<p>②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을 심사·평가하여 보건신기술로 인증하면 이를 고시하고, 보건신기술임을 인증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정부는 보건신기술의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 등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기술을 심사·평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⑥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기준·심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구개발사업</li> <li>2. 그 밖에 보건의료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li> </ol>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를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과 같</p>
--	---

	<p>은 법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중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병원의 연구조직, 연구인력, 연구 시설·장비 등 연구 기반 인프라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li> <li>2. 최근 3년간의 병원의 연구 실적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li> </ol>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재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⑥ 연구중심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시행령</p>	<p>제6조(보건신기술의 인증신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p> <p>제16조(평가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li> <li>2. 연구중심병원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특수법인</li> </ol>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p>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개선 등 운영에 관한 업무 2. 보조금관리정보 및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신청, 접수, 결정, 교부 및 사후관리의 전자적 지원에 관한 업무 4.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관리에 관한 업무
	시행령	-

## □ 보험업법(금융위원회)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6조(허가의 요건 등) ①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외국보험회사 및 제3항에 따라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을 보유할 것

	<p>2.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고 그 경영하려는 보험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物的)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한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p> <p>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한 것</p> <p>4.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으며,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p> <p>제175조(보험협회) ① 보험회사는 상호 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험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p> <p>③ 보험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p> <p>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p> <p>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이하 “순보험료”라 한다)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이하 “순보험요율”이라 한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하고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p> <p>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p> <p>4.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정부기관, 보험회사,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p> <p>제178조(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익이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을 보호하고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p> <p>3. 정부·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협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p>
--	--

제181조(보험계리)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기초서류의 내용 및 배당금 계산 등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를 보험계리사를 고용하여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보험계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위탁·선임에 관한 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5조(손해사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4조(업무의 위탁)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보험협회에 위탁한다.

1.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
2.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업무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제89조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등록업무
2. 제182조에 따른 보험계리사의 등록업무
3. 제183조에 따른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업무
4.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업무
5. 제187조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업무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협회의 장,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또는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p>제10조(허가의 세부 요건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발기인(발기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으려는 보험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보험 전문 인력과 보험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추는 것</li> <li>2. 허가를 받으려는 보험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구축하고 사무실 등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li> </ol> <p>②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그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손해사정업무</li> <li>2. 보험계약 심사를 위한 조사업무</li> <li>3.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한 보험사고 조사업무</li> <li>4. 전산설비의 개발·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li> </ol> <p>보험업법 시행규칙</p> <p>제44조(보험계리사 등의 업무) 법 제181조제3항에 따른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5조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이하 이 조에서 “기초서류”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사항</li> <li>2.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li> <li>3. 잉여금의 배분·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li> <li>4.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li> <li>5. 상품 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li> </ol> <p>제100조(금융위원회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94조제3항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p> <p>제101조(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94조제</p>
--	-----	---

		<p>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지에 관한 업무</li> <li>2. 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지에 관한 업무</li> <li>3. 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서 정한 사항 중 보험설계사에 관한 신고의 수리</li> <li>4. 법 제93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중 보험대리점에 관한 신고의 수리</li> </ol> <p>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94조제4항에 따라 법 제182조제1항 및 제186조제1항의 시험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험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li> <li>2. 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li> </ol> <p>③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36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업무 중 보험대리점 및 소속 모집인의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업무의 일부를 보험협회의 장 또는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검사업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갖추어 금융감독원장에게 미리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④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탁 검사업무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⑤ 제3항의 검사업무 위탁에 관하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3항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	--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15조(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li> <li>2. 갇생보호</li> <li>3. 검사가 보호관찰관이 선도(善導)함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li> <li>4.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li> <li>5. 범죄예방활동</li> <li>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li> </ol> <p>제61조(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①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 보훈기금법(국가보훈처)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국가보훈처장이 운용하고 관리한다.</p> <p>⑤ 기금으로 기금중식사업과 국가유공자등 복지증진사업을 할 수 있다.</p> <p>⑥ 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익법인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⑨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지급사무의 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의 지급사무 중 대부</p>

		<p>금 지급사무를 채신관서 또는 제7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채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대부금 지급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p>
	시행령	

## □ 복권 및 복권기금법(기획재정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12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재위탁) ① 복권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법인 또는 개인(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에게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 업무(이하 “복권발행업무”라 한다)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p> <p>② 수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단체 등에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수탁 또는 재수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복권발행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li> <li>2. 이 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li> <li>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제13조(복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복권의 발행·관리·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를 둔다.</p> <p>②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li> </ol>
	시행령	-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28조(업무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정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음 각 목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li> <li>나.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li> <li>다.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li> <li>라.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li> <li>마.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li> </ol> </li> <li>2. 제6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제16조제7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제18조제8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제20조제7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제22조제9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관한 도서·도표 등 작성·공급</li> <li>3. 제3조제7항,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6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의 작성·제공</li> <li>4. 제15조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li> <li>5. 제27조에 따른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li> <li>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li> </ol>
	시행령	<p>제76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연구를 말한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감정원에 위탁한다.</p>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li> <li>2. 제7조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재교부 및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li> <li>3.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li> <li>4. 제1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폐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li> <li>5.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변경 보고의 접수 및 보고내용의 확인</li> <li>6. 제19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li> </ol>
	시행령	<p>제2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li> <li>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부동산개발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li> <li>3. 협회</li> </ol>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p> <p>정부조직법</p> <p>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p> <p>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p> <p>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11조(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6호에 따른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업무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설치·운영한다.</p> <p>⑤ 위원회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사항의 접수 및 안내 등 일부 사무를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p>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통일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p>제49조(권한의 위임)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2조에 따른 직업훈련(정착지원시설 안의 직업훈련은 제외한다)의 실시</li> <li>2. 제32조의2에 따른 훈련수당의 지급</li> <li>3. 제33조에 따른 직업지도</li> <li>4. 제35조에 따른 취업신청서 접수 및 취업 알선</li> </ol> <p>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재단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지역적응센터의 프로그램 및 업무매뉴얼 개발·보급</li> <li>나. 지역적응센터의 직원에 대한 보수교육</li> <li>다. 지역적응센터에 대한 실태 점검</li> </ol> </li> <li>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li> <li>3. 법 제22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사제도의 운영</li> <li>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사업</li> <li>4의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관한 업무</li> <li>5.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정착지원</li> <li>6.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생활시설의 운영 지원사업</li> <li>7. 북한이탈주민단체의 정착지원활동 지원사업</li> <li>8. 제41조의2에 따른 정착도우미사업</li> <li>9. 제45조의2에 따른 학교등의 경비 지원</li> </ol>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의2 및 이 영 제40조의2에 따른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을 위한 적립과 관련된 사업을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 중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39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세관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사료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대행조문	제6조(사료의 수입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市場接近物量)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사료를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료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
------	---

		<p>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농협경제지주 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사료관련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품목,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p>
권한 위탁	법률	<p>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사료의 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정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료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시·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성분등록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료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7조(권한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사료 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정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사료관련 단체에 위탁한다.</p>
사무 위탁	법률	<p>제16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의 과정에서 위해(危害)한 물질이 해당 사료에 혼입되거나 해당 사료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료별로 제조 시설 및 공정관리의 절차를 정하거나 각 과정별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해요소중점 관리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p> <p>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⑪ 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등과 제10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

##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교육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사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교육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와 급여 및 그 밖의 지출금의 지급, 교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업무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3(국가사업의 위탁 등) ① 국가는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관리방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p>제14조(업무의 위탁) 공단이 법 제20조에 따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려면 위탁하려는 업무의 범위, 처리절차, 위탁수수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그 밖의 자와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p> <p>제96조(위탁사업과 비용부담등) ① 법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가가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자금대여사업</li> <li>2. 주택사업</li> </ol>
-----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문화체육관광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⑥ 위원회는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관리·운용을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p> <p>⑦ 부담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며, 그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대행조문	-
------	---

권한 위탁	법률	<p>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장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5조에 따른 신청의 접수</li> <li>2. 제6조, 제7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수급자격의 조사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li> <li>3. 금융정보등의 처리</li> </ol> <p>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26조(업무의 위탁)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li> <li>2.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li> <li>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처리</li> <li>4.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li> <li>5.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활용 지원</li> <li>6. 법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운영</li> </ol>
사무 위탁	법률	<p>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급권자별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보장급여의 유형·방법·수량 및 제공기간</li> <li>2.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기관 및 단체</li> <li>3. 동일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보장기관 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간 연계방법</li> <li>4.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 그 연계방법</li> </ol> <p>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이행 등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p>

	<p>하기 위하여 교육, 컨설팅 등 필요한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9조(사회보장정보원)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③ 사회보장정보원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위탁 등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기능개선·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li> <li>2.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사회보장정보의 처리</li> <li>3.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과 관련된 법령 등에 따른 신청, 접수, 조사, 결정, 환수 등 업무의 전자적 처리지원</li> <li>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이용·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li> <li>5.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에 대한 전자화 지원</li> <li>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정보 및 통계정보의 생산·분석, 제공과 사회보장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li> <li>7.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li> <li>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li> </ol> <p>⑥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6조(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및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련</p>
--	---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

##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산림청)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22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8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운영·관리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운영·관리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산림보호법(산림청)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37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④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35조(산불방지 교육) ① 산림청장은 산불방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과 국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기르고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불방지 교육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의 목표 및 운영 방향</li> <li>2. 교육의 내용, 방법, 대상, 기간 등</li> </ol> <p>③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li> <li>2. 그 밖에 산불방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산불관리기관에 고용 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li> </ol> <p>④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9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의 장이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산불진화 인력에 대한 산불 방지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할 수 있다.</p> <p>⑤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불방지 교육 업무를 제35조의2에 따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산림청)

대행조문		제61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또는 진흥원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제61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또는 진흥원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47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② 산림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p>2.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관리·평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p> <p>3. 법 제21조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에 관한 업무</p> <p>4.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사용 등에 관한 업무</p>
<p>사무 위탁</p>	<p>법률</p>	<p>제6조(기초조사) ① 산림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 산림복지시설의 제공을 위한 산림자원의 현황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에 대한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기초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 인력기준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p> <p>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및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 방법, 절차,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5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0. 산림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p>
	<p>시행령</p>	<p>제6조(기초조사의 위탁)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법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한다.</p>

		<p>제2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평가·교육 및 훈련 전문기관) ① 산림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li> <li>2.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li> </ol>
--	--	---

### □ 산림조합법(산림청)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40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조합은 임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p> <p>② 조합은 제3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p> <p>제126조(경영지도) ① 산림청장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합등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합에 대한 감사 결과 조합의 부실대출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단기간 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하기 곤란하여 자기자본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2. 조합등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여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li> </ol>

		<p>정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조합의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예금 및 적금 인출이 쇄도하거나 조합이 예금 및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li> <li>4. 제117조제2항 및 제121조에 따른 경영평가 또는 감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li> <li>5.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감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하는 경우</li> </ol> <p>⑦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방법,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p>제28조(감독권 등의 위임·위탁) ② 산림청장은 법 제1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회장에게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46조제1항제12호 및 동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사업승인</li> <li>2.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사무의 감독</li> <li>3. 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직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조치요구</li> <li>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li> <li>5. 조합이 국가의 용자 또는 보조를 받아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감사 및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li> </ol>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산림청)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40조(권한의 위탁)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35조(권한의 위탁) 법 제40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실우려조합의 결정 2. 부실우려조합 등과 그 임원에 대한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43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 및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권한위탁에 관한 절차 등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시행령	제52조(업무의 위탁)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2.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수탁 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대행조문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	---

	<p>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p> <p>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p>	
<p>권한 위탁</p>	<p>법률</p>	<p>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임하거나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한국공학한림원·시험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시행령</p>	<p>제57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에 위탁한다.</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에 위탁한다.</p> <p>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및 출연·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평가관리원</li> <li>2.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li> <li>3. 제14조 각 호에 따른 기관·단체</li> </ol> <p>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p>

		<p>홍협회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신청의 접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신청의 접수</li> <li>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li> <li>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심사</li> <li>4. 제20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li> </ol> <p>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제20조제5항에 따른 사전통지에 관한 사무를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신제품인증협회에 위탁한다.</p>
<p>사무 위탁</p>	<p>법률</p>	<p>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li> <li>2.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연구기관 외에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li> <li>③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li> </ol> <p>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해당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p>

	<p>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연금을 불가피하게 연구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서 용도 외로 사용한 출연금을 지체 없이 원상에 회복한 경우</li> <li>2. 그 밖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li> </ol>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p> <p>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제재부가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⑥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7조의7(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시행령</p>	<p>제44조의4(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의7제2항에 따라 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금의 회계업무</li> </ol>

		2.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 3.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	--

### □ 산업디자인진흥법(산업통상자원부)

대행조문		제11조의2(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 디자인 특화사업·진흥사업·기반구축사업 등(이하 이 조에서 “지역 디자인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근 시·도지사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디자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디자인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 디자인 사업을 지역디자인센터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역디자인센터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권한 위탁	법률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 성과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운영 3. 고가(高價) 장비의 공동 사용 4.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33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수리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디자인 개발의 수행여건, 노임단가 등 대가기준 산정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위탁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탁자 및 수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진흥원</li> <li>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진흥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li> </ol>
사무 위탁	법률	<p>제9조의2(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디자인 개발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 개발의 수행여건, 노임단가 등 대가기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p> <p>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p> <p>제11조의2(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 디자인 특화사업·진흥사업·기반구축사업 등(이하 이 조에서 “지역 디자인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근 시·도지사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디자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지역디자인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p>

		<p>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 디자인 사업을 지역디자인센터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④ 지역디자인센터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p>제33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수리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디자인 개발의 수행여건, 노임단가 등 대가기준 산정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위탁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탁자 및 수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진흥원</li> <li>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진흥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li> </ol>

## □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대행조문	<p>제52조의3(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사시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p>
권한 위탁	법률	<p>제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조제1항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li> <li>3. 제2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평가</li> <li>3의2.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기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등록 업무</li> <li>4.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li> <li>4의2.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li> <li>5.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li> <li>6. 제34조제5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li> <li>7.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li> <li>8.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li> <li>9.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li> <li>9의2. 제3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의 양성교육</li> <li>10.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li> <li>10의2.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li> <li>11.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능력의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li> <li>11의2.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업무</li> <li>11의3.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li> <li>12. 제41조제10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li> <li>13. 제42조제8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의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li> <li>13의2. 제42조제9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li> <li>13의3.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신뢰성평가에 관한 업무</li> <li>14. 제43조제9항에 따른 건강진단능력의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li> <li>14의2. 제43조제10항에 따른 지정건강진단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li> <li>15.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li> <li>16.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li> <li>17.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 심사 및 확인</li> <li>18. 제4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심사</li> </ol>
--	---

		<p>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확인</p> <p>18의2. 제52조의4제5항에 따른 지도사 보수교육</p> <p>18의3. 제52조의10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p> <p>18의4. 제61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운영 업무</p> <p>19.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지원 및 보조·지원의 취소·환수에 관한 업무</p>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p> <p>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⑤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p> <p>⑤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p>

	<p>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p> <p>⑥ 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근로자대표와 협의(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기준,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위험 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p> <p>②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li> <li>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li> </ol> <p>③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p> <p>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p>
--	--

	<p>⑦ 지정특정기관의 유형, 업무 범위,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조제1항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li> <li>2.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li> <li>3. 제2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평가</li> <li>3의2.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기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등록 업무</li> <li>4.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li> <li>4의2.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li> <li>5.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li> <li>6. 제34조제5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li> <li>7.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li> <li>8.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li> <li>9.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li> <li>9의2. 제3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의 양성교육</li> <li>10.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li> <li>10의2.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li> <li>11.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능력의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li> <li>11의2.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업무</li> <li>11의3.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li> <li>12. 제41조제10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li> <li>13. 제42조제8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의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li> <li>13의2. 제42조제9항에 따른 지정특정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li> </ol>
--	---

	<p>13의3.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신뢰성평가에 관한 업무</p> <p>14. 제43조제9항에 따른 건강진단능력의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p> <p>14의2. 제43조제10항에 따른 지정건강진단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p> <p>15.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p> <p>16.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p> <p>17.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 심사 및 확인</p> <p>18. 제4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심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확인</p> <p>18의2. 제52조의4제5항에 따른 지도사 보수교육</p> <p>18의3. 제52조의10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p> <p>18의4. 제61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운영 업무</p> <p>19.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지원 및 보조·지원의 취소·환수에 관한 업무</p>
<p>시행령</p>	<p>제15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p> <p>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을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본다.</p> <p>제15조의2(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는 제외한다)</li> <li>2.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li> </ol> <p>제47조(업무의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p>

	<p>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같은 항 제2호, 제3호의2, 제4호의2, 제9호, 제9호의2, 제10호의2, 제11호, 제11호의2, 제11호의3, 제12호,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4호의2,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부터 제18호의4까지 및 제19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같은 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3호 및 제14호의 업무를 공단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다만, 법 제65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비영리법인일 것</li> <li>나.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li> </ol> </li> <li>2. 법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30조의2제1항, 제38조의2제2항, 제42조제4항, 제43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li> <li>3.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정·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교육·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li> <li>4.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li> </ol>
--	---

□ 산업융합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p>대행조문</p>	<p>제29조(산업융합 표준화) ① 정부는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서비스의 표준 개발 및 보급</li> <li>2. 산업융합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li> <li>3. 그 밖에 산업융합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li> </ol>
-------------	---

		<p>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30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 ① 정부는 산업융합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산업융합 관련 국제협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융합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하거나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대행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p>
권한 위탁	법률	제36조(위임 및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산업융합지원센터나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소방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별표 5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법 제7조에 따른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작성을 센터에 위탁한다.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노동부)

대행조문	제9조(보험사업 관련 조사·연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	---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②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p>
<p>권한 위탁</p>	<p>법률</p> <p>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시행령</p> <p>제19조(업무의 위탁) ① 공단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li> <li>2. 제1호의 사항에 딸린 업무</li> </ol>
<p>사무 위탁</p>	<p>법률</p> <p>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제92조(근로복지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요양이나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li> <li>나. 의료재활이나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li> </ul> </li> <li>2.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li> <li>3.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li> </ol>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하 “지정법</p>

		<p>인”이라 한다)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보험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p>③ 지정법인의 지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제97조(기금의 관리·운영)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영한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의 예입(預入) 및 금전신탁</li> <li>2. 재정자금에의 위탁</li> <li>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li> <li>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li> <li>5.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li> </ol> <p>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p>대행조문</p>	<p>제35조의5(입주 등) 관리기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하는 외국투자자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각종 신고 및 인·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업무</li> <li>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등의 각종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업무</li> <li>3. 「건축법」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및 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업무</li> </ol> <p>제45조의3(산업단지구조조도화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구조조도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지방자치단체</li> <li>2. 관리기관</li> <li>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비율을 준수하는 법인에 한정한다.</li> <li>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li> <li>5. 그 밖에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산업단지의 토지소유자</li> <li>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li> </ol>
권한 위탁	<p>법률</p> <p>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p> <p>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관리기관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을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시행령</p> <p>제37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① 관리권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입주계약체결 및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업무 위탁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p> <p>제59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p>

		<p>산업단지에 대한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관리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p> <p>④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그가 직접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권한을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⑤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내 국유지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단에 위탁하며, 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국유지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p>⑥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li> <li>3.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업무</li> <li>4. 법 제6조의5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 그 교육비용의 징수에 관한 업무</li> </ol>
사무 위탁	법률	<p>제43조의3(이행강제금) ①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양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⑥ 관리권자는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p> <p>제45조의13(사업) ② 각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

□ 산업표준화법(산업통상자원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산업표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4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위사업청장, 산림청장 및 기상청장에게 위탁한다. 1. 제1항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2. 제1항제20호 중 심의회·기술심의회·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상임위원·상임전문위원의 임명·위촉 또는 지명 3. 제1항제21호 중 기술심의회·전문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및 보고 수리 4. 제1항제22호 중 기술심의회 간사의 임명 및 간사기관의 지정·운영 4의2. 제1항제23호의2에 따른 협약체결 및 출연금 관리 5. 제1항제24호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 공고 6. 제1항제24호의2에 따른 보고
사무 위탁	법률	제30조의2(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0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② 법 제3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p>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력기관</li> <li>2. 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li> <li>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li> </ol>
--	--	--

## □ 산지관리법(산림청)

대행조문	<p>44조의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토석채취신고 또는 채석신고를 한 자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현지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의 사업장, 해당 산지,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 여부</li> <li>2.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li> <li>3.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li> </ol> <p>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전국적인 일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p>	
	권한 위탁	<p>법률</p> <p>-</p> <p>시행령</p> <p>-</p>
사무 위탁	<p>법률</p> <p>제3조의4(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산지기</p>	

	<p>본조사 또는 산지지역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p> <p>④ 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의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산림청장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관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에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p>제44조의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토석채취신고 또는 채석신고를 한 자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현지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의 사업장, 해당 산지,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 여부</li> <li>2.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li> <li>3.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li> </ol> <p>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전국적인 일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

## □ 상표법(특허청)

대행조문		<p>제217조(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① 특허청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심사,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상표원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전자화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이하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p> <p>② 특허청장은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⑤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과 그 밖에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217조(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① 특허청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심사,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상표원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전자화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이하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p> <p>② 특허청장은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⑤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과 그 밖에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p>제96조(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17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p> <p>1. 시설 요건</p> <p>가. 상표등록출원 중인 상표에 관한 비밀유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p> <p>나. 데이터 입력장치, 데이터 저장장치 등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비를 갖출 것</p>

		<p>2. 인력 요건</p> <p>가. 5년 이상 전산정보처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할 것</p> <p>나. 다음에 해당하는 임직원이 없을 것</p> <p>1)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사람</p> <p>2)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p> <p>④ 특허청장은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를 둘 이상의 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	--	--

□ 상호저축은행법(금융위원회)

<p>대행조문</p>	<p>제34조의2(권한의 대행) ① 제23조의11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3제1항·제4항, 제24조의4제2항, 제24조의5제7항·제8항, 제24조의6제1항, 제24조의7, 제24조의8제1항·제2항, 제24조의9제3항, 제24조의10, 제24조의11, 제24조의13, 제24조의14 및 제24조의15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때 전문지식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대행한 행위는 금융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p> <p>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금융위원회를 대행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③ 금융감독원장이 제2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는 자기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p> <p>④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대행할 때 중요 사항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대행에 관한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p>	
<p>권한 위탁</p>	<p>법률</p>	<p>제35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한이 아닌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중앙회 회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26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6조의2에 따른 인가 요건의 심사</li> <li>2. 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점등의 설치인가</li> <li>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 요건의 심사</li> <li>4.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보완의 권고</li> <li>5. 법 제10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보고의 수리</li> <li>6. 법 제1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 승인 요건의 심사</li> <li>7. 법 제10조의6제3항 전단에 따른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의 심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자료나 정보의 제공 요구</li> <li>7의2. 법 제10조의6제6항·제8항에 따른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충족 명령의 이행 확인 및 주식처분 명령의 이행 확인</li> <li>8.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승인</li> <li>9.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승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세부 계획서의 접수·승인·통보</li> <li>10. 법 제12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li> <li>11. 법 제17조 단서에 따른 차입한도의 예외에 관한 승인</li> <li>11의2. 법 제18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승인</li> <li>12. 법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약관 제정·개정 신고의 수리,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고의 수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 제정·개정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약관 또는 표준약관에 대한 변경 명령</li> <li>13. 법 제18조의3제5항 전단에 따른 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li> <li>1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감독명령(법 제23조에 따른 검사 또는 자료의 분석·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감독명령으로 한정한다)</li> <li>14의2.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경영실태에 대한 분석·평가</li> <li>15.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li> <li>16.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li> <li>17.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li> </ol>
--	-----	--

		<p>17의2. 법률 제12100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승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세부계획서의 접수</p> <p>18.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자기자본의 인정</p> <p>19. 제8조의2제7호에 따른 대주주등과 체결하려는 부동산 양도·양수계약의 승인</p> <p>19의2. 제9조의2제2항제4호, 제9조의3제3호 및 제11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인정</p> <p>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중앙회 회장에게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에 관한 신고의 수리와 그에 관한 시정명령 및 보완의 권고</li> <li>2. 법 제10조의2제3항제4호·제5호에 따른 보고의 수리</li> <li>3. 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시정 요구</li> <li>4.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급준비자산 간의 비율과 보유방법의 결정</li> </ol> <p>제38조의7(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p> <p>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새마을금고법(행정안전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23조의2(선거관리의 위탁) 금고는 임원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80조(경영지도) ① 주무부장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회원의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금고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고가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부실대출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단기간 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자기자본이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2. 금고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고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자력(自力)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3. 금고의 파산 위험이 뚜렷하거나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고의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에 대한 인출이 쇄도하여 금고의 자력(資力)으로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li> <li>4.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li> </ol> <p>⑥ 주무부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의 방법,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 정지의 방법·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p style="text-align: center;">대행조문</p>	<p>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중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li> <li>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li> <li>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li> <li>4.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li> <li>5.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넘는 법인</li> </ol> <p>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새만금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p> <p>③ 공공시행자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li> <li>2. 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기업</li> <li>3. 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투자자</li> <li>4. 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li> <li>5.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입주할 자</li> </ol>
<p style="text-align: center;">권한 위탁</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p> <p>제7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새만금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새만금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57조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시행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질환경모니터링을 위한 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p>
사무 위탁	법률	<p>제56조(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재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입으로 조성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하는 토지·건물 등의 임대료</li> <li>2. 제57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금</li> <li>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li> </ol>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63조(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 카지노업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li> <li>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li> <li>3. 토지용도가 관광·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일 것</li> <li>4. 그 밖에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p>

		<p>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경영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을 위탁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시행령	<p>제38조(유지관리재원의 운용·관리 위탁) ① 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지관리재원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li> <li>2.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li> <li>3. 그 밖에 유지관리재원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li> </ol>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환경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16조의2(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평가</li> <li>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평가</li> </ol>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원자력안전위원회)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19조(공항·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항만에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감시기의 운영을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감시기 설치의 대상이 되는 공항·항만의 범위와 감시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8조(업무의 위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12조(감시기의 설치·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감시 대상의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항·항만에서 수출입하는 화물</li> <li>2. 재활용고철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출입하는 재활용고철</li> </ol> <p>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시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중 감시기를 설치할 위치의 선정, 감시기에 대한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등 전문적·기술적 업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13조(감시기의 운영 위탁)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p>

	<p>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시기의 운영업무를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항에 설치한 감시기의 운영 : 해당 공항 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li> <li>2. 제11조제1항제2호의 무역항에 설치한 감시기의 운영 : 해당 항만시설운영자</li> </ol> <p>② 제1항에 따른 감시기 운영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시기를 통한 감시 대상 화물의 방사선준위 및 방사성핵종의 확인</li> <li>2. 감시기를 통하여 검출된 유의물질의 분류, 격리 및 임시보관</li> <li>3. 감시기의 정상적인 동작상태 확인 등 일상점검</li> </ol> <p>제16조(업무의 위탁 등)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접수</li> <li>2.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신고의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취급자의 지위 승계 신고</li> <li>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수출입 신고</li> <li>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정부산물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li> </ol> </li> <li>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보고의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발생·보관·판매·처분 현황 등 보고</li> <li>나.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보고</li> <li>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의물질 검출 보고</li> </ol> </li> <li>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의물질 등에 대한 조사·분석</li> <li>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li> <li>6.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li> <li>7. 법 제26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li> <li>8.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li> </ol>
--	---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79조(권한 등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의 업무, 같은 항 제4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신청서류 접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60조제4호에 따른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당, 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접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57조(업무의 위탁) ① 진흥원은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금융회사: 법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의 업무 및 같은 항 제4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신청서류 접수 업무 2. 한국자산관리공사: 법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의 업무 3.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법 제24조제1항제4호의 업무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석면안전관리법(환경부)

대행조문	-
------	---

권한 위탁	법률	제42조(위임 및 위탁)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기술지원 및 기술검토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2.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3. 법 제28조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및 측정 결과의 공개 4. 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사무 위탁	법률	제24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35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위탁기관)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국립환경인력개발원 2. 그 밖에 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장관(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의 지정을 받은 기관  제49조(정보망의 구축·운영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정보망의 구축·운영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 석면피해구제법(환경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제31조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45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1호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2. 법 제25조제6호에 따른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3. 법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기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분담금 부과·징수 사무의 분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무 위탁	법률	제2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환경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위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환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p>제45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5조제1호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li> <li>2. 법 제25조제6호에 따른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li> <li>3. 법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기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li> </ol>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분담금 부과·징수 사무의 분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대행조문	<p>제17조(석유비축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비축의무자”라 한다)는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석유정제업자</li> <li>2. 원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li> <li>3.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된 석유판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li> </ol> <p>② 석유비축의무자는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석유비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권한 위탁	법률	<p>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한국석유관리원·품질검사기관 또는 석유</p>

	<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제한하여야 한다.</p>
시행령	<p>제45조(권한의 위탁 등)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석유정제업 등록(변경등록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li> <li>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접수, 신고내용 확인, 신고확인증 발급 및 신고한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확인</li> <li>3. 등록된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li> <li>4.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li> <li>5. 등록된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한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li> <li>6. 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li> <li>7.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에 대한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li> <li>8.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의 사업개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접수·처리</li> <li>9.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검사</li> <li>10.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 확인</li> </ol>

		<p>11.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p> <p>12.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p> <p>13. 등록된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에 대한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p> <p>14.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사업개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접수·처리</p> <p>15.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수급상황기록부, 거래상황기록부, 용제구매 및 사용기록부만 해당한다)에 대한 확인</p> <p>16.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試料) 채취(위탁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p> <p>17.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석유비축대행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에 대한 법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행위 금지(제43조제1항제3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준수 여부 확인</p> <p>18.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 확인</p> <p>19. 법 제41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p> <p>20. 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법 제29조 및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의 행위 금지(제43조제1항제3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공의 요청</p> <p>21. 법 제41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법 제29조 및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의 행위 금지(제43조제1항제3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공의 요청</p> <p>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의 준수 여부 확인</li> <li>2. 법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의 준수 여부 확인</li> <li>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탁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li> </ol>
--	--	---

	<p>요한 경우로 한정한다)</p> <p>4.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의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법 제18조제1항·제4항과 제37조제1항·제4항의 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와 관련된 자료제공의 요청</p> <p>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p> <p>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보고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게 위탁한다.</p> <p>1.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비축의무자, 석유비축대행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보고(정기적인 보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업무: 공사 또는 한국석유관리원</p> <p>2. 석유판매업자의 보고(정기적인 보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업무: 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p> <p>3. 석유소비자의 보고에 관한 업무: 한국석유관리원</p> <p>⑧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p> <p>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신고 사항의 확인</p> <p>2. 등록된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p> <p>3.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p> <p>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 채취(위탁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p> <p>5.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및</p>
--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법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행위 금지(제43조제1항제3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준수 여부 확인
사무 위탁	법률	제20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제19조에 따른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충당 및 제19조의2에 따른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8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충당 및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다만, 부과금의 환급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는 해당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의 확인: 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 가.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한 양 나.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석유제품(같은 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에 한정한다)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한 양 다. 제2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석유제품 현물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한 양 2. 제2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공급한 천연가스 양의 확인: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이하 “한국가스공사”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법(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14조(선거제도)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주권의식의 양양을 위하여 상시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상시제도를 위한 사업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3(공무원의 채용등) ① 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채용시험·승진시험·기타 시험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여 사무총장이 실시하되,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령	-

## □ 선박관리산업발전법(해양수산부)

대행조문	<p>제10조(인증센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증신청의 접수</li> <li>2. 제8조제4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li> <li>3. 제8조제5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인증심사</li> <li>4. 그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li> </ol> <p>② 인증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li> <li>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li> <li>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li> <li>4.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정된 선급법인</li> </ol>
------	---

권한 위탁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선박관리산업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제공 업무 2.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업무 3. 법 제12조제1호에 따른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세계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업무 4.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업무 5.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사무 위탁	법률	제14조(교육훈련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선박관리전문가의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선박직원법」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관리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선박관리전문가의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

## □ 선박법(해양수산부)

대행조문	제29조의2(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	---

		<p>“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船級法人)(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7조에 따른 선박톤수의 측정</li> <li>2. 제13조에 따른 국제총톤수·순톤수의 측정,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발급</li> </ol> <p>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단: 선급법인에 대행하게 하는 선박 외의 선박</li> <li>2. 선급법인: 선급법인에 선급의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을 하려는 선박</li> </ol> <p>③ 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보고한 대행 업무에 관하여 그 처리 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선박안전법(해양수산부)

대행조문	<p>제24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 ①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자체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점검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해양수</p>
------	--

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방법·승인절차, 안전점검사업자의 기준 및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설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고 선박 또는 선박시설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 및 보급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46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도면승인 업무의 대행
2.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에 대한 검사업무의 대행
3. 지정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확인업무의 대행
4.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컨테이너에 대한 검정업무의 대행
5. 화물의 적재·고박 등에 관한 승인업무의 대행
- 5의2.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6. 선박의 감항성 확보와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사·시험·연구 및 이와 관련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
7.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술기준의 연구 및 분석
8. 선박의 설계·건조감리 등 용역의 수탁업무
9. 해양사고방지를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활동
10. 법령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1.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6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조검사·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이하 “검사등업무”라 한다)를 공단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

	<p>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 건조검사증서의 교부 및 별도건조검사</li> <li>2.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및 선박검사증서의 교부</li> <li>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li> <li>4.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검사 및 임시변경증의 교부</li> <li>5.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및 임시항해검사증서의 교부</li> <li>6.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 및 국제협약증서의 교부</li> <li>7.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면의 승인 및 승인표시</li> <li>8.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li> <li>9.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증서의 유효기간 연장</li> <li>10. 제18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 검정증서의 교부 및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li> <li>11. 제2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 확인서의 교부 및 확인을 나타내는 표시</li> <li>12.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 도면의 승인 및 승인표시, 예비검사증서의 교부 및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li> <li>13.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원성자료의 승인</li> <li>14.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 및 제한하중등확인서의 교부</li> <li>15.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의 작성 및 내용 기재</li> <li>1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승인</li> <li>17.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li> <li>18.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 및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의 교부</li> </ol>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보험의 가입·유지를 위하여 선박의 등록</p>
--	---

및 감항성에 관한 평가의 업무(이하 “선급업무(船級業務)”라 한다)를 하는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게 해당선급법인이 관리하는 명부에 등록하였거나 등록하고자 하는 선박(이하 “선급등록선박”이라 한다)에 한하여 제1항 각 호의 검사등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협정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이 검사등업무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대행과 관련된 자체검사규정을 제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1조(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및 선급법인이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등업무의 대행에 있어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이를 수행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선체두께 측정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두께측정업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이하 “두께측정대행업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내에서 선체두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 두께측정업체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두께측정대행업체의 대행 및 대행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두께측정대행업체의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p>제64조(컨테이너검정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해양수산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이하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검정</li> <li>2.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의 확인표시</li> </ol>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 및 대행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65조(위험물 관련 검사·승인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운송 및 저장 등에 관한 검사 및 승인에 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이하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 및 대행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46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도면승인 업무의 대행</li> <li>2.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에 대한 검사업무의 대행</li> <li>3. 지정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확인업무의 대행</li> <li>4.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컨테이너에 대한 검정업무의 대행</li> <li>5. 화물의 적재·고박 등에 관한 승인업무의 대행</li> </ol> <p>5의2.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선박의 감항성 확보와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사</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연구 및 이와 관련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li> <li>7.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술기준의 연구 및 분석</li> <li>8. 선박의 설계·건조감리 등 용역의 수탁업무</li> <li>9. 해양사고방지를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활동</li> <li>10. 법령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업무</li> <li>11.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li> </ul>
시행령	-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대행조문	<p>제40조(장애물의 제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p>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li> <li>2.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역시설을 반복적, 상습적으로 불법 점용하는 경우</li> <li>3. 그 밖에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하게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li> </ol> <p>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거된 장애물을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처리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p>
------	--

		<p>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장애물의 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p> <p>⑨ 제6항에 따른 장애물의 보관 및 처리, 장애물 처리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권한 위탁	법률	<p>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③ 해양수산부장관의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항만공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항만공사 관할 무역항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입 신고의 수리 업무를 항만공사에 위탁한다.</p>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해양수산부)

대행조문	<p>제20조의2(독립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양 관련 전문시험기관(이하 “독립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7조의3에 따른 육상시험 및 선상시험에 대한 품질관리</li> <li>2. 제20조제1항에 따른 처리물질에 대한 국제기구 승인 신청 서류의 심사</li> <li>3. 제20조제4항에 따른 증명 서류의 심사</li> </ol>
------	---

	<p>4. 그 밖에 형식승인시험 및 처리물질의 승인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p> <p>③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협정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독립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도·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30조(검사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p> <p>1. 제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확인검사 및 점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발급</p> <p>1의2.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p> <p>1의3.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의 표시</p> <p>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검사증서의 발급 및 검사결과의 표기</p> <p>3.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p> <p>4.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검정, 검정합격증명서의 발급 및 검정합격의 표시</p> <p>④ 대행기관의 대행업무 차질에 따른 조치 및 대행업무의 대행취소 등 그 감독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61조 및 제62조를 준용한다.</p> <p>제35조(선박검사원)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대행기관은 해당 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선박검사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선박검사원의 자격은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p>권한 위탁</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49 1433 464 1572"> <p>법률</p> </td> <td data-bbox="464 1433 1213 1572"> <p>제40조(위임·위탁) ②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td> </tr> <tr> <td data-bbox="349 1572 464 1622"> <p>시행령</p> </td> <td data-bbox="464 1572 1213 1622"> <p>-</p> </td> </tr> </table>	<p>법률</p>	<p>제40조(위임·위탁) ②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시행령</p>	<p>-</p>
<p>법률</p>	<p>제40조(위임·위탁) ②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시행령</p>	<p>-</p>				

사무 위탁	법률	제20조의3(전산망의 구축·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내용 및 형식승인시험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운영을 독립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 □ 선원법(해양수산부)

대행조문		제140조(인증검사업무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된 대행기관(이하 “인증검사 대행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인증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0조(선장직무대행자에 대한 적용) 이 장 중 선장에게 적용할 규정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권한 위탁	법률	제15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5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위임한다. 1.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2. 법 제1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의 항해정지 명령, 항해정지 조치, 항구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p>3.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선박의 점검 및 확인에 관한 사항</p> <p>4. 법 제13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출항정지 명령, 출항정지 조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p> <p>5. 법 제134조에 따른 신고수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p> <p>6. 법 제137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사노동조합증서의 인증검사, 임시인증검사 및 특별인증검사에 관한 사항</p> <p>7. 법 제138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해사노동조합증서의 발급·공개·표시, 임시해사노동조합증서의 발급, 특별인증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한다.</p> <p>1.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선박조리사 자격을 위한 교육과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실시</p> <p>2. 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의료관리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의료관리자 자격증의 발급</p>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8조제1호·제2호·제4호에 따른 업무를 센터에 위탁한다.</p>
사무 위탁	법률	제117조(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6조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선원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44조(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선원의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탁업무의 내용 및 범위</li> <li>2. 위탁업무의 기간 및 연장에 관한 사항</li> <li>3. 위탁업무의 보고에 관한 사항</li> <li>4.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위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li> </ol>

## □ 세무사법(기획재정부)

대행조문	<p>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p> <p>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p>
권한 위탁	<p>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li> <li>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li> <li>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li> <li>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li> <li>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li> <li>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li> <li>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li> <li>8.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li> <li>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li> </ol> <p>제19조의7(업무범위) 외국세무자문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자격국의 조세법령과 조세제도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li> </ol>
법률	

	<p>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p> <p>제20조의3(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li> <li>2. 법률 제2358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li> <li>3.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법률 제6837호 稅務士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li> </ol>
시행령	<p>제34조의2(위임 및 위탁)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2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5조의3에 따른 시험의 무효 및 시험응시자격 정지</li> <li>2.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li> <li>3. 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의 통지는 제외한다)</li> <li>4.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li> <li>5. 법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세무법인에 대한 보전명령 및 증자명령</li> <li>6. 법 제16조의7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의 용도 외 사용 승인</li> <li>7. 법 제16조의13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 해산 사유 통보서의 접수</li> <li>8. 법 제16조의14에 따른 세무법인 정관변경 신고서의 접수</li> </ol>

		<p>9.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p> <p>10.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연수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의 승인</p> <p>11. 제2조에 따른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p> <p>12.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합격자의 결정</p> <p>13.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교부신청서의 접수</p> <p>14. 제12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접수,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p> <p>15. 제12조의2에 따른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의 접수, 갱신 및 등록증의 교부</p> <p>16. 제14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의 접수</p> <p>17. 제14조의2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신청서의 접수,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p> <p>18. 법 제19조의3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의 접수 및 자격승인</p> <p>19. 법 제19조의4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의 교부</p> <p>20. 법 제19조의5 및 제19조의6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p> <p>21. 법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p> <p>22. 법 제19조의1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p> <p>23. 제33조의5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p> <p>②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 중 세무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별표 4의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p> <p>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무사 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한다.</p>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28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27조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35조(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령	-

##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행정안전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11조(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위탁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나 시장 또는 시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 또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51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령	제151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위탁의 당사자가 시·도나 그 장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5.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사무가 위탁된 경우 위탁된 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조례나 규칙은 규약에 다르게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 소금산업 진흥법(해양수산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58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생산자단체

		2. 공공기관 3. 영업조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등 농림·수산·소금 관련 법인이나 단체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산림청)

대행조문	<p>제8조의3(방제사업의 설계·감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설계·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 분야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li> <li>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li> <li>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li> </ol> <p>③ 방제사업을 설계하거나 감리하는 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설계·감리하여야 한다.</p> <p>⑥ 방제사업의 설계·감리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8조의4(방제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p>
------	--

	<p>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방제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사업법인. 다만,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사업법인에 한정한다.</li> <li>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된 국유림영림단</li> <li>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li> </ol> <p>④ 제1항에 따른 방제사업의 대행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① 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는 소나무류 조림 및 육림을 금지한다. 다만,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조림 및 육림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감염목등을 목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모두베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사업법인. 다만,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사업법인에 한정한다.</li> <li>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된 국유림영림단</li> <li>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li> <li>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자. 다만, 원목생산업자에 한정한다.</li> </ol>
권한 위탁	<p>제16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의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사무 위탁</p>	<p>법률</p>	<p>제8조의3(방제사업의 설계·감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설계·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 분야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li> <li>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li> <li>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li> </ol> <p>③ 방제사업을 설계하거나 감리하는 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설계·감리하여야 한다.</p> <p>⑥ 방제사업의 설계·감리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8조의4(방제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방제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사업법인. 다만,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사업법인에 한정한다.</li> <li>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된 국유림영림단</li> <li>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li> </ol> <p>②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방제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자와 시공자, 시공자와 감리자를 동일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림조합이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를 감리자로 선정할 수 없다.</p> <p>④ 제1항에 따른 방제사업의 대행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① 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p>
--------------	-----------	---

		<p>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는 소나무류 조림 및 육림을 금지한다. 다만,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조림 및 육림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감염목등을 목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모두베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사업법인. 다만,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사업법인에 한정한다.</li> <li>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된 국유림영림단</li> <li>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li> <li>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자. 다만, 원목생산업자에 한정한다.</li> </ol>
	시행령	-

## □ 소방공무원 보건의전 및 복지 기본법(소방청)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12조(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소방기관의 장은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p>

		<p>경우에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④ 복지시설 등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위탁 운영 등 복지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소방청)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9조(소방장비 등의 표준화)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기술 및 인력(이하 “소방장비등”이라 한다)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향상과 표준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방장비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와 그 표준의 보급</li> <li>2. 소방장비등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li> <li>3. 그 밖에 소방장비등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li> </ol> <p>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지정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p> <p>③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 이 법 또는 다른 소방방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소방청장이 위탁하는 사업</li> </ol> <p>제16조(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① 소방청장은 매년 국가·지</p>

		<p>방자치단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의 소방장비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여 소방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공개 절차와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소방사업자의 신고)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및 인력의 이용촉진 등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의 범위와 내용 등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8조(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산업의 기술수준·연구실태·시장동향 및 사업자현황 등 국내외 소방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보급하여야 한다.</p> <p>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시행령	-

□ 소비자기본법(공정거래위원회)

대행조문	-
권한 위탁	<p>법률</p> <p>제8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p>

		<p>1.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p> <p>2.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 또는 의뢰된 피해구제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3. 원장이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5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p> <p>4. 제81조제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p>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공정거래위원회)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77조(사업의 종류) ① 전국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p>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위탁 또는 보조받은 사업</p> <p>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p> <p>제81조(감독 및 권한의 위탁) ① 시·도지사(설립인가를 한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p>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전국연합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감독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p> <p>⑦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과 조합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연합회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독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p>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45조(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p>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p> <p>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p> <p>제65조(사업의 종류) ①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p>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 또는 보조받은 사업</p> <p>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p> <p>제77조(사업의 종류) ① 전국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p>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위탁 또는 보조받은 사업</p> <p>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p> <p>제81조(감독 및 권한의 위탁)</p> <p>⑦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과 조합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연합회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독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17조의2(업무의 위탁) 시·도지사는 법 제81조제7항에 따라 보건·의료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업무(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 등을 단순 확인하는 업무에 한정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p>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중소벤처기업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28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공단의 이사장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3.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5.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시행령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의 수행 2. 법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수행 3. 법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수행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수행 5. 법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수행 6. 법 제1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의 설치·운영 7. 제4조의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피해 복구 지원에 관한 사무
사무 위탁	법률	제7조(실태조사)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업종별 소상공인 실태 2. 소상공인 창업의 현황 3.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시간, 고용 등 경영실태

	<p>4. 소상공인의 사업전환(소상공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사업전환”이라 한다) 실패</p> <p>5.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소상공인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p>1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p> <p>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21.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p> <p>제2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p> <p>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시행령</p>	<p>제10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li> <li>2.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사무</li> <li>3.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li> <li>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li> </ol>

## □ 소음·진동관리법(환경부)

대행조문		<p>제31조의2(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47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배출허용기준과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과 진동 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자</li> <li>2.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인 자</li> <li>3. 제25조에 따라 폭약을 사용하는 자</li> <li>4. 자동차제작자</li> <li>5. 확인검사대행자</li> <li>6.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li> <li>7.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li> <li>8. 제5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li> </ol> <p>② 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검사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권한 위탁	<p>법률</p> <p>제54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시행령</p> <p>제14조(업무의 위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p>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의 측정망 설치 및 상시 측정 2.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의 생략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송유관 안전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2.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3.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4. 제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접수 5.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대행조문	제27조(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

		<p>의 소유자에게 그 자동차를 조기폐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5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특정경유자동차</li> <li>『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특정경유자동차 외의 자동차</li> <li>제1호와 제2호의 기준을 유지하는 데에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자동차</li> </ol> <p>② 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서울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경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을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는 자의 자동차 폐차가 우선하여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p>
권한 위탁	법률	제39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p>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의 측정 및 그 결과의 공개</li> <li>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과 측정기기의 부착·가동에 필요한 기술지원</li> <li>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한 지원시책 마련을 위한 표지 부착 자동차의 현황관리</li> <li>제29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운영</li> <li>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li> </ol>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1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li> <li>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이에 부속되는 시설의 설치·관리</li> <li>3.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li> <li>4. 주민 지원 기금의 조성 및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li> <li>5. 다음 각 목의 결정 및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반입수수료</li> <li>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li> <li>다.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청장 또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담금</li> </ul> </li> <li>6.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 관리</li> <li>7.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li> <li>8. 복토용 흙과 모래를 확보하기 위한 취토장(取土場)의 개발 및 운영</li> <li>9. 수도권매립지의 사후 관리</li> <li>10. 수도권매립지 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li> <li>11.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설치·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li> </ol>

		<p>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설계, 책임감리, 환경오염물질의 측정·분석 및 기술지원 등 부수(附隨)된 업무</p> <p>③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

□ 수도법(환경부)

대행조문		<p>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상수도관망 등 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권한 위탁	법률	<p>제43조(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① 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기술적 또는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그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p> <p>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① 수도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도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자치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② 제4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수도물을 공급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p>

		<p>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p> <p>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협회 또는 검정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시행령</p>	<p>제67조(권한의 위임·위탁)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관한 인증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p> <p>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li> <li>2. 법 제48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조사·설계 및 연구</li> </ol> <p>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질약전문업의 등록</li> <li>2.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물질약전문업자에 대한 지원</li> <li>3.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운영</li> <li>4.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운영</li> </ol>
<p>사무 위탁</p>	<p>법률</p>	<p>제23조(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른 일반수도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⑦ 그 밖에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p>

	<p>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6조(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li> <li>2. 저수조청소업자</li> <li>3. 일반수도사업자</li> </ol> <p>② 일반수도사업자와 저수조청소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43조(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① 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기술적 또는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그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p> <p>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① 수도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도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② 제4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수도물을 공급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p> <p>제73조(기술 연구·개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수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에 관한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연구·개발을 추진하</p>
--	--

	<p>게 하고 지원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수도 분야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에 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수도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게 하고 지원할 수 있다.</p>
<p>시행령</p>	<p>제35조(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위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단순위탁 : 취수시설이나 정수시설 중 1개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또는 슬러지(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거·처리, 계량기의 검침·교체, 수도요금 고지서의 발급·송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위탁</li> <li>2. 복합위탁 : 수도시설의 개량(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업무의 위탁 또는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배수시설 중 2개 이상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위탁. 이 경우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li> </ol> <p>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의 타당성·필요성의 검토기준, 위탁계약의 체결·해지 및 위기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의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6조(수도시설 수탁기관)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li> <li>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li> <li>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li> <li>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사업자인 법인</li> <li>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인 법인</li> <li>6.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기술사사무소</li> <li>7.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li> <li>8.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수도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자</li> </ol>

	(단순위탁 중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p>대행조문</p>	<p>제44조(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 ①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수협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p> <p>제53조(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① 수산물유통사업자는 수산물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산물 유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5.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p> <p>⑦ 협회에 대한 인가,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권한 위탁</p> <p>법률</p>	<p>제58조(권한의 위임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협조합, 수협중앙회 또는 생산자단체</li> <li>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li> <li>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li> </ol>

		<p>연구기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 관련 법인이나 단체</li> <li>5.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li> <li>6. 제5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li> </ol>
	시행령	<p>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자료의 요청 업무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한다.</p> <p>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할 수 있다.</p> <p>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협중앙회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li> <li>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수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판매·수출·기증 등 처분에 관한 업무</li> <li>3. 비축사업 업무</li> </ol> <p>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상 수산물의 품목 및 수량</li> <li>2. 대상 수산물의 품질·규격 및 가격</li> <li>3. 대상 수산물의 판매방법·수매 또는 수입 시기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li> </ol>
사무 위탁	법률	<p>제18조(위판장 수산물 수탁판매 등) ① 위판장개설자는 도매하는 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야 한다. 다만, 수산물의 가격안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p> <p>제53조(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① 수산물유통사업자는 수산물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p>

		<p>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산물 유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5.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p> <p>⑦ 협회에 대한 인가,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p>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자료의 요청 업무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한다.</p> <p>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할 수 있다.</p> <p>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협중앙회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li> <li>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수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판매·수출·기증 등 처분에 관한 업무</li> <li>3. 비축사업 업무</li> </ol>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해양수산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52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4항의 시료 채취 및 제38조제1항의 방역교육의 업무를 수산생물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등급의 부여·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산생물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시료채취에 관한 업무,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역교육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수산질병관리사회 또는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에 위탁한다.</p> <p>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관리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수산질병관리사회 또는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에 위탁한다.</p> <p>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수산업법(해양수산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93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해양수산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32조(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및 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결과와 연근해어업과 양식업, 원양어업의 업종별·수역별 조업상황과 어획실적 및 수산자원 분포현황 등의 조사결과를 수산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제2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수산업 정책자금의 지원·관리) ① 정부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인 등에 대한 정부의 융자금·보조금 지원 등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시행령	<p>정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5조(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근해어업, 양식업, 원양어업의 업종별·수역별 조업상황, 어획 실적 등 어업경영에 관한 사항</li> <li>2. 수산자원의 분포현황, 수산자원의 조성·회복 사업 현황, 평가 결과 등에 관한 사항</li> <li>3. 수산업의 경영 및 수산인 등에 관한 현황</li> <li>4. 수산업·어촌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li> <li>5. 수산업 및 어촌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관련한 사항</li> <li>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 및 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통계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의 실시 및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li> <li>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li> <li>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중 수산업에 관련된 연구 인력 및 시설을 갖춘 학교</li> <li>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산업 분야의 정책연구 또는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li> <li>5. 그 밖에 수산업 진흥과 발전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li> </ol> <p>제22조(기금의 운용·관리 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2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금의 수입·지출 업무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p> <p>제32조(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 ① 법 제51조제3항에서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p>
--	-----	---

		<p>1.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영·관리 및 감독업무</p> <p>2. 그 밖에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한다.</p>
--	--	---

## □ 수산업협동조합법(해양수산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169조(감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조합등에 관한 감독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54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지구별수협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p> <p>② 지구별수협은 제4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p> <p>제60조(사업) ① 지구별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p> <p>8.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p> <p>④ 국가나 공공단체는 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수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제107조(사업) ① 업종별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p> <p>6.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p> <p>제112조(사업) ① 수산물가공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p> <p>6.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p> <p>제113조의8(사업)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p> <p>4. 국가·공공단체·조합·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위탁하는 사업</p> <p>제134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p> <p>⑦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p> <p>제138조(사업)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p> <p>8. 국가와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p> <p>제141조의9(업무 등) ① 수협은행은 제141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4.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및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업무</p> <p>7. 중앙회 및 조합 전산시스템의 위탁운영 및 관리</p> <p>제169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중앙회·수협은행 및 조합협회의 업무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협은행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p>
--	---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조합등에 관한 감독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62조(감독권의 위임·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회장에게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86조제4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산 사무의 감독</li> <li>2. 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 업무(이 영 제65조제3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제정·고시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li> <li>3. 제61조에 따른 조합에 대한 감사 중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li> </ol>

□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35조(권한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p>제19조(권한의 위탁) 법 제3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의 결정</li> <li>2. 부실우려조합과 그 임원에 대한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li> </ol>
사무 위탁	법률	제23조(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행령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예금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업무</li> </ol> <p>-</p>

## □ 수산자원관리법(해양수산부)

대행조문	<p>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①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p> <p>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을 말한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0킬로미터 이내에서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4.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제3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법」의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포함한다)</p> <p>제6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중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해당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협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제55조의2제3항제4호의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의 대행 또는 위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을 기관·단체 또는 협회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권한 위탁	법률 시행령
사무 위탁	법률	<p>제42조의2(방류종자의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류되는 수산종자에 대한 인증제(이하</p>

	<p>“방류종자인증제”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p> <p>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방류종자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방류종자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①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p> <p>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을 말한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0킬로미터 이내에서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4.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제3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법」의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포함한다)</p> <p>제6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① 행정청은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중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해당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협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제55조의2제3항제4호의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의 대행 또는 위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을 기관·단체 또는 협회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p>제5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 법 제61조제1항에서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인공어초의 설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바다목장의 설치</li> <li>3. 해중림(海中林)의 설치</li> <li>4. 수산종자의 생산·방류</li> <li>5. 수산자원의 서식환경 개선</li> <li>6. 수산자원조성 관련 시설·장비의 운용</li> <li>7.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어구·어법의 조정</li> <li>8. 수산자원의 적정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어업</li> <li>9.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불법어구 철거</li> <li>10. 생태체험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1. 법 제58조에 따른 조사원의 운용에 관한 사항</li> </ol> <p>제50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 ① 행정관청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영 제51조에 따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립수산과학원</li> <li>2. 한국수산회</li> <li>3. 한국어촌어항협회</li> </ol>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탁대상 사업의 범위</li> <li>2. 위탁대상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li> <li>3. 위탁계약기간</li> <li>4. 위탁 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li> <li>5. 위탁업무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li> </ol>
--	--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해양수산부)

대행조문	<p>제16조(수산종자산업협회의 설립) ① 수산종자사업자는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산종자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	---

		5. 수산종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권한 위탁	법률	제39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수상레저안전법(해양경찰청)

대행조문	<p>제14조(면허시험 업무의 대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면허시험 실시업무의 대행과 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취소 및 정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8조의2(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 등) ①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개발, 홍보 및 교육훈련 등 해양경찰청장 등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수상레저 관련 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p> <p>3. 조종면허시험, 수상레저기구 등록·안전검사·안전점검의 대</p> <p>5.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p> <p>제38조(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등)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p>
------	---

		<p>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⑤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수상레저기구 검사원의 수, 검사시설·장비 등의 기준, 지정절차 및 검사대행자에 대한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10조(수상안전교육) ①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6조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부터, 조종면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제9조에 따른 조종면허 갱신 기간 이내에 각각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면허시험 합격 전의 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상안전에 관한 법령</li> <li>2.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li> <li>3. 그 밖에 수상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③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기준·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8조의2(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 등) ①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개발, 홍보 및 교육훈련 등 해양경찰청장 등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수상레저 관련 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li> <li>③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조종면허시험, 수상레저기구 등록·안전검사·안전점검의 대행</li> <li>5.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li> </ol>

	시행령	-
--	-----	---

##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해양경찰청)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27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수색구조·구난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30조의2(수상구조사)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수상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⑥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30조의8(자격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기관 외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하는 데 적합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 수의사법(농림축산식품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 및 공중위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1조(업무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수의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한다.
사무 위탁	법률	제22조의3(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① 동물진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동물병원에서 동물진료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동물진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② 제1항제2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동물진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령	-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식품의약품안전처)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관한 업무와 제23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3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1.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p>관리</p> <p>2.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p> <p>3. 그 밖에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업무</p>
사무 위탁	법률	제9조(현지실사 등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지실사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생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9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은행에 위탁한다.</p> <p>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19조(업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전자수입인지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은행에 위탁한다.</p> <p>1.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해지</p> <p>2. 판매기관 및 수입인지 판매소에 대한 수입인지의 수급·관리</p> <p>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에 위탁한다.</p> <p>1.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및 관리</p> <p>2. 전자수입인지 판매대금의 납입 관리</p>

		<p>3.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자에 대한 계약의 체결 및 해지</p> <p>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시설, 업무수행 능력, 자본금 규모 및 전자수입인지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li> <li>2. 신용카드, 직불카드, 계좌이체 등의 결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국고(國庫)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는 기관</li> <li>3. 전자문서의 유통·관리·보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li> </ol>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환경부)

<p>대행조문</p>		<p>제16조의3(수질오염방제센터의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제센터(이하 “방제센터”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방제센터의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방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사고 감시</li> <li>2. 제15조제6항에 따른 방제조치의 지원</li> <li>3.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의 비치 및 보관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li> <li>4. 수질오염 방제기술 관련 교육·훈련, 연구개발 및 홍보</li> <li>5. 그 밖에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수질오염물질의 수거·처리</li> </ol> <p>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제3항 또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li> </ol>
-------------	--	--

	<p>자. 다만, 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p> <p>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p> <p>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p> <p>③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제38조의6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50조의2(기술진단 등)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시행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없다.</p>	
<p>권한 위탁</p>	<p>법률</p>	<p>제74조(위임 및 위탁)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시행령</p>	<p>-</p>
<p>사무 위탁</p>	<p>법률</p>	<p>제49조의6(강제징수)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 제1항 각 호의 자(이하 “한국환경공단등”이라 한다)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한국환경공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탁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등은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p>
	시행령	-

□ 스포츠산업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p>대행조문</p>	<p>제8조(기술개발의 추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데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1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내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스포츠산업 관련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과의 공동제작</li> <li>2.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 마케팅·홍보활동</li> <li>3. 외국자본의 투자유치</li> <li>4.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li> <li>5. 그 밖에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li> </ol>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p>
-------------	--

권한 위탁	법률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1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자금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한다.
사무 위탁	법률	제17조(프로스포츠의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내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스포츠산업 관련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공동제작 2.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 마케팅·홍보활동 3.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4.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5. 그 밖에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시행령	제1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체육진흥공단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지원센터 4.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	--	---

## □ 습지보전법(환경부, 해양수산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

대행조문	<p>제15조(검사의 대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대행하게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p> <p>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기관</p> <p>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고 있는 법인</p>
------	---

	<p>2.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p> <p>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p> <p>4.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났을 것</p> <p>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없을 것</p> <p>6.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4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일 것</p> <p>7. 제조업자등·유지관리업자 또는 승강기의 설치업자나 판매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검사업무에 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p> <p>③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④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p> <p>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자체점검의 항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권한 위탁</p>	<p>법률</p> <p>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장이나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공단의 장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다.</p> <p>1.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p> <p>2. 제18조제1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업무</p> <p>3.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p> <p>시행령</p> <p>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사기관에 위탁한다.</p> <p>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p>

		<p>기관이 대행하는 검사로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통보에 관한 업무</p> <p>2. 제13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표지 발급에 관한 업무</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장에게 위탁한다.</p> <p>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승강기의 설치신고에 관한 업무</p> <p>2.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p> <p>3.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에 관한 업무</p> <p>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의 통보에 관한 업무</p> <p>5.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단이 대행하는 검사로 한정한다. 이하 제8호에서 같다)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통보에 관한 업무</p> <p>6.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등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업무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관리 및 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p> <p>7.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된 검사기관의 인력·장비·실적에 관한 자료의 확인에 관한 업무</p> <p>8. 제13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표지 발급에 관한 업무</p> <p>9.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에 따라 검사기관이 수행한 정기검사 결과의 확인에 관한 업무</p> <p>10.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에 관한 업무</p>
<p>사무 위탁</p>	<p>법률</p>	<p>제15조의3(한국승강기안전공단) ② 공단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p>
	<p>시행령</p>	<p>-</p>

## □ 식물신품종 보호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129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40조(출원품종의 심사) ① 심사관은 출원품종이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한 조사나 시험을 연구기관, 대학 또는 그 밖에 조사나 시험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

## □ 식생활교육지원법(농림축산식품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 생산자 단체, 그 밖에 농림수산 및 식품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식품산업진흥법(농림축산식품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그 밖에 농림수산 및 식품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p>제39조(권한의 위임·위탁)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19조 및 이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에 포함된 식품의 영양학적 품질 특성 조사·연구 관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li> <li>2. 식품영양 관련 교육·연구기관</li> <li>3. 그 밖에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조사·연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li> </ol> <p>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수산식품에 관한 인증은 제외한다)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p> <p>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7조에 따른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업무</li> <li>2. 법 제9조에 따른 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및 분석을 위한 업무</li> <li>3. 법 제15조에 따른 식품산업 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li> </ol> <p>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에 관한 업무를 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에 위탁한다.</p>

사무 위탁	법률	<p>제9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산업 정보·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p>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p> <p>제12조의2(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p> <p>② 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p> <p>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p> <p>② 식품수출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5. 그 밖에 식품의 해외 인증·표준을 통한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p>
	시행령	-

□ 식품위생법(식품의약품안전처)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12조의3(표시·광고의 심의) ① 영유아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 표시·광고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

	<p>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p> <p>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식품의 표시·광고 사전심 의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①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 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 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p> <p>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식품·의약품분 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 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 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 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 · 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 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 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⑭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p> <p>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 육을 받아야 한다.</p> <p>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	--

		<p>제60조(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p>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하는 조사·연구 사업</p>
	시행령	<p>제3조(표시·광고의 심의)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표시·광고에 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는 식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유아용 식품(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품 및 그 밖의 영유아용 식품을 말한다)</li> <li>2. 체중조절용 조제식품</li> <li>3. 특수의료용 식품</li> <li>4. 임산부·수유부용 식품</li> </ol> <p>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식품의 표시·광고의 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법 제64조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에 위탁한다.</p> <p>제3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8조제1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li> <li>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li> <li>3.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li> <li>4.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연구소</li> </ol> <p>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48조제3항·제4항·제6항 및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변경인증, 인증 증명 서류의 발급,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li> <li>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li> </ol>

		<p>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p> <p>5.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p> <p>6.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조사·연구사업</p> <p>7.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제38조(교육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p>
--	--	--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식품의약품안전처)

<p>대행조문</p>	<p>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한다.</p> <p>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li> <li>2.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li> <li>3.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의 보급</li> <li>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과 관련된 업무 중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결정하는 사항</li> </ol>	
	<p>권한 위탁</p>	<p>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사무 위탁</p>	<p>법률</p>	<p>-</p>
	<p>시행령</p>	<p>-</p>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38조의2(권한의 위임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31조(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시행령	-

## □ 신용보증기금법(금융위원회)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32조(업무의 위탁) ① 기금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회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업무로 한정한다.
	시행령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32조에 따라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융회사등: 법 제23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7호의 업무</li> <li>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법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업무</li> <li>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법 제23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업무</li> </ol>
--	--	---

### □ 신항만건설 촉진법(해양수산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11조(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가 시행하는 제2조제2호가목의 항만시설 중 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22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위한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 사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 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p>제21조(기본시설공사의 수행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기단축·공사비절감등 신항만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기본시설공사의 수행에 관한 업무를 국가가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35조(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과 위탁수수료)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p>

		<p>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등을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위탁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등을 위탁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의한다.</p>
--	--	--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국토교통부)**

<p>대행조문</p>	<p>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업무의 범위, 지정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본다.</p> <p>④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는 제2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개발방향에 따라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p>
-------------	---

		<p>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기관</li> <li>2. 민간사업자</li> <li>3.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li> </ol>
권한 위탁	법률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사업시행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31조(업무의 위탁) ① 건설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법 제39조제14호 및 이 영 제24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업무를 제2항에 따른 기관 중에서 건설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아동복지법(보건복지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시행령	
사무 위탁	법률	<p>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①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li> <li>2.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li> </ol>

	<p>3.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p> <p>4.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 에 관한 사항</p> <p>5.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p> <p>④ 위원회는 제2항제4호에 따른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28조의2(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p>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의 대상 선정, 통합서비스의 내용 및 수행기관·수행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3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은</p>
--	--

	<p>행법』에 따른 은행,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p> <p>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p>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li> <li>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li> <li>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li> <li>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li> <li>5. 상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li> <li>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li> <li>6의2.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li> <li>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li> </ol> <p>②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li> <li>2. 피해아동 상담·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운영</li> <li>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li> <li>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li> <li>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li> <li>6.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li> <li>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li> </ol>
--	--

	<p>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는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다만, 시·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p>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①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li> <li>2.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li> <li>3.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li> <li>4.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li> <li>5.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li> <li>6.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li> <li>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li> </ol> <p>②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li> <li>2.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li> <li>3.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li> <li>4. 위탁가정의 사례관리</li> <li>5.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li> <li>6.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 관리</li> </ol>
--	---

	<p>7. 관할 구역 내 가정위탁 관련 정보 제공</p> <p>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p> <p>제55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아동복지단체나 그 밖의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시행령</p>	<p>제41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법 제44조제1항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li> <li>2.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li> </ol> <p>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①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법 제5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아동상담소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li> <li>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li> <li>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li> </ul> </li> <li>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li> </ul> </li> </ol>

		<p>나. 별표 8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p> <p>다. 별표 10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 기준을 갖출 것</p> <p>라. 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p>
--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문화체육관광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21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도로·교량·항만·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를 광주광역시에 위임하거나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광역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이 법에 따른 광주광역시장의 권한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예술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운영) ① 국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을 광주광역시에 설립·운영한다.</p> <p>② 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둔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전당의 운영에 필요한 문화콘텐츠 또</p>

		<p>는 프로그램 등을 제작·개발할 수 있다.</p> <p>④ 문화전당은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를 제28조에 따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문화전당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

### □ 약취방지법(환경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24조(권한·업무의 위임과 위탁) ③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9조(권한·업무의 위임과 위탁)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와 이 영 제8조의2에 따른 약취저감기술 지원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암관리법(보건복지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50조(위임 및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그 밖에 암관리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4조(업무의 위탁)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암센터에 위탁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 사업</li> <li>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li> <li>3. 법 제21조에 따른 완화의료사업의 지원 및 관리</li> <li>4. 법 제25조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li> <li>5. 제6조제1호에 따른 암검진의 기준 연구 및 질 관리</li> <li>6. 제6조제6호에 따른 암검진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li> <li>7. 제9조제5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사업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li> </ol> <p>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검진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6조제2호에 따른 수검 예정자의 선정 및 통보</li> <li>2. 제6조제4호에 따른 검진 지원비 지원</li> </ol>
<p>사무 위탁</p>	<p>법률</p>	<p>제25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완화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질과 수준</li> <li>2. 완화의료 질 관리 현황</li> <li>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30조(사업) 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li> <li>2. 암환자의 진료</li> <li>3. 제12조에 따른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li> <li>4. 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홍보</li> <li>5. 암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li> <li>6. 암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li> <li>7. 암의 예방·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li> <li>8. 제50조제2항에 따라 암에 관한 각종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그 사업</li> <li>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li> </ol>

	시행령	<p>제14조(완화의료전문기관 평가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li> <li>2.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인증전담기관</li> <li>3. 완화의료전문기관 평가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li> </ol>
--	-----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산업통상자원부)

	대행조문	<p>제20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비축하여야 한다.</p> <p>②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권한 위탁	법률	<p>제61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과 평가</li> <li>2. 제35조제4항에 따른 완공도면 사본의 접수</li> <li>3.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li> <li>4.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li> <li>5.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li> <li>6.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가스용품의 검사</li> <li>7. 제40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과 검사</li> <li>8. 제4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li> <li>9. 제4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보</li> <li>10.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li> <li>11. 제48조제1항에 따른 위해 방지 조치 명령</li> <li>12.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사용정지 명령</li> <li>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li> </ol>

	<p>사 업무에 대한 지도와 확인</p> <p>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li> <li>2.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 다만, 수입가스용품의 검사는 제외한다.</li> <li>3. 제44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li> </ol> <p>④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제17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제18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p>
<p>시행령</p>	<p>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과 평가</li> <li>2.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완공도면 사본의 접수</li> <li>3.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li> <li>4.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li> <li>5.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li> <li>6.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가스용품의 검사</li> <li>7.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과 검사</li> <li>8.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li> <li>9.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보</li> <li>10.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li> <li>1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위해 방지 조치 명령</li> <li>12.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영업소·위탁운송·저장·사용시설이나 용기·가스용품의 사용정지 명령</li> <li>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 하는 검사업무에 대한 지도와 확인</li> </ol>

		<p>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해당 기관에 각각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li> <li>2.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수입가스용품의 검사는 제외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li> <li>3.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li> </ol> <p>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 및 변경등록(법 제18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업무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p>
<p>사무 위탁</p>	<p>법률</p>	<p>제32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을 제5조제4항 및 제6항이나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p> <p>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하여 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p> <p>③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용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51조(사업) 사업자단체는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진흥·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li> <li>2. 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수급에 기여하는 사업</li> <li>3. 손해 등을 보전(補填)하기 위한 공제사업(共濟事業)</li> <li>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li> <li>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사업자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사업</li> </ol> <p>제58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p>

	<p>스 판매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액화석유가스 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공개할 수 있다.</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p>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검사의 일부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제31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한국석유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p>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대행조문	<p>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권한 위탁	법률	제66조(위임 및 위탁)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53조(수렵장의 위탁관리) ① 수렵장설정자는 수렵동물의 보호·번식과 수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 □ 양곡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대행조문	<p>제12조(미곡 등의 수입허가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이하 “양허세율”이라 한다)로 미곡이나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가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하 “허가대상미곡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미곡등의 용도 등을 밝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양허세율로 허가대상미곡등이 아닌 양곡을 수입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양곡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p> <p>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의 원조기관 또는 외국의 민간원조단체가 제공하는 허가 또는 추천대상인 양곡의 수입을 관계법령에 따</p>
------	---

	<p>라 인정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를 거쳐 수입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24조(업무대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수출·수입·매매·저장·출납·수송·가공과 양곡의 매입약정체결·선금지급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권한 위탁	<p>법률</p> <p>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시행령</p> <p>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용으로의 판매(판매를 위한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에 관한 사무로 한정한다)</li> <li>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비축양곡 중 「아세안 및 한·중·일 비상 쌀 비축 협정」에 따른 양곡의 비축·운용(매입·보관·수송·판매·원조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li> <li>3. 법 제11조에 따른 양곡(미곡에 한정한다)의 수입(수입에 따른 수송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li> <li>4. 법 제11조에 따라 수입한 양곡(미곡에 한정한다)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판매(국가기관용·가공용·공공용으로의 판매는 제외한다)</li> </ol>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p>
사무 위탁	<p>법률</p> <p style="text-align: center;">-</p>
	<p>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p>

## □ 양성평등기본법(여성가족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52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성인지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양성평등교육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 사업 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3.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

		<p>협력 지원 사업</p> <p>6.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연구 사업</p> <p>7.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 사업</p> <p>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p> <p>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p>
	시행령	<p>제14조(성인지 교육의 수탁기관)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p>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p> <p>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p> <p>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p> <p>제42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p>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24조(업무의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p> <p>1. 제13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p> <p>2.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항</p> <p>3. 제17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p> <p>4. 제20조에 따른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에 관한 사항</p>

		<p>5. 제21조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p> <p>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18조(업무의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3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li> <li>2. 법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li> <li>3. 법 제17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li> <li>4. 법 제20조에 따른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에 관한 사항</li> <li>5. 법 제21조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li> </ol> <p>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li> <li>2.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li> <li>3. 법 제18조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li> </ol> <p>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에 관한 업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수행하는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p>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식품의약품안전처)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14조(품질인증기준 및 표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품질인증기준(이하 “품질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품질인증식품”이라 한다)은 용기·포장 등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품질인증식품 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p> <p>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를 식품 관련 정부출연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수료 외에 인증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p>
	시행령	<p>제23조(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식생활 안전지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p> <p>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p>
	시행령	<p>제10조(품질인증 업무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li> <li>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li> </ol> <p>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p>
		<p>제16조(식생활 안전지수 조사업무를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li> </ol>

	<p>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p> <p>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p> <p>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p>
--	--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산업통상자원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어린이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p>제18조(위임·위탁)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받은 안전인증 서류의 확인</li> <li>2.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서류의 확인</li> <li>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접수</li> <li>4. 법 제22조제7항제3호에 따른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서류의 확인</li> <li>5. 법 제22조제7항제4호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이 상호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사항의 확인</li> </ol>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한국제품안전협회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구·개발·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지에 관한 사실의 확인</li> <li>2.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li> </ol>

		<p>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지에 관한 사실의 확인</p> <p>3. 법 제22조제7항제1호에 따라 연구·개발·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지에 관한 사실의 확인</p> <p>4. 법 제22조제7항제2호에 따라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지에 관한 사실의 확인</p> <p>5. 법 제32조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신청 서류의 접수 및 사실의 확인</p>
사무 위탁	법률	제33조(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를 정부출연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령	-

□ 어선법(해양수산부)

대행조문		<p>제41조(검사업무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선급법인의 경우 제5호의 업무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4조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 측정·개측</li> <li>2.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li> <li>3. 제22조에 따른 어선의 건조검사, 어선용품의 예비검사 및 별도건조검사</li> <li>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검정</li> <li>5. 제2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을 위한 조사 및 어선·어선용품의 확인</li> <li>6.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의 승인</li> </ol>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해양수산부)

대행조문	<p>제15조(업무의 대행) ① 중앙회는 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수납, 보험급여의 지급 및 보험료납부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41조의4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회원조합 및 수협은행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6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① 중앙회는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중앙회가 한 것으로 본다.</p>				
	권한 위탁	<table border="1"> <tr> <td>법률</td> <td>-</td> </tr> <tr> <td>시행령</td> <td>-</td> </tr> </table>	법률	-	시행령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table border="1"> <tr> <td>법률</td> <td>제9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td> </tr> </table>	법률	제9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법률	제9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p>보험사업 업무를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험가입자, 수급권자 및 해당 어선에 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li> <li>2. 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li> <li>3.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li> <li>4.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결정</li> <li>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li> </ol>
	시행령	-

□ 어장관리법(해양수산부)

대행조문		<p>제16조(어장정화·정비의 대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어장정화·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정비를 대행하려면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p>
권한 위탁	법률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③ 이 법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기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및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어장환경평가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업무를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위탁한다.
사무 위탁	법률	<p>제12조(어장의 관리의무) ①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처리(이하 “어장 청소”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폐기물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한 어장은 그 사업을 실시한 것을 제1항</p>

	<p>전단에 따라 어장청소한 것으로 본다.</p> <p>③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어장청소에 관한 업무를 제17조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④ 어장청소 주기(週期)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

## □ 어촌·어항법(해양수산부)

대행조문	제25조(사업대행) 지정권자가 아닌 자로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와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항개발사업을 지정권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정밀조사</li> <li>2. 법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리</li> <li>3.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어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li> <li>4.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어항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어항 기본시설의 안전점검</li> <li>5.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항환경개선계획 시행을 위한 어항관리선의 운영</li> <li>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중 어항시설의 보수 공사 및 1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어항유지준설</li> </ol>

		7.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8. 법 제49조의2에 따른 어촌·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사무 위탁	법률	제11조(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① 어촌종합개발사업 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를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어촌종합개발 및 어항개발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령	-

## □ 에너지법(산업통상자원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6조의3(권한의 위임·위탁)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3.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관한 업무 4.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과 관련된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 5.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재신청에 대한 발급 업무 6. 제13조의6에 따른 예외지급에 관한 업무(제1항제8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산업통상자원부)

<p>대행조문</p>	<p>제5조(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① 에너지절약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li> <li>2. 제6조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상황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li> <li>3. 제8조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에너지절약 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li> </ol> <p>⑤ 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계 연구기관 등에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p> <p>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①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사업주관자”라 한다)는 그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수급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의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사업주관자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할 능력이 있는 자로 하여금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권한 위탁</p>	<p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법률</p> <p>제69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li> <li>3. 제15조제3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li> <li>4.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li> <li>5.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li> <li>6.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인증</li> <li>7.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정지 명령</li> <li>8.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li> <li>9. 제2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li> <li>10.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접수</li> <li>11. 제32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관리·감독</li> <li>12. 제32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li> <li>12의2.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li> <li>13.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검사증의 교부 및 검사대상기기 폐기 등의 신고의 접수</li> <li>14. 제40조제3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검사대상기제조종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및 검사대상기제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에 관한 승인</li> </ol>
	시행령	<p>제51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li> <li>2. 법 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li> <li>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측정 결과 신고의 접수</li> <li>4.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측정 결과 신고의 접수</li> <li>5.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측정 결과 신고의 접수</li> <li>6.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인증</li> <li>7.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취소 또는 인</li> </ol>

		<p>증사용 정지명령</p> <p>8. 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p> <p>9.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p> <p>10.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접수</p> <p>11.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관리·감독</p> <p>12.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p> <p>12의2.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p> <p>13. 법 제3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p> <p>14.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의 발급(제13호에 따른 검사만 해당한다)</p> <p>15. 법 제39조제7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폐기, 사용 중지, 설치자 변경 및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에 대한 신고의 접수</p> <p>16.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기제조종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p> <p>②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p> <p>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p> <p>2.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의 발급(제1호에 따른 검사만 해당한다)</p>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산업통상자원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44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56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4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3.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보완 요구 4.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5. 법 제26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의 접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 및 자료제출 요청 6. 제3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의 유지·관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76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38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 다만, 조합의 해산 등으로 조합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수행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2.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해당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사용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 ② 시·도지사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 다만, 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조합의 해산 등으로 조합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0조제2항 단서(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는 제외한다)의 수리</li> <li>2. 법 제21조제9항에 따른 운행정보 신고의 접수 및 운행기록증의 발부</li> <li>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2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유지·관리</li> <li>1의2.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li> <li>2.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의 시행</li> <li>2의2.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의 실시 및 자격 수여</li> <li>2의3.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론 및 실기 교육의 실시 및 자격 수여</li> <li>2의4.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li> </ol> </li> <li>3.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 현황,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범죄경력의 확인 및 그 기록의 유지·관리</li> <li>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사실의 통보</li> <li>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전자를 직접 검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시설 및 검사기준을 갖춘 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2호의 운전정밀검사(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전자를 검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과 위탁한 권한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li> <li>⑤ 시·도지사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연합회에 위탁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의 실시 및 자격 수여</li> <li>2.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li> </ol> </li> </ol>
--	--

사무 위탁	법률	<p>제13조(사업관리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관리 위탁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하지 못한다.</p> <p>제32조(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하지 못한다.</p> <p>제46조(승차권 판매 위탁) ①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판매 수수료는 운송사업자와 승차권 판매를 위탁받는 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p>
	시행령	<p>제89조(승차권판매의 위탁)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 외의 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터미널사업자가 여객의 승차권 구입 편의를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외의 장소에 승차권판매소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li> <li>2. 터미널사업자가 승차권을 판매할 때에는 운송질서의 확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li> <li>3. 터미널사업자가 승차권판매금액의 정산을 상습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터미널사용자에게 큰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li> <li>4. 터미널사용자와 터미널사업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li> </ol>

## □ 여권법(외교부)

대행조문		<p>제21조(사무의 대행 등)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領事)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p> <p>③ 외교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여권 등의 직접 회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교부·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여권 등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li> <li>2. 국가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li> <li>3. 출입국관리나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li> </ol>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행조문		<p>제26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특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li> <li>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li> </ol>
------	--	--

	<p>3. 진흥재단</p> <p>4.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설치하고 부지를 조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p> <p>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특구를 개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p> <p>6. 특구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특구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p> <p>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권한 위탁</p>	<p>법률</p> <p>제72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특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p>
	<p>시행령</p> <p>제42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재단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 접수 및 확인</li> <li>2.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li> <li>3. 법 제37조에 따른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입주승인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li> <li>4.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등 양도승인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li> </ol>
<p>사무 위탁</p>	<p>법률</p> <p>제43조(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① 특구가 지정된 후 특구개발계획이 고시되면 그 내용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p> <p>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구는 진흥재단이 관리한다. 다만, 진흥재단은 특구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한 관리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p>

	<p>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의 국가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p> <p>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p>
시행령	-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행조문	<p>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소관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연구주체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실로서 유해·위험물질 및 시설·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연구주체의 장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p>
------	--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연안관리법(해양수산부)

		-
권한 위탁	법률	제38조(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 실태조사 2. 제18조에 따른 연안해역 적성평가 3. 제25조제5항에 따른 정비실시계획의 적정성 평가 4.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현황과 효과의 점검·평가 5. 제34조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 6.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li> <li>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li> <li>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li> <li>4.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안교육센터</li> </ol>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영업조합법(해양수산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32조(사업)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p> <p>8. 정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p> <p>③ 조합은 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시행령	-

### □ 영업초생산협동조합법(기획재정부)

대행조문	<p>제32조(사업)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p> <p>2. 경제사업</p> <p>가.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보관·판매·제조 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관련한 업무 대행</p>
------	---

권한 위탁	법률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2.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사무 위탁	법률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⑧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8항에 따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 □ 영유아보육법(보건복지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7조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li> <li>2.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li> <li>3.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li> <li>4. 제30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li> <li>5.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li> </ol> <p>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li> <li>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li> <li>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li> </ol>
	시행령	<p>제2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li> <li>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li> <li>3.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li> <li>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li> <li>5.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li> </ol>

		<p>②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항 제5호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li> <li>2.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 및 정산</li> <li>3. 보육서비스 이용권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li> <li>4. 그 밖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li> </ol> <p>⑤ 법 제51조의2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li> <li>2. 수탁기관이 제3항에 따른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li> <li>3.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법 제23조제4항 및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과 법 제23조제5항 및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기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li> <li>4.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li> </ol>
사무 위탁	법률	<p>제8조(보육개발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평가척도 개발 및 보육교직원 연수 등의 업무를 위하여 보육개발원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li> </ol>

	<p>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p> <p>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p> <p>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p> <p>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p>제18조(보육에 관한 연구업무 등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육에 관한 정책의 연구 및 정보의 제공</li> <li>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li> <li>3. 보육교직원에 대한 연수교재 개발 및 연수</li> <li>4. 어린이집 평가척도의 개발</li> <li>5. 그 밖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훈련시설 등의 평가 등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li> </ol>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li> <li>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li> <li>3.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li> </ol>

## □ 영재교육 진흥법(교육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11조(이수 인정 및 위탁교육) 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영재교육기관이나 대학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35조(이수인정 및 위탁교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영재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영화진흥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3조의7(직업훈련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직업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훈련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준용한다.
	시행령	-

## □ 예금자보호법(금융위원회)

대행조문		제20조(업무의 대행) ① 공사는 필요하면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행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18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8.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업무
	시행령	-

## □ 예비군법(국방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국방부장관 또는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원의 동원 2. 제1호에 따라 동원된 예비군부대의 작전지휘 및 작전상 필요한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치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태가 긴박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에 의한 예비군 동원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

		<p>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한 중대 이하의 예비군부대의 동원과 예비군의 작전지휘,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에 관한 권한</li> <li>2. 무기·탄약·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li> <li>3. 동원 중에 있는 예비군대원의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li> </ol> <p>③ 제2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경찰서장은 예비군대원을 동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원을 해제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p> <p>④ 경찰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예비군을 동원한 후 수임군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즉시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p>
사무 위탁	법률	<p>제7조(무장) ① 예비군은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무장을 할 수 있다.</p> <p>② 예비군이 출동한 경우에는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같은 호에 따른 지역에서 같은 조 제4호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무장 소요를 진압하거나 중요 시설 등을 경비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무장을 위한 무기·탄약·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부대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무를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고, 경찰서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18조(무기 및 탄약 등의 관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이 무장하는 경우에 무기·탄약·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은 군의 보급절차에 따라 보급한다.</p> <p>② 군부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예비군의 무장을 위한 무기·탄약 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을 수임군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분리·보관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경찰서장은 「군수품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으로 본다.</p>

## □ 예술인 복지법(문화체육관광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16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 예술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4조의2(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단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 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의 확인 2.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 위탁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파괴확인</li> <li>2. 법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li> <li>3. 법 제24조의3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환급</li> <li>4. 법 제24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 독촉장 발급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li> </ol>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11조의3(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③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li> <li>2.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시·도지사와 시장등이 위탁하는 업무</li> <li>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제11조의4(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① 옥외광고의 획기적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p> <p>② 센터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p> <p>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p>8. 연구 용역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p> <p>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 등과 관련되는 연구·조사를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연구기관 등에 우선하여 센터에 위탁하여야 한다.</p> <p>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제9조제2항·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p> <p>②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9조제2항·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적어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다른 시·군·자치구와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④ 시장등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자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대행조문		<p>제9조(근로계약) ① 사용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27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①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이나 서류의 수령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6조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li> <li>2. 제18조의2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li> <li>3.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li> <li>4.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li> <li>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업무</li> </ol>
권한 위탁	법률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호의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시행령	<p>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2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관리</li> <li>2. 법 제21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li> <li>3.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송출국가의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li> <li>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징수(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li> </ol>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1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 사업</li> <li>2.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 사업</li> <li>3.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li> <li>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징수(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li> <li>5. 제26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li> <li>6. 제26조제3호에 따른 지원 사업</li> </ol> <p>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제26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p>
사무 위탁	법률	제13조(출국만기보험·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시행령	-

## □ 외국인투자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31조(권한의 위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

		<p>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다.</p> <p>4. 제2호 및 제3호 외의 법 제28조에 따른 권한 중 외국인, 외국투자자, 외국인투자기업의 허가 또는 신고내용의 이행상황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은 그 소관에 따라 주무부장관·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한다.</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무역관·지사 및 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외국환은행의 장(외국환은행의 장이 지정하는 지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한다.</p> <p>1. 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신고·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p> <p>2.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p> <p>3.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사유의 확인</p> <p>4.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내용의 통보</p> <p>5.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말소 사실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세청장 등에 대한 통지 또는 공시</p> <p>③ 주무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토·확인에 관한 업무를 외국환은행의 장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위탁한다.</p> <p>④ 시·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p>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외국환거래(기획재정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위탁한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li> <li>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제한  가. 제21조제2호의 사항(제14조제1호의 기관에 대한 제한은 제외한다)  나. 제21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li> <li>3.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제한·업무정지 또는 경고</li> <li>4. 법 제12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li> <li>5.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으로 한정한다)</li> <li>6.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 행정처분(제3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분에 한정하되,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li> <li>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출의 요구(이 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li> <li>8. 법 제32조제1항(같은 항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제3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li> </ol>

	<p>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p> <p>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증개회사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p> <p>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제한</p> <p>가. 제21조제1호·제3호 및 제8호의 사항. 다만, 제21조제3호에 따른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은 한국은행 외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에 한정한다.</p> <p>나. 제21조제2호의 사항(제14조제1호의 기관에 대한 제한에 한정한다)</p> <p>5.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환증개회사의 업무제한·업무정지 또는 경고</p> <p>6.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p> <p>7. 법 제15조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p> <p>8. 법 제16조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방법의 신고(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9.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에 한정한다)</p> <p>10.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의 행정처분(제3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p> <p>1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출의 요구(이 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와 외환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p> <p>12. 제12조제3항에 따른 채권회수대상의 제외와 채권회수기한의 연장</p> <p>13. 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p> <p>가.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고지 및 수납처리</p> <p>나. 법 제11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21조의7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의 접수 및 분할납부 여부의 통보</p> <p>다.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독촉장의 발급</p> <p>라.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p> <p>마.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부담금과 가산금의 강제징수</p>
--	--

		<p>바.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p> <p>사. 법 제11조의3제6항 및 이 영 제21조의10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처리 및 처리결과 통지, 조정된 부담금 또는 차액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p> <p>아.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에 따른 만기, 비예금성외화부채 등 잔액 및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증가분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p> <p>자. 그 밖에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⑤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6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방법의 신고(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에 한정한다)</li> <li>2.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한정한다)</li> <li>3.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나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또는 수령의 정지 또는 제한(「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카드회원에 대하여 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li> <li>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이 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li> </ol>
사무 위탁	법률	<p>제20조(보고·검사)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⑥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p>

		<p>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시행령</p>	<p>제35조(검사)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는 서면검사 또는 실지 검사로 구분하여 할 수 있다.</p> <p>② 법 제2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관세청장을 말한다.</p> <p>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1. 한국은행총재: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업무. 다만, 나목의 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라목의 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p> <p>가. 외국환중개회사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p> <p>나. 제37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대상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p> <p>다. 제37조제3항제11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에 관련되는 보고 대상자</p> <p>라. 제37조제3항제13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대상인 부담금납부의무자</p> <p>2. 금융감독원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업무. 다만, 제1호 각 목의 자에 대한 업무(제1호 단서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및 제3호 각 목의 자에 대한 업무는 제외한다.</p> <p>3. 관세청장: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업무</p> <p>가. 환전영업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p> <p>나. 수출입거래나 용역거래·자본거래(용역거래·자본거래의 경우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거래 또는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법 제16</p>

	조제3호 및 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당사자 및 관계인
--	--

## □ 외식산업 진흥법(농림축산식품부)

대행조문	제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식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외식산업 관련 해외시장 개척·홍보활동 지원 및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참가 3. 외식산업 수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의 지원 4. 외식산업 수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제1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외식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 관련 업무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구성·운영 2.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 3. 법 제10조에 따른 외식상품 표준화 추진 4. 법 제11조에 따른 외식산업통계의 작성 및 관리

		<p>5. 법 제13조에 따른 외식산업 경영과 유통 활성화 지원</p> <p>6. 법 제16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그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외식상품 연구·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li> <li>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li> <li>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li> <li>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li> <li>5. 그 밖에 외식산업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li> </ol>
사무 위탁	법률	<p>제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식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li> <li>2. 외식산업 관련 해외시장 개척·홍보활동 지원 및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참가</li> <li>3. 외식산업 수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의 지원</li> <li>4. 외식산업 수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li> <li>5. 그 밖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시행령	-

##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20조(용산공원의 관리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 안에 설치한 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용산공원관리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31조(설립) ①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용산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용산공원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p> <p>② 관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용산공원의 관리·운영</li> <li>2. 용산공원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설치</li> <li>3. 용산공원의 안전관리</li> <li>4. 용산공원 관련 홍보·교육 및 각종 기념행사 개최</li> <li>5. 그 밖에 용산공원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li> <li>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li> </ol>
	시행령	<p>제17조(용산공원 등의 관리 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2조에 따른 금지행위의 단속업무</li> </ol>

		<p>2.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행위의 허가업무</p> <p>3. 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에 따른 점용공작물의 관리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원상 회복에 관한 업무</p> <p>4.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점용공작물의 관리에 드는 비용부담의 협의에 관한 업무</p> <p>5. 법 제43조에 따른 용산공원시설 사용료의 징수업무</p> <p>6. 법 제44조에 따른 용산공원 점용료의 징수업무</p>
--	--	---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8조(직원의 채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조직의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국가공무원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8조(직원의 채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조직의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국가공무원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의2(위탁교육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 담당 공무원을 국내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시행령	제17조(우정사업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우정사업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을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의 경우에

		<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정사업과 관련된 상품의 개발·판매 및 그 부대사업</li> <li>2. 우체국보험 청약심사·계약관리 및 보험금 지급심사</li> <li>3. 우정사업과 관련된 교육, 홍보 및 문화센터 운영</li> <li>4. 우정사업과 관련된 전자금융서비스·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그 부대사업</li> <li>5. 우정사업과 관련된 시장의 분석·연구</li> <li>6. 우체국 콜센터 운영 및 고객관리 활동 지원</li> <li>7. 우표류 제작업무와 우편망을 이용한 통신판매의 상품개발·운영 및 그 부대사업</li> <li>8.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 지원</li> <li>9. 우체국금융 위험관리업무 지원</li> <li>10. 우정사업조직에 속한 부동산 관리·운영</li> <li>11. 우편물의 방문접수, 배송 및 그 부대사업</li> <li>12. 우표 전시회 개최, 우표 전시관 설치·운영 및 우표 관련 웹사이트 구축·운영</li> <li>13. 우정사업과 관련된 공익사업 운영</li> <li>14. 우정사업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결산·회계 업무의 지원</li> <li>15. 우정사업과 관련된 제도개선의 연구 및 국제협력</li> <li>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우정사업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li> </ol>
--	--	--

□ 우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2조(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⑤ 우편사업이나 우편창구업무를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편창구업무 외의 우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p>제4조(우편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편이용자를 방문하여 우편물을 접수하는 업무</li> <li>2. 교통이 불편한 지역 기타 우편물의 집배업무·운송업무 또는 발착업무(우편물을 구분 및 정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우편물을 집배·운송 또는 발착하는 업무</li> <li>3. 우표류(우표,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우표책, 우편물의 특수 취급에 필요한 봉투 및 국제반신우표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제하는 업무</li> <li>4. 그 밖에 우편이용의 편의,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 및 우편사업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업무</li> </ol> <p>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 방문접수업무와 집배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위탁업무를 행하는 지역을 구분하여 위탁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 원양산업발전법(해양수산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제수산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업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령	제20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예해양수산관이 제공하는 원양산업 관련 정보의 접수 및 관리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안전위원회)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45조(업무의 위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2. 제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3. 제9조의2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교육 4. 제9조의3제2항 및 제37조제4항에 따른 훈련 평가 5. 제12조제1항과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
	시행령	-

## □ 원자력 진흥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18조(기금의 관리·운영) ①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계정의 관리·운영 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2조의2(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이하 “한국연구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회계 사무 2.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 3.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연구재단의 이사장은 그 소속 부서장 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서장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부서장을, 소속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부서장은 기금수입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부서장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각각 수행한다.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26조(업무의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발전 산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 □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청)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가.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나. 암반탱크 다.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총리령이 정하는 액체위험물 탱크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완공검사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완공검사

		<p>가.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 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한다)에 따른 완공검사</p> <p>나.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p> <p>3.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정기검사</p> <p>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운반용기 검사</p> <p>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청장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 중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p> <p>②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청장의 안전교육 중 제20조제1호 및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별표 5의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및 위험물운송자를 위한 안전교육을 포함한다)은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p>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유료도로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p>제5조(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거나 제3항에 따라 도로의 유지·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한다.</p> <p>제14조(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 대행) 유료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21조(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②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와 부가 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탁받았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령	-

□ 유아교육법(교육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③ 교육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탁한다.
사무 위탁	법률	제6조(유아교육진흥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 유아 체험교육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교육관련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p>수 있다.</p> <p>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7조(유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유아교육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대행조문		<p>제7조의2(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자(이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권한 위탁	법률	<p>제7조의2(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환경 방출되거나 환경 방출될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작물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농림축산식품부</li> <li>2.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부</li> <li>3. 수산 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해양수산부</li> </ol> <p>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제3호의 수산 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해성심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p> <p>제37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p> <p>②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p>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32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업무 2.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 및 협의심사 신청의 접수, 심사 절차 및 연구의 지원 3. 법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2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대한 각종 신청·신고·통보·요청의 접수 4. 법 제26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영향 등의 조사 5. 법 제27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6. 법 제31조의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업무 중 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은행법(금융위원회)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65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6조의2(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에 따라 별표 3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의료기기법(식품의약품안전처)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기의 인증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때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거의 없거나 낮은 의료기기 중 위탁 인증·신고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25조(광고의 심의) ①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심의기준·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 품질평가 기반 구축, 의료기기 기준규격화사업 지원, 그 밖에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센터의 사업)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의료기기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국제규격 연구,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 또는 기술의 지원 2. 신개발의료기기를 제품화하기 위한 임상시험의 지원 3. 위험관리 등 품질관리체계 및 허가·인증·신고 관련 정보에 대한 교육·홍보 및 지원 4. 의료기기의 관리를 선진화하기 위한 기준규격의 국제화 등 지원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의 정보 및 기술 지원과 관련되는 사업

	시행령	-
--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2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실태 등의 신고 수리, 의료기사등에 대한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16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면허 종류별로 설립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에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2. 협회 3. 해당 의료기사등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의료법(보건복지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8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p>시행령</p>	<p>제42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조사·분석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또는 한의사회</li> <li>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li> <li>3.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li> </ol>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지정서 발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li> <li>2.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li> </ol>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80조제4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실태·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 및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li> <li>2. 간호조무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li> <li>3.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만 해당한다)</li> </ol> <p>④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또는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대해서는 제31조의6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사무 위탁</p>	<p>법률</p>	<p>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p>

	<p>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li> <li>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li> <li>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는 것</li> <li>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li> </ol>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li> <li>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li> </ol>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p> <p>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p>
--	---

	<p>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49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li> <li>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li> <li>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li> <li>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li> <li>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li> <li>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li> <li>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li> </ol> <p>② 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제5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 ③ 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학등의 연구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정책자문</li> <li>2. 의학등의 분야별 중장기 연구 기획 및 건의</li> <li>3. 의학등의 국내외 교류협력사업</li> <li>4. 의학등 및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관한 정책자문 및 홍보</li> <li>5. 보건의료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保全)하는 사업</li> <li>6. 보건복지부장관이 의학등의 발전을 위하여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li> </ol> <p>제55조(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p>
--	---

	<p>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수집·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57조(광고의 심의) ①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li> <li>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li> <li>3. 전광판</li> <li>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li> </ol>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58조(의료기관 인증)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전담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60조의3(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p>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li> <li>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li> <li>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li> <li>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li> <li>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li> <li>6.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li> </ol> <p>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령</p>	<p>제7조(평가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5제5항에 따라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및 제5항에 따른 현지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li> <li>2. 정부가 설립하거나 정부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평가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li> <li>3. 그 밖에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li> </ol>

		<p>제11조(신고)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제8조 또는 법 제65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1060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의료인의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화”라 한다)에 위탁한다.</p>
--	--	---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5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대행조문	<p>제11조(표준화의 추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러닝에 관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li> <li>2. 이러닝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li> </ol>
------	--

		<p>3. 이더닝에 관한 국내 표준의 국제화</p> <p>4. 그 밖에 이더닝의 표준화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더닝 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20조(이더닝센터) ① 정부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 따른 이더닝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더닝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p> <p>② 이더닝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소기업 및 교육기관의 이더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경영 컨설팅</li> <li>2. 이더닝을 통한 지역 공공서비스의 제공 대행</li> <li>3. 이더닝 전문인력의 양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제20조의4(이더닝사업자의 신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더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더닝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사업수행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대행조문		<p>제14조(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① 정부는 이스포츠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와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제이스포츠연맹</li> <li>2. 그 밖에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이나 단체</li> </ol> <p>② 정부는 국내 이스포츠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권한 위탁	법률	<p>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이스포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14조(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① 정부는 이스포츠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와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제이스포츠연맹</li> <li>2. 그 밖에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이나 단체</li> </ol> <p>② 정부는 국내 이스포츠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시행령	-

##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환경부)

대행조문		제14조(빛공해 관련 조사·연구) ① 환경부장관은 빛공해가 생태계, 천체관측, 에너지 낭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담기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 참여활동 활성화 지원 2. 법 제15조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자산·자료의 발굴·수집·보존 및 전파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

		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의 지원 5. 법 제17조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인성교육진흥법(교육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11조(인성교육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12조(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인성교육과정을 개설(開設)·운영하려는 자(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과 인성교육과정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p>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자등은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이 교육내용·교육시간·교육과목·교육시설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인증할 수 있다.</p> <p>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3조(인증 업무의 위탁) ①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li> <li>2.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li> <li>3. 인성교육을 포함한 교육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li> </ol>
--	-----	---

##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행조문		제14조(인터넷주소관리업무의 대행) 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9조(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위탁)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인터넷주소별로 구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31조(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나 전문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외교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외교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2.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3.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간병비 지급 신청의 접수·조사 와 간병비 지급 4.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신청의 접수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임금채권보장법(고용노동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p>계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li> <li>1의2. 법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위한 사업주 용자</li> <li>2.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li> <li>3. 법 제10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li> <li>4. 법 제14조에 따른 부담이득의 환수</li> <li>5.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부과</li> <li>나.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산정</li> <li>다.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li> <li>라. 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부담금의 수납·징수</li> <li>마. 보험료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부담금비율 인상·인하 등에 따른 조치</li> <li>바. 보험료징수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부담금의 수납·징수·정산</li> <li>사.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에 따른 부담금 등의 경감</li> <li>아. 보험료징수법 제23조에 따른 부담금 등 과납액의 충당 및 개산부담금·확정부담금 및 그에 따른 징수금 과납액의 반환</li> <li>자. 보험료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같은 법 제19조제4항과 관련된 가산금의 징수</li> <li>차. 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li> <li>카. 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li> <li>타. 보험료징수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li> <li>파. 보험료징수법 제29조에 따른 결손처분</li> <li>하. 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li> <li>거. 보험료징수법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인가, 변경인가, 업무의 폐지·변경신고의 수리 및 인가취소</li> </ol> </li> </ol>

		<p>너. 보험료징수법 제34조에 따른 부담금과 그 밖의 징수금 납입의 통지</p> <p>더. 보험료징수법 제35조에 따른 가산금·연체금의 징수</p> <p>러. 보험료징수법 제37조에 따른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 교부</p> <p>머. 보험료징수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p> <p>6.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p> <p>7.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p> <p>8.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검사·질문(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p> <p>8의2.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액채당금 지급 청구의 수리</p> <p>9. 제17조에 따른 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의 작성·비치·열람제공 및 증명서의 발급(근로복지공단 징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10. 제21조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p> <p>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부담금의 대항납부의 승인, 변경신고의 수리, 승인의 취소</p> <p>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수입(受任) 및 수입 해지의 신고 수리</p> <p>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청문</p> <p>11.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의 기금에의 납입</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p> <p>1.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p> <p>가.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징수</p> <p>나.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8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고지</p> <p>다.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납액의 반환 및 부족 부담금의 징수</p> <p>라. 보험료징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비율 인상에 따른 조치</p>
--	--	---

		<p>                     마. 보험료징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오납 월별부담금 총당 후 잔액의 지급                      바. 보험료징수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월별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                      사. 보험료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연체금의 징수                      아. 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자. 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차. 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3에 따른 부담금 등의 분할납부의 승인·승인취소 등                      카. 보험료징수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타. 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                      파. 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6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 사항 등의 공개                      하. 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7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거. 보험료징수법 제29조에 따른 결손처분                      너. 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더. 보험료징수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2.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검사·질문(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의 기금에의 납입                 </p>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p style="text-align: center;">대행조문</p>	<p>제29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① 한국임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의 생산·유통 정보에 관한 지원</li> <li>3.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및 제18조의7의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li> <li>4.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지원</li> <li>5. 임업연구 성과의 기술 사업화 촉진 및 기술이전 지원</li> <li>6. 산림자원 및 입지 조사 설계·평가</li> <li>6의2.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국제산림협력사업</li> <li>6의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관리 및 산림분야 탄소배출권 확보사업</li> <li>7. 그 밖에 임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li> </ol>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업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권한 위탁</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법률</td> <td data-bbox="464 1149 1216 1288"> <p>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시행령</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able>	법률	<p>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
법률	<p>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				
<p style="text-align: center;">사무 위탁</p>	<p>제9조의2(산림경영 교육·훈련등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임업인 또는 산림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및 상담·자문·지도(이하 “교육·훈련등”이라 한다) 업무의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산림청장은 교육·훈련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교육·훈련등을 전문적으</p>				

		<p>로 실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p> <p>③ 산림청장은 교육·훈련등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24조(산촌에 대한 조사)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를 전국의 산촌에 대하여 10년에 한 번씩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을 수립하려면 관할지역의 산촌에 대하여 필요한 상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상세조사의 내용 및 조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기초조사 또는 상세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

□ 자격기본법(교육부, 고용노동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16조(국가자격 관리·운영의 위임·위탁)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자격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위탁할 수 있다.</p> <p>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교육부장관,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주무부장은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조사·연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li> <li>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li> <li>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li> <li>4.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li> </ol> <p>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은 민간자격의 등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교육부장관,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li> <li>2.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자격의 폐지신고 접수</li> <li>3. 제23조의2에 따른 변경등록</li> </ol> <p>④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은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9조에 따른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li> <li>2. 법 제34조에 따른 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li> <li>3.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 부합 여부 및 공인자격 취득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조사</li> </ol> <p>⑤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은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한다. 다만,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교육과 관련된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경제교육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 공인을 위한 신청 접수</li> <li>2. 제2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의견수렴 및</li> </ol>

		자료 요청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4. 제30조에 따른 자격검정 승인 5. 제31조에 따른 공인사항의 변경 승인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자동차관리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p>제14조의2(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① 제1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압류등록을 촉탁한 행정관청이나 공공기관(이하 “압류등록 촉탁기관”이라 한다)은 국세, 지방세 및 과태료 등의 체납금에 대한 수납·정산, 압류해제의 촉탁 등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하여 공매할 수 있다.</p> <p>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p>
------	---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 동의 또는 요청·명령 및 등록 번호판의 영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부품등의 국가간 상호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제작자등이 국가간 상호인증 등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하여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한 후 이를 인증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한 무상수리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제1호의 무상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하여 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의2(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종합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종합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p>제47조(택시미터의 검정 등) ① 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택시미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미터를 검정할 수 있는 전문검정기관(이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권한 위탁</p>	<p>법률</p> <p>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3조제1항 단서(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인정에 관한 업무</li> <li>2. 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을 것을 명하는 것에 관한 업무</li> </ol> <p>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li> <li>2. 제30조의4(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인증의 면제에 관한 업무</li> <li>3. 제40조제1항(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계·기구의 정밀도 검사에 관한 업무</li> <li>4.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li> </ol> <p>⑦ 시·도지사는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6조 및 제27조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p> <p>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에 관한 권한, 제59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p>

	<p>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조합등 또는 제68조에 따른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p> <p>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p> <p>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에 관한 업무</li> <li>2.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 파기에 관한 업무</li> <li>3.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에 관한 업무</li> </ol>
시행령	<p>제19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 단서(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3조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를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li> <li>2. 법 제30조의4(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인증의 면제에 관한 업무</li> <li>3. 법 제40조제1항(법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계·기구의 정밀도 검사에 관한 업무</li> <li>4.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li> </ol> <p>④ 시·도지사는 법 제77조제7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받은 법 제7조, 제8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및 제16조의</p>

		<p>등록에 관한 사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를 위탁한 시·도지사는 그 위탁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법 제34조(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 승인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p> <p>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매매용 자동차의 신고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p> <p>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정비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p> <p>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0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p> <p>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에 관한 업무</li> <li>2.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 파기에 관한 업무</li> </ol>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45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li> <li>2.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를 보험회사</li> </ol>

	<p>등으로 보게 됨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위한 업무</p> <p>3.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관리에 관한 업무</p> <p>4.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p> <p>5. 채권정리위원회의 안건심의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료의 조사·검증 등의 업무</p> <p>6.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재활시설의 설치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 업무와 제39조제2항에 따른 반환 청구에 관한 업무를 보험 관련 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p> <p>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및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35조(권한의 위탁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처리에 관한 규정 작성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p> <p>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중증 후유장애인, 유자녀, 피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p> <p>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제6조제2항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운영지침 작성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산출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p> <p>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에 관한 업무를 보험 관련 단체 중</p>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또는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사무 위탁	법률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험회사등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하 “전문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의13(기금의 관리·운용) ②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3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33조의10(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의13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11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보험 관련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한다.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 사무 2.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 3. 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무

□ 자연공원(환경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4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공단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p>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입자 또는 수탁자</li> <li>2. 위임하거나 위탁할 국립공원의 명칭</li> <li>3. 위임하거나 위탁할 공원구역의 범위</li> </ol> <p>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국립공원에 대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호의 권한은 시·도지사에 한하여 위임하고, 제3호의2의 경우 공단이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기환경 관리, 산림 등 자연자원의 보호</li> <li>2. 국립공원시설의 유지관리와 공원사업의 시행</li> <li>3. 탐방객 안전관리대책</li> </ol> <p>3의2. 법 제17조의2에 따른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p> <p>3의3. 법 제18조제2항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p> <p>4.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및 공원시설관리허가</p> <p>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p> <p>5의2. 법 제23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사항</p> <p>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p> <p>6의2. 법 제24조의2에 따른 방치된 물건등의 제거에 관한 사항</p> <p>6의3. 법 제24조의3에 따른 관계인 및 관계문서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p> <p>6의4. 법 제24조의4에 따른 퇴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p> <p>8.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의 단속</p> <p>9. 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의 지정 등 출입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p> <p>10.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p> <p>1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p> <p>1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p> <p>13.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청</p>
--	--

		<p>14.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자원의 조사</p> <p>15.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사용료의 징수와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p> <p>16.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점용료 등의 징수</p> <p>16의2. 법 제70조제2항 후단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p> <p>17.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협의(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처분에 대한 협의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p> <p>18.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람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p> <p>18의2. 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p> <p>18의3. 법 제73조의3에 따른 생태체험사업에 관한 사항</p> <p>19. 법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매수 및 매수청구대상토지 매수</p> <p>20. 제5호 또는 제17호의 사항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허가하거나 협의한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p> <p>21. 제1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공단이 제1호에 따라 지질공원 관리·운영 현황에 대하여 조사·점검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 법 제3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지질공원 관리·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점검에 관한 사항</p> <p>2. 법 제36조의5에 따른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p> <p>3. 법 제36조의6 및 이 영 제27조의6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의 선발·활용 등에 관한 사항</p>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자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대행조문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 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li> <li>2.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li> <li>3.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li> <li>4.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li> <li>4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li> <li>5. 제37조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li> <li>6. 제57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li> <li>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li> </ol>	
권한 위탁	제60조(방재기술평가의 지원) ① 정부는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 촉진과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방재기술,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에 대한 평가 신청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방재기술평가”라 한다)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사무 위탁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법률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자연환경보전법(환경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52조의2(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1.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밀조사계획의 수립·시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의 위촉 4.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태·자연도의 작성 및 생태·자연도의 작성을 위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대국민 열람
사무 위탁	법률	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생태·자연도, 생물종(生物種)정보 등을 전산화 한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이하 “자연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6조(자연환경정보망 구축·운영의 전문기관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 자연환경·생태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행정안전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시행령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대행조문		제36조의2(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 무생산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 등의 의무이행과 비용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의 인계·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관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징수 1의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

		<p>금 부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li> <li>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li> <li>4.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li> <li>4의2. 법 제25조의14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li> <li>4의3.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설치·운영</li> <li>5.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li> <li>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및 검사(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li> <li>7. 법률 제6653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예치금의 부과·징수 및 반환</li> <li>8.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li> <li>9. 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폐기물 부담금의 산출 및 납부고지</li> <li>10.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li> <li>10의2. 제13조제3항에 따른 현장실사</li> <li>11. 제14조에 따른 수입업자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정산 및 반환</li> <li>11의2. 제14조의3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승인 및 징수유예의 취소</li> <li>11의3. 제14조의5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li> <li>12.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의 조사·확인 및 폐기물부담금 차액의 납부고지</li> <li>13. 제16조제2호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li> <li>14.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li> <li>15. 제24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접수</li> <li>16. 제25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검토·승인 및 제출 자료의 접수</li> <li>17. 제26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li> </ol>
--	--	--

		<p>18. 제2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고지</p> <p>19.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에 대한 조사·확인 및 재활용부과금 차액의 납부고지</p> <p>20. 제4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처리결과의 통보</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업무를 공제조합에 위탁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의 사용등록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에 위탁한다.</p>
사무 위탁	법률	제25조의15(폐자원에너지센터) ②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

대행조문		제23조(권한의 위임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에 따른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1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③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 및 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p>제13조(기금의 운용·관리 사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금의 수입·지출</li> <li>2. 기금재산의 취득·운영·처분</li> <li>3. 제14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li> <li>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li> </ol> <p>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각 호의 사무 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부담한다.</p>
--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23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른 행정기관의 장</li> <li>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li> <li>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li> <li>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li> </ol> <p>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li> </ol>

		<p>른 한국노동연구원</p> <p>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p> <p>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p>
	시행령	<p>제24조(업무의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한다.</p> <p>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에 필요한 경영·회계·법률·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p> <p>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의 접수</p> <p>3.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의 확인에 관한 업무</p> <p>4. 법 제7조에 따른 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p> <p>5.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상담에 관한 지원</p> <p>6.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용자 지원</p> <p>7.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통보</p> <p>7의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여부 검토에 관한 업무</p> <p>8.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의 수납</p> <p>9.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접수</p> <p>10. 제9조제2항에 따른 출자지원 신청의 접수</p> <p>11. 제9조제3항에 따른 투자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통보</p> <p>12. 제9조제4항에 따른 회계연도 결산서의 접수</p>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30조(권한의 위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를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33조의4(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할 수 있다.
	시행령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고용노동부)

대행조문	제33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등의 납부) ① 부담금과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이라 한다)의 납
------	--

		<p>부 의무자는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부담금등을 납부할 수 있다.</p> <p>제37조(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간을 주어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公賣)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매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p>
권한 위탁	법률	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p>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지도</li> <li>2. 법 제11조에 따른 직업적응훈련</li> <li>3.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li> <li>4.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고용</li> <li>5. 법 제15조에 따른 취업알선</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li> <li>7. 법 제17조에 따른 자영업 장애인의 지원</li> <li>8. 법 제18조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의 지원</li> <li>9. 법 제19조에 따른 취업 후 적응지도</li> <li>9의2.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li> <li>10.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li> <li>11. 법 제21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용자 또는 지원</li> <li>12. 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용자 또는 지원</li> <li>12의2.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의 접수</li> <li>12의3. 법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인증취소 및 공고</li> <li>13.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 용자 또는 지원의 취소, 부당 용자금 또는 지원금의 징수, 시정요구 및 용자 또는 지원 제한</li> <li>14.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조치</li> <li>15.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에 관한 자료 제공</li> <li>16. 법 제26조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현황에 관한 실태 조사</li> <li>17.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하는 장애인 고용계획, 고용 실시 상황 기록 및 고용변경계획의 접수</li> <li>18. 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li> <li>19. 법 제31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 제한</li> <li>20. 법 제33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감면, 고용장려금의 추가지급, 부담금의 추징·환급 및 분할 납부</li> <li>21. 법 제34조에 따른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총당 및 환급</li> <li>22. 법 제35조에 따른 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li> <li>23.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추징 및 환급 통지</li> <li>24. 법 제37조에 따른 징수금의 독촉·체납처분 및 공매대행의 의뢰</li> <li>25. 법 제42조에 따른 징수금의 결손처분</li> <li>26. 법 제71조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기금의 용자·지원·출자 및 보조</li> <li>27. 법 제75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에 관한 사항</li> </ol>
--	--	--

		<p>28.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위탁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p> <p>29. 제31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p> <p>30. 제3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p>
사무 위탁	법률	<p>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조사·연구</li> <li>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 직업지도</li> <li>3.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후 적응지도</li> <li>4.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의 양성·연수</li> <li>5.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 의무 이행 지원</li> <li>6. 사업주와 관계 기관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의 지도·지원</li> <li>7.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li> <li>8.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 기관 사이의 취업알선전산망 구축·관리, 홍보·교육 및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관련 사업</li> <li>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 사이의 업무 연계 및 지원</li> <li>10. 장애인 고용에 관한 국제 협력</li> <li>11.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li> <li>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li> </ol> <p>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대행조문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의2(교육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 장애인복지법(보건복지부)

대행조문	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⑤ 시설 운영자는 이용 신청자와 서비스 이용조건, 본인부담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
------	--

		<p>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⑥ 제5항에 따른 계약은 시설을 이용할 장애인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적 능력 등의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계약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p>
권한 위탁	법률	제85조(권한위임 등)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p>제32조의3(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li> <li>2. 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li> <li>3. 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의 조사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지원</li> <li>4.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li> <li>5. 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li> <li>6. 그 밖에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업</li> </ol>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사무 위탁	법률	<p>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點譯)·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73조(국가시험의 실시 등) ① 의지·보조기 기사 및 언어재활사(이</p>

		<p>하 “의지·보조기 기사등”이라 한다)의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되, 실시시기·실시방법·시험과목, 그 밖에 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37조(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 및 언어재활사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p>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38조(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7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li> <li>2.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조사 등</li> <li>3.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조사</li> <li>4. 그 밖에 수급자의 관리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시행령	<p>제28조(활동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안내 및 접수 지원</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법 제7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li> <li>3.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조사 및 위원회의 운영 지원</li> <li>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준급여이용계획서의 작성</li> <li>5. 법 제13조에 따른 수급자격 갱신 신청의 안내 및 접수 지원</li> <li>6. 법 제21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관리 및 안내</li> <li>7.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li> <li>8.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 내용의 관리·평가</li> <li>9. 법 제35조에 따른 부당지급급여에 관한 조사</li> <li>10. 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조사</li> <li>11. 제27조에 따른 긴급활동지원을 위한 조사</li> <li>12. 제3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li> <li>13. 수급자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지원</li> <li>14.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조사·연구·홍보</li> </ol>
사무 위탁	법률	<p>제31조(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과 정산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35조(급여비용 지급 등의 업무의 위탁)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 제22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지급</li> <li>2.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과 정산</li> </ol>

		<p>3. 법 제33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수납과 정산</p> <p>4. 법 제34조에 따른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지급과 정산</p> <p>5. 법 제35조에 따른 부당지급급여에 관한 조사</p> <p>6. 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p> <p>7. 영 제27조에 따른 긴급활동지원 비용의 지급과 정산</p>
--	--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행정안전부)

대행조문	<p>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66조의8(안전지수의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지수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지수의 개발·조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권한 위탁	<p>법률</p> <p>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등의 업무의 일부와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및 제7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제88조(업무의 위탁)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제79조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 과정의 정기적인 평가 업무 2.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의 정기적인 평가 업무 3. 법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업무 4. 법 제7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업무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법무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21조(민간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령	-

###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대행조문	제8조의2(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증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

	<p>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① 인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평가</li> <li>2. 우수기업 인증서의 발급</li> <li>3. 우수기업에 대한 지도·감독</li> <li>4. 그 밖에 재해경감활동의 인증에 관한 사항</li> </ol>
<p>권한 위탁</p>	<p>법률</p> <p>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시행령</p> <p>제21조의2(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비의 징수</li> <li>2. 법 제10조의3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li> </ol>
<p>사무 위탁</p>	<p>법률</p> <p>제10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제10조의2(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제2항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시행령</p> <p>제10조(전문인력 육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분야</li> <li>2.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li> </ol>

	<p>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경감활동 분야 전문교육과정</p> <p>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0조의5(자격인증시험 실시 등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난 분야의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일 것</p> <p>2. 자격인증시험 실시를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p> <p>3.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전문성이 있을 것</p> <p>4. 그 밖에 자격인증시험의 실시 및 자격인증서 발급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것</p> <p>②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자격인증시험의 실시 및 자격인증서 발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응시원서 접수</li> <li>2. 응시수수료의 수납 및 반환</li> <li>3.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li> <li>4. 시험 실시 및 감독</li> <li>5. 합격자 공고</li> <li>6. 자격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li> <li>7. 그 밖에 자격인증시험의 실시 및 자격인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업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li> </ol>
--	---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행정안전부)

<p>대행조문</p>	<p>제23조(비용의 부담) ② 개선사업지구 내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협의</p>
-------------	---

		<p>과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li> <li>2. 전기시설·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 당해 지역에 전기·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li> <li>3. 통신시설의 설치 : 당해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li> </ol> <p>④ 사업시행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협의하여 같은 항 제1호의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그 설치사업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설치에 관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p>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26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장·군수가 토지 등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직접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 중 일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자치단체</li> <li>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li> </ol>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대행조문	<p>제25조(교육·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	--

		<p>②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권한 위탁	법률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11조(위험저수지·댐의 위탁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하고 있는 위험저수지·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시행자에게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 □ 저작권법(문화체육관광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1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보호원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68조(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다. 1.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 2. 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의 등록(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항에 따른 등록접수에 관한 업무는 제

		<p>외한다)</p> <p>3. 법 제134조에 따른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중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p> <p>4.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이행</p> <p>5. 제52조제3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보고 사항 접수 및 처리</p> <p>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의 등록신청의 접수업무(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위탁한다.</p> <p>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등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에 위탁한다.</p>
<p>사무 위탁</p>	<p>법률</p>	<p>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105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76조의2와 제83조의2에 따라 징수하는 보상금수령단체에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징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및 보상금을 통합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징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p> <p>11.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p> <p>1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p> <p>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p>

		<p>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p>
	시행령	<p>제70조(수거·폐기·삭제 업무의 위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제2항에 따라 수거·폐기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호원</li> <li>3. 그 밖에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폐기·삭제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li> </ol>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보건복지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18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련규칙 제출의 접수</li> <li>2.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 및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를 위한 자료조사</li> <li>3. 제15조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li> </ol>
	시행령	<p>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p>

		<p>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li> <li>2.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내용의 조직·편성을 담당하는 의료 관련 법인</li> <li>3.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 관련 기관</li> </ol>
--	--	--

##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산업통상자원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9조(사업)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p>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p> <p>제49조(업무의 위탁) ① 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금융회사 등과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

## □ 전기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대행조문	<p>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p>
------	---

	<p>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공사</li> <li>2.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li> <li>3.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li> </ol>
권한 위탁	<p>법률</p> <p>제98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62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li> <li>2. 제63조 및 제65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li> <li>3. 제64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li> </ol> <p>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기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li> <li>2. 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li> </ol>
	<p>시행령</p> <p>제62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공사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li> </ol>

		<p>2. 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p> <p>3. 법 제64조에 따른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p> <p>4. 법 제65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p> <p>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단체에 위탁한다.</p> <p>1.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p> <p>2. 법 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p> <p>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조사·연구 및 개정 검토에 관한 업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p>
<p>사무 위탁</p>	<p>법률</p>	<p>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p> <p>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p> <p>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른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자</p> <p>제78조(사업) 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을 한다.</p>

		8. 전기안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시행령	제38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2. 전기사업자 3. 금융회사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 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3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8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한국제품안전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 전시 및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 전시 및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확인

		<p>에 관한 업무</p> <p>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p> <p>4. 법 제24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 전시 및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에 관한 업무</p> <p>5.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사용의 면제 확인에 관한 업무</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안전인증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1.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p> <p>2.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에 관한 업무</p> <p>3. 법 제27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업무</p> <p>4.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p>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환경부)

대행조문	<p>제16조의4(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①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속한 제품군 내의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스스로 회수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회수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	---

	<p>제31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보고 등) ① 자동차폐차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기별 재활용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3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폐자동차를 재사용·재활용한 양</li> <li>2. 파쇄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인계한 양</li> <li>3.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한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양</li> </ol> <p>② 파쇄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기별 재활용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폐자동차를 재활용한 양</li> <li>2.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한 양</li> </ol> <p>③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는 파쇄잔재물의 분기별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분기별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한 때에는 분기별 재활용·처리와 에너지 회수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실적 등의 제출은 사업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38조(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권한 위탁	<p>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환경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공단이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li> <li>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구조 개선에 관한 지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 확인</li> <li>3. 법 제11조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의 사실 여부 확인</li> <li>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정보제공 여부의 확인</li> <li>4의2. 법 제15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의 이행 및 그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부담 여부 확인</li> <li>5. 법 제16조의2에 따른 재활용방법 및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li> <li>6.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채납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li> <li>7.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강제 징수</li> <li>8. 법 제25조에 따른 재활용비용의 준수 여부 확인</li> <li>9. 법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li> <li>10.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등의 분리·보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파쇄잔재물의 분리·배출 준수 여부 확인</li> <li>11. 법 제28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을 적정하게 충당하였는지 여부의 확인</li> <li>12.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결과보고서의 접수</li> <li>13. 법 제32조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li> <li>13의2. 법 제32조의2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li> <li>14.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의 접수</li> <li>14의2. 제14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 확인</li> <li>15.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별 출고량의 접수·확인</li> <li>15의2. 제15조의4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li> <li>15의3. 제15조의5제3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li> </ol>
--	-----	--

		<p>전자제품별 매입량 및 판매량의 접수·확인</p> <p>16.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접수</p> <p>17. 제17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검토·승인 및 제출자료의 접수·확인</p> <p>18.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등의 접수·확인</p> <p>19. 제19조의2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부과, 납부고지 및 이의신청</p> <p>19의4. 제20조의2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산정, 부과, 납부고지 및 이의신청</p> <p>20.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조사·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 차액의 납부고지</p>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금융위원회)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에 대비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li> <li>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예보·경보</li> <li>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li> </ol>

		<p>②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피해환급금 지급액 및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譴責) 또는 감봉</li> <li>2.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산인력, 전산시설 및 전자적 장치 등의 개선 또는 보완에 관한 사항</li> </ol> <p>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

□ 전기통신사업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9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52조제5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li> <li>2. 제52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li> <li>3.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li> </ol>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4조의2(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이하 “통신중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통신중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운영기</p>

	<p>관 등에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다.</p> <p>제32조의5(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li> <li>2.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li> <li>3.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li> <li>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li> </ol> <p>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 차단시각, 발신 사업자명</li> <li>2. 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명</li> <li>3.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li> </ol> <p>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p>
--	--

		<p>인하고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37조의7(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5제3항에 따라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p> <p>제5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4조의2제5항에 따라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li> <li>2.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 요청 및 검사에 관한 업무</li> </ol>

□ 전력기술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27조(권한의 위임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감리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li> <li>2. 제11조제2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의 발급</li> <li>3.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확인</li> <li>4.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접수와 그 기록 및 관리, 감리원 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li> </ol>

		5.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만 해당한다)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감리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의 발급 3.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확인 4.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접수와 그 기록 및 관리, 감리원 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만 해당한다)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전원개발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9조(토지등의 매수 위탁)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용 토지등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이주대책) ④ 전원개발사업자는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전원개발사업과 관련되는 도로·교량·

		<p>항만·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공시설의 설치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20조(토지등의 매수 위탁)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9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용 토지등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요율의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제21조(이주대책) ③ 전원개발사업자가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와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p>

□ 전자금융거래법(금융위원회)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48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46조(과징금) ⑤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30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p> <p>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방법에 관한 기준의 설정</p> <p>1의2.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접수</p>

	<p>1의3.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의 접수</p> <p>1의4. 법 제25조에 따른 약관의 제정 및 변경 보고의 접수, 약관 변경의 권고</p> <p>2. 법 제28조·제29조·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 말소</p> <p>2의2.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신고의 접수</p> <p>2의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허가·인가를 하기 위한 검토</p> <p>2의4. 법 제33조의2제2항 및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본허가·본인가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의 확인</p> <p>2의5. 법 제33조의2제4항 및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예비허가·예비인가의 조건 이행 여부 확인 및 본허가·본인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확인</p> <p>3. 법 제40조에 따른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 지시</p> <p>4.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업무 및 경영실적보고서의 제출방법 및 절차의 결정, 보고서의 접수</p> <p>5.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의 구체적 산정방법의 설정</p> <p>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p>대행조문</p>	<p>제2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① 정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용과 관련 기술의 호환성(互換性)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li> <li>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li> <li>3.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li> </ol> <p>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p>
-------------	---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제3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2조의2(권한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신청의 접수 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문서의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신청의 접수 3. 법 제31조의8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4. 법 제31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5. 법 제31조의20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6. 법 제31조의2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증계자의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7. 제15조의1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의 접수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전자서명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행조문		제26조의3(전자서명의 상호연동)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원활한 상호연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전자서명의 상호연동을 위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2. 전자서명의 상호연동과 관련한 표준의 제정 및 보급 3. 전자서명의 상호연동을 위한 전자서명 및 인증정책의 조정 4. 그 밖에 전자서명의 상호연동과 관련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제3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중소벤처기업부)

<p>대행조문</p>	<p>제26조의3(온누리상품권의 환전) ② 개별가맹점이 아니면 온누리상품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환전할 수 없다. 다만, 환전대행가맹점은 소속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p> <p>제42조(시장정비사업대행자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현황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대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47조(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시장으로서 시장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토지등 소유자가 설립한 시장정비사업조합 또는 시장정비사업법인</li> <li>2.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li> <li>3. 시·군·구와 시장상인 등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li> <li>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법인</li> </ol>
	<p>권한 위탁</p>
<p>시행령</p>	<p>제34조(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8조에 따른 지원효과평가</li> <li>2. 법 제9조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의 실태조사</li> <li>2의2. 법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li> <li>3. 법 제27조에 따른 판로촉진과 홍보지원</li> <li>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상인에 대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li> <li>5. 법 제29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등에 관한 지원</li> </ol> <p>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의 대표에게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5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촉진 지원</li> <li>2. 법 제26조에 따른 공동사업의 지원</li> </ol>
사무 위탁	법률	<p>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제20조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을 포함한다)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비 가리개의 경우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전기사업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시행령	-

## □ 전파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78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 제7조의2, 제18조, 제24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의2제1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4항·제5항 및 제58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9조 및 제7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협회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유지·관리 2.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및 그 손실보상에 관한 이의신청(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는 제외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에 대한 법 제24조에 따른 준공검사 등의 검사 4.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의 수리 및 측정 5.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에 대한 준공검사 등의 검사 6.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검정 시험의 실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7.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64조제2호에 따른 전파 및 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64조제3호에 따른 전파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64조제4호에 따른 전파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

		<p>4. 법 제65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한 업무</p> <p>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방송국 중 지상파방송보조국의 개설허가, 재허가 및 변경허가</li> <li>2. 법 제36조에 따른 방송수신의 기준 및 수신장애 제거에 관한 사항</li> <li>3. 법 제67조에 따른 전파사용료의 부과·징수</li> <li>4. 법 제72조에 따른 지상파방송국의 개설허가의 취소,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운용정지명령 및 운용제한명령에 관한 사항(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li> <li>5.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방송국에 대한 법 제77조제3호에 따른 청문(연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li> <li>6. 법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연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li> </ol>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행정안전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6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접경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환경, 토지 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7조(자연환경 보전대책 등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접경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자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④ 산림청장은 접경지역에 있는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 및 산지의 계획적·생태적 보전·이용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산림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p> <p>제15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④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업무·보상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

□ 정보통신공사업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p>법률</p> <p>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p> <p>1.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신청접수·인정 및 자격증 발급·관리에 관한 업무</p> <p>1의2.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p> <p>1의4.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에 관한 신고의</p>

		<p>접수에 관한 업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li> <li>3.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li> <li>4.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접수·인정 및 경력수첩의 발급·관리에 관한 업무</li> <li>5. 제64조의2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li> <li>6. 제68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li> <li>7. 제68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업무</li> </ol> <p>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인정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협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신청 접수·인정 및 자격증의 발급·관리에 관한 업무</li> <li>1의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li> <li>1의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에 관한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li> <li>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li> <li>3. 법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 시공능력의 평가·공시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li> <li>5.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의 접수·인정 및 경력수첩의 발급·관리에 관한 업무</li> <li>6. 법 제64조의2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li> <li>7. 법 제68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li> <li>8. 법 제68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업무</li> <li>9. 제38조제5항에 따른 교육이수사항의 기록</li> </ol>
사무 위탁	법률	<p>제24조의3(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p>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공무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을 연구·조사할 수 있다.</p> <p>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24조의2(연구·조사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p> <p>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공사업 관련 연구 인력 및 조직을 보유할 것  나. 공사업 관련 연구실적이 있을 것  다. 공사업 관련 산업계·학계와의 협조체계를 운영할 것</p>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행조문	제24조(기술개발 등) ② 정부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보호 기술개발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p>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7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별정통신사업자”라 한다)</li> <li>2. 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하여야 하는 자</li> <li>3.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한 자</li> </ol> <p>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권한(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접수된 사항만 해당한다)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탁한다.</p> <p>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 외의 자(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p>

		<p>권한(법 제50조,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5까지 및 제50조의7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li> <li>2.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li> </ol> <p>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만 해당한다)</li> <li>2. 법 제50조,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5까지,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와 관련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만 해당한다)</li> </ol>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행조문	<p>제7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진흥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보통신기술 수준의 조사, 개발된 정보통신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li> <li>2.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li> <li>3.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다른 기술과의 결합 및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li> <li>4. 정보통신기술의 협력, 지도 및 이전에 관한 사항</li> <li>5.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산학협동 촉진에 관한 사항</li> <li>6. 전문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li> </ol>
------	--

		<p>7.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p> <p>8. 정보통신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p> <p>9. 정보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p> <p>10.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권한 위탁	법률	제47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진흥원,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작성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통계의 관리 2.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지원 3. 법 제24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각종 지식과 정보의 제공
사무 위탁	법률	제45조(기금의 운용·관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2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전파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 □ 정부조직법(행정안전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정신보건법(보건복지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54조(권한의 위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보건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

		<p>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 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을 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간 연계체계 구축,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위의 사업을 수행하며,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5조(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제18조의3(정신보건시설의 평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시설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3조의2(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대상 기관·단체)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신보건시설</li> <li>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li> <li>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li> </ol>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39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제대혈은행의 지도·감독 및 제31조에 따른 심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14조(제대혈은행의 업무위탁) ① 제대혈은행은 제대혈관리업무 중 채취 또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제대혈정보센터의 설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증제대혈 등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대혈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대혈정보센터의 운영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보건복지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22조(권한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을 위한 검토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재평가를 위한 검토 3. 법 제21조에 따른 제약기업 및 관련 단체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대행조문		제32조(도교육감의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교육감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을 준용하여 제주자치도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는 “제주자치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순서”로 본다.
권한 위탁	법률	제81조(교육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각 호에 정한 사무 외에 고등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114조(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① 도지사는 제109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업무를 경찰청장 또는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시험방법과 그 밖에 임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15조(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모든 자치경찰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치안활동과 관련된 전문지식·기술 및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이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치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p>제153조(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업무·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나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161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센터에 과학기술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p> <p>제227조(위탁운영 등) ① 제226조제2항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승인을 받은 법인(이하 “국제학교법인”이라 한다)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운영을 제225조제2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조달청, 기획재정부)

대행조문	<p>제5조의3(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의 구매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li> <li>2. 시설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li> </ol> <p>제11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대금 납부) ① 비축물자를 구매하려는 자(조달청장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민간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비축물자 구매 대금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조달청장이 대통령령으</p>
------	---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비축물자 구매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7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달특별회계에 속하는 창고, 야적장(野積場), 그 밖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제3조 각 호의 사업,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 제3조의5제1항의 업무 및 제3조의6의 업무 중 일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의4제1항제2호의 업무, 제3조의5제1항의 업무 및 제3조의6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3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①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창고, 야적장(野積場), 그 밖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물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2. 그 밖에 조달청장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3조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성이나 수행능력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한다. 1.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의 지정 업무 중 지정신청서 접수, 사전검토 및 이와 관련한 업무 2.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업무 중 입찰자의 재무 상태 및 납품 실적 조사와 수요물자의 품질·성능·효율 등에 대한 조사 ③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3조의4제1항 및 제3조의6의 업무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위탁한다. 1. 법 제3조의4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p>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검사기관</p> <p>나. 그 밖에 조달청장이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p> <p>2. 법 제3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조의6의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검사기관</p>
--	--	--

## □ 종자산업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p>대행조문</p>	<p>제22조(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7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한 품종의 종자 또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생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생산을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종자의 생산·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li> <li>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이라 한다)</li> <li>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li> <li>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 또는 임업단체(이하 “농업단체등”이라 한다)</li> <li>5.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업인</li> </ol> <p>제42조(종자의 수입 추천)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종자의 수입 추천을 받아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자의 수입 추천업무를 농</p>
-------------	---

		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 및 추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권한 위탁	법률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중 농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41조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실시(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2. 법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수료(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징수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주거기본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20조(주거실태조사)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복지 및 주택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주거복지센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p>제23조(주거복지정보체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주거복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복지 및 주택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1항의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시행령</p>	<p>제13조(주거실태조사의 실시)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li> <li>2. 한국토지주택공사</li> <li>3.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li> <li>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li> <li>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li> </ol> <p>제14조(주거복지센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p> <p>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5조(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p>

## □ 주차장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제19조의12(검사업무의 대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 등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p> <p>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19조의21(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9조의9에 따른 검사의 이력정보</li> <li>2. 제19조의14부터 제19조의19까지에 따른 보수업에 관한 사항</li> <li>3. 제25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및 검사에 관한 정보</li> <li>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li> </ol>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시행령	제12조의11(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21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	-----	---

## □ 주택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p>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⑧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및 그 조합의 구성원(주택조합의 발기인을 포함한다)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li> <li>2.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li> <li>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li> <li>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li> <li>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li> <li>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li> </ol>
권한 위탁	<p>제89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주택도시보증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li> <li>2. 제10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li> <li>3. 제48조제3항에 따른 부실감리자 현황에 대한 종합관리</li> <li>4. 제88조에 따른 주택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관리</li> </ol>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p>

		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26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①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건설기준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국방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30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도로·교량·항만·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주한미군시설사업·평택시개발사업 및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를 평택시와 공기업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④ 국방부장관은 이주자들을 위한 토지

		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0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국방부장관이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자들을 위한 토지 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시행 등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중소벤처기업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보호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에 따른 보호지침의 마련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업무 3. 법 제9조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에 관한 업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와 관련된 제도 연구에 관한 업무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에 관한 업무 6.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관한 업무 7.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관리에 관한 업무 8. 법 제17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업무 9. 법 제20조에 따른 국제협력의 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업무

		<p>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보호 전담기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안기술 개발의 촉진 및 보급에 관한 업무</li> <li>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안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 지원에 관한 업무</li> </ol>
<p>사무 위탁</p>	<p>법률</p>	<p>제10조(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보호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9조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li> <li>2. 제18조에 따른 기술보호관제서비스 지원</li> <li>3. 제19조에 따른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li> <li>4.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li> </ol> <p>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3조(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보호지침의 제작·배포</li> <li>2. 해외 기술유출에 관한 실태조사</li> <li>3.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안교육 및 상담·자문</li> <li>4. 해외 기술보호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li> <li>5. 그 밖에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li> </ol> <p>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5조(보안기술 개발의 촉진 및 보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을 위한 보안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중소기업에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안기술 수준의 조사 및 보안기술의 연구개발</li> <li>2. 보안기술의 평가 및 실용화</li> <li>3. 보안기술의 보급·확산</li> <li>4. 그 밖에 보안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li> </ol> <p>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보안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홍보·교육)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중소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홍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8조(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유출방지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외부의 침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보호관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p> <p>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기술보호관제서비스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9조(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보안환경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의 설계와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p>
--	---

		<p>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26조(분쟁의 중재 등)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시행령</p>	<p>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보호 전담기관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li> <li>2. 법 제8조에 따른 보호지침의 마련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업무</li> <li>3. 법 제9조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에 관한 업무</li> <li>4. 법 제1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와 관련된 제도 연구에 관한 업무</li> <li>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에 관한 업무</li> <li>6.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관한 업무</li> <li>7.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관리에 관한 업무</li> <li>8. 법 제17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업무</li> <li>9. 법 제20조에 따른 국제협력의 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업무</li> </ol> <p>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보호 전담기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안기술 개발의 촉진 및 보급에 관한 업무</li> <li>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안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 지원에 관한 업무</li> </ol>

##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중소벤처기업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33조(위임 및 위탁) ②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2.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3.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4. 법 제32조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항 ②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의 접수 나.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 2.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변경신청서의 접수 나.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장실사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중소기업은행법(금융위원회)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48조(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제46조에 따른 감독업무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은행에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고,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검사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중소벤처기업부)

대행조문		
권한 위탁	법률	제38조(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인력지원전담조직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31조(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조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위탁할 수

		<p>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li> <li>2.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퇴직 및 전직인력의 활용지원에 관한 업무</li> <li>3. 법 제9조에 따른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실시 및 지원</li> <li>4. 법 제10조에 따른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및 지원</li> <li>5. 법 제11조에 따른 중소기업체험사업의 실시 및 지원</li> <li>5의2.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li> <li>6.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창업 후 3년 경과 여부 확인</li> <li>6의2.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의 실시</li> <li>6의3.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li> <li>6의4.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서의 발급</li> <li>7.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대한 지원</li> <li>8. 법 제20조에 따른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 관리</li> <li>9. 법 제24조의2에 따른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증진 업무</li> <li>10. 법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의 추진,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및 우수사례의 보급·확산</li> <li>11. 법 제27조의2에 따른 성과 공유 제도의 개발·보급</li> <li>1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우수근로자의 선발</li> </ol>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중소벤처기업부)

대행조문	<p>제15조(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을 받으면 제품의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하고,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성능인증을 하여야 한다.</p> <p>⑥ 중소기업부장관은 제품의 생산 조건이나 품질에 대한 심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중소기업부장관의 지</p>
------	---

		정을 받은 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에게 제3항에 따른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제2항,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7조(권한의 위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확인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확인의 신청 접수 및 그 확인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 3. 법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통보 4. 법 제11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 5. 법 제25조에 따른 정보의 수집·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구매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한 중소기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수집·등록·수정 및 재생산과 정보의 제공 나. 구매정보망에 거짓정보를 제공한 사실의 공개 및 해당 중소기업자의 정보 삭제
사무 위탁	법률	제26조(판로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p>관한 사업</p> <p>4.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p> <p>5. 중소기업의 국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사업</p> <p>6. 중소기업의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p> <p>7. 중소기업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p> <p>8. 그 밖에 중소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내외 판로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 및 국내외 시장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26조의2(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설치 등)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31조(중소기업 수출입동향의 분석·공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외 판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동향을 분석·공표하여야 한다.</p> <p>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중소벤처기업부)

<p>대행조문</p>	<p>제47조(지도사의 업무) ①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영의 종합 진단·지도</li> <li>2.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li> <li>3.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li> </ol>
-------------	---

	<p>4. 생산, 유통관리의 진단·지도</p> <p>5. 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p> <p>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및 확인</p> <p>7.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p> <p>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부수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증명 및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p> <p>제62조의19(공장설립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중소기업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장 설립 및 취득과 소유하고 있는 공장의 지방중소기업자에 대한 양도 또는 장기임대</li> <li>2. 공장을 설립하려는 지방중소기업을 위한 공장설립 대행</li> <li>3. 지방중소기업의 이전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li> <li>4. 이전을 희망하는 지방중소기업과 지방중소기업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li> <li>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li> </ol>	
<p>권한 위탁</p>	<p>법률</p>	<p>제8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29조, 제62조의5 및 제62조의6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p>
	<p>시행령</p>	<p>제81조(권한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li> </ol>

		<p>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및 지원자금의 원리금 회수</p> <p>3.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 협동화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p> <p>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한다.</p> <p>1. 법 제62조의5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확인</p> <p>2. 법 제62조의6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p>
사무 위탁	법률	<p>제62조의3(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5. 그 밖에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사항</p> <p>제74조(사업) ①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20. 중소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p>
	시행령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중소벤처기업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상담회사, 그 밖의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32조(업무의 위탁 등) ①중 소기업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해당 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이 조에서 “한국벤처캐피탈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9조의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육성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치의 지원에 관한 업무</li> <li>1의2.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해당 여부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업무</li> <li>2. 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공시(公示)운영에 관한 업무</li> <li>3. 법 제19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결산서 및 법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결산서의 접수에 관한 업무</li> <li>4. 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등록·변경등록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li> <li>5. 법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li> <li>6.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li> </ol> <p>② 중소기업부 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음 각 목의 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li> <li>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자료</li> <li>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말소신청에 관한 자료</li> <li>라.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li> <li>마.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문책에 관한 자료</li> </ol> </li> </ol>
--	-----	---

		<p>바. 법 제4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제재조치에 관한 자료</p> <p>사. 법 제44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자료</p> <p>아.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자료</p> <p>2.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영실태에 대한 평가에 관한 업무</p> <p>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창업 지원 등의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p> <p>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의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 여부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p> <p>2.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 여부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p> <p>3.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의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및 확인 등에 관한 업무</p> <p>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5에 따른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창업진흥전담조직에 위탁한다.</p> <p>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한다.</p> <p>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창업진흥전담조직</p> <p>2.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p> <p>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p> <p>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p> <p>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p>
사무 위탁	법률	제22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 위탁할 것</li> <li>2.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수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보관 및 관리</li> <li>2. 업무집행조합원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 운용 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li> </ol>
	시행령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소벤처기업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110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과 관리) ② 중앙회는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을 운용·관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권한의 일부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123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정회원의 대표자 또는 정회원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이사장이나 연합회의 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p> <p>⑥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 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p> <p>⑦ 제6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회 회장 선거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의 단속과 조사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p>

	<p>제136조(권한의 위탁) ① 중소기업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앙회의 회장 또는 연합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앙회의 회장 또는 연합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42조(권한의 위탁 등) ① 중소기업부장은 법 제136조에 따라 별표 1의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감독</li> <li>3. 법 제35조제1항제12호 및 법 제9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수익 사업의 승인</li> <li>4. 법 제35조제2항(법 제9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다른 법인에의 출자에 관한 승인</li> <li>5. 법 제47조제2항(법 제9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관변경의 인가</li> <li>5의2. 법 제132조에 따른 휴면 조합의 조사·통지·관보 게재 및 해산 명령</li> <li>6. 법 제133조에 따른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관한 사항</li> </ol> <p>② 주무관청은 법 제136조에 따라 지방조합, 사업조합, 전국조합 및 연합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회의 회장에게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29조에 따른 결산 관계 서류의 수리(受理)</li> <li>2. 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수리</li> <li>3. 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규약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의 승인</li> <li>4. 법 제131조에 따른 업무와 회계의 검사</li> </ol>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p>법률</p> <p>제46조(위임 및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p>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33조(위임 및 위탁)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연구원의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 평가 3.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의 접수
사무 위탁	법률	제26조(자산운용회사에 대한 특례 등) ②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투자자와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능형 로봇사업에 관한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로봇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와 자문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을 받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로봇랜드의 관리 등) ②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로봇랜드의 조성·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0조(자산운용회사의 업무위탁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는 제17조에 따른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운영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자 또는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고용한 기업에 자문을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로봇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로봇공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의 업무에 2년 이상 또는 로봇개발과 관련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통신·정보처리 직무분야의 기술사로서 3년 이상 또는 기사로서 5년 이상 로봇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로봇 관련 기관에서 로봇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

		<p>투자업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로봇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p> <p>5.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로봇 개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p> <p>제29조(로봇랜드의 관리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로봇랜드 조성·관리·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li> <li>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li> <li>3.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li> </ol> <p>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로봇랜드의 조성·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	--	--

□ 지방공무원법(행정안전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32조(시험의 실시) ⑥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p> <p>제77조(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p>

		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시행령	-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③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행정안전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시행령	-

### □ 지방세기본법(행정안전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⑤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운영 등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대행조문	-
------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20조(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정보화)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등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관련 정보화 사업을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 지방제징수법(행정안전부)

대행조문	<p>제71조(공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p> <p>제72조(수의계약)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채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는 경우</li> <li>2.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li> <li>3. 압류한 재산의 추산(推算) 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li> <li>4. 법령으로 소지(所持)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li> <li>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li> <li>6.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li> </ol>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대</p>
------	---

		<p>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보며,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제71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96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채납자가 권리 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다만, 제71조제5항 또는 제72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절차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차 이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p> <p>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9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71조제5항 또는 제72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압류한 금전</li> <li>2.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채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li> <li>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li> <li>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li> </ol>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행정안전부)

대행조문		제10조(토지수용 등) ④ 사업시행자가 수행하여야 할 토지수용 등에 관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26조(권한 및 운영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지방의료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대행조문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령	제13조(계약사무의 위탁)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3. 행정안전부장관이 계약 또는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대행조문	제8조(계약의 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대행 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 대행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 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p>제39조(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계약 담당공무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 기관 중에서 계약 및 회계에 관한 전문인력 보유 현황과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계약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자문을 하거나 계약사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원가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이하 “원가검토”라 한다)를 위한 계약사무의 위탁은 제4호 각 목의 기관으로서 원가검토 대상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에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li> <li>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li> <li>3. 공익목적에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li> <li>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연구기관</li> <li>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li> <li>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li> <li>라.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li> <li>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li> </ol> </li> </ol>

		<p>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 수수료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	--	--

□ 지방재정법(행정안전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p> <p>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p> <p>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p> <p>가. 채무부담행위</p> <p>나. 보증채무부담행위</p> <p>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p>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을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62조의2(지방재정분석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에 관한 업무를 재정분석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 □ 지방회계법(행정안전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사무 위탁	법률	제54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령	-

### □ 지속가능발전법(환경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21조(교육·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

		<p>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간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 ① 정부는 국민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22조(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 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현황조사 또는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립환경과학원</li> <li>2. 국립환경인력개발원</li> <li>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시·도 보건환경연구원</li> <li>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li> <li>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li> <li>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li> </ol>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79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행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21조(지역개발사업 시행의 위탁) ① 시행자는 항만,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건설과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②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57조(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성·운영)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망의 구축·관리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22조(공공시설 건설 등의 위탁 시행)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항만,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p> <p>②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토지주택공사</li> <li>2. 한국수자원공사</li> <li>3. 한국관광공사</li> <li>4. 한국농어촌공사</li> <li>5. 한국철도공사</li> <li>6.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li> </ol> <p>제23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시행)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토지주택공사</li> <li>2. 한국수자원공사</li> <li>3. 한국농어촌공사</li> <li>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li> <li>5.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li> </ol>

##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30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2.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의 홍보 4. 인증 및 제26조에 따른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 2. 법 제30조제2항제4호의 업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방송통신위원회)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

		하거나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2조(업무의 위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수행 능력과 관련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지역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 및 국내·외 유통활성화에 관한 업무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지역보건법(보건복지부)

대행조문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5. 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문화체육관광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4조(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접수에 관한 업무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의 접수에 관한 업무
사무 위탁	법률	제12조(자료 제출 협조 등) 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관리·운용)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관리 및

		<p>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8조(기금의 관리·운용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이 조, 제9조, 제10조에서 “기금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기금수탁기관이 수탁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금의 출납</li> <li>2.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li> <li>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li> <li>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무</li> </ol>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소벤처기업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40조(위임 등) ③ 재단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 중앙회,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중앙회의 회장은 신용보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25조(위임·위탁 등)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재단이 금융회사등, 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③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 금융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사무 위탁	법률	제35조(설치) ①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개별 재단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을 구성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둔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단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중소벤처기업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2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① 농지소유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다.
	시행령	-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지하수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p>제5조(지하수의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및 개발 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적인 조사를 완료한 지역에 대한 보완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p> <p>⑤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사업무를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5조의2(지하수보전·관리의 정보화)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하수 조사자료와 그 밖에 지하수보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	--

	<p>제6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9조의6(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와 가뭄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하수자원확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지하수댐, 지하수 함양시설 등을 말한다)을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도서·해안 지역</li> <li>2. 가뭄 등에 취약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수자원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li> <li>3. 그 밖에 지하수 수위가 불안정하거나 대체수원을 필요로 하는 등 지하수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li> </ol> <p>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권한 위탁	<p>법률</p> <p style="text-align: center;">-</p>
	<p>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p>
사무 위탁	<p>제34조의2(교육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p> <p>②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인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육 대상과 내용 및 교육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42조(교육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li> </ol>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
--	--	--

□ 직업안정법(고용노동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3조(정부의 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는 업무 2. 구인자, 구직자에게 국내외의 직업을 소개하는 업무 3. 구직자에 대한 직업지도 업무 4. 고용정보를 수집·정리 또는 제공하는 업무 5. 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업무 6.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7.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는 업무 8. 직업안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업무 연계·협력과 고용서비스 시장의 육성에 관한 업무 ② 정부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자와 공동으로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2.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3.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4. 그 밖에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시행령	-

##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 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p>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3조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의 실시</li> <li>2. 법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의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진폐소견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li> <li>나.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li> <li>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li> </ul> </li> <li>3.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그 결과의 통지</li> <li>4. 법 제19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li> <li>5. 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li> <li>6. 법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지급</li> </ol> <p>6의2.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 요청</p> <p>6의3. 법 제2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 관련 업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7. 제14조제1항에 따른 진폐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 진단수당과 및 이송료의 지급</li> <li>8. 대통령령 제20430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시행 전에 근로자나 유족에게 과오지급된 진폐위로금의 정산</li> <li>9. 대통령령 제20430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li> </ol>

		<p>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및 연체금의 징수와 부담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법 제15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한다.</p>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국가보훈처)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8조(권한의 위임)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사무 위탁	법률	<p>제8조(양로지원) ①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양로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 외의 양로시설에 위탁하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p>
	시행령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19조(임용시험) ①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한다. 다만, 기관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할 수 있으며,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인사 관리) ② 중앙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다만,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령	-

## □ 철도사업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제43조(시설물 설치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도시설 관리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그의 위탁을 받아 시설물을 직접 설치하거나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29조(평가업무 등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철도 서비스 품질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철도서비스 품질에 대한 조사·평가·연구 등의 업무와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에 필요한 심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제43조(시설물 설치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도시설 관리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그의 위탁을 받아 시설물을 직접 설치하거나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수 있다.</p>
	시행령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p>제19조(관리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그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권한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권한 위탁	법률	<p>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교통관서의 장에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철도시설공단·철도공사·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p>
	시행령	<p>제50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업무를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에게</p>

		<p>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 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li> <li>2. 한국철도시설공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유지 보수 시행업무를 철도청장에게 위탁한다.</li> <li>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교통관제시설의 관리업무 및 철도교통관제업무를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철도시설공단</li> <li>2. 철도운영자</li> </ol> </li> </ol> </li> </ol>
사무 위탁	법률	<p>제23조(철도자산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철도자산의 처리 계획(이하 “철도자산처리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하여 철도공사에 운영자산을 현물출자한다.</li> <li>③ 철도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받은 운영자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li> <li>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하여 철도청장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철도자산을 이관받으며, 그 관리업무를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관련 기관 및 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법인에 위탁하거나 그 자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철도청의 시설자산(건설중인 시설자산을 제외한다)</li> <li>2. 철도청의 기타자산</li> </ol> </li> </ol>
	시행령	<p>제30조(철도자산 관리업무를 민간위탁계획)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자산의 관리업무를 민간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탁대상 철도자산</li> <li>2. 위탁의 필요성·범위 및 효력</li> <li>3. 수탁기관의 선정절차</li> </ol>
--	--	---

□ 철도안전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77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p>제63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검사</li> <li>1의2.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연구·개발</li> <li>1의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li> <li>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실시</li> <li>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발급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이나 기재사항의 변경</li> <li>4.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갱신 발급과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내용 통지</li> <li>5. 법 제20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반납 및 보관</li> <li>6.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운전면허 발급·갱신·취소 등에 관한 자료 유지·관리</li> <li>6의2.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종합시험은행 결과의 검토</li> <li>7. 법 제70조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 보급과 법 제71조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li> </ol>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3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연구·개발</li> <li>2.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검사</li> <li>3.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제작자승인검사</li> <li>4.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제4항제1호에 따른 완성차량 검사 업무는 제외한다)</li> <li>5. 법 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li> <li>6.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검사</li> <li>7.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제작자승인검사</li> <li>8.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철도용품 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표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신청의 접수</li> <li>나. 표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 및 확인 대상의 검토</li> <li>다. 표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 및 확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li> <li>라. 표준규격서의 작성</li> <li>마. 표준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li> </ol> </li> </ol>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의 신고 수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 금지·제한이나 필요한 조치명령</li> <li>2. 법 제46조에 따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li> </ol>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업무 중 완성차량검사 업무 (철도차량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설계대로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li> </ol>
--	--

		2.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자격부여 등에 관한 업무 중 제60조의2에 따른 자격부여신청 접수, 자격증명서 발급, 관계 자료 제출 요청 및 자격부여에 관한 자료의 유지·관리 업무
사무 위탁	법률	제23조(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① 철도차량 운전·관계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적성검사를 제1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및 적성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32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탁)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사무소의 장에게 위탁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증 발급에 대한 추천서 발급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접수 및 해당 업무 처리 결과의 통보 가.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 승인 및 변경 승인 나.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주 승인 및 변경 승인 다.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입주 승인 취소와 청문의 실시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청소년 보호법(여성가족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52조(권한의 위탁)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보호, 매체물 또는 약물 등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1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①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심의 결과 그 결정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를 각 심의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제34조(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와 청소년의 매체물 오용·남용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해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li> <li>2.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li> <li>3. 청소년의 매체물 이용과 관련한 상담 및 안내</li> <li>4. 매체물 오용·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치료 등</li> <li>5.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치료와 재활</li> </ol>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p>

		<p>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35조(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이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을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시행령	-

□ 청소년활동 진흥법(여성가족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69조(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9조의4(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공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위하여 온라인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p>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의 운영을 활동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p>제39조(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①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청소년수련활동의 일부를 수탁 받은 자도 포함한다)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만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58조(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는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교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교류센터의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시행령	-

□ 초·중등교육법(교육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62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12조(의무교육)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

	<p>학시키기 곤란하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나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p> <p>④ 국립·공립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p> <p>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접속방법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p> <p>제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시행령</p>	<p>제14조(위탁시의 협의) ① 교육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설립·경영하거나 의무교육대상자의 일부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위치·위탁구역 및 경비분담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학교의무교육의</p>

		<p>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 및 그 산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64조(학교발전기금) ④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p>
--	--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경찰청)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22조(교육의 실시) ① 총포(엽총 및 공기총만 해당한다)·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제12조제3항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과 제28조에 따른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 전에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총포·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하거나 소지허가를 한 후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총포·도검·화약류·석궁의 취급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li> <li>2. 엽총·공기총·석궁의 사용·보관, 취급에 관한 실기 및 안전교육</li> <li>3. 화약류의 제조 및 취급상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기</li> </ol> <p>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48조에 따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42조(총포·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의 검사) ① 총포·분사기·</p>

		<p>전자총격기·석궁 제조업자가 제조한 총포·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및 제9조에 따라 총포·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한 총포·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식별표지가 없는 총포가 제조 또는 수입된 경우 경찰청장은 즉시 폐기 또는 반출을 명하여야 한다.</p> <p>③ 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제48조에 따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과 검사업무를 수행할 사람의 자격기준 등 검사업무를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p>제80조(회비의 위탁징수) ① 협회는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p>

## □ 축산물 위생관리법(식품의약품안전처)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업무와 제31조의3, 제31조의4 및 제31조의5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p> <p>③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3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에게 위탁한다.</p> <p>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장에게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도축장·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li> <li>2. 법 제9조의2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업무(도축장·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li> <li>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제2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보관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안전관리인증업소(제21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평가</li> </ol> <p>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축장·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9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li> <li>2.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li> <li>3.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은 자에 대한 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 등의 우선지원</li> <li>4.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li> <li>5.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평가</li> <li>6. 법 제9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조사·평가 및 지원</li> </ol>
--	-----	--

		<p>7.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농장에 대한 출입·조사</p> <p>8. 법 제9조의3제7항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조치</p> <p>9.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p> <p>11.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농장에서의 식용란 검사에 관한 사항</p> <p>12.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방법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 및 시정명령</p> <p>13. 법 제13조제1항·제5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검사관 및 그 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의 임명·채용·배치에 관한 사항</p> <p>1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집유업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 검사 결과 보고 명령 및 검사관에 대한 도축장·집유장 검사와 축산물 수거 명령</p> <p>15. 법 제36조에 따른 검사관에 대한 압류·폐기 명령(도축장 및 집유장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p> <p>16.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지급으로 한정한다)</p> <p>17.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 명령</p> <p>18. 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청문(제9호에 따라 위탁된 권한에 따른 청문만 해당한다)</p> <p>19.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 판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p> <p>20.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보상가격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고시</p> <p>21. 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원(제13호에 따라 채용·배치 권한이 위탁된 검사원으로 한정한다) 교육실시기관의 지정·고시 및 교육에 관한 고시</p>
사무 위탁	법률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p>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는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의사(이하 “책임수의사”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③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p> <p>④ 시·도지사는 장비·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p>
	시행령	-

□ 축산법(농림축산식품부)

대행조문		<p>제30조(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축산물 및 제29조에 따른 종축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축산물 및 종축 등의 수입 추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추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p>
권한 위탁	법률	<p>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정사에 대한 교육을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정기점검 등의 업무 중 일부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업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종축개량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다만, 종계와 종란의 수출입 신고에 관한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양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이를 위탁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p>
사무 위탁	법률	<p>제48조(기금의 운용·관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21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금의 수입 및 지출</li> <li>2. 기금재산의 취득·운용 및 처분</li> <li>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기금대손보전계정의 설치 및 운용</li> <li>4. 제24조에 따른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li> <li>5.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 □ 출입국관리법(법무부)

대행조문		제76조의8(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사무의 대행) 법무부장관은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p>제48조(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어 교육</li> <li>2. 한국사회 이해 교육</li> <li>3. 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li> </ol> <p>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전 평가</li> <li>2. 학습성과 측정을 위한 단계별 평가</li> <li>3.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li> </ol> <p>③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표준화·체계화·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대학, 법인, 기관, 단체 등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p>

		<p>제51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문화사회 전문가 등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운영한다.</p> <p>② 법무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③ 법무부장관은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이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과정이나 제2항의 보수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p>
--	--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 제25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사무 위탁	법률	<p>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출판된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판사, 인쇄사,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li> <li>2.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li> <li>3. 간행물의 도서관매집계 제외명령</li> <li>4. 소속 공무원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li> </ol>

		<p>5. 그 밖에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본다.</p>
	시행령	<p>제15조의2(간행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① 법 제23조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발표 행위에 사용된 알림 자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발표 수단외 폐기 명령을 말한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p>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교육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5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및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p> <p>1.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 및 관리</p> <p>2.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상환 및 관리</p> <p>③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23조(치료의 위탁) ①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감호만을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집행이 시작된 후 1년이 지났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어 형기(刑期)에 상당하는 치료감호를 집행받은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법정대리인등에게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7조(치료의 위탁)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치료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위원회에 제출할 서약서에는 그 법정대리인등과 피치료감호자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및 치료를 받을 병원명 등을 적고 입원보증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 치매관리법(보건복지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20조(위임과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행령	<p>제11조(위임과 위탁)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li> <li>2.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치매검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li> <li>3.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치매검진의 질 관리</li> </ol>
사무 위탁	법률	<p>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치매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li> <li>2. 치매연구사업 계획의 작성</li> <li>3. 치매연구사업 과제의 공모·심의 및 선정</li> <li>4. 치매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li> <li>6. 재가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li> <li>7. 치매관리에 관한 홍보</li> <li>8. 치매와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li> <li>9.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li> <li>10. 치매의 예방·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li> <li>11.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li> </ol>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7조의2(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예방,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치매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9조(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위탁받으려는 기관·법인·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치매상담전화센터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별표 3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li> <li>2. 운영계획서</li> </ol>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법인·단체가 별표 3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p> <p>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p>
--	--	--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제12조(사업시행자)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조성부지를 분양받을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12조(사업시행자)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조성부지를 분양받을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제11조(친수구역조성사업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 중 용지매수·손실보상·이주대책 및 시설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p>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운영 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li> <li>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li> <li>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li> <li>4.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법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시행자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li> <li>5. 문화·관광·레저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li> </ol>
--	--	---

### □ 콘텐츠산업 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15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술수준의 조사 및 기술의 연구 개발</li> <li>2. 개발된 기술의 평가</li> <li>3. 기술협력·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li> <li>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li> <li>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li> </ol> <p>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p>
		<p>제16조(표준화의 추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효율적인 콘텐츠제작과 콘텐츠의 품질 향상, 콘텐츠 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자에게는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p>

		<p>과 협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콘텐츠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li> <li>2. 콘텐츠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li> <li>3. 그 밖에 콘텐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li> </ol>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콘텐츠의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li> <li>2. 외국인의 투자 유치</li> <li>3. 국제시상식·견본시장·전시회·시연회 등 참여 및 국내 유치</li> <li>4. 콘텐츠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li> <li>5. 콘텐츠의 해외 현지화 지원</li> <li>6. 콘텐츠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li> <li>7. 국내외 기술협력 및 인적 교류</li> <li>8. 콘텐츠 관련 국제표준화</li> <li>9.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li> </ol> <p>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23조(콘텐츠 식별체계)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식별체계의 확립·보급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25조(표준계약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제20조에 따른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p>
--	--	---

		<p>제26조(이용자 보호시책 등) ① 정부는 콘텐츠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한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용자에 대한 콘텐츠 정보 제공 및 교육</li> <li>2. 제28조에 따른 이용자보호지침의 준수에 관한 실태조사</li> <li>3.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 보호에 관한 교육</li> <li>4.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li> <li>5.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조치의 마련 및 시행</li> <li>6.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li> </ol> <p>② 정부는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들이 편리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제1항과 제2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시행령</p>	<p>제16조(기술개발 사업의 위탁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 기술개발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으려는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인력, 시설·설비 및 전문지식 보유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위탁받을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탁사업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li> <li>2. 위탁사업의 기간에 관한 사항</li> <li>3. 위탁사업의 수행결과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li> <li>4. 계약 또는 협약의 변경·해약 및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제17조(표준화추진사업 등의 위탁)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의 확립·보급에 관한 사업,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p>

		약서에 관한 업무,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6조를 준용한다.
--	--	---

##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15조(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산림바이오매스를 공급하는 산림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및 이용시설의 종합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을 통하여 저감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산림탄소상쇄를 목적으로 하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활동은 운영표준을 적용한다.
		제29조(연구개발 및 기술의 이용·보급 촉진 등)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탄소흡수원 평가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대학 등에 연구개발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술의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p>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위탁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2조(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과 지역별로 특성화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산림청장은 사업자가 국외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p> <p>④ 산림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림탄소상쇄 도입을 위한 기술 및 재원</li> <li>2.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을 위한 기술적 사항</li> <li>3.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li> </ol> <p>⑤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인증을 받은 산림과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에 대하여 산림탄소상쇄우수제품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p> <p>⑥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우수제품에 대한 인증업무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p>
<p>시행령</p>	<p>제13조(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목이 임야가 아닌 토지에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산림을 조성하는 사업</li> <li>2. 임목(林木) 부산물 자원화 확대 사업</li> <li>3.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수집·선별을 위한 기계·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li> </ol>

		<p>4.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설비 설치 지원 사업</p> <p>5.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유통 지원 사업</p> <p>6.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연구 지원 사업</p> <p>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및 이용시설의 종합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 업무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p> <p>③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매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	--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21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4조(업무의 위탁)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 수집·이용 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공동 이용

## □ 택지개발촉진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② 공공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분양 등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등 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지정권자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 및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는 권한 2.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는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권한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공공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시행령	제18조(권한의 위탁) ② 지정권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행자에게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부 목록을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는 권한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는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권한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공공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사무 위탁	법률	제17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p>제22조의2(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과 택지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택지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12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목적물 및 위탁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7조(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법 제22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i> <li>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li> </ol>

## □ 토양환경보전법(환경부)

대행조문	<p>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 환경부장관</li> <li>2. 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누출검사기관: 시·도지사</li> </ol>
------	--

	<p>⑥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환경평가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은 토양환경평가 또는 위해성평가를 위한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권한 위탁</p>	<p>법률</p>	<p>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p>
	<p>시행령</p>	<p>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위탁 일시와 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li> <li>2. 법 제5조제4항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li> <li>3.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표토(表土)의 침식(浸蝕)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li> <li>4.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li> <li>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련된 업무. 다만,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li> <li>6. 법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 수립·변경, 의견청취, 협의</li> <li>7. 법 제15조의7제3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 토지 일부의 사용·수익, 대부 또는 매각에 관련된 업무</li> </ol>
<p>사무 위탁</p>	<p>법률</p>	<p>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① 오염토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여야 한다.</p> <p>②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를 말한다)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용제류(有機溶劑類)에 의한 오염토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은 정화책임자가 직접 정화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5조의7(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10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0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의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의 개발·활용</li> <li>2. 법 제1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의 토양보전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 실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li> <li>3. 법 제10조의10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의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활용·교육·홍보 및 국제협력</li> <li>4. 법 제10조의10제1항제4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제도 운영 등 토양환경산업 활성화</li> </ol>
--	-----	---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23조(업무의 위탁)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p>제23조(권한의 위탁) ①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p> <p>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 중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이나 단체를 하나 또는 둘 이상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정보체계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받을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설계 및 구성</li> <li>2.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컴퓨터·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li> <li>3.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보안관리</li> <li>4. 국토이용정보에 대한 수요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li> <li>5.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을 위한 교육</li> <li>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지원</li> <li>7. 그 밖에 정보체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li> </ol>
--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국가보훈처)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81조(위임 및 위탁)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 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p>제6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 및 제20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하고,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20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교육기관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p> <p>3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진료의 위탁 및 이 영 제3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응급진료 사실의 통보 접수</p> <p>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부터 제48조가</p>

		<p>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 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에 대한 대부 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한다.</p>
<p>사무 위탁</p>	<p>법률</p>	<p>제33조(진료) ① 특수임무부상자가 그 부상 부위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부상 외의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제36조(의학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 중 부상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p> <p>② 국가보훈처장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단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72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p>
	<p>시행령</p>	<p>제34조(진료의 종류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한 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 입원진료는 부득이한</p>

	<p>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1. 응급진료: 불의의 재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에서 필요한 처치를 즉시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되는 특수임무부상자에게 하는 진료</p> <p>2. 입원진료: 특수임무부상자를 의료기관에 입원시켜 하는 진료</p> <p>3. 통원진료: 특수임무부상자를 의료기관에 입원시키지 아니하고 왕래를 하면서 하는 진료</p> <p>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의료기관으로 한다.</p> <p>③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수임무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진료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p> <p>제35조(의료기관의 지정에 의한 진료의 위탁 등)① 특수임무부상자는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군에 보훈병원 및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외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제외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지체 없이 진료의 위탁 여부를 해당 특수임무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⑤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위탁병원을 결정하는 기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지정 및 진료 위탁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p> <p>제56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2조에 따라 법 제70조에 따른 양로지원 및 법 제71조에 따른 양육지원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3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p>
--	---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법무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11조(금융회사등의 감독·검사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융회사등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반 행위의 시정명령</li> <li>2. 기관경고</li> <li>3. 기관주의</li> </ol> <p>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반 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게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해임권고</li> <li>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li> <li>다. 문책경고</li> <li>라. 주의적 경고</li> <li>마. 주의</li> </ol> </li> <li>2. 직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면직</li> </ol> </li> </ol>

		<p>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p> <p>⑥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검사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p>
	<p>시행령</p>	<p>제15조(감독·검사 등) ③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조치와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요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신관서</li> <li>2.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li> <li>4. 관세청장 :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영업자</li> <li>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li> <li>7. 금융감독원장 :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은행</li> <li>나. 법 제2조제1호마목, 바목 및 카목에 따른 금융회사등</li> <li>다. 제2조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융회사등</li> <li>라.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 및 제134조의5에 따른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li> <li>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li> </ol> </li> <li>8.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li> <li>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li> <li>10. 산림조합중앙회장 :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li> </ol>

	11.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12.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	---

## □ 폐기물관리법(환경부)

대행조문	<p>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p> <p>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⑥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그 시설의 폐쇄를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최종복토(最終覆土) 등 폐쇄절차를 대행하게 하고 제5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예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p> <p>제34조(기술관리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기술관리인의 자격을 갖추어 스스로 기술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술관리 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p>
------	--

	<p>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이라 한다)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p>
<p>권한 위탁</p>	<p><b>법률</b></p> <p>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b>시행령</b></p> <p>제37조의2(업무의 위탁)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1조에 따른 폐기물 통계조사 업무</li> <li>2.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관리 및 제공 업무</li> <li>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설치·운영 업무</li> <li>4.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운영 업무</li> <li>5.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실태 등의 조사 업무 및 그 평가를 위한 자료 검토 및 분석 등 업무</li> </ol>
<p>사무 위탁</p>	<p><b>법률</b></p> <p>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li> <li>2.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li> <li>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li> <li>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li> </ol> <p>제24조의3(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①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자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이하 “수입폐기물”이라 한다)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li> <li>2.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li> <li>3. 폐기물처리 신고자</li> </ol>
	시행령	-

□ 풍수해보험법(행정안전부)

<p>대행조문</p>	<p>제25조의2(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에 관한 기술능력을 갖춘 자로 하여금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	--

		25조의3(풍수해보험관리지도 통합·관리의 대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통합·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27조(업무위탁) 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험 모집, 손해평가 등 풍수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2.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시행령	제17조(업무위탁) ① 보험사업자가 법 제27조에 따라 보험 모집, 손해평가 등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사업자의 사업방법서 등을 제출받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 □ 하수도법(환경부)

<p>대행조문</p>	<p>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li> <li>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li> </ol> <p>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li> <li>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li> </ol> <p>제34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관리지역 안의 개인하수도를 소</p>
-------------	---

	<p>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3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권한 위탁</p>	<p>법률</p> <p>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② 환경부장관은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 등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를 대통령령</p>

		<p>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42조(권한의 위탁) ①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li> <li>2.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한 교육: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li> </ol> <p>②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환경공단</li> <li>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li> <li>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i> <li>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li> <li>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li> <li>7. 하수도시설을 운영·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으로 한정한다)</li> <li>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li> </ol>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하천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p>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대</p>
------	---

	<p>행하는 하천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p> <p>제36조(하천점용공사의 대행)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p>
<p>권한 위탁</p>	<p>법률</p> <p>제8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와 토지등의 매수청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 및 매수청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액 및 매수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③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6조에 따른 유역조사 업무</li> <li>2. 제17조에 따른 수문조사 업무</li> <li>3. 제18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 업무,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 및 수문조사시설의 유지·관리</li> <li>4. 제19조에 따른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및 검정수수료 징수 업무</li> <li>5. 제21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작성 업무</li> <li>6. 제22조에 따른 수자원 자료의 정보화 업무</li> </ol> <p>6의2. 제2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보수 업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7. 제40조에 따른 댐등에서의 수문조사 업무(댐 하류구역의 수문조사는 댐 운영에 필요한 주요지점에 한한다)</li> </ol> <p>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p>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1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학교보건법(교육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p>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①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p> <p>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교육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4조의3(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p> <p>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제6조(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①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부 소관 국가안전관리기</p>

		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9조(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④ 교육감 및 학교장등이 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 학교체육 진흥법(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8조(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① 국가는 학생의 건강체력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3월 말까지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의 장은 실시계획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 지도자(이하 “학교운동부지도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국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을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p>「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체육계열학과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5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수탁단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학교체육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관 또는 단체</li> <li>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체육계열학과를 운영하는 대학</li> </ol>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교육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 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li> <li>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li> <li>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li> <li>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li> <li>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li> <li>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li> </ol>

	<p>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p> <p>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시행령</p>	<p>제9조(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p> <p>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0조(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p>

		<p>2. 학교폭력 피해학생·가해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p> <p>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시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li> <li>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li> <li>3.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li> <li>4. 청소년 정신치료 전문인력이 배치된 병원</li> <li>5. 학교폭력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종교기관 등의 기관</li> <li>6. 그 밖에 교육감이 치유프로그램의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li> </ol> <p>제11조(학교폭력 조사·상담 업무의 위탁 등) 교육감은 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11조의2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	--	---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30조의2(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2.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사무 위탁	법률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⑦ 수도사업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6조(강제징수 위탁)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려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2. 납부액과 납부기한 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의 발부사실 유무와 그 발부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 □ 한국관광공사법(문화체육관광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12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관광 진흥사업 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홍보 나. 국제관광시장의 조사 및 개척 다. 관광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라. 국제관광에 관한 지도 및 교육 2. 국민관광 진흥사업 가. 국민관광의 홍보

		<p>나. 국민관광의 실태 조사</p> <p>다. 국민관광에 관한 지도 및 교육</p> <p>라.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p> <p>3. 관광자원 개발사업</p> <p>가. 관광단지의 조성관리, 운영 및 처분</p> <p>나.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p> <p>다. 관광지의 개발</p> <p>라. 관광자원의 조사</p> <p>4. 관광산업의 연구·개발사업</p> <p>가. 관광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연구</p> <p>나. 관광산업의 연구에 관한 용역사업</p> <p>5.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훈련 사업</p> <p>6.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수출입업을 비롯한 부대사업으로서 이사회가 의결한 사업</p> <p>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9조(위탁경영)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그 업무를 제1항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하려는 업무의 종류 및 범위, 위탁경영의 조건 및 기간과 위탁방법 등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p>

□ 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25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 한국국제협력단법(외교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24조(권한의 위탁)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농림축산식품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17조(농업용수 이용자의 자율관리) ① 공사는 공사관리지역 중에서 농업용수 이용자가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를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농업용수 이용자와 협의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기금의 운용·관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을 농업인에 대한 대출금으로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통하여 용자할 수 있다.
	시행령	제35조(기금의 위탁업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사에 위탁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li> <li>2. 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li> <li>3.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른 용자 및 투자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li> <li>4.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li> <li>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li> </ol>
--	--	--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교육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17조(업무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p>
	시행령	<p>제45조(교육부 소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사립의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부설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에게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검정·수여와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li> <li>가.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li> <li>나. 중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li> </ol>

	<p>다.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p> <p>라. 보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p> <p>마. 초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p> <p>바. 실기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p> <p>사.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p> <p>아.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p> <p>자. 영양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p> <p>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기준 중 유치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검정·수여와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p> <p>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한다.</p> <p>1. 「고등교육법」 제27조에 따른 외국박사학위 신고의 수리 및 외국 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p> <p>2. 「병역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업체 추천을 위한 신청의 접수</p> <p>3. 「병역법 시행령」 제78조의3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중 대학 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p> <p>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제3호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2.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호에서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p> <p>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험시행의 공고, 시험의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p> <p>나. 영 제37조에 따른 시험의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의 지정 또는 위촉</p>
--	--

	<p>다.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결정, 수납 및 반환</p> <p>라.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의 결정</p> <p>3.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수학·과학 및 경제 교과용도서는 제외한다)의 검정·인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검정실시의 공고</p> <p>나. 영 제9조에 따른 검정 심사</p> <p>다.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정의 합격 결정</p> <p>라. 영 제10조의2에 따른 불합격 결정의 통지</p> <p>마. 영 제11조에 따른 검정도서의 합격 공고</p> <p>바.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정수수료의 결정·공고 및 수납</p> <p>사. 영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른 인정 심사 등(「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에 따른 학교 중 특수학교와 공립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한정한다)</p> <p>아. 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심의회 중 검정·인정을 위한 교과용도서심의회 설치·구성·운영, 간사의 지명 및 연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p> <p>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출제, 문제지 인쇄, 채점, 분석 및 성적통지에 관한 사항</p> <p>④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수학 및 과학 교과용도서의 검정·인정에 관한 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은 제3항제3호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교육부장관은 「저작권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국정도서 저작권 보상금의 지급사무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선정된 발행자에게 위탁한다.</p> <p>⑥ 교육부장관은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용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p>
--	---

		<p>⑦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용보고의 접수</li> <li>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의 접수</li> </ol> <p>⑧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 및 결산의 접수</li> <li>2.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 대학 설립·경영자 및 대학의 장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교사 보유현황 보고의 접수</li> <li>3.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라 사이버대학 설립·운영자 및 사이버대학의 장이 행하는 교사(校舍) 및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에 대한 보고의 접수</li> <li>4.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제62조에 따라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학교의 학적부 관리·보관 및 제 증명 발급</li> <li>5.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학교의 장이 소속된 학교가 「고등교육법」 제4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학교의 장이 위탁받았던 사항</li> </ol> <p>⑩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경제 교과용도서의 검정·인정에 관한 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한국개발연구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제3항제3호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	--	---

□ 한국도로공사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p>제13조(「도로법」 등에 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로 하여금 그 부담으로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도로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를 하게 할 수</p>
------	--

		<p>있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12조의2(업무의 위탁) ① 공사는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13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유료도로의 건설·관리에 관한 사업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li> <li>2.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li> </ol>
	시행령	<p>제13조의2(대집행권한 등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li> <li>2.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li> </ol> <p>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대집행 또는 불법시설물의 철거를 하였으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국가보훈처)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24조의2(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제6조제1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 1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조정업무 등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7조의2(업무의 위탁 등) ① 공단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심사·조정 및 평가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1. 제15조의2에 따른 약제비용 중 보훈병원의 처방전 또는 국가로부터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이하 “위탁진료병원”이라 한다)의 처방전에 따라 진료대상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준 약사가 청구하는 약제비용 2. 진료대상자에 대한 위탁진료병원의 진료비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3. 진료대상자에 대한 보훈병원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진료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진료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3항 또는 제5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같은 법 제73조 및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p>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p> <p>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p> <p>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p> <p>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p> <p>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p> <p>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p> <p>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심사평가원에 지급할 수 있다.</p> <p>④ 제1항과 관련된 비용의 청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p>
--	--	--

□ 한국산업은행법(금융위원회)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36조(보고서의 제출 및 서류의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제34조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시행령	제41조(서류 등의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수행할 검사의 구체적인 목적과 범위 등을 미리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	-----	---

### □ 한국수출입은행법(기획재정부)

대행조문		제28조(업무의 대행) 수출입은행은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41조(보고와 검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는 제39조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수출입은행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에게 수출입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교육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51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p>1.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제50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p> <p>2.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업무</p> <p>② 재단은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업무에 한한다.</p>
	시행령	<p>제36조(업무의 위탁) ① 재단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1. 법 제23조의2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p> <p>2. 법 제24조의10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채권의 행사</p> <p>3. 법 제33조에 따른 구상채권의 행사</p> <p>4. 제8조에 따른 채권의 모집</p> <p>② 재단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p>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교육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17조(업무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령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금융위원회)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44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① 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채권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채권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융기관</li> <li>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li> <li>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이하 “신용정보회사”라 한다)</li> </ol> <p>⑦ 공사는 제22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30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3조(법 제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li> <li>2. 법 제24조(법 제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li> <li>3. 법 제29조(법 제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서류 등의 공시</li> </ol> <p>제31조(공사의 업무위탁) ① 공사는 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융기관: 법 제2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부수되는 업무로 한정한다)의 업무</li> <li>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법 제22조제1항제8호·제10호 및 제14호의 업무 중 구상권 행사에 관한 업무</li> </ol>
--	-----	---

## □ 한국투자공사법(기획재정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35조(감독) ① 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에게 경영 및 자산운용의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공사의 업무상황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p> <p>② 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제12조(감독) ① 운영위원회는 사장에게 공사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인회계사의 수가 100인 이상인 회계법인에게 감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	---

## □ 한의약 육성법(보건복지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항공사업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75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3조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 관한 업무 2. 제64조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의 발간에 관한 업무
	시행령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

		원에 위탁한다.
사무 위탁	법률	<p>제6조(항공사업의 정보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 관련 정보의 관리, 활용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운항·비행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비행정보시스템 구축·운영</li> <li>2. 항공물류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항공물류정보시스템 구축·운영</li> <li>3. 항공교통 및 항공산업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항공정보포털시스템 구축·운영</li> <li>4.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상시원격학과시험시스템 구축·운영</li> <li>5. 항공인력양성 및 관리를 위한 항공인력양성사업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li> <li>6. 그 밖에 항공 관련 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li> </ol>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11조(항공 관련 정보화사업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해당 호에서 정한 기관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항공물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li> <li>2. 항공정보포털시스템 구축·운영: 법 제68조에 따른 한국항공협회</li> <li>3. 상시원격학과시험시스템 구축·운영: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li> <li>4. 항공인력양성사업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법 제68조에 따른 한국항공협회</li> </ol>

□ 항공안전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제49조(항공전문직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하
------	---

	<p>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의사(이하 “항공전문의사”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 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권한 위탁</p>	<p>법률</p> <p>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증명, 승인 또는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수리·개조승인에 관한 권한 중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수리·개조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9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사업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한국항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p> <p>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8조에 따른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li> <li>2.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업무 및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li> <li>3. 제45조제3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li> <li>4. 제4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li> <li>5. 제61조에 따른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접수·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li> <li>6. 제112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li> <li>7.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 및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li> </ol>

		<p>8.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관한 업무</p> <p>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의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1.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p> <p>2. 제49조제3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p> <p>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32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② 소유자등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한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시행령	-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전문검사기관 또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무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항공우주기술 및 산업에 대한 자료수집, 실태조사, 정책기획, 그 밖에 필요한 관련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p>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항로표지법(해양수산부)

대행조문		제10조(항로표지 설치·관리의 대행 등)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그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설치·관리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검사업무의 대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비 및 용품의 성능에 관한 검사의 업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한 검사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의 제작·수리 2. 제35조제2항에 따른 박물관 및 해양문화공간의 관리·운영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의 관리·운영 2.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국가가 설치·관리하는 부표류, 철탑등대 및 등주(燈柱)만 해당한다]의 제작·수리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항만공사법(해양수산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시행령	
사무 위탁	법률	제30조의2(강제징수) ① 공사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42조(사업의 위탁 등) ① 공사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의 경비·보안 및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의 일부를 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위탁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의3(사업의 위탁 법인)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항만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항만관리법인 2.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

## □ 항만법(해양수산부)

대행조문	제14조(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공사의 대행)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공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관리청과 협의하여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를 그 비관리청의 비용부담으로 대행할 수 있다.
------	---

	<p>제28조(검사업무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해양수산부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5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li> <li>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li> <li>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li> <li>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li> <li>6.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li> <li>7.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li> </ol> <p>④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 또는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권한 위탁</p>	<p>법률</p> <p>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 또는 「한국해운조합법」 제4조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하는 협회, 항만공사 또는 한국해운조합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시행령</p> <p>제92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항만 및 항만시설에 대한 조사·연구·정보화·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p>
<p>사무 위탁</p>	<p>법률</p> <p>제45조(토지소유자의 권리) ①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에서 항만공사를 할 때에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의 허가를 받</p>

	<p>아 비관리청이 실시하는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된다.</p> <p>②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항만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토지소유자 자신이 시행자가 된 항만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제7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p>제80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탁사업의 사업지</li> <li>2. 위탁사업의 종류·규모·금액 및 기간</li> <li>3.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li> <li>4. 위탁자가 부동산·기자재 또는 노무자(勞務者)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li> <li>5.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li> <li>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li> </ol> <p>② 법 제7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i> <li>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li> <li>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li> </ol> <p>③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에 따른다.</p>

□ 해사안전법(해양수산부)

<p>대행조문</p>	<p>제19조(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행)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나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대행업자로 하여금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이하 “안전진단대행업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장비 등 자격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48조(인증심사 업무의 대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정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대행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증심사</li> <li>2.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li> </ol>
<p>권한 위탁</p>	<p>법률</p> <p>제99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른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등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사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시행령</p>	<p>제21조(권한의 위임)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여객선과 어선에 대한 출항통제 권한을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위탁한다.</p> <p>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 위탁할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사무 위탁	법률	<p>제46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선박을 운항하는 선박소유자가 그 선박과 사업장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해저자원을 채취·탐사 또는 발굴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이동식 해상구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7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을 운항하는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법」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심사를 받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li> <li>2.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기선(機船)과 밀착된 상태로 결합된 부선(桴船)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li> <li>3.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어획물운반선과 이동식 해상구조물</li> <li>4. 수면비행선박</li> </ol> <p>③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p>
	시행령	-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p>법률</p> <p>제43조(위임·위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p>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수질 조사·분석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다.
사무 위탁	법률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역번영회·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의 기준·절차·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령	제8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업무를 위탁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업무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2. 법 제2조제2호가목5)에 따른 환경시설 3. 법 제2조제2호나목3)에 따른 판매·대여시설 4.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지역번영회·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해당 해수욕장 주변의 마을회 등 지역번영회 2. 해당 해수욕장을 어촌계의 구역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

		<p>6.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 연맹</p> <p>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 공사</p>
--	--	---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7조(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p>제3조(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li> <li>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li> <li>3. 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정보체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li> </ol>

## □ 해양환경관리법(해양수산부)

<p>대행조문</p>	<p>제95조(해양환경영향조사 등) ① 해역이용사업자들은 면허등을 받은 후 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해양환경에 대한 영항의 조사(이하 “해양환경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분기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역이용사업자들은 평가대행자에게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선박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물의 승인</li> <li>1의2.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의 검인</li> <li>1의3.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li> <li>2.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검사</li> <li>2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li> <li>3.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예비검사 및 에너지효율검사. 다만, 대기오염방지설비 중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방지설비에 대한 검사 대행자 지정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li> <li>4.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증서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검사증서의 교부</li> <li>5.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li> </ol> <p>② 해양경찰청장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를</p>
-------------	---

	<p>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정도검사·성능시험·검정 및 인정, 제1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업무를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권한 위탁</p>	<p>법률</p> <p>제123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p> <p>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 및 정기적인 해양환경의 측정</li> <li>2. 제11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 해양환경정보의 제공 및 관련 자료 제출의 요구</li> <li>3. 제12조제1항에 따른 측정·분석 기관에 대한 정도관리</li> <li>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의 관리</li> <li>5.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 또는 처리시설의 운영</li> <li>6.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li> <li>7.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관시설의 설치·운영</li> <li>8.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처리장의 설치·운영</li> <li>9. 제121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운영</li> </ol>
	<p>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p>
<p>사무 위탁</p>	<p>법률</p> <p>제67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 안에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li> <li>2.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유조선을 제외한 선박에 한한다)</li> <li>3. 신고된 해양시설로서 저장용량 1만 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저장시설</li> </ol>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등을 배치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배치의무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설치하거나 이를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95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 및 정기적인 해양환경의 측정</li> <li>2.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 해양환경정보의 제공 및 관련 자료 제출의 요구</li> <li>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측정·분석 기관에 대한 정도관리</li> <li>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의 관리</li> <li>5.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선박 또는 처리시설의 운영</li> <li>6.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li> <li>6의2.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오염실태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한 측정·조사</li> <li>7.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의 설치·운영</li> <li>8.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선박처리장의 설치·운영</li> <li>9. 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의 운영</li> </ol>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외교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외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p>제10조(권한의 위탁) 외교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1호마목에 따른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재난구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국제협력단 총재에게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6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li> <li>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li> <li>3. 법 제14조에 따른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지원</li> <li>4. 제8조2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 표준매뉴얼 작성 및 보완</li> </ol>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농림축산식품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3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협회, 그 밖에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이나 국제농업협력사업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29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해외농업·산림자원의 조사 등에 관한 업무</li> <li>2.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보조를 위한 타당성 검토</li> <li>3. 법 제25조에 따른 자금의 용자에 관한 업무</li> <li>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한 시책의 시행에 관한 업무</li> <li>5. 법 제30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제 농업·산림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시행에 관한 업무</li> </ol>

		<p>②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는 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li> <li>2. 산림청장의 업무를 위탁받는 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및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li> </ol>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p>
사무 위탁	법률	<p>제17조(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①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만을 운용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요건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p> <p>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투자자와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외농업자원개발에 관한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업무 중 일부를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할 수 있다.</p> <p>④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 실적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p>
	시행령	<p>제12조(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에 따른 법·제도·기술·경제성 분석에 관한 업무, 토지의 매입·운영·관리 및 매각 등의 업무를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성과 보수 또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로 본다.</p>

##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21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7조(권한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비용의 보조를 위한 타당성 검토 2. 법 제19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또는 검사 ② 제1항의 권한을 위탁받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석유: 한국석유공사 사장 2. 석유 외의 광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및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사장
사무 위탁	법률	제13조의7(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③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투자자와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업무 중 일부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실적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	제12조의4(집합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법 제13조의7제3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기술·법 제도·경제성 분석, 광구의 매입·운영·관리 및 매각 등의 업무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10조(업무의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서류의 접수, 접수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등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업무의 일부와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0조(업무의 위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 서류의 접수 및 접수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의 통지 3.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② 대한무역투자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처리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해운법(해양수산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

	<p>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시행령	<p>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외항 여객운송사업과 내항 화물운송사업 및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내항 여객운송사업만 해당한다)</li> <li>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 수리와 그 변경신고의 수리</li> <li>2의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수리와 그 변경신고의 수리</li> <li>3. 법 제12조제1항(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인가 또는 신고의 수리</li> <li>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명령</li> <li>5. 법 제14조 및 제30조에 따른 사업개선의 명령</li> <li>6. 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의 지정 및 운영,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객선의 운항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의 취소</li> <li>7.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li> <li>7의2. 법 제17조제4항(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승계신고의 수리</li> <li>8. 법 제18조(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수리,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휴업 허가 및 공고</li> <li>9. 법 제19조(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정지, 사업면허·등록의 취소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li> <li>9의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접수</li> </ol> </li> </ol>

	<p>나.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p> <p>다.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및 변경 요구</p> <p>라.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p> <p>마.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출항정지, 시정명령 등</p> <p>9의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요청 및 보고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p> <p>가. 법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보고의 접수</p> <p>나. 법 제2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여객선등의 운항 횟수를 늘리는 요청의 접수</p> <p>다. 법 제2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출항정지 요청의 접수</p> <p>라. 법 제22조제5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변경 요청의 접수</p> <p>마. 법 제22조제5항제4호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요구의 접수</p> <p>9의4.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보고 또는 사무실 등에 대한 출입·점검 등 운항관리자에 대한 직무 감독 및 직무수행 개선 등 조치 명령</p> <p>10. 법 제24조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의 등록</p> <p>1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일시적으로 국내 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신고의 수리</p> <p>12.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제한조치의 예외 인정에 관한 허가</p> <p>13.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보고 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p> <p>14. 법 제51조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에 관한 청문</p> <p>15. 법 제5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8조 및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관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p> <p>1. 내항 여객운송사업: 여객선의 주된 항로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이 경우 여객선의 주된 항로에 관한 판단 기준은 해양수</p>
--	--

		<p>산부장관이 정한다.</p> <p>2. 외항 여객운송사업: 선박의 출항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p> <p>3. 내항 화물운송사업: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p> <p>4.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p>
사무 위탁	법률	<p>제21조의5(안전관리책임자)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규정의 수립·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사안전법」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인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

□ 행정사법(행정안전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34조(위임 및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8조(행정사 자격시험) ①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p> <p>② 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행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p>

		<p>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5조(행정사의 교육) 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신고를 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등은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행정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행정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시기·기간 및 이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p>제23조(행정사의 교육) ⑤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6조에 따른 행정사협회</li> <li>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행정학과 또는 법학과가 개설된 대학으로 한정한다)</li> </ol>

□ 혈액관리법(보건복지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의 작성·관리 및 통지에 관한 업무</li> <li>2. 제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헌혈자의 혈액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li> <li>3. 제14조제4항에 따른 보상업무</li> <li>4. 제15조제1항에 따른 헌혈환급예치금의 수납업무</li> <li>5. 제15조제2항에 따른 적립금의 조성·관리 업무</li> </ol>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위탁한 업무 및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혈액원의 개설자로부터 이관받은 혈액관리업무기록(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포함한다)의 보존업무</li> <li>2. 헌혈자의 헌혈경력 조회업무</li> <li>3. 헌혈자의 혈액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li> <li>4. 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업무</li> </ol>
	시행령	<p>제10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의 작성·관리 및 통지에 관한 업무</li> <li>2. 법 제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의 보고 접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li> <li>3.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업무</li> <li>4.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환부예치금의 수납업무</li> <li>5.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조성·관리업무</li> </ol>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협동조합 기본법(기획재정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 등으로서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p>

		<p>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위탁한다.</p> <p>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p>
	<p>시행령</p>	<p>제32조(권한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처·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제2항제7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li> <li>2.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li> <li>3. 법 제10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인가 및 분할인가</li> <li>4.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신고</li> <li>5. 법 제103조제5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의 감독</li> <li>6.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li> <li>7. 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등기 촉탁</li> <li>8. 법 제111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제2항제8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li> <li>9. 법 제11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취소</li> <li>10. 법 제113조에 따른 청문</li> <li>11. 법 제119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li> </ol> <p>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li> <li>2. 법 제10조의2에 따른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li> <li>3. 법 제10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li> <li>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행사 등 사업에 관한 사항</li> </ol>

		<p>5. 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96조의2(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영공시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p> <p>6.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p> <p>7.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p> <p>8. 법 제111조(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감독에 필요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확인에 관한 사항</p> <p>9.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p>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무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7조(교정시설 설치·운영의 민간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교정시설의 시설기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시행령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국토교통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64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연합회,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연합회,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또는 전문검사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시행령	<p>제15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li> <li>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li> </ol>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경영 지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연합회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활동</li> <li>2. 과적(過積) 운행, 과로 운전, 과속 운전의 예방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계몽</li> <li>3.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의 건의</li> </ol>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의 시행</li> <li>2.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관리 및 교육</li> <li>2의2.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론 및 실기 교육</li> <li>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li> <li>4.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li> </ol>

		<p>통법규 위반사항 제공요청 및 기록·관리</p> <p>5.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제공</p> <p>6.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채용 기록·관리 자료의 요청</p> <p>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합회로 하여금 그 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사무 위탁</p>	<p>법률</p>	<p>제7조(운송사업자의 책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할 수 있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가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 업무를 「소비자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p> <p>제46조의6(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운영을 사업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실적 관리시스템의 운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시행령</p>	<p>제9조의19(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① 법 제46조의6제1항에서 “사업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p>

		<p>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합회 또는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li> <li>2. 제9조의18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li> <li>3.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설립목적의 화물운수와 관련이 있는 법인</li> </ol>
--	--	--

### □ 화장품법(식품의약품안전처)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화장품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에 따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청)

대행조문	<p>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인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p>
------	--

	<p>로 정하고, 제4항·제5항 및 제7항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하여 준용한다.</p> <p>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p> <p>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li> <li>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li> <li>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li> <li>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li> <li>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li> <li>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li> <li>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li> </ol>
<p>권한 위탁</p>	<p>법률</p> <p>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li> <li>2.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li> <li>3.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li> <li>3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li> <li>4. 제39조제1항·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3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li> </ol>

	<p>5. 제39조의2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p> <p>6.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업무를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기술원 및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p> <p>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1.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재발급에 관한 업무</p> <p>2.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p> <p>3.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p> <p>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 특성 변화 추세 연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시행령</p>	<p>제39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p> <p>1. 법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업무(합판·목재를 설치하는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는 제외한다)</p> <p>2. 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시설의 심사를 포함한다)</p> <p>3.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p> <p>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법 제44조제3호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p> <p>5. 법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p> <p>6. 법 제39조의2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p> <p>7. 법 제3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법 제44조제3호의2에 따</p>

		<p>른 청문을 포함한다)</p> <p>8. 법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법 제44조제4호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p> <p>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p> <p>④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업무를 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한다.</p> <p>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1. 법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재발급에 관한 업무</p> <p>2.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p> <p>3.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p>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p>대행조문</p>	<p>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p> <p>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를 전문으로</p>
-------------	--

	<p>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그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p> <p>⑤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종사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수탁관리자 및 취급시설 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p> <p>⑦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자격·인원·직무범위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대리자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권한 위탁</p>	<p>법률</p>	<p>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p>
	<p>시행령</p>	<p>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li> <li>2.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li> <li>3.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협회에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li> </ol>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48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3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확인 신청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2. 법 제42조의2제4호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와 관련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면제확인 신청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2. 법 제42조의2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의 생산 및 관리 기반 구축과 관련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29조의2제6호에 따른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 시 작성과 관련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제출 사유의 확인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척추동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부동의 사실의 확인 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

		<p>수(협회에 신고된 경우만 해당한다)</p> <p>6. 법 제42조의2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의 이행 기반 구축과 관련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p> <p>7. 법 제42조의2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인력 양성과 관련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p> <p>8. 법 제42조의2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 간 상호협력과 관련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p> <p>9.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또는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협회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p> <p>10. 제29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p>
사무 위탁	법률	<p>제33조(제품의 위해성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품 내 함유된 유해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해우려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의 품목별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국내외에서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위해우려제품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게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위해성평가와 관련한 전문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위해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

□ 환경교육진흥법(환경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p>법률</p> <p>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p>

		<p>기관·단체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공립 교육시설</li> <li>2.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li> <li>3. 「해양환경관리법」 제125조에 따른 해양환경보전협회</li> <li>4.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li> </ol>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5조의2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li> <li>1의2.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업무,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 활용실적 접수 및 사후평가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li> <li>1의3. 제7조의5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li> <li>1의4. 제7조의6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li> <li>1의5.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정보의 전산화 및 관리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li> <li>1의6.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li> <li>1의7. 제10조의3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li> </ol>

	<p>영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p> <p>2.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업무(경비지원업무를 포함한다):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p> <p>3.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업무(경비지원업무를 포함한다):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p> <p>4. 제16조의9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p> <p>4의2. 제16조의10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p> <p>4의3. 제16조의11제2항에 따른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p> <p>4의4. 제16조의14에 따른 표시·광고의 사전 검토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p> <p>5. 제17조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 제18조와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업무: 환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p> <p>6. 제21조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 환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p>
<p>시행령</p>	<p>제33조(위임 및 위탁)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7조의5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li> <li>2. 법 제7조의6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li> <li>3. 법 제10조의3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li> <li>4. 법 제16조의9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li> <li>5. 법 제17조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 취소</li> <li>6.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운영</li> <li>7.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li> <li>8. 제18조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li> <li>9.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 청취</li> <li>10.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li> <li>11.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자금지원, 제19조의4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장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li> </ol>

		<p>12.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소명자료에 대한 조사·검토</p> <p>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게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업무 및 그 필요경비의 지원업무</li> <li>2.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업무 및 그 필요경비의 지원업무</li> </ol> <p>⑧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한다.</p> <p>⑨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를 말한다.</p>
사무 위탁	법률	<p>제13조의2(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산업체, 공공기관, 환경 관련 학계 간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환경산업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환경산업체를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진흥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p> <p>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또는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

□ 환경보건법(환경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p>제30조(위임 및 위탁)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li> <li>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li> </ol>

		<p>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p> <p>3. 법 제2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과 관련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p> <p>4.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 용도로의 판매 중 지나 어린이용품의 회수 명령과 관련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p> <p>5. 법 제28조의2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p>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대행조문		제13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정도검사 및 검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환경영향평가법(환경부)**

대행조문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
------	--	--

		<p>영향평가업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li> <li>2. 사후환경영향조사서</li> <li>3. 약식평가서</li> </ol>
권한 위탁	법률	<p>제7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77조(위임 및 위탁)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li> <li>2. 법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폐업·휴업 신고의 접수</li> <li>3. 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보고 접수</li> <li>4.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대행 실적 보고 접수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 공고</li> <li>5. 법 제6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검정,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li> <li>6.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운영</li> </ol> <p>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7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회</li> <li>2.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li> <li>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li> <li>4.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li> <li>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li> <li>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li> <li>7.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li> </ol>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3. 제20조제5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기술지원 4. 제24조제5항 전단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구성·운영 5.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시행령	제36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3.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기술지원 4. 제18조제5항 후단에 따른 측정기기 설치의 적합 여부의 확인 5.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개선사유서의 접수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p>제33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2조에 따른 재보험사업의 운영 및 약정 체결에 관한 업무</li> <li>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학술 조사·연구 및 관련기술의 개발에 관한 업무</li> <li>3.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업무</li> <li>4. 법 제42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의 운영에 관한 업무</li> </ol>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제25조제1항제2호의 업무는 제외한다)</li> <li>2. 법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 상품 개발 및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업무</li> </ol>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 및 이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안전관리 실태 평가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p>
사무 위탁	법률	<p>제22조(재보험사업) ① 정부는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보험자와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③ 재보험료, 재보험금, 재보험자의 선정 등 재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보험사업 운영 및 약정 체결에 관한 사항을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시행령	-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대행조문	<p>제17조(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산업환경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 기업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정보</li> <li>2. 녹색경영에 관한 정보</li> <li>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의 교환에 관한 정보</li> <li>4.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에 관한 정보</li> <li>5. 국내외 산업환경에 관한 정보</li> </ol>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품질인증을 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및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권한 위탁	법률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

환자안전법(보건복지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p>제13조(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① 전담인력은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 교육 외에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인력이나 보건의료인에게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방법·시간·내용,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등)</p> <p>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⑦ 보고학습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위탁 및 경비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보건복지부)

	대행조문	-
--	------	---

권한 위탁	법률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1항에 따른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운영을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6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단체 또는 종교단체에 위탁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요양시설과 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단체·종교단체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한다.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 희귀질환관리법(보건복지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제15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희귀질환 관련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희귀질환전문기관에 대하여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질과 수준, 희귀질환 진료 현황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p>제12조(희귀질환전문기관 평가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희귀질환전문기관(이하 “희귀질환전문기관”이라 한다)의 평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li> <li>2.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li> </ol>
--	-----	---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문화체육관광부)**

대행조문	<p>제48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도지사는 특구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li> </ol> <p>② 제1항제1호의 특구개발사업 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권한 위탁	법률	-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해양수산부)**

대행조문	-
------	---

권한 위탁	법률	제40조(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령	-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통일부)

대행조문		-
권한 위탁	법률	제15조(업무의 위임·위탁)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특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7조(업무의 위임·위탁)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및 관련 전문가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납북사건에 관한 자료 조사 2. 제1호에 따라 수집된 자료의 분석·처리 및 보관
사무 위탁	법률	-
	시행령	-

연구보고 2017-02

**대행제도의 법리적인 분석을 통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

2017년 10월 29일 印刷

2017년 10월 31일 發行

發行人 이 익 현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화 : (044)861-0300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

---

값 13,000원

1.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978-89-6684-788-4 93360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